



교리와 규율서

2024년판

개정 날짜: 2025년 1월 15일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모든 성경 인용은 성경전서 뉴인터내셔널버전(Holy Bible, New International Version®, NIV®)에서 가져왔습니다.

저작권 © 1973, 1978, 1984, 2011 Biblica, Inc.™ 사용 허가를 받아 사용되었습니다.
모든 권리는 전 세계적으로 보호됩니다.

감독 인사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글로벌 감리교인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서 1:3-5)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섬기며 우리 주위의 세상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로서 우리의 공통된 소명을 세상에 알립니다. 감리교 운동이 시작된 이래, 공유된 언약으로 인하여 감리교인이라 불리는 사람들 안에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이 인도되고 강화되었습니다.

글로벌 감리교회의 *교리와 장정*은 우리의 삶을 함께 형성하고 질서 있게 만드는 교리적 신념과 합의된 실천을 제시합니다. 이 장정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고, 온 세상에 성경적 거룩함을 전파하는 우리의 사명을 담대하게 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담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유익하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이 장정은 글로벌 감리교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형성하고,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는 가치로 깊이 있게 살도록 해줍니다. *교리와 장정*은 글로벌 감리 교회 내의 모든 목회자, 평신도, 교회에 기대되는 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하나님 은혜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어떻게 효과적이고 유익하게 증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공통된 신념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감리교회의 방식을 가장 잘 실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며 기독교 신앙의 정통 교리를 확증하는 사람들과 동역하겠다는 우리의 헌신을 확증합니다.

지도자로서 우리 감독들은 글로벌 감리 교회 총회가 합의하고 이 책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약속과 실천에 복종할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이 책이 요구하는 언약을 지키도록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데 동의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는 그리스도의 몸의 표현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소망과 생명을 세상이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모든 글로벌 감리교인들에게 이 *교리와 장정*이 우리의 공동의 삶을 실천하고 우리의 소명과 공동의 사명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공유하는 이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고 확장하며, 다른 사람들을 변혁적 그리스도인 제자도의 삶으로 초대하고,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해 함께 간절히 싸울 때 담대하게 세상에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유다서 1.3)

글로벌 감리교회 감독회

존 페나 아우타, 김바 카쿠탈라 에바리스테, 제프리 에드워드 그린웨이, 리아 히데-그레고리, 스콧 제임슨 존스, 케네스 레이 레빙스턴, 캐롤린 캐퍼스 무어, 마크 제임스 웹

서문

1784 년부터 '감리교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감리교의 핵심 신앙과 실천을 요약한 문서에 의해 통치되어 왔다. 우리의 공동 신앙 생활이 어떻게 성장하고 번성할 수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설명한 이 문서는 성경, 찬송가와 함께 전 세계 초기 감리교 신자들의 가정에서 필수품이 되었으며, 종종 존 웨슬리의 신약성경 주석이 포함되기도 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웨슬리안의 구원 방법과 성화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단순히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기 위한 책이다.

이러한 정신에 따라 과도기적 장정에 이어 글로벌 감리 교회 *교리와 장정* 초판을 출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 장정이 신앙을 성장시키고 웨슬리의 가르침대로 "완전에 이르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책을 펴낸다. 이러한 이유로 이 역사적 문서의 전체 이름은 *교리와 규율*을 모두 강조하여 복원되었고, 내용의 순서도 재정비 되어 신도들의 삶에서 교리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했다. 마찬가지로, 규율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단순히 규칙과 규정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는 단순히 그분을 규율 있게 따르는 자라는 개념과 관련이 있다. 미국 감리교회의 초대 두 감독인 프란시스 애스버리와 토마스 코크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의 장정은 "오랜 세월의 경험과 고대와 현대 교회에 대한 관찰과 발언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그들은 계속하여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의 교리나 장정의 어떤 부분에 대해 무지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는 여러분이 전체를 읽고, 표시하고, 배우고, 내적으로 소화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감리교 관례에 따라 이 책은 페이지가 아닌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락은 한 장이나 절 내에서 연속적으로 번호가 매겨져 있지만, 향후 제정될 수 있도록 부분이나 장 사이에 단락 번호를 생략한다. 이 계획은 다음과 같다.

| | |
|-----------|-------------------|
| 101-199 | 교리적 기초(4 페이지) |
| 201-299 | 헌법(24 쪽) |
| 301-399 | 우리의 사회적 증언 (29 쪽) |
| 401-499 |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31 쪽) |
| 501-599 | 소명자의 사역(62 쪽) |
| 601-699 | 감리직 (80 쪽) |
| 701-799 | 연회 (90 쪽) |
| 801-899 | 연대기구 (99 쪽) |
| 901-999 | 사법 행정(114 쪽) |
| 1001-1099 | 재산 (128 쪽) |
| | 색인 |
| 부록 | 역사 정보 |
| | 사법 관행 및 절차 |

이 책을 활용하면서 애즈베리와 코크가 말한 대로 이 "사랑의 수고"가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기를 기도한다.

2024 저널 위원회

토마스 램브레히트, 편집자 로라 사펠
C. 채플 템플 래리 웰스

1 부 - 교리적 기초

¶ 101. 우리의 신앙 유산. 1. 글로벌 감리 교회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아브라함과 히브리 민족의 부르심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고백하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신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메시아로 고백하는 데서 절정을 이룬다. 시몬 베드로가 마태복음 16 장 16 절과 사도행전 2 장 36 절에서 표현한 이 고백이 기초가 된다. 이 책은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오늘날에도 살아계셔서 모든 사람을 구세주로 영접하도록 부르시고 모든 권세를 주신 분으로 선언한다.

2. 이 믿음은 부활의 첫 증인인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빈 무덤의 여인들에 의해 선포된 이후 시험되고 입증되었다. 사도들이 가르치고 초대 교회의 여성과 남성들이 옹호했으며,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목숨을 바쳐 간증했다. 성령의 능력과 영감을 받은 이들의 노력으로 신앙과 실천을 위한 충분한 규칙인 성경 정경이 탄생했다(그리스어로 카논은 규칙을 의미한다). 교회는 이러한 신앙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사도신경, 니케아 신조, 칼케돈 신조와 같은 신조를 공식화했다.

3. 16 세기에 개신교 개혁자들은 성경의 최우위, 은혜와 믿음의 필요성, 믿음에 의한 칭의의 중요성, 만민 제사장직을 주장하면서 이 증언을 보존했다. 감리교 신앙의 근간이 되는 교리적 요약은 역사적인 영국 교회의 39 개 조항의 종교 강령으로 존 웨슬리가 미국 교회를 위해 이를 24 개 조항으로 축소하고 1784 년 크리스마스 총회에서 확정 되었다..

4. 17 세기와 18 세기 초, 모든 전통적 경건주의자들은 부활하신 주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이라는 신앙의 체험적 특성을 강조하고자 했다.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개인과 공동체의 삶에서 이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경건주의 운동은 영국교회의 두 형제인 요한과 찰스 웨슬리를 비롯한 종교 개혁 전통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5. 영국의 많은 감리교인들, 특히 요한과 찰스 웨슬리의 노력으로 기독교 신앙과 삶에 대한 뚜렷한 감리교적 표현을 낳은 조직과 문헌이 등장했다. 예를 들어, 감리교는 은혜의 보편적 역사, 믿음으로 의롭게 됨, 거듭남, 구원의 완성, 즉 온전한 성화 또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특별히 강조했다. 감리교인들은 기존 교회와 함께 "국가, 특히 교회를 개혁하고 이 땅에 성경적 거룩함을 전파하는" 사명을 촉진하기 위해 조직과 공동체를 만들었다.

6. 감리교인들이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이 신앙의 표현을 함께 가져왔다. 영국의 감리교는 요한 웨슬리 사후까지 영국 교회에 충성을 유지했지만, 미국 혁명으로 인해 (기독교회인) 영국 교회와는 독립된 새로운 교회가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1784 년 볼티모어에서 "크리스마스 총회()"를 위해 모인 가운데 감리회 감독교가 공식적으로 설립되었다.

7. 이 새로운 교회는 존 웨슬리의 39 개 종교 강령 개정판과 감리교 총칙, 그리고 기도서 개정판 형태의 예배서를 채택하고 감리교 목회자를 인수했다. 두 가지 다른 권위 있는 출처가 확인되었는데, 당시 웨슬리가 직접 출판한 4 권의 설교집에는 53 편의 설교와 그의 신약성경에 대한 해설 노트가 포함되어 있었다. 1808 년 헌법을 채택할 때, 제한 규칙은 강령과 총칙을 폐지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도록 보호했다.

8. "원시 기독교"와 "성경의 구원의 길"이라는 감리교회의 다른 표현들이 등장했다. 경건주의 개혁파, 재세례파, 루터교 전통을 가진 독일어권 미국인들은 영어권

감리회 감독 교회와 거의 동일한 교리와 규율을 가진 조직을 만들었다. 필립 윌리엄 오터바인, 마틴 보엠, 제이콥 올브라이트는 그리스도 연합 형제교단과 복음주의 협회를 설립했다. 리처드 앨런과 제임스 배릭을 비롯한 많은 흑인 감리교인들이 교리와 규율을 지키면서 인종 차별과 노예제도의 부당함을 해결하기 위해 아프리카 감리회 감독교회와 아프리카 감리회 감독교회 시온 교회를 설립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같은 세기에 많은 감리교인들이 웨슬리가 강조한 마음과 삶의 거룩함을 유지하려는 시도인 성화 운동에 참여했다. 1789년 일반 규칙이 공식적으로 채택되었을 때, 요한 웨슬리 자신이 훗날 미국식 노예제도를 "종교의 주문인 그 극악무도한 악행"이라 하여 그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새로운 규칙이 미국적 상황에 추가되었다. 그러나 당시 미국 문화의 타락한 영향으로 인해 노예제도가 합법화되었던 지역에서는 결국 이 규칙이 무시되었다. 1844년 감리회 감독교회 총회가 열렸을 때 미국 감리교는 이미 노예제 찬성과 반대파로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었고, 따라서 분리 계획이 채택되었다. 한 저명한 감독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이 노예를 보유했기 때문에 생긴 다른 갈등들도 있었는데, 감독회의 권한 뿐만 아니라 총회의 권한에 관한 것들이 포함되었다. 이듬해 남부 주에서 온 대표들이 켄터키 주 루이빌에 남 감리교회를 조직하기 위해 모임으로써 감리회 감독 교회는 분열되었다. 이 두 교단은 각자의 길을 가다가 1939년 연합 총의로 다시 한번 통합했는데, 이때 1830년 초에 교회 노선을 따라 조직되었던 개혁 감리교회도 동참했다. 이 세 교단의 연합으로 감리교회라는 간단한 이름이 붙여졌다.

9. 감리교 그리스도인들은 분열과 합병을 통해, 교리와 장정의 표준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부활하시어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간직해 왔다. 그 결과 웨슬리안 교리는 주로 영국과 미국 감리교 선교사들의 노력으로 19세기와 20세기 초에 카리브해,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유럽의 여러 국가로 퍼져나갔다. 이러한 확장과 함께 종종 강력한 영적 부흥이 동반되어 회개, 믿음에 의한 구원, 중생, 거룩함에 대한 웨슬리의 가르침이 더욱 강화되었다. 1968년 감리교회와 복음주의 연합 형제회의 합병으로 연합 감리교회가 형성되었을 때, 감리교 **종교 강령과** 복음주의 연합 형제회 **신앙 고백**은 모두 교리적 표준으로 받아들여졌고 이 신앙에 대해 "일치하는" 표현으로 간주되었다. 지난 50년 동안, 아프리카, 필리핀, 유럽에서 우리의 교리적 유산을 유지하자는 점증하는 의견이, 우리가 시작한 교리 적 원칙의 충실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함께 동참해 왔다.

10. 20세기 후반과 21세기에 연합감리교회는 심하게 분열되었다. 그 결과, 특히 성경의 권위에 대한 교리적 완전성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사도적 신앙을 충실하고 생생하게 증거해야 할 필연적 사명으로 글로벌 감리 교회가 2022년 5월 1일에 출범했다. 이러한 토대 위에 서기 381년 콘스탄티노플에서 열린 제 2차 에큐메니칼 공의회에서 확인된 교회의 네 가지 역사적 표식, 즉 교회는 하나이며 거룩하고 우주적이며 사도적이라는 사실이 글로벌 감리교회를 모범적인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게 해 주었다.

¶ 102. 웨슬리안의 구원의 길. 1. 웨슬리안 전통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고 그 결과 성령의 사역을 통해 모든 사람이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을 공표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누구든지 잃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마 18:14)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딤후 2:4) 이르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함께 로마서 10장 9절에 나오는 "네가 만일

네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선언을 확증한다.

2. 타락한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즉 그의 삶과 사역, 죽음, 그리고 육체적 부활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 구원의 선물은 믿음을 통한 은혜로 모든 인류가 받을 수 있다. 은혜에는 성령을 통해 신자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적극적이고 능력 있는 임재가 포함된다. 이 과분한 선물은 인류를 죄의 죄책감과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해준다. 웨슬리의 고전적인 표현에 따르면, 은혜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일반 섭리에서 시작하여 우리 삶 전반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작용한다.

3. 하나님의 선행적 혹은 예방적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전에도 원죄의 영향을 완화하는 "영혼의 첫 번째 은혜의 여명"을 의미한다. 그것은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모든 결과보다 앞서 양심을 일깨우며, 도덕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심어주고,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감각을 제공하며, 추가적인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자유를 회복하는 이 모든 것이 생명에 대한 첫 번째 성향으로 이어진다.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능력보다 먼저 받은 앞서가는 은혜는 하나님의 계속되는 은혜의 역사에 진정으로 응답할 수 있게 해준다.

4. 하나님의 확신케 하는 은혜는 우리를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로 인도하여 "다가올 진노를 피하려는" 열망을 일깨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일을 시작할 수 있게 해준다. 분명한 것은 회개는 감리교회의 핵심이며, 죄인들이 자기 기준의 길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부름을 받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요한 웨슬리에게 회개는 믿음, 성화와 함께 감리교의 3대 교리 중 하나로 언급될 정도로 매우 중요했다. 실제로 그는 회개를 "종교의 현관"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5. 하나님의 칭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믿음으로 받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이다. 그것은 과거의 죄에 대한 용서이며,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롬 8: 28) 하는 직접적인 확신과 성령의 열매 가운데 선한 양심을 간접적으로 증거하는 것이다.

6. 하나님의 성화 은혜는 "거듭남" 또는 "초기 성화"라고도 하는 하나님의 중생의 역사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께로 향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려고 노력할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성화는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마음을 점점 더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점점 더 풍성하게 맺혀 육신의 본성을 죽이는 과정이다. 요한 웨슬리와 함께, 우리는 거룩한 삶과 궁극적으로 "완전한 성화"가 각 개인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여정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7.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과 약속은 우리의 영혼과 몸이 완전히 회복되어 새로운 피조물을 통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영화이다.

¶ 103. 함께 하는 우리 삶의 원리. 웨슬리는 "사회적 성결 없이는 거룩함이 없다"고 말했다. 웨슬리가 언급한 "사회적 성결"이란, 성화의 길은 우리 혼자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단계에서 신앙 공동체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우리의 바라는바 소망은 우리 교회가 다음과 같이 되는 것이다:

1. 우리의 **종교 강령과 신앙 고백**에 정의되고, 웨슬리의 신앙고백을 통해 이해되는 기독교 교회의 성경과 역사적 가르침에 뿌리를 내리고 기초를 유지한다.

2. 우리가 종사하고 있는 사명이 영원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인식하며,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를 열망한다. 우리는 마태복음 28 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온 세상에 가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세례를 주기로 결심한다.

3. 예수님 안에서 거듭남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깊어지고 그분과의 관계가 성장하여, 성령을 받아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영적 열매와 은사를 증거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인도한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웨슬리 전통인 속회(class meeting)와 밴드(band) 모임과 같은 제자훈련과 소(책임)그룹에 참여하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모든 은혜의 수단을 활용하도록 격려한다.

4. 우리는 마음과 뜻과 영혼과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본보기로 삼는다. 이를 위해 우리는 요한복음 21 장에 나오는 계명, 즉 하나님의 양들과 다른 양떼들을 사랑으로 먹이고 돌보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으로 서로를 보살피라는 계명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교회는 사랑 안에서 완전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을 경험할 때까지 이를 행한다.

5. 평신도를 하나님의 백성이자 왕 같은 제사장 직분으로 인정하며, 목회자와 완전한 파트너십을 맺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선택되고 위임받았음을 인정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모든 인종, 민족, 국적, 성별, 연령대의 사람들의 참여와 리더십을 확인한다.

6. 성경의 권위 있는 증거에 근거하고, 교회에 의해 구별되며, 우리의 확립된 교리와 장정정에 부합하고 책임질 수 있는 사역에 필요한 은사와 은혜를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목회자의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격려하고 확증한다.

7. 가능한 한 상호 존중, 협력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공동 사명을 통해 더 큰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소중히 여기며 보편적인 교회에 '공교회 정신'을 보인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모두가 함께 일하고 서로에게서 자원을 공급하고 배우는 글로벌교회를 꿈꾼다.

8. 교회의 주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구조를 제공하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 모든 사람의 은사에 힘을 실어주고 증식시킬 수 있는 연대적 정책체제를 이룬다.

¶ **104. 성경.** 구약과 신약의 정경(종교 강령에 명시되어 있음)은 신앙, 도덕 및 봉사에 대한 주요 규칙이자 권위이며, 성경이 다른 모든 권위의 척도가 되어야 한다.

¶ **105. 교리 표준을 위한 규범 문서들.** 이후에 소개되는 성경에 나타난 사도적 증거에 대한 요약은 많은 기독교 공동체에서 확증되었으며, 정통 기독교 가르침을 표현한다. '규범적'이라는 단어는 참된 가르침과 거짓 가르침을 판단하는 기준을 의미한다. 규범적 교육은 구속력이 있으며 의무 사항이다. 이는 우리 교단에서 설교와 가르침에 대한 적절한 경계를 설정한다.

1. 사도신경 (서기 2 세기)

사도신경은 기독교 교회 내에서 가장 오래된 신앙고백으로, 2 세기에 사용되던 오래된 로마 신조에서 비롯되었으며, 이 신조의 가장 오래된 문서 형태는 서기 341 년경에 쓰인 편지에서 발견되었다. 사도신경은 교리적 명확성과 세례 성사를 준비할 때 생생한 신앙 고백을 위해 교회가 오랜 역사를 통해 사용되어 왔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주님은 죽음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사흘만에 다시 살아 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공회, 보편적

2. 니케아 신조 (A.D. 381)

니케아 신조는 서기 325 년 지금의 터키에 있는 고대 니케아에서 열린 최초의 기독교 교회 에큐메니칼 공의회에서 작성되었다. 이 신조는 서기 381 년 콘스탄티노플에서 열린 제 2 차 에큐메니칼 공의회에서 기독교 신앙의 진정한 표현으로 확대, 채택되었다. 신조는 "가톨릭" 또는 보편 교회의 신앙을 표현하고 있지만, 동서양의 기독교인들은 "그리고 아들"을 의미하는 라틴어인 필리오케 한 단어의 포함을 놓고 오랫동안 논쟁을 벌여왔다. 원래 신조는 성령이 성부로부터 나온다는 생각을 표현한 반면, 감리교회를 포함한 서구 전통의 교회들은 성령이 성부와 성자 모두로부터 나온다고 믿게 되었다. 전 세계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글로벌 감리교인들은 예배와 신앙 교육에서 신조를 사용할 때 "그리고 성자"라는 문구를 포함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신 전능하신 아버지이신 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모든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에게서 나셨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빛이시요,
 하나님의 본질로부터 나온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나셨으나 지으심을 받지 않으셨으며,
 모든 것을 지으신 아버지와 한 본체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는 우리 인류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성령에 의하여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몸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사,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 의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는 고난을 당하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만에 성경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는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 하실 것입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무궁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의 공급자 되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셨고,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예배와 영광을 받으십니다.
 성령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요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해 주는 한 번의 세례만을 인정하며
 죽은 자들의 부활과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을 소망합니다.
 아멘.

* 보편적

3. 칼케돈의 정의 (A.D. 451)

칼케돈의 정의는 특정 이단에 대응하고 그리스도의 이중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서기 451년 소아시아에서 열린 제 4차 교회 에큐메니칼 공의회에서 채택되었다. 칼케돈 정의는 전 세계적으로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조만큼 폭넓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로마 가톨릭, 동방 정교회 및 여러 개신교 신학 전통에서 확증되었다.

거룩한 교부들을 따라 우리는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며 동일한 인격체로 고백되어야 합니다, 그분은 신성에 있어서 완전하시고, 인성에 있어서 완전하시며, 참된 하나님이시며 참된 사람이시며, 그분의 신성에 관해서는 아버지와 한 실체로 이루어져 계시며, 동시에 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분의 인성에 관해서 우리와 함께 있는 한 실체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의 신격에 관하여 만세 전에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셨으며,

그러나 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위해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을 낳으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분,
 분이시며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두 본성 안에 있고, 혼란이 없고, 변화가 없고, 분열이 없고, 두
 인격으로 갈라지거나 분리되지 않고, 한 분이시며 동일한 아들이시며
 독생하신 말씀이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아주 옛적부터 선지자들이 그에 대하여 말한 것처럼,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처럼,
 그리고 조상들의 신조가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 106. 웨슬리안 증인을 위한 규범적 기준. 많은 기독교 공동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보편적 교회의 신조 전통과 일치하지만 우리 교회의 특별한 강조점과 관심사, 신학적 신앙 유산을 표현하는 추가적인 신앙 고백을 인정한다. 이러한 헌법적이고 규범적인 표준은 "성도에게 단번에 맡겨진 믿음"(유다서 3 장)을 구현하며 거짓 가르침에 대한 보루 역할을 하며, 우리의 가르침(정통)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공동체적 신학의 발전과 우리의 삶과 봉사(정확한 행동)의 출발점을 제공한다. 감리교회와 복음주의 연합 형제교회신앙 공동체의 상호 보완적인 흐름을 인정하여, 통합된 **종교 강령과 신앙 고백**은 교회에 의해 다시 승인될 때까지 교리와 장정은 우리 교회의 교리적 경계를 정의한다.

1. 감리교회의 종교 강령. 영국 교회의 39 개 조항은 엘리자베스 1 세 통치 기간인 1571 년에 최종 형태로 비준되었으며, 영국 종교개혁의 관심사와 기존 교회의 포괄적인 성격을 모두 반영한다. 미국이 독립 국가로 부상함에 따라 웨슬리는 1784 년 미국에서의 감리교 사역을 위해 장정을 개정했다. 24 개 조항은 그의 신학적 헌신과 교리적 명료성에 대한 열망을 반영하여 쉽게 오해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일부 조항은 짧게, 어떤 조항은 삭제했다. 감리회 감독교회는 시민 권위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다루는 조항을 추가했다. 25 개 조항은 최초의 제한 규칙이 시행된 1808 년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되었고, 미국 내 3 개 감리교단이 하나가 된 1939 년 연합 총회에서 개정되었다. 25 개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 1 조 - 성삼위일체 신앙에 관하여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며, 몸도 부분도 없이 영원하시며, 무한한 능력과 지혜와 선이시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분이시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안에 실체와 권능과 영원함에 있어 동등하신 삼위가 계시니,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다.

제 2 조 - 말씀, 곧 완전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자는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성부의 말씀이요, 성부와 동일한 실체를 가지셨으나, 복 받은 동정녀의 모태에서 인성을 입으시어 두 개의 온전하고 완전한 본성, 곧 신성과 인성이 한 분에게서 나누어질 수 없이 합하여 지신 분이시다. 이로 인하여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 되신 한 분, 그리스도로 진실로 고난을 당하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셨으니, 이는 곧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시고
원죄.뿐만 아니라 사람이 실제로 지은 죄를 위하여 자신을 제물로 바치기 위함이다

제 3 조 -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진실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완전한 인성을 갖춘 그의 몸을
다시 가지고 하늘에 오르셨으며, 마지막 날에 만민을 심판하시기 위해 재림하실 때까지
거기 앉아 계신다.

제 4 조 - 성령에 관하여

성령은 성부와 성자께로부터 오신 분으로 그 본질과 위엄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동일하신 바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제 5 조 - 구원을 위한 성경의 충분성

성경에는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으니, 성경에서 읽어볼 수 없는 것이나
그로 증언하지 못할 것은, 무엇이든지 아무 사람에게도 신조로 읽으라고 하거나, 구원에
필요하거나 필수적인 것으로 여기라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의 정경을
가리키며, 그 권위가 교회에서 의심된 적이 없음을 우리는 성경의 이름으로 확신한다.
정경의 책 이름은 아래와 같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및 4 대선지서와 12 소선지서 등이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신약의 모든 책들을 우리도 정경으로 여기고 받아들인다.

제 6 조 - 구약에 관하여

구약은 신약과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니다. 신약과 구약에서 하나님이신 동시에 또한
사람이시기에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단 한분의 증보자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영생을
인류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옛 조상들이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약속을 바라보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바,
예법과 의식에 관한 율법은 그리스도인을 속박하지 못하고 또 모세의 민법에 관한 교훈도
어느 나라에서든지 당연히 채용할 필요가 없을 것이나, 어느 그리스도인이든지 도덕이라
일컫는 모든 계명을 순복하는 데서 제외되지는 못할 것이다

제 7 조 - 원죄에 관하여

원죄는 (펠라기우스와 사람들의 망령된 말 같이) 아담을 따르기 때문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자손에게 자연적으로 야기되는 것으로, 각 사람의 본성이 부패한 것을
가르침인데, 이로 인해 인류가 근본적 의에서 멀리 떠나 그 성품이 늘 죄악으로 치우치는
것을 말한다.

제 8 조 - 자유의지에 관하여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인류의 상태가 그와 같이 되어, 자기의 본연의 능력과 행위로써 마음을 돌이키고 준비하여 믿음에 이르러 하나님을 찾아가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의지를 얻게 하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없고, 선한 의지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는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

제 9 조 - 사람을 의롭게 하심에 관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 여기심을 얻은 것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한 믿음으로 말미암음이요, 우리의 업적이나 자격이 있어 얻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함을 얻는다 하는 것은 가장 유익하고 위로가 넘치는 교리이다.

제 10 조 - 선행에 관하여

선행은 비록 믿음의 열매요 또한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후에 오는 것 일지라도, 능히 우리의 죄를 없애지 못하며, 하나님의 가혹한 심판을 감당하지 못할것이다. 그러나 선행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참되고 생명있는 신앙으로부터 솟아 나오는 것인 즉,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아는 것같이 선행을 보고 그 살아 있는 신앙이 있는지를 분별하는 것이다.

제 11 조 - 의무 이외의 행위에 관하여

하나님의 계명밖에 자원하여 더 행하는 일을 의무 이외의 행위라 하는데, 이는 오만하고 불경건한 사람만이 하는 말이니, 사람들은 말하기를 자기가 하나님께 당연히 할 바를 다하였을 뿐더러 하나님을 위하여 마땅히 하여야 할 일보다 더 하였다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에 대하여 밝히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명한 것을 다 행할 때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하라” 하셨다.

제 12 조 - 의롭다 하심을 얻은 후의 죄에 관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은 후에 고의로 범하는 죄마다 성령을 거역하는 죄요 용서하여 주심을 얻지 못할 죄는 아니다. 그러므로 의롭다 함을 얻은 후에 죄에 빠지는 사람에게 회개함을 허락하시는 은혜를 얻지 못한다 할 것이 아니요, 우리가 성령을 받은 후에라도 얻은바 은혜를 배반하고 죄에 빠졌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 우리의 생활을 개선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세상에 거하는 동안 죄를 더 범하지 않는다 하는 자들이나 죄를 범한 뒤에 참으로 회개할지라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하는 자들은 정죄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제 13 조 - 교회에 관하여

그리스도의 보이는 교회는 참 믿는 이들의 모임이니, 그 가운데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성례전이 적절히 행하여 진다. 이 모든 필요한 일이 교회를 있게 하는 것이다

제 14 조 - 연옥에 관하여

연옥(purgatory) 과 면죄와 우상과 유물에 경배 존숭함과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함에 관한 로마교회의 교리는 허망하고 위조된 것이다. 이것들은 성경의 보증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다.

제 15 조 - 회중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함에 관하여

교회에서 공중기도를 할 때에나 성례전을 집행할 때, 교인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초대 교회의 규례에 위반되는 일이다.

제 16 조 - 성례전에 관하여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전은 그리스도인이 됨을 공인하는 표적과 증거가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은혜의 증표가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선한 의지의 확실한 표가 되니,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묵묵히 역사하시어 그에게 향한 우리의 신앙을 활발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욱 굳게 하시는 것이다. 복음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가 둘 있으니, 곧 세례와 주의 만찬이 있다.

견진성사·고해성사·신품성사·혼인성사·종부성사 등 다섯 가지를 성례라 하나, 이는 복음서의 성례로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그 가운데 어떤 것은 사도의 도를 잘못 따름으로 된 것이요, 어떤 것은 성경에 허락하신 생활의 전형으로 된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드러나는 표적과 의식이 없으므로, 세례와 주의 만찬과 같은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는 우리로 하여금 쳐다보거나 가지고 다니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적절히 사용하게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성례를 합당하게 받는 이에게만 유익한 결과와 효력이 있으니, 합당치 않게 받는 이는 사도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스스로 정죄함을 받는 것이다.

제 17 조 - 세례에 대하여

세례는 신앙고백의 증표요 그리스도인을 세례 받지 아니한 사람과 분별하게 하는 표적일 뿐더러, 중생, 곧 거듭남의 표가 되는 것이다. 또 어린이에게 세례를 베푸는 일도 교회는 계속 행하여야 할 것이다.

제 18 조 - 주의 만찬에 대하여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서로 사랑하여야 할 사랑의 표시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시는 성례전이다. 그러므로 옳고 합당하게 믿음으로 받는 이들에게는 떼인 떡을 먹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것이요, 또한 이와 같이 그 복된 잔을 마시는 것도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것이다. 화체 (transubstantiation), 곧 주의 만찬의 떡과 포도주의 물체가 변화 한다 함은 성경으로 증명될 수 없을 뿐더러 성경의 명백한 말씀을 거스르며, 성례의 원 뜻을 그르침이요 또 이로 인하여 많은 미신이 생기게 되었다. 만찬 때에 그리스도의 몸을 주고, 받고, 먹는 것은 오직 천국적·영적인 방법으로만 할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서 먹는 방법은 오직 믿음뿐이다. 만찬의 성례를 제한하거나, 지니고 다니거나, 섬기거나, 혹은 경배하는 일은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것이 아니다.

제 19 조 - 떡과 포도주에 관하여

평신도에게 주의 잔을 거절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규례와 명령대로 주의 만찬의 두 가지 요소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베풀어야 할 것이다.

제 20 조 십자가상에서 한 번 끝난 그리스도의 제사에 관하여

그리스도의 제물은 단번에 온 세상의 모든 원죄와 실제 죄에 대한 완전한 구속, 속죄, 그리고 성취이며, 그것 외에는 죄에 대한 다른 속죄법은 없다. 이리므로 “미사”제를 드리며 사제가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리어 산 자와 죽은 자의 고통과 범죄를 면하게 한다 함은 불경스러운 우화요 위험한 계계(說計)다.

제 21 조 - 목사의 혼인에 관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그리스도교의 목사들은 독신생활을 맹세하라든가 혼인을 금하라든지 하신 명령은 없다. 그러므로 목사들도 모든 그리스도 인과 같이 자기의 뜻에 경건하다고 생각되면 혼인하는 것이 마땅하다.

제 22 조 - 교회의 예배와 의식에 관하여

예배와 의식은 어느 곳에서나 꼭 같아야 할 필요가 없다. 대개 예배와 의식은 예로부터 같지 아니하였으며, 아무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슬림 없이 되게 하기 위하여 다양한 나라와 시대와 풍속을 따라 변하여 왔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슬리지 아니하며, 또한 주권자가 인정하고 승인한, 자기가 속한 교회의 예배와 의식을 사견에 의하여 고의적으로 공공연히 파괴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교회의 법을 어기며 연약한 형제의 양심을 상하게 한 이로 여겨 공개적으로 질책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두려워하여 그와 같은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교회마다 예배와 의식을 만들기도 하며 고치기도 하며 혹 폐지하기도 하여 모든 일이 덕이 되게 할 것이다.

제 23 조 - 미합중국의 통치자들에 대하여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과 국회와 각 주 의회와 각 주 지사와 내각은 연방 헌법과 각 주 헌법에 의하여 권력이 분리된 대로 선출된 북미합중국의 통치자들이다. 따라서 위에 언급한 주들은 하나의 독립된 주권국이므로 어떠한 외국 관할권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

제 24 조 - 그리스도인의 재물에 관하여

그리스도인이 재물과 재화를 가질 권리와 직함과 소유함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들이 허망하게 자랑하는 것처럼 공동 소유물이 아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마땅히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능력껏 가난한 이들을 너그럽게 구제하여야 할 것이다.

제 25 조 - 그리스도인의 서약에 관하여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야고보가 그리스도인이 헛되고 경솔히 맹세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동시에, 어떤 사람이 공직자에게 요청을 받을 때 믿음과 사랑을 인하여 맹세하는 것은 그리스도교 교리에 금지함이 없는 줄로 생각한다. 다만 선지자의 교훈대로 정의와 공의와 진리 안에서 행할 것이다.

아래 강령은[감리교 개신교회의 장정 통합 총회(1939 년)에서 이곳에 삽입한 것이다. 이것은 세 교단이 승인한종교강령에는 속하지 않는다.

성화(감리교 개신교회 장정에서)

성화는 성령의 능력으로 타락한 본성에서 새로워지는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며 그의 구속의 피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로써 우리는 죄에서 구원될 뿐만 아니라 죄의 오염에서 씻김을 얻으며, 죄의 권세에서 건져냄을 받고 은혜로 말미암아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며 그의 거룩한 명령에 온전히 따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다.

[다음 조항은 1939 년 통합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세속 주권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의무에 관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히 모든 크리스천 사역자들은 자기들이 시민으로 살고 있는 국가의 행정 또는 최고 권력 기관의 법과 명령을 준수하고 이에 복종하여야 하며, 주어진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그 권력에 순종하도록 권장하며 요청하여야 한다.

2. 복음주의 연합 형제교회의 신앙 고백.

복음주의 연합 형제교회의 신앙 고백은 복음주의 협회와 그리스도 형제 교단 전통의 교리적 발전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제이콥 올브라이트가 사망한 지 2년 후인 1809년, 복음주의 협회는 1530년 루터교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서의 마지막 심판에

관한 조항과 조지 밀러의 기독교 완전성에 관한 에세이를 추가하여 감리교회의 **종교 강령**을 독일어 번역본으로 채택했다. 1816년에는 로마 가톨릭과 재세례파에 대한 논쟁적인 조항을 생략하여 21 개로 줄였다. 이는 나중에 1923년 복음주의 교회가 설립될 때 유지했던 19 개 조항으로 압축되었다. 1815년,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 형제교회의 첫 총회는 7 개 조항으로 구성된 **신앙 고백서**를 채택했다. 1889년에는 성화에 관한 조항을 포함한 13 개 조항으로 구성된 보다 포괄적인 **신앙 고백서**가 작성되었다. 1946년 복음주의 연합 형제교회가 형성되었을 때, 이 교회는 그리스도 연합 형제교회의 **신앙고백서**와 복음주의 교회의 **신앙 강령**을 모두 유지했다. 1962년에는 16 개 조항으로 구성된 새로운 **신앙 고백서**가 완성되었다. 이는 1968년 감리교회와의 합병으로 연합감리교회가 탄생하면서 채택되었다. 16 개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 1 조 - 하나님

우리는 참되고 거룩하시며 한 분이신 살아 계신 하나님, 창조자이시며 왕 되시고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소유자이신 영원한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는 능력과 지혜와 정의와 선함과 사랑이 무한하시며, 인간의 복지와 구원을 위하여 자비롭게 통치하시어 자신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신다. 우리는 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자신을 나타내심을 믿으니, 그는 곧 구별되나 나눌 수 없으며, 본질과 능력에 있어 영원히 한 근본이시요 능력이신 성부·성자·성령이시다.

제 2 조 -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시며 진정으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안에서 신성(神性)과 인성(人性)이 완전하고 분리될 수 없이 결합되어 있음을 믿는다. 그는 육신을 입으신 영원한 말씀이시며,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시다. 그는 섬기는 종으로 살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셨다. 장사한 후 죽음에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아버지와 함께 계시며, 후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는 영원한 구세주시며 중보자시며,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모든 인간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제 3 조 - 성령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오셨으며 존재함에 있어 그들과 하나이신 성령을 믿는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신다. 성령은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해 신실하게 응답하게 함으로써 교회 안에서 교제하도록 인도하신다. 그는 믿는 이들을 위로하고, 보호하고, 힘을 주며, 온전한 진리로 인도하신다.

제 4 조 - 성경

우리는 구약과 신약 성경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넉넉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한다고 믿는다. 성경은 성령을 통해 믿음과 실천을 위한 참된 규칙과 지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성경에 계시되지 않거나 성경에 의해 확립되지 않은 것은 신앙의 강령이 될 수 없으며, 구원에 필수적인 것으로 가르쳐서도 안된다.

제 5 조 - 교회

우리는 기독교 교회가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는 모든 참된 신자들의 공동체라고 믿는다. 우리는 교회는 하나이며, 거룩하고, 사도적이며, 보편적이라고 믿는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전이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정식으로 집행되는 구원의 공동체이다. 성령의 인도 하에 교회는 예배와 신자들의 교화, 세상의 구속을 위하여 존재한다.

제 6 조 - 성례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전이 그리스도인의 신앙고백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요 보증임을 믿는다. 성례전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활력 있게 하며 튼튼하게 하며 확실하게 하는, 우리 안에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은혜의 수단이다.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두 성례를 제정하셨으니, 이는 곧 세례와 성만찬이다. 우리는 세례가 믿음의 집안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있으며, 참회와 내적인 죄 사함의 상징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남의 표시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증표라고 믿는다. 우리는 어린이가 그리스도 속죄의 대상이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기독교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고 믿는다. 믿는 부모의 자녀들은 세례를 통해 교회의 특별한 책임이 된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도록 양육되고 인도되어야 하며, 신앙고백으로 그들의 세례를 확인해야 한다. 우리는 주의 만찬이 우리의 구속의 표현이며,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그리고 서로에게 갖는 사랑과 연합의 표식이라고 믿는다. 깨어진 떡을, 바르고 합당하게 믿음으로 먹고, 축복의 잔을 마시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영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제 7 조 - 죄와 자유 의지

우리는 인간이 의에서 타락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터 멀어졌고, 거룩함이 결핍되고 악으로 기울어졌음을 믿는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실만한 선을 행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감동하심과 능력을 받은 사람은 선을 위하여 자신의 의지를 자유롭게 행사할 책임이 있다고 믿는다.

제 8 조 - 그리스도를 통한 화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과 화목케 하셨음을 믿는다. 십자가상에서 값없이 드리신 그리스도의 헌신은 온 세상의 죄를 대신하여 인간을 모든 죄에서 구속하시기에 완전하고도 충분한 희생 제물이므로 다른 아무런 속죄제물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제 9 조 - 칭의와 신생

우리는 우리의 행위나 공로로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으나, 하나님 앞에서 참회하는 죄인들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다 인정되거나,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고 믿는다. 신생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이 의롭게 새로워 지는 것이며, 이를 통해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게 되고 새로운 삶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이 신생으로 말미암아 신자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어,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다. 우리는 비록 우리가 신생을 경험하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죄에 빠질 수 있으며, 그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다시 새로워질 수 있음을 믿는다.

제 10 조 - 선행

우리는, 선행이 신생에 따른 믿음의 필수적인 열매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죄를 씻거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데는 효험이 없다고 믿는다. 선행은 믿음을 통하여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분명하여지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흡족하여 하시고 받아 주시는 선행이 참되며 살아 있는 믿음에서 우러나온 것임을 믿는다.

제 11 조 - 성화와 그리스도인의 완전

성화는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서, 이로써 거듭난 사람들이 그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로부터 씻음을 받게 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게 되며,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뵈올 수 없는 그 거룩함에 도달하려고 노력한다고 우리는 믿는다. 완전한 성화는 마음과 영혼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써 죄의 사슬에서 구속된 모든 신생한 신자들이 가질 수 있는 완전한 사랑이며, 정의와 진정한 거룩함의 상태를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이 은혜의 선물은 이 세상의 삶에서 점진적으로 혹은 즉각적으로 받아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는 이것을 열심히 구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런 경험이 우리를 허약함과 무지함과 인간의 작은 실수와 다시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지는 못함을 믿는다. 그리스도인은 영적 교만을 경계하고 모든 죄의 유혹에서 승리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죄가 그를 지배하는 힘을 잃고 세상과 육체와 마귀가 그의 발아래 놓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응답해야 한다. 그리하여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대적을 항상 경계하며 다스려야 한다.

제 12 조 - 심판과 내세

우리는 모든 사람이 현재와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심판 아래 설 것을 믿는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으며 의인은 영원한 생명으로, 악인은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된다.

제 13 조 - 공적 예배

우리는 거룩한 예배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몸을 바쳐 드리는 인간의 의무이며 특권임을 믿는다. 우리는 거룩한 예배가 교회 생활의 필수적인 것이며, 이러한 예배를 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친교와 영적 성장에 필요한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공적 예배순서가 모든 곳에서 동일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나, 상황과 필요에 따라 교회가 이를 변형할 수 있음을 믿는다. 예배순서는 회중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형식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성경에 모순됨이 없어야 하며, 교회의 규칙과 장정을 따라야 한다

제 14 조 - 주일

우리는 주일이 사적 및 공적 예배를 드리고 불필요한 일로부터 쉬며 영적 성장과 그리스도인의 교제 및 봉사에 헌신하기 위해 신성하게 제정된 날이라고 믿는다. 이 날은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우리의 영원한 안식을 상징한다. 주일은 기독교 교회의 영속성과 성장에 필수적이며 시민 사회의 복지에도 중요하다.

제 15 조 - 기독교인과 재산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소유주이며, 개인의 재산 보유는 합법적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신성하게 위임 받은 것이라고 믿는다. 사유 재산은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관대함을 나타내는 일과 교회의 선교 사업을 돕는 일에 사용되어야 한다. 개인, 기업, 공공 등 모든 형태의 재산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엄숙히 신탁하고 인류의 유익을 위해 책임감 있게 사용해야 한다.

제 16 조 - 시민 정부

우리는 시민 정부가 주권자인 하나님으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는다고 믿는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그 보호 아래 거주하는 정부를 인정하며, 정부는 하나님 아래에서 인간이 가진 권리를 인정하며, 인권위에 정부의 터를 닦고 인권을 보호할 책임이 있음을 믿는다. 우리는 전쟁과 유혈사태가 복음과 그리스도의 정신에 어긋남을 믿는다. 우리는 건전하고 의롭고 경건한 삶을 통해 자기들이 속한 정부에 윤리적 능력과 목적을 부여하는 것이 기독교 시민의 의무라고 믿는다.

¶ 107. **기독교 제자도를 위한 웨슬리의 기본 표준.** 기독교 신앙에 대한 감리교의 표현의 규범적 기여와 강조를 대표하는 웨슬리 표준은 요한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가 이끄는 18세기 복음주의 갱신의 영적 후손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광범위하게 공유되어 왔다. 이 기준들은 우리에게 감리교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르쳐 주며 우리 공동체의 가르침은 그것들과 일치해야 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1. **존 웨슬리의 표준 설교** 감리교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설교와 가르침의 모범을 제공하기 위해 요한 웨슬리는 1746년부터 “하나님의 길을 인간의 발명품인 모든

길과 구별하기 위해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발견한 것을 제공하기 위해 여러 편의 설교를 출판했다” 그 중 44 편의 설교를 모은 이 책은 1763년에 공표된 감리교회의 강단에서 계속되는 교회 생활에서 설교된 내용을 '모범적인 행동'으로 제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특별한 설교들은 웨슬리에 의해 뚜렷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교회에서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기 위한 “표준”으로 삼기 위한 것이었다:

1.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2. 유사 기독교인
3.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4. 성경적 기독교
5. 믿음으로 인한 칭의
6. 믿음의 의로움
7. 왕국에 이르는 길
8. 성령의 첫 열매
9. 종의 영광 양자의 영
10. 성령의 증거- 담론I
11. 우리 자신의 영의 증거
12. 은혜의 수단
13. 마음의 할례
14. 거듭남의 표식
15.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의 위대한 특권
- 16-28. 우리 주님의 산상수훈(13 개의 설교)
29. 율법의 기원, 성격, 속성 및 용도
30. 신앙 담화1 을 통해 확립된 율법
31. 신앙 담화2 를 통해 확립된 율법
32. 열정의 본질
33. 편협함에 대한 경계
34. 가톨릭(보편적/우주적) 정신
35. 그리스도인의 완전성
36. 방황하는 생각들
37. 사탄의 계략
38. 원죄
39. 새로운 탄생
40. 황야 상태
41. 여러가지 유혹으로 인한 근심
42. 자기 부정
43. 악의적인 말의 치료법
44. 돈의 사용

1771년 웨슬리의 저작에는 신생과 완전 성화의 차이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되는 9 개의 설교가 추가로 포함되어 있다(설교 신자들의 죄에 대하여 및 신자들의 회개)뿐만 아니라 요한 웨슬리의 실천 신학(성경적 구원의 길)에 대한 매우 유용한 요약을 제공하고 있다.

45. 성령의 증거, II
46. 신자들의 죄에 대하여
47. 신자들의 회개
48. 위대한 아시즈 (위대한 심판- 아시즈는 웨슬리 당시 영국의 지방 재판소를 말함-역자주)
49. 여호와 우리의 의로움
50. 성경적 구원의 길
51. 선한 청지기
52. 예절의 개혁
53. 조지 헛필드의 죽음에 대하여

1771년에 출간된 웨슬리의 설교집 4권에는 이 9편의 설교가 모두 수록되어 있어 미국 감리교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사랑받았다. 따라서 1784년 크리스마스 총회에서 미국 교회를 위한 교리 표준을 채택할 때도 이와 같은 설교를 염두에 두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나중에 1787~88년판 웨슬리 설교집은 모범 문서(1796년 총회 결의에 따라 미국에 있는 감리교회를 위해 채택된 기준-역자주)의 규정에 따라 다시 마흔네 개만 포함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3편의 설교는 역사적으로 북미에서 출판됨으로 인해 계속해서 알려지고 널리 읽혔으며, 이는 실제 감리교회의 관행으로서 뚜렷하고 존경받는 전통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1808년 역사적인 감리회 감독교회 총회가 열렸을 때, 프란시스 워드가 "우리의 현재와 기존의 교리 표준을 구성하는 설교가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했지만 총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과야 어찌됐든 1771년 웨슬리가 확정한 9편의 추가 설교는 기존의 44편의 설교를 보완하여 실천적인 신학과 다른 주제에 대한 추가적인 교육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훨씬 더 명확해지고, 그 결과 그리스도인의 삶에 엄청난 계몽적 영향을 미쳤다.

2. 신약성경에 대한 설명 주석. 1755년에 처음 출판된 존 웨슬리의 신약 성경 본문은 킹 제임스 성경과 그리스어 신약 사본에 기초하고 있다. 이 주석은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쓰여졌으며, 성경의 역사적 맥락과 웨슬리의 성경에 대한 신학적 해석을 제공하며, 네개의 초기 주석의 작업을 바탕으로 한다.

¶ **108. 감리교회의 총칙.** 감리회 구성원들에 대한 기대를 분명히 하기 위해 요한 웨슬리는 1738년 처음으로 일련의 규칙을 고안하여 5년 후에 출판했다. 총칙은 이후 (미국) 감리교 감독교회가 설립된 지 1년 후인 1785년에 채택되었다. 이 총칙은 초기 감리교를 특징짓는, 일종의 의도적인 제자도에 대한 유용한 요약を提供하며, 세 가지 간단한 규칙으로 요약된다: 해를 끼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교회의 성례전과 경건한 생활에 계속 연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총칙은 헌법의 일부로 남아 있으며 제한규정에 의해 보호된다.

연합 신도회의 성격, 설계 및 총칙

1739년 말경에 10명의 사람들이 런던에 있는 웨슬리를 찾아갔는데, 그들은 깊은 죄책감에 빠져 구원받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있었다. 그 다음 날 2, 3명이 더 와서 그러한 것처럼, 그들은 웨슬리가 시간을 내어 그들과 함께 기도하여 주며 그들의 머릿속에 항상 맴도는 닥쳐올 천벌로부터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기를 요청하였다. 이 큰 일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그는 그들이 모두 함께 모일 수 있는 날 하루를 정하여 그 후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에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에 참석자 수가 나날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오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 허락하여, 그들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충고를 그때 그때 해주었고, 항상 그들의 필요에 적합한 기도로 그 모임을 끝맺었다.

이 운동은 처음 유럽에서 시작되어 그 후 미국에서 **연합신도회**로 성장했다. 이 신도회는 '하나의 형태'를 갖추고 경건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들의 결속된 모임으로서 자신들의 구원을 성취하도록 서로 돕기 위한 목적에서, 함께 기도하며 권면의 말씀을 들으며, 사랑으로 서로 돌보는 모임'에 지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의 구원을 실제로 성취하고 있는가를 더 쉽게 알기 위하여 각 신도회를 **속회**라고 부르는 작은 모임으로 주거 지역을 따라 나누었다. 한 속회에 약 12명이 있었고, 그 중 한 사람을 **속장으로 지명하였다**. 속장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1. 자기 속회에서 개개인을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적어도 한 주에 한 번 만나는 일. 곧, (1) 그들의 영적 성장을 살피기 위하여; (2) 때에 따라 충고하고 책망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하여; (3) 설교자와 교회와 빈민들을 위하여 그들이 주고 싶어 하는 것을 받기 위하여.

2. 2. 목사와 신도회의 회계를 한 주에 한 번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일. 곧, (1) 병든 자나 질서를 어기었으나, 책망받지 않을 자를 목사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2) 지난주에 자기 속회에서 받은 것을 회계에게 전하여 주기 위하여.

이 신도회에 가입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전제 조건은, “앞으로 다가올 형벌을 피하며 자신들의 죄에서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마음”이다. 그들 마음속에 진실로 원한다면 그것은 그 열매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신도회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열망한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은 행실로 계속적으로 증명하여 보여야 한다.

첫째,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 것이며, 모든 종류의 악을 피할 것이며, 특히 다음과 같은 일반적으로 자행되는 것들을 피할 것이다.

곧,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

일상적인 일을 하거나 사고파는 일을 하면서 주일을 범하는 일.

주태 - 독한 술을 사고 팔거나 절대 필요한 경우도 아닌데 마시는 일.

노예 소유, 노예 매매.

싸움, 다툼, 소란, 형제 간에 송사, 악을 악으로 갚는 일, 욕을 욕으로 대하는 일,
 사고팔 때에 말을 많이 하는 일.
 세금 내지 않은 물건을 사고파는 일.
 고리대금을 주고받는 일. 곧 불법적인 이자놀이.
 덕스럽지 못하며 유익하지 못한 대화, 특히 행정 관리나 사역자에 대한 악담.
 우리가 당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행하는 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 행하는 다음같은 일:
 곧, 금과 값비싼 의류 착용.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없는 오락을 즐기는 일,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나 그의 사랑을 무시하는 노래를 부르거나 그런 책을 읽는 일.
 간사함과 불필요한 방종.
 땅 위에 보물을 쌓아두는 일.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꾸는 일, 또는 값을 치를 능력이 없으면서 물건을 취하는 일.

이 신도회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열망한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은
 행실로 계속적으로 증명하여 보여야 한다.

둘째로, 선을 행하여야 할 것이며, 자신의 능력에 따라 최대한으로 자비로워야 할
 것이며, 기회가 있을 때에는 모든 가능한 선을 행하여야 할 것이며, 그리고 가능한
 한 모든 사람에게 하여야 할 것이다.

곧, 그들 육신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배고픈 자들을 먹이며, 벗은
 자들을 입히며, 병들고 옥에 갇힌 자들을 찾아보고 도와줌으로써.
 그들 심령에게는, 우리가 교제하는 모든 사람을 가르치고 책망하고 권면함으로써.
 그리고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선을 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이 광신적인 교리를
 발 아래 짓밟음으로써.

선을 행하되 특별히 믿음의 가정, 또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가정에 할 것이고
 그렇게 노력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보다 그들을 더 고용할 것이며, 서로 사줄
 것이며, 사업을 서로 도울 것이며, 세상이 자신들만 사랑할 것이므로 우리는 더욱
 더 선을 행하여야 할 것이다.

복음을 부끄럽게 하지 않게 가능한 한 부지런하고 검소하여야 한다.
 자신들 앞에 놓인 경주에 인내를 가지고 달려가야 할 것이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치욕을
 감수하여야 할 것이며, 세상의 오물이나 찌꺼기가 되기를 감수하여야 할 것이다.
 주님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거짓으로 그들을 거슬러 모든 악한말을 하는 것을
 참아야 할 것이다.

이 신도회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열망한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은
 행실로 계속적으로 증명하여 보여야 한다.

셋째, 다음과 같은 모든 하나님의 집회에 참석하여야 할 것이다.

곧, 하나님께 대한 공적 예배.
 읽거나 강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사역
 주님의 만찬.

가정 및 개인 기도회.
성경 연구
금식 또는 금욕.

이러한 것들이 우리 연합신도회의 “총칙”이다. 우리가 준행하여야 할 하나님께 대한 모든 가르침은 기록된 말씀 속에 있으며,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실행에 충분한, 단 하나밖에 없는 표준이다. 우리가 아는 이 모든 것을 진정으로 일깨워진 마음에 성령께서 새겨주신다. 만일 우리 중에 이것을 준행하지 않는 자가 있거나 상습적으로 어기는 자가 있으면, 그 영혼을 돌보는 이에게 알려 책임을 묻게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그가 잘못 걸어가는 길을 책망할 것이다. 우리는 좋은 때를 기다리며 그를 참아줄 것이다. 그러나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는 우리 가운데 있을 곳이 없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영혼을 구하여 냈다.

제 2 부 - 헌법

¶ 201. 초기부터 기독교 교회는 하나이며,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로 특징지어져 왔다. 이 네 가지 특성은 서로 분리될 수 없게 결합되어 있으며, 그리스도의 주권을 반영하도록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의 기원, 본질, 사명을 증거한다.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을 반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며, 믿는 모든 사람을 세우고, 세상의 구속을 위해 일하기 위해 존재한다. 감리교 전통에 따라 공동 규율 아래 함께 조직하는 글로벌 감리교회는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다음 같이 헌법을 채택했다.

섹션 I. 기본 원리

¶ 202. 제1 조. 명칭- 교단의 명칭은 글로벌 감리교회로 한다. 이 이름은 총회가 결정하는 대로 영어 이외의 언어로 자유롭게 번역될 수 있다.

¶ 203. 제2 조. 교리적 기초—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실천의 주요 규칙으로 이해되며, 교회의 교리는 교회의 역사적 신조, 우리의 종교 강령과 신앙 고백, 그리고 이 교리와 장정 제 1 부에 정의된 핵심 웨슬리 전통에 포함된 것들이다.

¶ 204. 제3 조. 모두를 위한 교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으며 그분의 사랑을 받는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역에 참여하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고백하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진실한 열망을 보여줌으로써 연결된 모든 개체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 205. 제4 조. 보편적 교회- 글로벌 감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이며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예배한다. 우리와 공통적인 이해를 함께 하는 각각의 삼위 일체적 기독교 신앙 표현의 정당성과 가치를 지지하며, 성령의 연합으로 모두가 하나가 되는 그날을 위해 다른 이들과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섹션 II. 조직

¶ 206. 제5 조. 구역회- 구역회는 개체 교회, 연회, 총회를 이어주는 연결 고리가 되어야 한다.

1. 글로벌 감리교회의 사역은 주로 개체 교회를 통해 이루어 지되, 구역회의 감독과 관리를 받는다. 모든 글로벌 감리 교회 조직의 목적은 개체 교회의 사역을 강화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2. 개체 교회는 강제 폐쇄 또는 신탁 조항으로부터 자유로우며, 이 권리는 폐지될 수 없다.

¶ 207. 제 6 조 연회- 연회는 목회자와 평신도를 연결하여 공동의 사역과 책임감을 갖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된다. 연회는 현직 및 은퇴 목회자의 숫자와 동일하게 각 구역회, 지방회, 또는 연회에서 선출된 평신도 회원으로 구성된다. 각 구역에는 파송된 목회자 숫자 만큼 평신도 회원을 둘 수 있다. 연회는 교화, 교제, 영감을 위해 함께 모이는 것 외에도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다:

1. 필요한 위원단 또는 기관을 구성하고 각 기구의 구성을 명시하고 그 구성원을 선출하는 것을 포함하여 교회의 사명을 완수하고 교회의 증거를 강화할 수 있는 사역 프로그램을 해당 지역 내에서 마련한다.
2. 해당 지역에서 교회의 사역과 선교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금을 모금하고 분배하는 프로그램을 결정하고 관리한다.
3. 연회 내 지방회 수를 설정한다.
4. 총회가 결정한 숫자에 따라 총회에 목회자 및 평신도 대의원을 선출한다. 목회자 대의원은 정회원이어야 하며, 신분이 양호해야 한다. 평신도 대표는 글로벌 감리 교회의 고백 교인이어야 한다. 목회자 대표와 평신도 대표 모두 단순 다수결로 선출하며, 목회자 대표는 목회자 투표로, 평신도 대표는 평신도 투표로 선출한다.
5. 총회가 승인하고 비준을 위해 연회에 배포한 모든 헌법 개정안에 대해 투표한다.
6. 연회 안수(목회) 위원회가 추천하고, 안수 받은 목회자 실행회의가 승인한 목회자 안수를 승인하고, 또한 연회 안수(목회) 위원회가 추천하고, 안수 받은 목회자들의 모임인 목회자 실행회의가 승인한 목회자 신분 변경을 승인한다.
7. 기존 교회의 후원을 승인하는 등 새로운 교회 개척을 장려하고 촉진하며, 새로운 교회 설립을 허가한다.
8. 원하는 경우, 목사관 및 기타 사역자 주택에 대한 최소 기준을 설정한다.
9. 한 연회에서 다른 연회로, 또는 다른 연회로부터의 교회 이전을 단순 다수결로 승인한다.
10. 폐쇄된 교회의 기록과 모든 개체 교회의 연례 보고서를 포함한 연회 기록을 유지한다.
11. 교리와 장정의 요구사항과 상충되지 않는 한, 자체 운영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 208. 제 7 조 총회- "함께 협의하는" 감리교회의 전통에 따라, 글로벌 감리교회는 처음에는 창립 총회 소집을 위해 모이고, 그 후 약 2년 후에 총회를 열어야 한다. 이후 총회는 6년에 한 번씩 개최된다. 총회는 200명 이상 700명 이하의 대의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절반은 목회자, 절반은 평신도로 하며, 총회가 결정한 비례에 따라 연회에서 선출한다. 총회는 그 숫자 안에서, 재량에 따라 다른 자치 감리교 기관에서 발언권과 투표권이 있거나 혹은 없는 제한된 대의원의 수를 포함시킬 수 있다. 특정 사안이나 필요를 다루기 위한 총회의 특별 회기는 총회 또는 감독 지도부의 과반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이러한 총회의 특별 회기는 직전 총회의 대의원 또는 그 합법적 후임자로 구성된다. 필요한 경우, 총회는 교단 감독회의와 연대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화상으로 모일 수 있다.

총회는 특히 연대적인 모든 문제에 대해 포괄적인 입법 권한을 가지며, 여기에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 집사목사, 장로목사, 기타 목회자 범주, 감독 및 교회 내 기타 지도자로 사역하는 사람들의 자격, 의무 및 책임을 정의한다.
2. 교회 회원의 자격, 의무 및 책임을 정의하고 확립한다.
3. 연회와 기타 연대 기관들의 권한을 결정하고, 적절한 경우 각 기관들이 각자의 사명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를 채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4. 연회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해.
5. 총회와 총회 사이에 위임된 모든 사안을 다루기 위해 총회의 위임 권한을 가진 연대 협의회를 정의하고 설립하는데, 이로써 총회가 수시로 부과할 수 있는 제한 사항 및 총회 사이에 이루어진 연대 협의회에 대해서는 총회가 비준해야 한다.
6. 개체 교회를 통해 교단의 사명을 강화하고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총회 위원회를 설립하고 감독한다.
7. 감독직 구성원의 선출, 연임 및 중단을 규정하고, 감독이 교단에 책임을 지도록 하며, 감독회를 정의하고 설립한다.
8. 병원, 학교 또는 기타 단체 등 교단과 관련된 기관의 감독 및/또는관리 사역을 제공한다.
9. 교단 사업에 필요한 기금을 모금하고 분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결정하고 관리한다.
10. 교단의 모든 사역과 위원회, 목회자, 평신도, 직분자들이 교단의 사명을 최우선으로 지키고, 예수님의 제자는 개체 교회 수준에서 양육됨을 확인하며, 가능한 한 많은 자원을 개체 교회 수준에서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11. 교회의 음악 자료와 예배 의식을 승인하고 수정하며, 전 세계의 특정 상황에 따라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변화를 제공한다.
12. 통일된 절차와 과정을 의무화하고 교단 내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는 사법 시스템을 제공한다.
13. 교단 조직과 정치에 관한 청원과 징계와 관련되지 않은 사안을 다루는 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접수된 청원을 처리한다. 교단 전체를 효과적으로 대변하기 위해, 결의안은 총회 4분의 3의 지지를 필요로 하며, 다음 총회가 소집될 때까지만 효력을 유지한다.
14. 우리의 사회적 증언 성명서를 채택하거나 수정하려면 출석 및 투표에 참여한 회원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5. 교단의 사명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기타 법률을 제정한다.

¶ 209. 제8 조. 감독직- 글로벌 감리교회의 총감독직은 총회가 채택한 대로 교회에 영적 지도력을 제공하고 현세적 권한을 행사하는 감독에게 위임한다. 감독은 총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되며 교회의 신앙, 질서, 일치, 예전, 교리 및 권징을 수호하기 위해 총회의 승인을 받아 봉사해야 한다.

¶ 210. 제9 조. 사법부- 총회는 연대 상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들의 수, 임기, 자격, 선출 방법, 결원 충원 등을 결정한다. 협의회는 모든 결정은 최종 결정이다.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총회의 모든 행동이나 결정의 합헌성, 의미, 적용 또는 효과를 결정하기 위해, 총회 회의에 참석하고 투표한 회원의 5분의 1 또는 교회의 현직 감독들의 과반수의 소원에 따라 결정한다.

2. 해당 연회에 참석하고 투표한 회원의 5분의 1의 항소에 따라, 연회의 모든 행동이나 결정의 합헌성, 의미, 적용 또는 효과를 결정한다.

3. 감독이 내린 모든 법적 결정을 검토하고 확인, 수정 또는 반복할 수 있다.

4. 총회, 연회, 위원단 또는 총회나 연회가 만들거나 승인한 기관이 취한 조치에 대해 본 *교리와 장정*에 있는 조항의 합헌성, 의미, 적용 또는 효력에 대한 판결을 구하는 모든 항소 청원을 처리한다.

5. 사법부 자체의 조직 및 절차 과정을 마련한다.

6. 총회가 결정한 대로 교단 사역을 하면서 그러한 의무와 권한을 수행한다.

¶ **211. 제 10 조 상소권**-총회는 교단을 위해 목회자와 교인들에게 재판과 항소할 권리를 보장하는 사법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섹션 III. 제한 규칙 및 개정안

¶ **212. 제 11 조 제한 규칙**- 웨슬리의 전통과 감리교의 역사적 표현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제한 규칙으로 채택하되, 출석하여 투표한 총회 대의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과 출석하여 투표한 연회 대의원 총수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제한 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

1. 교단 총회는 교회가 제정하고 구성 기준에 구체화시킨 *종교 강령, 신앙 고백*, 웨슬리의 *신약성경 주석*, 존 웨슬리의 *표준 설교* 또는 기타 우리의 교리적 기초를 취소, 변경 또는 변경하거나 우리의 기존 기준에 반하는 새로운 기준이나 교리 규칙을 제정할 수 없다. 이 제한 규칙은 교단이 승인한 *종교 강령과 신앙 고백*의 통합 개발 과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종교 강령과 신앙 고백*의 후속 문서는 총회의 4분의 3의 찬성으로 채택되어야 한다.

2. 총회는 어떤 위원회에 의한 재판에 대한 목회자의 특권과 상소권을 폐지하지 않으며, 교회 혹은 위원회에 의한 재판에 대한 교인의 특권과 상소권도 폐지하지 않는다.

¶ **213. 제 12 조 개정**-헌법 개정은 총회 또는 연회에서 발의할 수 있다. 제한 규칙을 개정하려면 출석하여 투표한 총회 대의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기권 제외)과, 출석하여 투표한 연회 대의원 총수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 투표(기권 제외)가 필요하다.

1. 제한 규칙을 제외한 헌법 개정은 2026년 총회 폐회 전까지 총회의 단순 다수결로 채택된다.

2. 2026년 총회가 폐회된 후에는, 헌법을 개정하려면 출석하여 투표한 총회 대의원 3분의 2의 다수결(기권 제외)이 요구되며, 출석하여 투표한 연회 대의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투표(기권 제외)가 뒤따라야 한다. 의결된 개정안이 비준된 후에는, 승인 공표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필요하다면, 총회는 총회와 연회의 필수 투표에 의해 개정안이 비준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개정안의 시행 입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제 3 부: 사회적 증언

¶ 301. 우리의 사회적 유산 1. 예수님의 모범과 가르침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으로 온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믿는다. 하나님께서 처음 요한과 찰스 웨슬리의 마음을 움직여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방문하고, 노예제도에 반대하고, 불우한 사람들을 돌보게 하신 이래 감리교인들은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사람들을 만나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고 믿어왔다. 우리는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며(약 2:17),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신 것처럼 지극히 작은 형제자매를 돌보는 데 필요한 일을 하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확신한다(마 25:45).

2. 그러한 정신에 따라 감리교회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열악한 노동 조건에 대응하는 사회 복음에 따라 1908 년에 세계 최초로 공식적인 사회 신조를 채택했다. 다음과 같은 사항 즉 “삶의 모든 영역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평등권과 완전한 정의, 산업 불화에 대한 화해와 중재의 원칙, 아동 노동의 폐지, ‘노동착취 시스템’의 억제, 노동 시간을 가장 낮은 실용적인 지점으로 줄이는 것, 7 일 중 하루 고용에서 해방되고 모든 산업에서 생활임금을 받는 것”등과 같은 사역을 위한 부름은, 그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 성명서는 지금도 여전히 매우 적절하다. 또한 그 예언적 증거는 감리교와 복음주의 연합형제교회의 다른 자매교단에 의해 받아들여 졌으며 오늘날에도 글로벌감리교회 안에서 계속되고 있다 세계적인 교회로서, 우리의 사회적 증언은 폭력과 고삐풀린 탐욕에 시달리고 창조주에 대한 반역으로 남아있는 세상에서 충실한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문화를 초월한 합의된 비전을 나타낸다. 그것은 우리가 신앙을 실천할 때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해를 끼치지 않는” 방법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숙고하라는 부름이다.

302. 세상에 대한 우리의 증언 1. 우리는 삶의 지위나 환경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으며 존엄성, 정의, 존중으로 대우받아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인종차별, 성차별 및 기타 사람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표현을 죄로 비난한다 (창세기 1-2 장, 신명기 16:19-20, 누가복음 11:42, 19:9, 골로새서 3:11).

2. 우리는 생명이 시작과 끝이 하나님에 의해 정해진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이며, 태아, 장애나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 노인을 포함하여 자신을 보호할 힘이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신자들의 특별한 의무임을 믿는다. (창세기 2:7, 레위기 19:32, 예레미야 1:5, 누가복음 1:41-44).

3. 모든 생명의 신성함은 산모와 아이의 안녕이 위태로울 때 생명과 생명의 비극적인 갈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 관행에 저항하도록 강권하고 있다 우리는 낙태를 피임이나 성별 선택의 수단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며, 생명의 주님의 제자로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적절한 보살핌, 조언 또는 자원 없이 의도하지 않은 임신에 직면한 여성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숙고할 것을 요청한다(출 22:22-23, 시 139:13-16, 야고보서 1:27).

4. 우리는 모든 사람이 공정한 보상을 받고 다른 사람에 의한 힘든 노동이나 착취가 없는 안전한 조건에서 일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근로자의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단체 교섭에 참여할 권리를 존중한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직업적

소명을 자유롭게 따르도록 허락되기를 기도한다. 특히 진리와 지식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이들과 아름다움과 기쁨으로 다른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과학과 기술이 인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창조력에 대한 상호 증인으로서 신앙과 과학 간의 대화를 장려한다 (신명기 5:12-14, 눅 10:7, 고린도전서 10:31, 디모데전서 5:18).

5.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주님의 관심을 나누고, 개인별로 국가별로 엄청난 부와 자원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빈곤을 야기하는 조건과 정책을 완화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믿는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나누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질과 기회를 개선하도록 부름받았다 (레위기 19:9-10, 마태복음 25:37-40, 누가복음 6:20-25, 야고보서 2:1-5).

6. 우리는 모두가 공동의 집인 지구를 돌보고, 그 자원을 관리하고, 풍요로움을 나누며, 모두에게 충분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고 지속 가능한 소비를 실천하도록 부름받았다고 믿는다 (창세기 2:15, 레위기 26:34-35, 시편 24:1).

7. 우리는 인간의 성이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사랑과 합법적이고 영적인 결혼 속에서 행해질 때만이 하나님의 선물로 확정된다고 믿는다. ((출 20:14, 마 19:3-9, 에베소서 5:22-33).

8. 우리는 외설물, 일부다처제, 난잡한 성행위 등 각 개인의 신성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을 착취, 학대, 거부, 비하하거나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의도적인 설계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성적 행동에 슬픔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성정체성과 성별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확고히 하는 한편, 모든 사람이 예수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환영하며, 성생활에서 깨어짐을 경험했을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피난처, 환대, 치유의 안전한 장소가 되기 위해 사명을 다한다 (창세기 1:27, 창세기 2:24, 고전 6:9-20).

9. 우리는 출생이든 입양이든,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성한 선물이라고 믿으며, 특히 강제 아동 노동, 비자발적 징집, 인신매매 및 기타 세상에서 행해지는 관행과 같은 학대로부터 우리 가운데 젊은이들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받아들인다(신명기 4:9-10, 시편 127:3-5, 디모데전서 5:4,8,16).

10.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개인적인 삶에서 절제와 거룩함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관대함과 친절을, 삶의 모든 문제에서 은혜를 실천하도록 부름받았다고 믿는다 (로마서 12:9-21, 갈라디아서 5:22-23).

11. 우리는 사회에서 정의와 법의 지배, 개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고 합법적으로 새로운 곳으로 이주할 권리, 국가 사이 와 개인 사이의 평화 추구를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에 넘쳐나는 괴로움을 줄이는 일을 위해 우리자신을 내놓는다 (창세기 12:1-3, 이사야 11:1-9, 고린도후서 13:11, 에베소서 2:19-10).

12. 우리는 우리가 대우받기를 원하는대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황금률의 실천이 우리의 사회적 관계와 비즈니스 관계를 효과적으로 인도 할 수 있다고 믿는다(마 7:12, 롬 12:1-2)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위한 마음을 계발하려고 노력한다. (마태복음 7:12, 로마서 12:1-2).

13. 우리는 각 사람이 박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종교적 신앙을 행사할 권리가 있어야 하며, 정부는 종교의 자유와 더 큰 사회 내에서 신앙 공동체의 중요한 역할을

존중해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더 나아가 성별, 경제적 지위, 민족 또는 부족 정체성, 연령 또는 정치적 견해로 인해 표적이 될 수 있는 차별이나 박해를 규탄한다 (*이사야 1:17, 마태복음 5:44, 로마서 8:35*).

14. 우리는 이 세상의 왕국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될 의의 최종 승리를 믿으며, 그리스도의 빛과 세상의 소금으로서 그 목적을 위해 일하라는 우리의 소명을 받아들인다 (*마태복음 5:13-16, 요한계시록 11:15-17, 요한계시록 21-22*).

제 4 부 -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섹션 I. 기본 원리

¶ 401. **교회의 사명.** 글로벌감리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고 성경적 거룩함을 전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 존재한다.

비전 선언문: 글로벌 감리 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담대하게 증거하면서 성경적 거룩함 속에서 자라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온 땅에 번성하는 꿈을 가진다.

교회는 하나이며, 거룩하고, 가톨릭적이며(보편적), 사도적이다.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 사명의 확장이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자신에게로 이끄시는 것처럼, 우리도 전도, 예배, 설교, 가르침, 성례전, 자비사역, 경건 사역, 교제를 통해 그 일에 동참한다. 어떤 연령이나 상태에 있든간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몸인 교회를 통해 사람들에게 베푸시기로 약속하신 은혜를 필요로 한다.

개인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궁극적으로 성령의 역사이지만, 우리의 임무는 마태복음 28 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나누기 위해, 더욱이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다. 초기 감리교인들의 모범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땅에 성경적 거룩함을 전파”하기 위해 우리를 일으켰으며, 요한 웨슬리가 믿었던 신앙의 “위대한 예치금”을 “감리교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맡겨주셨다고 믿으며 온전한 성화를 위해 계속 노력한다.

¶ 402. **글로벌 교회.** 요한 웨슬리는 1739년 6월 11일 일기에서 “나는 온 세상을 나의 교구로 여기며, 그 어느 곳에 있든, 듣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것이 맞고 옳으며, 나의 당연한 의무라고 판단한다”고 선언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 이후로 감리교인들은 우리 교회 사명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것으로 인식해 왔다. 영국에서 아메리카 대륙, 카리브해,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우리보다 먼저 온 감리교인들은 예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오늘 우리 사명은 이 풍성한 유산을 이어받아 새로운 장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전 세계가 글로벌감리교회의 교구임을 알고 있다. 우리는 여러 대륙에서 그리스도의 뜻이 전진해 나가도록 힘쓰며, 우리 신앙 공동체는 계속 그렇게 행할 것이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공동체 각 부분의 은사와 헌신을 인정하고, 동등한 목소리와 지도력을 가진 복음의 동반자로서 함께 일하는 글로벌 교회이다. 서로에게서 배우고 문화 전반에 걸쳐 모범 사례를 공유하면서 우리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사도 바울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며 “서로에 대한 동등한 관심”(고전 12)을 공유한다. 글로벌 교회에 대한 우리의 비전은 상호 사랑, 관심, 나눔, 책임으로 특징지어 지는 것이다.

403.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우리의 성약. 우리는 하나님과 서로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표현하는 신실한 성약 안에서 함께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믿는다. 요한 웨슬리와 함께, 우리가 확언하는 것은, 성경은 “나 홀로 종교”는 알지 못하나, 우리가 다른 동반자들과 함께 제자로서 성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교회로서 우리는 그러한 나눔과 책임을 장려하기 위한 연대적 조직에 헌신하고 있으며, 모든 사람이 복음과 세상에 대한 우리의 전도 활동에 동역자가 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연대는 우리의 공통된 교리적 이해와 세상과 복음을 나누는 우리의 핵심 사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언어, 문화, 관습, 사회적, 경제적 차이의 모든 경계를 넘어 전 세계에 걸쳐 펼쳐지는 주님의 식탁에서 서로의 단합을 찬양한다.

404. 평신도 사역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의 자신의 사역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맡기셨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례를 통해 개인으로서나 교회의 일부로서 성령께서 준비하신 은사와 은혜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사역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모든 평신도는 지상명령을 수행할 책임이 있지만(마 28:18-20), 마찬가지로 각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 성경에 묘사된 다양한 영적 은사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그리스도를 섬길 때에도 우리의 봉사 활동의 다양성은 한계가 없다. 개신교 종교 개혁의 다른 상속자들과 함께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라는 개념을 수용하고, 평신도와 목회자 모두가 섬김의 동반자 관계로 함께 일할 것을 요청한다. 에베소서 4 장 12-13 절에 제시된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목회자들에게 목회 사역을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러한 봉사의 일로 무장시켜 "우리 모두가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 안에서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가도록" 하라는 임무를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평신도든 목회자든 각 개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때만이 세상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풍성한 생명을 얻으라는 그분의 초청에 응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각 구성원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사회에서 빛과 누룩이 되고, 갈등의 문화 속에서 화해자가 되고, 세상의 비탄과 고통에 함께 하고, 소망의 그리스도를 발산하고 모범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든지, 아니면 그분을 대적하는 세력에게 세상을 내버려야 한다. 다양한 형태의 사역을 넘어 궁극적인 관심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구원의 관계로 인도되고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새로워지는 것이다(골 3:10).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섬기고 치유되고 자유롭게 하는 행동과 말로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사역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믿는 모든 사람의 완전한 참여는 매우 중요하며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려면 회피할 수 없다.

¶ **405. 변혁적 제자도.** 교회의 사명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언약에 비추어 볼 때, 글로벌감리교회는 성경과 웨슬리 유산에 근거한 의도적인 과정을 통해 예수 제자를 삼으라는 계명을 실천한다. 글로벌 감리교회는 제자를 그리스도의 성품을 반영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거룩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명을 확장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제자의 성품과 실행은 성경을 통해 알게 되고, 신앙 공동체에 의해 양육되며, 성령의 능력으로 강화된다. 제자의 사명은 가르침, 봉사, 증식, 자비, 정의의 일을 통해

예수의 사명과 사역을 계속하여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명을 반영하고 그리스도 왕국의 경계를 더 널리 확장하는 더 많은 순종적인 제자를 만드는 것이다. 글로벌감리교회에서 변혁적인 제자 사역의 목표는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관행, 성품 및 사명을 반영하는 거룩한 삶을 살면서 초대, 도전, 지원 및 책임을 지는 소그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고, 개발하고, 양육하는 것이다.

¶ 406. **포용성의 부름.**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만드셨고 그것이 보시기에 좋다 하셨다는 것을 안다. 교회와 사회의 일치에 특별한 은사와 하나님의 은총의 증거를 가져오는 다양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께서 보여주신 모범에 충실하도록 부름받았다. 포용성이란 모든 사람이 교회의 영적 삶과 지역 사회와 세상에 대한 봉사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방성, 수용성, 지원을 의미한다. 따라서 포용성은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장애 또는 성별(이 *교리와 장정* 전체에서 출생 또는 출생 이전에 식별된 사람의 불변의 생물학적 특성에 의해 정의됨)에 근거한 모든 차별을 부정한다. 모든 지역 교회의 예배는 글로벌감리교회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교회 활동은 장애인 접근할 수 있는 시설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마찬가지로, 포용성이란 *교리와 장정*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모든 사람이 모든 수준과 장소에서 교회의 회원과 지도력에 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 407. **교회의 법적 정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역의 영적 차원을 확인하면서, 이 사역이 세속 세계에도 존재하므로, 정부 당국이 글로벌 감리교회의 이러한 사역 성취 추구라는 본질에 근거하여 법적 명확성을 추구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따라서, 이 *교리와 장정*에서 사용한 명칭들 "글로벌감리교회", "총회", "전체 교회", "교단"의 의미는 감리교의 전통적인 자기 이해와 일치해야 한다. 이 용어는 글로벌 감리교라는 종교 체계를 총체적으로 구성하는 여러 지역 교회, 다양한 연회와 각 연회의 협의회, 이사회 및 기관, 기타 교회 단위의 전반적인 교단 및 연결 관계와 정체성을 나타낸다. 본 *교리와 장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교단 전체로서의 "글로벌 감리교회"는 법인이 아니며, 법적 능력과 속성을 갖고 있지 않다.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지 않으며 보유할 수도 없고, 임원, 대리인, 직원, 사무실 또는 장소를 보유할 수도 없다. 연회, 협의회, 이사회, 기관, 개체교회, 그리고 그 이름을 지닌 다른 단위들은 대부분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을 당할 수 있고 법적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법인체이다.

섹션 II. 교회와 목회 책임

¶ 408. **개체 교회의 역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고, 그리고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 개체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구조로 나아가는 전략적 기반이며, 제자 삼는 일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장을 제공한다. 개체 교회는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는 참된 신자들의 공동체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성한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 의해 전파되고 성례전이 그리스도 자신의 약속에 따라 합당하게 집행되는 구속적 교제이다. 교회는 성령의 인도 아래 예배의 유지, 신자의 계발, 세상의 구속을 위해 존재한다. 개체 교회의 기능은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비추어 일상 생활을 살도록 돕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체교회는 교회가 위치한 지역 사회의 사람들을 섬기고, 모든 사람에게 적절한 훈련과 양육을 제공하고, 다른 개체 교회들과 사역에 협력하고,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호하고 생태적으로 책임있는 공동체로 살며, 진정한 교회에 대한 최소한의 기대로 교회의 전 세계 선교에 참여해야 한다. 각 개체 교회는 교인들과 주변 지역에 대한 명확한 전도, 양육 및 증인 책임과 지역 및 글로벌 공동체에 대한 선교적 전도 책임을 가져야 한다. 개체 교회는 회원이 어디에 살든, 그 교회를 자신의 교회로 선택한 사람들을 섬길 책임이 있다. 교단 내에 있고 그 규율에 종속되는 그러한 신자들의 신도회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로 구성된 보편적 교회의 고유한 부분이다.

¶ 409. 목회적 책임의 정의. 1. 목회 책임은 글로벌감리교회의 *교리와 장정*에 따라 조직되고 따르는 하나 이상의 교회로 구성되며, 구역회가 있고 목사가 봉사하도록 파송된다.

2. 두 개 이상의 교회에 대한 목회 책임은 순회 또는 협력 교구로 지정될 수 있다.

3. 안수 또는 인가를 받은 목사가 목회적 책임을 맡을 수 없는 경우, 감독은 감리사회(cabinet)의 추천을 받아 자격을 갖추고 훈련받은 평신도를 배치하여 해당 책임의 사역을 맡길 수 있다. 평신도는 책임을 맡는 지방 감리사(PE)나 그 직무를 감독하도록 파송된 다른 안수 받은 목사에게 책임을 져야 하며, 책임 맡은 이들은 성찬 사역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임무가 1년 이상 계속되는 경우, 평신도는 연회 안수(목회) 위원회의 보살핌을 받아 인증된 사역 후보자가 되는 과정을 시작할 수 있다. 또한 배정된 평신도는 배정된 연회의 정책과 절차에 대한 책임을 진다.

섹션 III. 교인

¶ 410. 자격. 우리가 사도 신경과 니케아 신경에서 고백하듯이, 글로벌감리교회는 거룩한 공회(보편적 교회)의 일부이다. 교회에서 그리스도 예수는 주님과 구세주로 선포하며 고백한다.. 모든 사람은 예배에 참석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성례전을 받을 수 있으며, 교인으로 서약을 하면 연대한 모든 개체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장애로 인해 서원을 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 그들의 법적 보호자, 즉 신앙 공동체인 하나님과 교회와 완전한 언약 관계에 있는 회원이 그들을 대신하여 적절한 서원을 맡을 수 있다.

¶ 411. 교인 자격의 정의. 개체 글로벌 감리교회의 회원은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과 신앙을 고백한 모든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

1. 개체교회의 세례 받은 교인은 지역 회중이나 다른 곳에서 기독교 세례를 받았거나 다른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후 지역 교회로 교인 자격이 이전된 모든 세례 받은 사람들을 포함한다.

2. 개체 글로벌감리교회의 고백 교인 의식에서 세례 언약의 적절한 예식을 통해 또는 다른 교회에서 이전하여 신앙 고백으로 회원이 된 모든 세례 받은 사람들을 포함한다.

3. 통계 목적을 위해, 교회 회원은 고백 교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의 수와 동일해야 한다.

4. 모든 개체 글로벌 감리교회의 세례교인 또는 고백교인은 글로벌 감리교회의 회원이며 보편적 교회 회원이다.

¶ 412. **성례의 의미.** 성례는 내적이고 영적인 은총의 외적이고 가시적인 표시이다. 성례전은 모든 사람이 회개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오면 그 안에서 새 삶을 얻게 된다는 복음의 약속을 물리적 형태로 전달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을 수단으로,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은혜를 받고 있다는 확실한 확신으로 표적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두 가지 성례는 세례와 성만찬(주의 만찬 또는 성찬식이라고도 함)이다. 우리는 회개와 감사와 함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례를 받는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우리가 성례전을 통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게 하며, 성례전의 유익이 우리 삶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이 필요하다.

¶ 413. **성례전의 권위.** 영국 종교개혁 당시 교회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성례가 정식으로 집행되는 공동체로 정의되었다(감리교 총칙 제 13 장). 기독교 교회의 역사적 관행에 따라, 장로목사는 교회의 성례전 생활을 감독하도록 안수받으며, 따라서 성례전과 성찬식을 주재할 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감독은 성례전을 거행할 목적으로 개체교회의 목사직에 파송된 집사목사나 다른 전문 목회 환경으로 성례 권한을 확장할 수 있다. 집사목사의 이러한 성례전적 권한은 파송된 사역 환경에 국한되며 지방 감리사(PE)의 감독과 권위 아래 행사된다.

¶ 414. **세례의 의미** 거룩한 세례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연합되며; 부활의 능력을 통해 그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일어나며; 그리스도의 몸에 통합되며; 성령의 역사를 통해 완전에 이르도록 능력을 받는다 거룩한 세례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으로 단번에 이루신 일과 그분의 제자로서 따르겠다는 우리의 서약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푸라는 명령을 받았으며(마 28:19), 초대 교회는 이 관행을 따랐다(행 2:38). 유아를 포함한 모든 가정이 세례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행 10:24, 47-48, 16:15, 16:33, 18:8, 고전 1:16). 입문 의식에 유아를 포함하는 것은 구약의 언약 회원 의식에서 남자 유아가 여덟째 날에 할례를 받은 전례가 있다(창 17:9-14). 할례와 세례의 연관성은 골로새서 2 장 11~12 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다. 감리교인들은 역사적으로 유아 세례를 시행해 왔다(종교조항, XVII). 복음주의 연합 형제 교회의 **신앙 고백**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우리는 어린이가 그리스도의 속죄 아래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기독교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고 믿는다. 믿는 부모의 자녀들은 세례를 통해 교회의 특별한 책임이 된다. 그들은 양육되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일도록 인도되어야 하며, 신앙고백을 통해 세례를 확인해야 한다"(제 6 조). 부모는 담임목사와 상의하여 자녀에게 세례를 줄 시기를 결정한다.

¶ 415. **세례의 방식과 관행** 거룩한 세례는 뿌리거나, 붓거나, 담그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세례의 외형적이고 가시적인 표징은 물이다. 후보자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마 28:19). 내적이고 영적인 은혜는 죄에 대한 죽음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한 믿음으로 의롭게 거듭나는 것이다. 거룩한 세례는 모인 회중 가운데서 집행된다. 참석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를 대신하여 세례 받은 사람들을 보편적인 교회로 받아들이고, 은총 안에서 함께 성장하며, 거룩한 세례에서 받은 고백과 유익을 기억할 것을 서약한다. 거룩한 세례 후보자와 스스로 대답할 수 없는 후보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과 거룩한 세례의 의미에 대해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에 입문하는 거룩한 세례는 한 사람의 일생에 단 한번 행한다. 성만찬은 교회 내에서 세례 서약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세례 기념식과 세례 서약의 재확인을 통해 사람들은 세례 때 선언된 서약을 새롭게 할 수 있다.

¶ 416. 세례 서원 웨슬리 전통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관행에 충실하게, 글로벌감리교회 내에서 거룩한 세례를 받고자 하는사람들은 먼저 다음 질문을 받아야 한다.

*당신은 마귀와 그의 모든 행사를 포기하고 이 세상의 악한 세력을 거부합니까?
거부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이키고, 그분을 당신의 주님과
구세주로 고백합니까?
예.*

*당신은 구약과 신약의 성경에 포함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고백합니까?
예.*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악과 불의와 억압에 저항할 책임을 받아들입니까??
예.*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계명을 순종함으로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평생토록 그
안에서 행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스로 대답할 수 없는 세례 후보자에게도 이 질문이 주어진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에서 이 자녀(사람)들을 양육하여, 여러분의 가르침과
모범을 통해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겠습니까?
내(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목사는 회중에게 세례 후보자를 믿음으로 지지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도록 요청한다.

*이 서약을 증인되신 여러분은 [이 사람들] 을 믿음 안에서 격려해 주시고 [이 사람들]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삶을 살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목사는 세례 후보자(또는 스스로 대답할 수 없는 후보자)에게 친구약 성경에 포함된대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요청받는다.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저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저는 그의 외아들 우리주 예수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지옥으로 내려 가셨습니다. 주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당신은 성령을 믿습니까?

저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 417. **입교 예식의 의미.** 입교 예식을 통해 우리는 세례 때 선언한 언약을 개인적으로 갱신하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며, 그리스도와 그분의 거룩한 교회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확인하고, 안수를 통해 성령의 부으심을 받아 평생 거룩을 향한 여정을 가능하게 한다. 사도들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안수했다. 목회자의 의무는 **교리와 장정**을 포함해 승인된 교리문답에 따라, 역사적 기독교 신앙의 기본 교리, 웨슬리 부흥운동의 역사와 신학, 교인자격의 실제적 의미를 가르쳐 입교를 위한 후보자들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 418. **고백 교인.** 글로벌 감리교회의 고백 교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개체 교회의 목회자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적절한 상담을 받은 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제자로서의 서약에 동의함으로써 가입할 수 있다. 글로벌 감리교회의 한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교적을 옮기고자 하는 사람은 이전을 받는 목회자에게 이를 알리고, 이전에 적을 두었던 교회에 이적 요청서를 보내면 된다. 그리스도의 주권을 입증하는 다른 교단에서 전입을 통해 교인으로 허입될 수도 있다. 담임 목사는 신청인이 교인 서약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 담임목사에 의해 유예된 사람은 목회 협력 위원회 또는 이에 상응하는 위원회에 해당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사랑으로 서로를 지키라"는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 글로벌감리교회의는 고백 교인들이 교인 서약 이행의 핵심 부분으로 속회, 소그룹 모임, 제자훈련, 혹은 여타 책임 그룹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도록 반드시 권장되어야 한다.

¶ 419. **교인 서약.** 글로벌 감리교회의 고백교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세례 서원(¶ 416)을 하는 것 외에도 교회에 입회하기 전에 다음 질문을 받아야 한다:

당신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은혜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분을 당신의 주님으로 섬기겠다고 약속합니까?
 당신은 성경에 담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고백합니까?
 당신은 당신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계명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의 충실한 교인으로서 평생 그 안에서 행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당신은 글로벌 감리교회를 통해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전 세계 형제자매들과 함께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까?
 당신은 [교회 이름] 글로벌감리교회(또는 [교회 이름] 글로벌감리교회 개체교회)의
 충실한 교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대표자로서 기도, 참여, 은사, 봉사, 증거를
 통해 그 사역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 420. **충실한 제자도의 성장.** 개체 교회에 충실한 교인은 개인의 성장과 하나님의 뜻과 은혜에 대한 더 깊은 헌신을 발전시키는 데 필수적이다. 교인들은 사적 및 공적 기도, 예배, 성례전, 연구, 그리스도인 행동, 체계적인 헌금, 거룩한 훈련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 역사와 자연 질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자신에 대한 이해가 성장한다. 신실한 제자도는 그리스도의 몸의 동료 지체들과 함께 교회의 공동체 생활에 참여해야 할 의무를 포함한다. 교인은 신성한 언약에 따라 짐을 짊어지고, 위험을 분담하며, 동료 교인의 기쁨을 축하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으로 진실을 말하도록 부름 받았으며, 항상 용서와 화해의 정신으로 갈등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다.

¶ 421. **성찬의 의미와 방식.** 세례와 마찬가지로 성만찬 성례전은 회개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이 그분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다는 복음의 약속을 제공하는 물리적 요소를 통해 나타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이다. 주의 만찬 또는 성찬식("감사"를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으로도 알려진 성찬식에서, 우리는 성례전 전체에 영적으로 현존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교제(코이노니아)에 초대받는다. 우리는 보편적인 교회와 성도들의 친교에 참여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만찬인 어린양의 혼인 잔치를 미리 맛보게 된다. 이 성례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제공될 수 있다.

성찬식은 일반적으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 행위를 기억하고 이에 응답하기 위해 물리적으로 모인 회중 한가운데서 거행한다. 개체 교회는 회중이 정기적으로 성찬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요한 웨슬리는 "가능한 한 자주 주의 만찬을 받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주장했다(설교, "끊임없는 성찬의 의무").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명령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 큰 유익, 즉 "영혼의 양식"을 받기 때문이다. 웨슬리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만찬을 주신 것은 "이를 통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복을 얻게 하시고, 땅에서는 거룩함을, 하늘에서는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다. 따라서 신자들은 가능한 한 자주 성찬식에 참여해야 한다.

성만찬은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가지시고 감사하며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신 행동을 기억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찬식 예문은 이러한 행동을 포함하여 이러한 행동을 반영해야 한다:

- 빵과 컵을 가져가거나 준비;
 - 죄에 대한 속죄 선언을 포함하여 회개와 죄 고백의 시간;
 - 받게 될 선물에 대한 감사;
 -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제정의 말씀;
 - 빵과 포도주의 선물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셔서, 우리도 세상을 위해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을 초대하는 간구의 기도;
- 떡을 떼는 것; 그리고
-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빵과 포도주를 분급하는 것.

어떤 이유가 있어, 빵과 포도주를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들도 축복을 받기 위해 앞으로 나오도록 권고한다. 성찬 요소는 몸이 불편하여 참석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가져갈 수 있다. 우리는 성찬식에 무알코올 포도주나 주스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포도주를 사용하는 경우 포도주 외에 무알코올 주스도 준비해서 제공해야 한다.

섹션 IV. 교인 관리

¶ 422. 교인의 참여와 책임 1. 각 교인은 세례와 교인자격 서약을 이행하고, 각 교회가 제공하는 영성훈련, 예배, 청지기직 및 봉사 기회에 충실하게 참여하도록 부름받았다. 복음의 동반자 관계(*코이노니아*)에 참여하는 교인들에 대한 분명한 기대치를 확립하고 전달하는 것은 각 교회의 책임이며(빌립보서 1:5),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각 교인 또는 동역자의 책임이다.

2. 목회자는 교인들이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써 "온전함에 이르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춘 제자훈련 과정을 시행함으로써 교인들을 돌볼 책임이 있다. 목회자는 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필요할 때에 사람들을 만나 예수님을 가르침으로써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에베소서 4:11~13).

3. 교회의 모든 교인은 서로에 대한 사랑의 책임을 지도록 부름받았다. 그러나 어떤 교인이 교인 서약을 소홀히 하면, 교회는 그 교인이 활동적인 신앙으로 돌아오고, 사랑으로 교회의 교제를 회복하도록 격려하는 모든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마 18:15-17). 각 개체 교회 협의회는 태만한 교인들이 교회 생활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로 충만한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태만한 교인은 교회 임원회의 2/3 투표로 비활동 교인 명단에 올릴 수 있다.

4. 비활동 회원 명부에 등재된 회원은 활동 회원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동안 그 상태가 유지된다. 비활동 명단에 있는 교인은 해당 기간 동안 교회

위원회에서 활동하거나 교회 문제에 대한 투표가 정지된다. 비활동 회원이 회복 절차를 완료하지 않거나, 더 활동적인 상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구역회는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아 2/3 투표로 해당 회원을 퇴출시킬 수 있다.

5. 구역회의의 승인에 따라, 교회는 개인의 교인 자격을 매년 갱신하도록 의도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그러한 교회에서 헌신을 갱신하지 않는 교인은 교회의 비활동 교인 명부에 등재될 수 있으며(¶ 422.3-4), 그 후 구역회는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아 2/3의 투표로 교인 명부에서 이름을 삭제할 수 있다.

¶ 423. 다른 교단에서 이적. 다른 기독교 교단에서 세례를 받고 글로벌 감리교회와 연합하기를 원하는 양호한 상태의 교인은 세례 또는 고백 교인으로 받아들여 진다. 그러한 사람은 그 사람의 이전 교회에서 이적 통지를 받거나 기독교 세례를 받았다는 증명서를 통해 세례 받은 교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기독교 신앙을 선언하는 서약을 할 때 고백교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411, 418, 419 참조). 유효한 기독교 세례는 권한 있는 사람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집행한다. 담임목사는 해당 교인의 접수 날짜를 이전 교회에 보고한다. 그러한 모든 사람에게 교회의 신앙, 일, 정체에 대한 교육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이적 서류나 추천서를 발급하지 않는 교회에서 받은 사람은 "다른 교단에서 받은 사람"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 424. 협동 교인 및 준회원 교인. 글로벌감리교회의 고백교인, 자매감리교회, 연합 교회, 또는 글로벌감리교회와 협정을 맺은 감리교회의 교인중에서 소속 교회에서 멀리 떨어진 도시 또는 지역 사회에 장기간 거주하는 사람은 요청에 따라 그 사람의 임시 거주지 근처에 위치한 글로벌감리교회의 **협동 교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소속 교회 목사는 협동교인에 대해 통보 받아야 한다. 그러한 교인 자격은 그 사람에게 그 교회의 친교, 목회적 돌봄과 감독, 그리고 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개체교회는 협동교인이 직분을 포함하여 개체교회 리더십을(지도자로) 섬길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협동교인은 연회의 평신도 회원으로 봉사할 수 없다. 협동교인은 소속 교회의 고백교인으로만 계수되고 보고 되어야 한다. 다른 교단의 교인도 같은 조건에서 **준회원 교인**이 될 수 있다. 이 관계는 협동교인 또는 준회원 교인이 있는 교회 근처에서 이사할 때 협동교인 또는 준회원 교인으로 있는 교회의 재량에 따라 종료될 수 있다.

¶ 425. 구성교인 (예비교인) 명부. 구성교인 명부는 각 교회에서 유지되어야 하며, 네 가지 범주의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1) 세례받지 않은 유아("요람 명부"); (2) 18세 이상의 개인으로서 고백하는 교인의 배우자와 성인 자녀를 포함하여 고백하는 교인이 되고자 하는 의사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지역 교회가 목회적 책임을 지고 있는 자; (3) 지난 12개월 동안 예배에 두 번 이상 참석했거나 교회 사역에 두 번 이상 참여한 사람("잠재적 회원"); (4) 거리나 다른 신앙적 헌신으로 인해 교회에 가입할 가능성이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중의 목회적 보살핌을 받고 더 넓은 공동체의 일부로 인정되는 사람("교회의 친구"). 구성교인 명부는 매년 검토 및 감사를 받아야 한다.

¶ 426. 개체 교회가 아닌 환경. 글로벌감리교회에서 정식으로 파송된 목회자가 어떤조직, 기관 또는 군대의 목사로 봉사하는 동안, 연장사역 목사로, 또는 캠퍼스 목사로, 또는

지역교회를 이용할 수 없는 곳에 있는 동안, ¶ 422의 조건에 따라 글로벌감리교회 회원으로 사람을 받을 수 있다. 가능한 경우, 세례예식이나 신앙고백 서약을 집행하기 전에, 그러한 파송된 목사는 관련자의 선택에 대해 개체교회의 목사(근처에 있는 경우)와 상의해야 한다. 목사의 합의에 따라, 그러한 성찬이 집행되었거나 그러한 서약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서류가 발행되어야 한다. 세례를 받거나 고백 교인은 개체 교회에 가입하기 위해 이 서류를 사용할 수 있다.

¶ 427. **교회 환경 밖.** 정당한 이유로 회중 앞에 출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교인이 되기 원할 경우 담임목사의 재량에 따라 우리 교회의 의식에 따라 교회 밖에서도 교인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러한 경우 평신도 교인들이 교회를 대표하기 위해 참석해야 한다. 그러한 사람의 이름은 교회 명단에 기재하고, 교회에 그들의 영접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명단은 교회 명부에 기재되어야 하며, 그들을 받아들인다고 회중에게 발표되어야 한다.

¶ 428. **중단된 개체 교회에서 전입.** 개체교회가 중단되었을 경우, 지방감리사(PE)는 교인을 다른 글로벌감리교회 또는 교인이 선택할 수 있는 다른 교회로 전입해야 한다.

섹션 V. 교인 기록 및 보고서

¶ 429. **교인 기록.** 1. **활동교인(정회원) 명부.** 각 개체교회는 세례 또는 고백하는 각 교인에 대한 영구 교인 기록을 정확하게 유지해야 한다: a) 그 사람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출생지, 세례 날짜, 주례 목사 및 후원자; b) 신앙 확인 또는 고백 날짜, 목사 및 후원자; c) 다른 교회에서 전입하는 경우, 접수 날짜, 교회 파송 및 목사 영접 날짜; d) 다른 교회로 전출하는 경우, 전출일, 접수 교회 및 접수 교회의 주소; e) 제명 또는 철회 날짜 및 이유; f) 고백 교인의 회복 날짜 및 주례 목사; g) 사망일, 장례식/추모 날짜 및 장소, 매장 장소 및 주례 목사.

2. **비활동 교인 명부**(¶ 422.3-4).

3. **구성교인(예비 교인) 명부**(¶ 425).

4. **협동 교인 명부**(¶ 424).

5. **준회원 교인 명부**(¶ 424).

6. 다른 교단과 연합 또는 협력교회의 경우, 그러한 교회를 운영하는 조직은 전체 교인의 공평한 몫을 각 교단 법적 구조에 보고할 수 있으며, 이런 교인들은 보고서가 연합 또는 협력교회의 보고서라는 취지의 메모와 총 실제 교인 수의 기록과 함께 각 교회의 회의록에 기록되어야 한다.

7. 모든 세례, 입교, 결혼, 장례 기록은 개체 교회의 재산이며 판매할 수 없다. 교회가 폐쇄되면 이러한 기록은 연회에서 관리한다.

¶ 430. **연례 교인 보고서 및 감사.** 목사는 작년도 구역회 이후 자신이 책임진 교회(들)의 교인으로 접수된 사람들의 이름과 삭제된 사람들의 이름을 보고해야 하며 이로써 어떻게 접수 또는 삭제되었는지 나타낸다. 교회는 매년 회원 기록을 감사하도록 권장된다.

¶ 431. 대학에 재학 중인 교인의 연례 보고서. 목사는 매년 대학에 재학 중인 고백하고 세례받은 교인들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를 교회의 사역이 존재하는 기관의 교목 또는 캠퍼스 목사에게 보고하도록 권장된다.

섹션 VI. 개체 교회 교인의 변화

¶ 432. 이사하는 교인. 개체교회의 교인이 모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공동체로 이사하여 예배와 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이 교인은 새로 정착한 거주지 공동체의 글로벌감리교회로 교인 자격을 옮기도록 권장된다. 담임목사가 실제 또는 고려 중인 이러한 거주지 변경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받는 즉시, 교인이 앞으로 살게 될 집이 있는 지역 사회에서 교회 생활이 확립되도록 돕고, 그러한 지역 사회의 글로벌감리교 목사 또는 지방감리사(PE)에게 편지를 보내어, 관련자의 가장 최근에 알려진 주소를 제공하고 지역 목회 감독을 요청하는 것은 담임목사의 책임이며 의무이다. 목회자가 자기 지역 사회에 거주하는 우리 교단의 교인이 거주지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예배와 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교회에 다니는 것을 발견하면, 그러한 사람에게 목회 감독을 제공하고 구성교인 명부에 이름을 추가하고(¶ 425), 회원이 거주하는 지역의 글로벌감리교회로 교인 자격을 이전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목사의 책임이며 의무이다.

¶ 433. 다른 글로벌 감리교회로 이전. 목회자가 다른 글로벌 감리교회로 교인 자격 이전 요청을 받으면, 해당 목회자는 교인이 이전하는 교회의 목회자에게 직접 또는 목회자가 없는 경우 지방감리사(PE)에게 적절한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그러한 통지를 받으면 목사 또는 지방감리사(PE)는 공개 리셉션 후 정규 예배에 그렇게 전임한 사람의 이름을 등록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그러한 예배에서 공고를 해야 한다. 그런 다음 보내는 교회의 목사에게 해당 교인을 명부에서 제외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 434. 다른 교단으로 이전. 담임 목사는 교인으로부터 다른 교단의 교회로 전입 요청을 받거나 다른 교단의 목사 또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관계자로부터 그러한 요청을 받은 경우, (교인의 동의 하에) 전출 통지를 발행해야 하며, 교인이 다른 교회로 전입한 사실을 확인한 후 해당 교인의 전입 사실을 개체교회 교인 기록에 적절히 기록해야 한다. 담임목사는 교인이 예고 없이 타 교단 교회에 소속했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부지런히 조사하여 보고가 확인되면 교인 명부에 해당 교인의 이름 뒤에 "타 교단 교회로 전출"이라고 기재하고 다음 구역회에 보고해야 한다.

¶ 435. 고백 교인 자격 회복 1. 탈퇴 혹은 구역회나 재판 법원의 조치로 인해 고백 교인 자격을 잃어 그 이름이 삭제된 사람은 개체 교회의 교인 자격 복원을 요청할 수 있다.

2. 다른 교단의 교인이 된 후 교인 자격이 철회된 것으로 기록된 사람이, 해당 교단이 교인 자격을 전환하지 않을 때 교인 서약을 재확인함으로써 고백교인으로 회복될 수 있다.

3. 본인의 서면 요청에 따라 탈퇴한 사람이 교회로 돌아와 교인 서약을 재확인하면 고백 교인이 될 수 있다.

4. 구역회의 결의로 이름이 삭제된 사람은 교회로 되돌아 갈 수 있으며, 본인의 요청에 따라 교인 서약의 재확인을 통해 개체 교회의 고백교인으로 회복될 수 있다.

5. 기소되어 탈퇴하거나 재판 법원에 의해 제명된 사람은 교회로 돌아가겠다고 요청할 수 있다. 새로워진 삶의 증거와 구역회의 승인, 교인 서약의 재확인에 따라 고백 교인 자격을 회복될 수 있다.

섹션 VII 조직 및 관리

¶ 436. **주요 사역.** 각 개체교회는 자신의 공동체의 맥락에서 그 주요 임무와 사명을 추구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야 한다 - 그들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초대에 응답할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도록 격려하고, 영적훈련에서 그 관계를 강화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이 충실한 제자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스럽고 의롭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성경적 거룩함을 전도하고 전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적절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1) 회중 안팎의 사람들과 가족을 위한 양육, 봉사 활동 및 간증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한다. (2) 효과적인 목회자 및 평신도 리더십 제공; (3) 재정 지원, 물리적 시설 및 교회의 법적 책임을 제공한다. (4) 지방과 연회의 적절한 관계와 자원을 활용한다. (5) 지역 교회의 문서 기록 자료의 적절한 작성, 유지 및 처분을 제공한다. (6) 삶의 모든 측면에서 포용성을 추구한다.

¶ 437. **조직.** 1. 개체교회를 위한 기본 조직 계획은 모든 사람에게 양육, 전도 및 증거의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각 회중에 의해 설계될 수 있다. 교회에는 구역회 외에도 교회 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집행 기구가 있어야 한다. 구역회는 이 *교리와 장정*에 명시된 다른 책임들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2. 교회 집행기구 또는 임원회 구성원은 교회를 사랑하고, 도덕적으로 훈련되고, 교회 생활에서 포용성의 요구에 사명감을 갖고, 글로벌감리교회의 윤리적 기준에 충실하고, 글로벌감리교회의 업무를 관리할 능력이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여기에는 성인과 동일한 표준에 따라 선택되고 확인된 청소년 및 청년 성인 교인을 포함해야 한다. 투표권을 가진 모든 사람은 자신이 섬기게 될 개체 교회와의 관계에서 글로벌 감리교회의 고백 교인이어야 한다. 목사는 교회의 행정 책임자로서 *교리와 장정*에 의해 달리 제한되지 않는 한 모든 회의, 이사회, 임원회, 위원단, 위원회 및 태스크포스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3. **공개 회의.** 개체 교회의 공식 행정 기관의 모든 회의는 전 고백교인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이 규칙의 유일한 예외는, 위원회가 인사, 법률 또는 계약 문제를 다루고 있고 위원회의 과반수가 해당 특정 문제를 다루는 시간 동안만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투표하는 경우이다. 목회 협력 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위원회가 특정 문제를 다루기 위해 다른 사람을 초대하지 않는 한 비공개로 진행한다.

¶ 438. **구역회.** 1. 목회적 책임 안에서 글로벌 감리교회의 연대 구조의 기본 단위가 구역회이다. 그러므로 구역회는 각 목회자가 책임지는 교회 또는 교회들에서 조직되어야 하며 적어도 일년에 한번은 열려야 한다.

2. 구역회의 회원은 교회 임원회 또는 기타 이에 상응하는 기관의 모든 교인이며, 해당 구역회의 회원 자격을 유지하기로 선택한 은퇴한 안수 목사 및 은퇴한

평신도사역자와 함께 *교리와 장정*에 지정된 기타 모든 교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둘 이상의 교회가 한 목회자의 책임하에 있는 경우, 각 교회 임원회의 모든 구성원은 구역회의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 둘 이상의 교회가 한 목회자의 책임하에 있는 경우, 각 교회 임원회의 모든 구성원은 구역회의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

3. 지방감리사(PE)는 구역회 모임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구역회 모임을 주재하거나 감리할 장로 목사를 지명할 수 있다.

4. 정식으로 발표된 회의에 출석하여 투표하는 교인이 정족수를 구성한다.

5. 특별 구역회는 담임목사와 협의한 후 지방감리사(PE)가 소집하거나 지방감리사(PE)의 서면 동의를 받아 장로 목사가 소집할 수 있다. 그러한 특별 세션의 목적은 소집시에 명시되어야 하며, 그러한 업무는 소집시에 명시된 목적과 일치하는 그대로 처리되어야 한다. 이러한 특별 회의는 교인 총회로 소집할 수도 있다.

6. 구역회의 정기 또는 특별 회기의 시간과 장소는 최소한 10 일 전에 다음 중 세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현지 법률이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교회 강단에서, 후보에서, 개체 교회 간행물에서,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7. 구역회는 다수의 언어로 진행되어야 하며, 통/번역을 위한 적절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8. 두 개 이상의 목회적 책임을 위한 합동 구역회는 지방감리사(PE)의 결정에 따라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개최될 수 있다.

9. *교인 총회*. 교회 교인들의 더 많은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구역회는 교회총회로 소집될 수 있으며, 그러한 모임에 참석한 개체교회의 모든 고백교인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진다. 지방감리사(PE)의 재량에 따라 또는 다음 중 한 사람이 지방감리사(PE)에게 서면 요청을 한 후에 소집한다: 목사, 교회 임원회 또는 개체교회의 고백교인의 10 퍼센트. 어떤 경우에도 요청서 사본은 담임목사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구역회의 소집과 진행을 관장하는 추가 규정은 교회총회에도 적용된다 두 개 이상의 교회를 위한 합동 교회총회는 지방감리사(PE)가 결정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에서 동시에 개최될 수 있다. 교회총회는 통/번역을 위한 적절한 준비가 되어 참석자 다수의 언어로 진행되어야 한다. ¶

¶ 439. *권한과 의무*. 1. 구역회는 개체교회, 연회, 총회를 연결하는 연결 고리가 되어야 하며, 교회 임원회와 개체교회의 전반적인 사역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을 가져야 한다.

2. 구역회, PE 감리사, 담임 목사는 *교리와 장정*에 따라 목회와 교회를 조직하고 관리해야 한다. 교인 규모, 프로그램 범위, 선교 자원 또는 기타 사정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구역회는 지방감리사(PE)와 협의하고 승인에 따라 ¶ 436-437 항의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교회의) 조직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3. 연례 구역회의 주요 책임은 교회의 전체 사명과 사역을 검토 및 평가하고, 보고서를 받고, 지도자를 선출하고, 글로벌감리교회의 목표에 부합하는 교회 임원회가 권장하는 목표와 계획을 채택하는 것이다.

4. 구역회의 기록 서기는 회의 진행 상황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모든 기록과 보고서의 관리인이 되며, 사회자와 함께 회의록에 서명해야 한다. 회의록 사본은 지방감리사(PE)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교회 파일을 위해 영구 사본이 보관되어야 한다. 한 구역에 개체교회가 하나뿐인 경우, 교회 임원회의 서기가 구역회 서기가 된다. 한 구역에 두 개 이상의 교회가 있을 때, 교회 임원회의 서기 중 한 명이 구역회에서 서기로 선출된다.

5. 각 구역에서 교회의 모든 부문이 대표되는 포용성 있는 임원회가 구성되는 것을 권장한다.

6. 구역회는 *교리와 장정*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지역 교회의 선출 또는 파송된 임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연임 제한을 설정할 수 있다. 어떤 임원도 같은 직책에서 3년 이상 연속으로 섬기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

7. 구역회는 이 *교리와 장정*의 조항을 충실히 준수하면서, 최소 1년 동안 글로벌감리교회 또는 그 전임 교단들에서 양호한 지위를 가진 교인으로 고백해 온 안수 사역 후보자를 조사하고 목회(안수)위원회에 추천해야 한다; 사람이 안수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교회의 믿음과 증거에서 나온 것이다 모든 개체교회는 의도적으로 안수 사역을 위한 후보자를 육성하고, 영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하나님의 백성 전체의 사역을 위한 섬기는 지도자로 교육하고 양성해야 한다.

8. 구역회는 이 *교리와 장정*의 규정을 충실히 준수하여 안수 목사 후보자의 입후보를 갱신할 것을 검토하고 권고해야 한다.

9. 구역회는 매년 그 책임과 관련하여 공인된 평신도 사역자들의 은사, 사역, 유용성에 대해 조사하고, 공인 평신도 목회자의 기준을 충족한 사람들을 연회 사역 위원회에 추천해야 한다.

10. 구역회는 매년 모든 개체교회 조직 선교팀에 대한 보고를 받고, 통합 보고서를 정기적인 연례 개체교회 통계 보고서를 통해 전달해야 한다.

11. 구역회는 지방감리사(PE)와 협의하여 파송된 목회자의 사례비를 정한다.

12. 구역회를 준비할 때, 연회의 지방감리사(PE), 목사, 평신도 연회대표 및/또는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는 연대 기금의 중요성을 해석하고, 각 연회가 지원하는 이유와 교단 전체 프로그램에서 그들의 위치를 설명할 책임이 있다. 개체 교회의 연대 기금 전액 납부(¶ 449)는 교회의 첫 번째 선의의 책임이다.

13. 구역회는 목회자로부터 교인에 관한 연례 보고를 받아 이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14. 목회적 책임을 맡은 교회가 두 개 이상인 경우, 구역회는 구역 또는 교구 임원회, 구역 전체 또는 교구 재무 및 책임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타 임원, 위원회, 위원회 및 태스크 포스를 제공할 수 있다. 구역회의 모든 교회는 해당 구역 전체 또는 교구 위원회 또는 이사회에 대표를 보내야 한다. 구역 전체 또는 교구 조직은 개체교회에 대한 징계 조항과 일치해야 한다.

15. 여러 교회의 구역들이 있는 경우, 구역회는 여러 교회에 목사관 유지 및 보존 비용 또는 적절한 주택 수당을 공평하게 분배해야 한다.

16. 구역회는 글로벌 감리 교회의 교리표준 및 총칙(¶¶ 101~108), 그리고 교회의 사회적 증언과 관련된 정책(¶¶ 301~302)에 대한 인식과 동의를 촉진해야 한다.

17. 구역회는 새로운 신앙 공동체(교회)를 후원하고 개척할 수 있다.

18. 구역회는 총회 또는 연회가 위임할 수 있는 기타 의무와 책임을 갖는다.

¶ 440. 지도자 선출. 구역회나 교인 총회는 교회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글로벌 감리교회 고백교인으로 개체 교회에서 봉사할 지도자를 단순 다수결로 선출한다. 교회 직분을 세울 때, 여성, 남성, 청소년, 청년, 65세 이상, 장애인, 다양한 인종, 민족 또는

부족 정체성을 가진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개체 교회 임원직은 두 사람이 공유할 수 있다.

¶ 441. **임원의 해임 및 결원 충원.** 구역회에서 선출된 지도자나 임원이 그러한 지도자나 임원에게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 지방감리사(PE)는 특별 구역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러한 특별 회의의 목적은 "임원의 해임 및 결원"을 채울 임원의 선출을 위한 심의"로 명시해야 한다. 공천 및 리더십 개발 위원회 또는 그 책임을 맡은 다른 그룹은 특별 구역회가 발표된 후 가능한 한 빨리 회의를 열고 구역회에서 공석이 발생할 경우 선출될 수 있는 사람(들)을 제안해야 한다. 구역회가 한 사람을 해임하기로 투표하는 경우, 공석은 선거에 규정된 방식으로 충원되어야 한다. 개체교회 재단 이사의 해임을 고려 중이고 목회 책임이 두 개 이상의 교회로 구성된 경우, 구역회 대신 개체교회 총회가 소집되어야 한다.

¶ 442. **평신도 지도자의 의무** 1. 각 개체교회의 고백교인 중에서, 구역회에서 평신도 지도자를 선출해야 하며, 평신도 지도자는 그 개체교회에서 평신도의 제일 평신도 대표로 활동하며 다음과 같은 책임을 져야 한다.

a) 교회 내에서 그리고 가정, 직장, 지역사회, 세상에서의 사역을 통해 평신도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신앙 공동체 내에서 이러한 모든 사역을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b) 담임목사와 정기적으로 만나 교회 상태와 사역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다;

c) 구역회 및 교회 임원회, 재정 위원회, 공천 및 지도력 개발 위원회, 목회협력 위원회의 회원으로 봉사하며, 평신도 지도자는 목회자와 함께 연회와 총회의 결의와 프로그램의 해설자로 봉사해야 한다(이 책임을 더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평신도 지도자는 연회의 평신도 회원으로도 봉사할 것을 권장한다);

d) 교회의 존재 이유와 교회의 사명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사역의 유형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 및 훈련 기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한다.

e) 공동체 안에서 평신도를 통해 더 효과적인 교회의 사역을 위해 가용한 기회와 표출된 필요 사항에 대해 교회 임원회에 조언한다.

f) 연회에서 제공하는 연수 기회를 평신도에게 알린다. 가능하면 평신도 지도자는 자신의 업무를 강화하기 위한 교육 기회에 참석해야 한다. 평신도 지도자는 공인 평신도 사역자가 될 것을 권장한다. 한 구역이 한 교회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경우, 구역회는 평신도 지도자를 추가로 선출하여 각 교회에 한 명의 평신도 지도자가 있게 해야 한다. 준평신도 지도자는 각 개체교회에서 평신도 지도자와 함께 일하도록 선출되어 책임을 분담할 수 있다.

g) 평신도 지도자는 각 지역 교회의 재량에 따라 교회 임원회 또는 기타 치리회의 의장을 겸직할 수도 있다.

2. **평신도 연회 대표** 및 교체 대표는 연례적으로 또는 교단의 총회와 일치하도록 선출될 수 있다. 연회 평신도 대표가 해당 교구의 회원 자격을 상실하거나 어떠한 이유로든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선출된 순서에 따라 대체 대표이 그 자리를 대신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평신도 대표와 대체 대표 모두 글로벌 감리교회 또는 이전 교단의 양호한 고백교인으로 2년 이상 활동했거나, 새로 조직된 교회를 제외하고는

선출 직전 4년 이상 활동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에큐메니칼 공동체의 일부분으로 사역을 공유하는 교회는 연회에서 평신도 대표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연회의 평신도 대표(들)은 목회자와 함께 연회 조치의 해설자로 봉사한다. 이 사람들은 가능한 한 빨리 연회의 조치에 대해 교회 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3. **교회 임원회 또는 행정위원회 위원장은** 매년 구역회에서 선출한다. 임원회장은 섬기는 글로벌 감리교 개체 교회의 고백 교인이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다:

- a) 임원회가 책임을 다하도록 인도한다.
- b) 목회자, 평신도 지도자 및 기타 적절한 사람들과 협의하여 임원회의 의제를 준비하고 전달한다;
- c) 임원회가 취한 조치에 대한 이행을 검토하고 책임을 부여한다.
- d) 임원회의 임원들과 임원회의 결의를 알리도록 허용된 적절한 다른 사람들과 의사 소통한다;
- e) 임원회의 다양한 활동을 조정한다;
- f) 임원회가 계획하고, 목적과 목표를 세우고, 사역을 평가할 때 주도권과 지도력을 발휘한다
- g) 연회 및/또는 지방회에서 제공하는 리더십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 h) 교회 임원회 의장은 *교리와 장정*에 의해 특별히 제한되지 않는 한 교회의 모든 이사회 및 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있다. 임원회장은 연회에 참석하도록 권장된다.

4. 대체 행정 체제를 가진 교회에서는 목회 협력 위원회, 재정위원회 및 재단 이사회가 수행하는 기능을 대표할 사람들을 지명해야 한다.

¶ 443. **교회 임원회** 1. 교회 임원회 또는 이에 상응하는 치리회는 개체교회에서 양육, 전도, 증거, 자원을 통해 성경적 거룩함을 전파하고 복음화하는 사역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또한 조직과 현세적 생활에 대한 관리도 규정해야 한다. 교회의 선교와 사역을 구상, 계획, 실행하고 매년 평가한다. 교회 임원회는 구역회의 행정 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그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2. 선교 및 사역 - 양육, 전도 및 증인 사역과 그에 수반되는 책임은 다음과 같다.

a) 교회의 양육 사역은 교육, 예배, 그리스도인 훈련, 교인 관리, 소그룹, 청지기직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모든 연령대의 개인과 가족의 요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b) 교회의 봉사 사역은 긍휼, 정의, 옹호의 지역 및 더 큰 공동체 사역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c) 교회의 전도 사역은 기독교 경험, 신앙, 봉사에 대한 개인 및 회중의 이야기, 커뮤니케이션, 공인 평신도 사역자, 기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표현하는 수단을 공유하는 복음 전도 노력을 개발하고 강화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d) 지도력 개발 및 자원 조달 사역은 교회 사역을 위한 평신도 및 목회자 지도자의 지속적인 준비와 개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회의

a) 임원회는 최소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한다. 의장 또는 담임목사는 특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b) 임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합의를 도출하여 결정을 내릴 것을 권장한다. 의장의 의견에 따라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는 단순 과반수를 기준으로 투표하여 결정할 수 있다.

4. 기타 책임 - 교회 임원회는 다음과 같은 책임도 지게 된다:

a) 개체 교회의 교인 자격을 검토한다;

b) 연례 구역회 회기 사이에 교회의 평신도 제직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임시 결원을 채운다;

c) 재정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구의 추천을 받아 예산을 수립하고 교회의 재정적 필요를 적절히 충족할 수 있도록 한다;

d) 목회(또는 직원-교구)협력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구의 추천을 받아 담임목사 및 직원의 급여 및 기타 보수를 구역회에 추천한다;

e) 목회자를 위한 적절한 주택 제공에 관한 목회협력위원회의 권고를 검토하고 이를 구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주택 제공은 연회 주택 정책 및 목사관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주택은 교단 연금 및 복지 플랜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상 또는 보수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는다.

5. 임원회 회원 - 구역회에서 교회 임원회의 규모를 결정한다. 교회 임원회 회원은 교회의 선교와 사역에 참여해야 한다. 임원회의 구성원은 최소 8명 또는 구역회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수만큼 구성할 수 있다. 회원에는 목회자-교구 협조, 교회의 재정, 교회의 재산 및 자산 관리, 평신도 대표, 연회의 평신도 대표, 임명된 모든 목회자가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6. 정족수 - 정식으로 공지된 회의에 참석하여 투표하는 회원은 정족수를 구성한다.

섹션 VIII 개체 교회 행정 위원회

¶ 444. **공천 및 지도력 개발 위원회.** 구역회가 결정하는 대로, 해당 연회에서 매년 개체 교회 고백교인들로 구성된 공천 및 지도력 개발 위원회 또는 이와 동등한 위원회를 선출하거나 위원회의 책임을 다른 그룹에 할당할 수 있다. 이 위원회의 책임은 개체교회 회중을 위한 기독교 영적 리더십을 식별, 개발, 배치, 평가 및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위원회 회원은 교회의 사명에 비추어 자신의 기독교 영적 삶을 발전시키고 향상시키는 데 참여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교회의 사명, 주요 임무 및 개체 교회의 사역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 성찰에 참여해야 한다. 교회 교인의 영적 은사와 능력을 식별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위원회는 교회 임원회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구와 협력하여 교회의 다양한 사역 과제와 리더십에 필요한 기술을 파악한다.

a) 공천 및 지도력 개발 위원회는 봉사의 맥락으로서 선교와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영적 지도자의 개발과 훈련을 지도하며, 영적 지도자를 모집, 양육 및 지원하고, 변화하는 지도력 필요를 평가하는 데 교회 임원회를 돕기 위해 교회의 지도력(고용된 직원 제외)에 관한 문제에 대해 연중 내내 봉사한다.

b) 위원회는 연례회의에서 교회의 사역에 필요한 교회 협의회 임원 및 지정된 사역의 지도자로 봉사할 사람들의 명단과 교단의 *교리와 장정*이 요구하는 대로 또는 구역회가 그 사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로 구역회에 추천한다.

c) 의장은 담임목사가 맡는다. 위원회에서 선출된 평신도가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는다.

d) 경험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원을 세 조로 나눌 수 있으며, 그 중 한 조는 매년 3년 임기로 선출한다. 임기를 마친 위원은 위원직을 승계할 수 없다. 위원회에는 같은 가구에 거주하는 직계 가족 중 한 명만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연중 결원이 발생하면 교회 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한다.

e) 신원확인 및 선정 과정에서 부처의 리더십이 포용성과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445. 목회 협력 위원회. 1. 구역회가 결정하는 대로, 해당 연회에서 매년 개척 교회 또는 구역의 고백 교인으로 구성된 목회 협력 위원회 혹은 목사-교구 협력 위원회 또는 이와 동등한 위원회를 선출하거나 위원회의 책임을 다른 그룹에 배당할 수 있다. 교회 담임 목사 외에 프로그램 직원을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위원회는 직원 관계 위원회로 구성하여 동일한 책임을 맡길 수 있다. 이 위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위원회의 책임에 대해 적절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 기독교 영성 개발에 참여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역의 가치를 확인하고 명확히 해야 한다. 교회의 사명, 지역 교회의 주요 임무와 사역, 목회자와 교역자의 역할과 사역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 성찰을 통해 리더십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2. 직원, 또는 목회자나 직원의 직계 가족은 위원회에서 봉사할 수 없다. 위원회에는 같은 가구에 거주하는 직계 가족 중 한 명만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평신도 지도자는 자동으로 위원회 위원이 된다.

3. 경험과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회원은 3 조로 나눌 수 있으며, 그 중 하나는 3년 임기로 매년 선출한다. 평신도 지도자는 이 위원회의 3년 임기가 면제된다. 위원회 위원은 3년의 임기 중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다. 연중 결원이 발생하면 교회 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한다.

4. 교회가 두 곳 이상인 경우, 위원회에는 각 개체 교회의 대표와 평신도 지도자 한 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5. 협력 목회사역에 속한 구역의 목회협력위원회는 협력 목회사역 전체의 전문적인 리더십 요구를 고려하기 위해 함께 모이거나, 하나의 목회협력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6. 본 위원회는 적어도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한다. 이 회의는 감독, 지방감리사(PE), 목사, 그 외에 위원회에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추가로 모임을 갖는다. 위원회는 담임목사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만 회의를 가질 수 있다. 담임목사는 자발적으로 불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위원회는 고려 중인 파송된 목회자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감리사(PE)와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고려 중인 파송된 목회자는 지방감리사(PE)와의 만남 전에 통보를 받고 그 직후에 상담을 받아야 한다.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에서 만나야 하며 위원회에서 공유된 정보는 기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7. 둘 이상의 교회를 포함하는 구역으로 한 교회만이 공유하고자 하는 사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구성원(들)은 목사 또는 위원회 또는 지방감리사(PE)에게 책임이 있는 다른 사람과 별도로 만날 수 있지만 목사가 알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8.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a. 목회자와 직원 및 그 가족을 격려하고, 강화하고, 양육하고, 지원하고, 존중한다.
- b. 교회의 단합을 촉진한다.
- c. 목회자(들)와 직원들과 그들의 사역의 효율성에 관한 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조언한다. 그들의 독특한 은사와 능력을 평가한다. 은사, 기술 및 시간 사용의 우선 순위; 회중과의 관계; 사역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상태를 포함한 개인의 건강 및 자기 관리; 그리고 사역의 성격과 기능을 회중에게 해석하는 동시에 교회의 필요, 가치 및 전통을 목회자와 직원에게 설명한다.
- d. 목회자와 직원의 유용함에 대해 적어도 매년 평가를 제공하여 그들의 효과적인 사역과 연장 교육 필요와 계획을 확인한다.
- e. 열린 순회목회 및 안수 사역 준비에 관한 글로벌감리교회 사역의 본질과 역할을 회중에게 전달하고 설명해 준다.
- f. 담임목사와 협력하는 부목사 및 기타 직원들을 위한 서면 업무분장 및 직함을 개발하고 승인한다. 부목사라는 용어는 담임 목사 이외의 개체교회에서 목회 파송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된다. 위원회는 부목사를 위해 업무분장과 기대치를 반영하는 특정 직함을 개발할 것을 권장한다.
- g. 목사 및/또는 직원이 직업적,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속적인 교육, 자기 관리 및 영적 갱신 행사에 참석하도록 필요한 시간과 재정 지원을 마련하기 위해 교회 임원회와 협의하고, 직원들이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전문 인증을 받도록 권장한다.
- h. 매년 구역회에서 평신도 사역자 및 안수 사역 후보자들을 모집, 인터뷰, 평가, 검토 및 추천하며, 그리고 선교 사역 후보자를 위해, 글로벌감리교회는 이러한 사역에 대해 성별, 인종, 민족 또는 부족 출신, 또는 장애에 관계없이 사람들의 성경적, 신학적 지원을 확인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적절한 기관에 등록시키고 추천한다. 목사나 목회협력위원회의 구성원은 직계 가족 구성원의 후보 신청 또는 갱신을 고려하는 동안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위원회는 안수 사역, 평신도 사역 및/또는 선교 봉사를 준비하는 구역회내 사람들의 명단을 구역회에 보고해야 하며, 이러한 사람들과 연락을 유지하여 구역회에 각 사람에 대한 (안수/파송) 진행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 i. 담임목사 및/또는 기타 임명된 직원과 상의하여 담임목사의 변경으로 인해 책임자 및/또는 담임목사에게 최선의 이익이 제공된다는 것이 명백해지면 담임목사 및/또는 다른 직원과 상의한다. 위원회는 목회자(들), 지방감리사(PE), 감독과 협력하여 목회자의 파송을 책임져야 한다. 감리사 및 감독과의 관계는 자문 역할만 수행한다. 위원회는 먼저 해당 목회자와 우려 사항을 논의하지 않고 지방감리사(PE) 또는 감독에게 담임 목회자의 교체를 추천해서는 안된다.
- j. 목회자와 상의한 후, 다른 목회자 파송이 필요할 때 공천 및 지도력 개발위원회와 의사 소통하며, 그리고/혹은 고용된 직원이 필요할 경우 교회 임원회와 소통한다. 그리고 목회자(들)나 직원의 은사와 시간이 부적절하게 사용될 경우에는 교회 임원회 또는 해당 위원회와 소통한다(사도행전 6,2 참조).
- k. 본 (목회협력)위원회와 목사는 감독 파송 대상이 아닌 목회자를 고용, 계약, 평가, 승진, 퇴직 및 해고하는 과정에 관한 정책 및 절차에 대해 계획서를 교회 임원회에 권고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이 채택될 때까지 위원회와 담임목사는 비파송 직원의 채용, 계약, 평가, 승진, 퇴직 및 해고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위원회는 또한 모든 평신도 직원을 위한 적절한 건강 및 생명 보험과 퇴직금에 대한 조항을 교회 임원회에 권고해야 한다.

또한 위원회는 교회 협의회가 하프타임 이상 시무하는 평신도 직원에게 개체 교회 부담으로 공평한 연금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교회 임원회는 교단 연금 프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연금 혜택을 제공할 권한을 갖는다.

1. 목회협력위원회 구성원은 교단의 정책, 전문적 기준, 책임 문제 및 민법과 관련된 인사 문제에 대해 스스로 배운다. 그들은 그러한 문제를 직원에게 전달하고 설명할 책임이 있다. 위원회 위원들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m. 외부 강사, 사례비, 여비, 휴가, 건강 및 생명 보험, 연금, 주택(연회의 정책에 따라 교회 소유의 사택 또는 사택 대신 주택 수당), 연장 교육, 기타 목회자 및 직원의 사역과 가정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문제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매년 교회 임원회에 이러한 문제를 권고하며 재정위원회에 예산 항목을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목사관(사택)은 교회의 재산으로서 목사의 가족에 의해, 그리고 목사 가족의 사생활의 장소로서 교회에 의해 상호 존중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목회자 또는 목회자 가족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목사관 문제가 있을시 적시에 해결하기 위해 후속 조치를 취한다.

목회협력위원회 위원장, 재단 이사회 의장, 목사는 적절한 유지 관리를 보장하고 가족의 건강과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목사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 소유 목사관을 매년 평가해야 한다.

¶ 446. **재단 이사회.** 개체 교회의 지배 구조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글로벌 감리교회의 각 교회에는 해당 교회의 성별, 인종, 연령을 대표하는 5명 이상의 교회 고백 교인으로 구성된 재단 이사회가 있어야 하며, 모든 교인은 관련 및 관할 민법에 의해 결정된 법적 연령이어야 한다. 교회의 목사는 재단이사회에서 발언권은 있으나 투표권은 없는 회원이며, 정족수를 달성하거나 과반수를 계산할 목적으로 계산될 수 없다.

1. **이사 선출.** 각 개체 교회 재단 이사회 위원은 책임 또는 교회 회의에서 3년 임기로 선출할 수 있으며, 임기는 세 등급으로 균등하게 나누어 매년 3분의 1 씩 선출한다. 이사회 위원은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어떤 위원도 6년 이상 연속으로 재임할 수 없다.

2. **이사의 공석과 해임.** 개체교회의 교인 자격에서 탈퇴하거나 그로부터 제외되는 경우, 그 재단 이사직은 그 탈퇴 또는 제외된 날로부터 자동적으로 중단된다. 개체교회의 재단 이사 또는 법인화된 개체교회의 이사가 그 책임을 수행할 수 없거나 구역회의의 지시에 따라 교회의 재산에 관한 법적 수단을 제대로 집행하기를 거부할 때, 그리고 그러한 집행과 관련하여 모든 법적 요구 사항이 충족되었을 때, 구역회는 다수결로 이사 또는 재단 이사회의 또는 이사회에서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 이사회에서 발생하는 결원은 만료되지 않은 임기 동안 선거를 통해 충원한다. 이러한 선거는 이사 선거와 동일한 방식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446.1). 임시로 발생한 결원 이외의 공석은 교회 임원회에서 다음 구역회 때까지 채울 수 있다.

3. **조직.** 재단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a. 재단 이사회는 새해 또는 연회 연도(둘 중 임기에 적용되는 시점) 시작 후 30일 이내에 의장 또는 부의장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다음 연도의 재단 이사회 임원 선출 및 기타 적절한 업무 처리를 목적으로 소집되어야 한다.

b. 재단 이사회는 회원 중에서 의장, 부의장, 간사 및 필요한 경우 재무를 선출하며, 임기는 1년 또는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로 하되, 의장과 부의장은 같은 조의 회원이 될

수 없고, 간사와 재무의 직은 같은 사람이 겸직할 수 있다. 구역회는 현지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회장과 부회장을 대표과 부대표로 대체할 수 있다.

c. 개체교회의 설립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법인 이사는 위에 규정된 대로 임원을 선출하는 것 외에 적절한 조치로 인준하고 확인하며, 법이 요구하는 경우 교리와 장정의 규정에 따라 구역회에서 선출한 재무를 법인의 임원으로 선출해야 한다. 금융 기관에서 법인의 이름으로 하나 이상의 계좌를 유지하는 경우, 각 계좌와 그 재무는 적절하게 관리, 지정되어야 한다.

4. 회의. 재단 이사회는 담임목사 또는 의장의 소집에 따라 연 3 회 이상 회의 개최 최소 1 주일 전에 회의 공고에 명시된 시간과 장소에서 갖는다. 통지 면제는 일반적인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회의를 합법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재단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가 정족수를 구성한다.

5. 권한과 제한.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a. 개체교회가 소유한 모든 부동산과 개체교회가 직접 취득한 모든 부동산 및 장비, 또는 개체교회와 관련된 단체, 이사회, 클래스(속회), 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이 취득한 모든 부동산 및 장비에 대한 감독 및 관리. 그러나 이사회는 교리와 장정에 다른 곳에서 부여된 개체교회 조직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목회자가 예배나 기타 교회의 법, 관습 및 관례에 의해 인정되는 적절한 모임이나 목적을 위해 상기 재산을 사용하는 것을 막거나 간섭해서는 안 된다. 감리교회의 역사적 이해를 반영하여 글로벌감리교회의 예배당은 항상 자유로워야 한다.

b. 외부 단체가 개체교회의 시설이나 재산을 사용하는 것은 해당 단체의 목적과 프로그램이 지역 교회와 글로벌감리교회의 가치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고려한 후 재단 이사회가 승인할 수 있다.

c. 교회가 목사에게 주거용으로 제공한 사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목회 협력 위원회 위원장, 이사회 의장 또는 지명자, 목회자는 교회 소유 사택을 매년 검토하여 적절한 유지 관리를 보장하고 가족의 건강과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택 문제를 즉시 해결해야 한다. 사택은 교회의 재산으로서 목회자가 가족과 교회가 상호 존중하고, 목회자 가족의 사생활 공간으로서 교회가 상호 존중해야 한다(¶ 445.8m). 이사회는 목회자 또는 목회자 가족의 건강과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택 문제를 적시에 해결하고 사택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d. 이사회는 구역회의 지시에 따라 개체 교회에 대한 모든 유증을 받고 관리하며, 모든 신탁을 받고 관리하며, 지교회가 위치한 국가, 주 또는 정치 단위의 법률에 따라 개체교회의 모든 신탁 기금을 투자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역회는 이사회에 통지하면 유증, 신탁 및 신탁 기금을 수령, 관리 및 투자할 수 있는 권한, 의무 및 권위로 영구 기부 위원회 또는 개체 교회 재단에 위임할 수 있다.

e. 이사회는 매년 건물, 부지 및 시설에 대한 접근성 감사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를 방해하는 기존의 물리적, 건축적 또는 의사소통 장벽을 발견하고 식별해야 하며, 이러한 모든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6. 연례 보고서. 이사회는 매년 구역회에 서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여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 교회가 소유한 각 부동산의 법적 설명과 합리적인 가치 평가;

b. 개체교회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각 증서에 기재된 양도자의 구체적인 이름;

- c. 개체 교회가 소유한 모든 개인 재산의 목록과 합리적인 가치 평가;
- d. 소득을 창출하는 재산에서 받은 소득 금액과 이와 관련된 지출의 세부 목록;
- e. 부동산의 건축, 재건축, 리모델링 및 개선을 위해 한 해 동안 받은 금액과 항목별 지출 명세서;
- f. 미결제 자본 부채, 상환 날짜 및 계약 방법;
- g. 공동 보험 또는 기타 제한 조건에 의해 제한되는지 여부와 적절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각 부동산 구획에 대해 가입된 보험에 대한 자세한 설명;
- h. 개체 교회의 모든 법적 서류의 관리인 이름과 보관 장소;
- i. 개체 교회가 수혜자인 모든 신탁의 상세한 목록으로, 자금이 어디에 어떻게 투자되는지 명시;
- j.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강단 구역을 포함한 모든 교회 자산을 평가하고, 해당되는 경우 접근성 장애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과 일정(¶ 446.5e)을 수립.

¶ 447. 재정 위원회. 1. 구역회가 결정하는 대로, 해당 구역회는 매년 재정위원회 위원장, 연회의 평신도 대표, 교회 임원회장, 목회 협력 위원장 또는 지명자로 구성된 재정위원회 또는 이에 상응하는 위원회를 선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이사회가 선정하는 이사회 대표, 청지기 사역 그룹 위원장(있는 경우), 평신도 지도자, 재정 총무, 재무, 교회 행정 관리자(있는 경우) 및 담당 구역회가 결정하는 대로 추가되는 기타 위원으로 구성된다. 또는 위원회의 책임을 다른 그룹에 할당할 수도 있다. 재정위원회 위원장은 교회 임원회 위원이 된다. 유급 직원인 경우 재정 총무, 재무 및 교회 업무 관리자는 투표권이 없는 회원이 된다. 재무와 재정 총무 직책은 한 사람이 겸직할 수 없으며, 이 두 직책을 맡은 사람은 직계 가족이 아니어야 한다. 임명된 목회자의 직계 가족은 재무, 재정위원회 의장, 재정 서기, 회계 담당자 또는 재정위원회의 책임 아래에서 유급 또는 무급 직책을 맡을 수 없다. 이러한 제한은 목회자가 재임하는 교회 또는 구역에만 적용된다.

2. 재정위원회는 일 년 내내 재정 자원의 청지기 직분을 우선순위로 감독하며, 제자 양육 사역의 일환으로 회원들이 아낌없는 마음으로 십일조와 그 이상을 봉헌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개체 교회의 연간 예산에 포함될 모든 재정 요청은 재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재정위원회는 매년 개체 교회의 전체 예산안을 작성하여 교회 임원회에 제출하여 검토 및 채택을 받아야 한다. 재정위원회는 교회 임원회가 채택한 예산을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수입을 마련할 계획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책임을 맡는다. 교회 임원회의 지시에 따라 받은 기금을 관리해야 한다. 위원회는 재무와 재정 총무를 지도하는 교회 임원회의 지시를 수행한다.

4. 위원회는 같은 가구에 거주하는 직계 가족 중 한 명이 아닌 최소 2 명을 지정하여 헌금을 집계해야 한다. 이들은 재정부장의 감독 하에 일해야 한다. 수령한 모든 김금의 기록은 재정 총무와 재무 담당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수령한 기금은 재정위원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즉시 입금해야 한다. 재정 총무는 기부금 및 지급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5. 교회 재무는 개체 교회 예산에 포함된 모든 기부금과 교회 임원회가 결정하는 기타 기금 및 기부금을 지출해야 한다. 재무는 당시 수중에 있는 모든 교단 및 연회 선교

기금을 매월 연회 재무에게 송금해야 한다. 교회 재무는 재정위원회와 교회 임원회에 기금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정기적이고 상세한 보고를 해야 한다. 재무 담당자는 적절한 보증을 받아야 한다.

6. 재정위원회는 개체교회의 내부 통제를 문서화하기 위해 서면 재정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작성된 재정 정책은 매년 재정위원회에서 적정성과 효과성을 검토하고 매년 구역회에 보고서로 제출해야 한다.

7. 위원회는 개체 교회와 모든 조직 및 계정의 재무제표에 대한 연례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위원회는 연례 구역회의에 전체 및 완전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체교회 감사는 자격을 갖춘 사람 혹은 사람들이 개체교회의 재정 보고서 및 기록과 내부 통제에 대해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감사는 재정 보고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합리적으로 검증하고, 자산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는지 확인하며, 현지 법률, 개체교회 정책 및 절차, *교리와 장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해야 한다. 감사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1) 현금 및 투자 결산 검토, 2) 기존 서면 재정 정책 및 절차 준수 여부와 관련하여 재무, 재정 총무, 목회자, 재정위원회 위원장, 사업 관리자, 현금 계수 담당자, 교회 총무 등과의 인터뷰, 3) 각 당좌 및 투자 계좌의 일지 항목 및 수표 서명인 검토, 그리고 4) 기타 재정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절차가 포함될 수 있다. 감사는 위의 2에 열거된 사람과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또는 독립 공인회계사(CPA), 회계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이 수행한다.

8. 위원회는 교회 자금에 대한 적절한 예치처를 교회 임원회에 추천해야 한다. 받은 현금은 지역 교회 명의로 즉시 입금된다.

9. 특정 목적과 용도로 지정된 현금은 기부자의 의도에 따라 즉시 실행되며, 다른 목적으로 보유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10. 개체교회의 예산이 승인된 후 추가 지출이나 예산 변경은 교회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위원회는 현재 경비 예산과 별도로 지정된 모든 기금에 대한 보고서를 적어도 매년 교회 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448. 기타 관리 및 프로그램 위원회. 교회 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위원회를 추천할 수 있으며, 그 위원들은 구역회에서 선출해야 합니다: 커뮤니케이션 위원회, 제자 훈련 위원회, 기록 및 역사 위원회, 선교 위원회, 기념 기금 위원회, 여성과 남성의 독특한 필요와 관심사를 다루는 사역 등(이에 국한되지 않음).

섹션 IX. 연대사역헌금

¶ 449. 개체교회 연대사역헌금 1. *연대사역헌금의 웨슬리적 가치*- 글로벌감리교회는 은혜로 충만하지만, 개인과 공적 삶 전반에 걸쳐 책임을 지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요한 웨슬리의 교회 구조 모델은 상호 책임 그룹을 활용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자산을 어떻게 인식하고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 각자의 책임을 강조한다. 감리교 운동은 초창기부터 연대 시스템 안에서 상호 지원의 관계를 유지해 왔다. 연대 조직을 통해 교회는 더 큰 왕국에 영향을 미치고, 적절한 책임과 자격을 보장하며, 신학적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다. 요컨대, 우리는 함께하면 더 좋다.

글로벌감리교회는 연대 시스템을 소중히 여기며 개체 교회에 대한 지원과 돌봄 역할이 풍성해 지기를 희망한다.

2. 글로벌감리교회의 각 개체 교회는 연대사역헌금을 통해 개체교회를 넘어 단교의 사역에 재정적으로 기여한다. 개체교회 재무 또는 지명자는 전년도 개체교회 운영 수입을 기준으로 매년 1월 30일까지 ¶¶ 449.4 및 5에 따라 송금할 금액을 계산해야 한다.

3. 연대사역헌금에는 개체교회가 목회자 및 글로벌감리교회의 그러한 플랜에 속한 추가 직원에 대한 보험 혜택 및 연금 부담금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플랜 가입자를 위한 보험 혜택 및 연금 납입금은 개체교회의 연대사역헌금 송금과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4. 송금할 연대사역헌금의 금액을 계산할 때,

a. 개체교회 운영 수입에 포함되는 항목은 신원이 확인된 기부자와 확인되지 않은 기부자의 현금, 운영에 활용된 투자 수입, 건물 사용료 및 임대 수입, 기타 제한 없는 운영 수입이다.

b. 다음 항목은 개체교회 운영 수입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자선 기부금(개체교회가 지원하는 외부 사역), 자본 모금 수입, 차입금, 운영 외 비용 모금, 부채 감면 수입, 기념품, 기부금, 유증(제한 여부에 관계없이), 글로벌감리교회 특별 선교 프로그램 수입,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보조금 및 지원, 토지, 건물 또는 기타 교회 자산 판매, 기타 운영 외 수입.

5. 개체교회가 연대사역헌금을 위해 송금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a. 총회 연대사역헌금의 경우, 총회가 정한 대로 개체교회 운영 수입의 1.5% 이하(¶¶ 449.4 참조);

b. 연회 연대사역헌금의 경우, 해당 연회가 정한 바에 따라 개체교회 운영 수입의 5% 이내(¶¶ 449.4 참조)로 한다.

6. 449.5a의 비율은 총회의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만 인상할 수 있다. 449.5b의 비율은 해당 연회 3분의 2의 투표가 있을 때만 증가한다.

7. 개체교회는 매월 총회 연대 기금 연간 총액의 12분의 1을 글로벌감리교회 재무에게, 연회 연대사역헌금의 12분의 1을 해당 연회에 송금해야 한다.

8. 연회 연대협의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은 개체교회를 선교 교회로 지정하고 해당 교회는 지정일로부터 최대 5년 동안 총회 또는 연회 연대사역헌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선교 교회는 개척 교회, 새로 재개한 교회, 또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사회에 위치하거나 그곳을 섬기는 교회여야 한다.

9. 개체교회의 목회자와 리더십은 개체교회 구성원들이 연대사역헌금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연대사역헌금을 해석하고, 정기적으로 지역 교회 구성원들과 정보를 공유하여 연대사역헌금을 교육하고 해석해야 한다.

섹션 X. 새로운 교회(개척교회) 조직하는 방법

450. 개척 교회의 조직. 1. 글로벌감리교회의 개체교회 또는 그룹을 이룬 교회들의 후원을 받아 글로벌감리교회의 평신도나 목회자라면 누구나 새로운 개체교회를 개척할 수 있다. 후원하는 개체교회 또는 그룹을 이룬 교회들이 프로젝트에 대한 책임을 맡는다. 후원하는 개체교회 또는 그룹을 이룬 교회들이 없는 경우, 연회는 지정된 리더십을 통해 새로운 개체교회 개척을 승인하고 책임을 부여할 수 있다.

2. 각 연회는 새로운 지교회 설립에 필요한 기준을 결정해야 한다. 총리사()는 신설 교회가 소속할 지방을 지정한다.

3. 조직하는 목회자의 요청에 따라, 감리사는 관심 있는 사람들을 호출해서 지정된 시간에 지역 교회를 창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이게 하며, 서면으로 승인 받은 경우, 해당 지역의 감리사에게 그런 모임을 소집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예배 시간 후, 참석한 사람들에게 교인 등록을 위해, 전입이나 신앙고백을 통해 자신을 등록할 기회가 주어진다. 조직이 완료되면 새로운 개척교회는 *교리와 장정의 규정에 따라 활동해야 한다.*

섹션 XI. 개체 교회 이전

¶ 451. **개체 교회 이전.** 개체교회는 교회 임원회와 교인 총회에 출석하여 투표한 고백 교인의 3분의 2의 찬성과 해당 두 연회의 단순 과반수 찬성으로 한 연회에서 다른 연회로 이전할 수 있다. 감독 또는 관련 감독이 필요한 과반수를 발표하면 이전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필요한 투표는 개체교회 또는 관련 연회에서 할 수 있으며, 투표 순서에 관계없이 유효하다. 각 경우의 조치는 출석하여 투표한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이전이 완료되기 전에 철회하지 않는 한 효력을 유지한다.

섹션 XII 공유 사역

¶ 452. **협동 교구.** 1. 협동교구는 통일된 교구 지도력 아래 함께 일하기로 동의 한 두 개 이상의 개체교회들을 포함하는 지정된지리적 영역이다. 담임목사 및 기타 임명된 목사 또는 고용된 직원은 통합 사역 팀으로 일한다. 각 개체교회에는 자체 교회 임원회가 있지만, 협동 교구의 조정된 활동을 관장하는 각 개체교회 임원회의 대표자로 구성된 교구 임원회도 있다. 교구 차원의 목회자-교구 또는 직원-교구 협력 위원회도 구성된다. 재정 지원, 재산 또는 프로그램 사역을 교구 전체가 공유하는 다른 교구 차원의 위원회도 있을 수 있다. 지방감리사(PE)는 감독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체교회의 동의를 얻어 적절한 사역 환경에서 협력 교구를 구성할 수 있다.

2. 감리사회(캐비넷)는 협력 교구를 조직하고 사역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정책과 절차를 만들 수 있다.

3. 타 교단의 교리와 선교가 글로벌감리교회의 교리와 충돌하지 않는 한, 타 교단의 개체교회와 협력 교구 또는 연합 교구를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에큐메니칼 협력 교구는 각 개체교회가 소속된 해당 사법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53. **에큐메니칼 교회.** 1. 정의. 에큐메니칼 교회는 다른 교단의 교리와 선교가 글로벌감리교회의 교리와 충돌하지 않는 한, 개체 글로벌감리교회와 다른 기독교 전통을 가진 하나 이상의 개체 교회가 함께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교회는 사역을 강화하고, 제한된 자원을 현명하게 관리하며, 하나님의 백성의 필요와 선교 및 사역 확장의 기회에 부응하는 창의적인 방식으로 에큐메니칼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결성된다. 에큐메니칼 공동 사역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a) 하나의 교회가 두 개 이상의 교단과 관련되어 있고 교인들이 그 중 하나 또는 다른 교단의 회원 자격을 갖기로 선택한 연합교회; (b) 하나의 통합된 회원 명부를 가진 교회가 두 개 이상의 교단과 관련된 합동교회; (c) 서로 다른

교파의 두 개 이상의 교회가 구성 교파 중 하나에만 관련된 하나의 교회를 구성하는 합병교회; (d) 서로 다른 교파의 교회가 목회자를 공유하는 동역교회(¶ 453.3 참조).

2. **연약** 에큐메니칼 교회를 구성하는 교회는 재정 및 재산 문제, 교회 회원 자격, 교단 지원 및 재정, 위원회 구조 및 선출 절차, 목회자의 임기 및 규정, 보고 절차, 모(Parent) 교단과의 관계, 협약 개정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명확한 선교 규약, 정관 또는 협약서를 개발해야 한다. 교회는 성약 계약을 개정할 경우 감리사에게 통지하고 성약 계약을 해산하기 전에 감리사와 상의해야 한다.

3. **연대적 책임** 감리사회(cabinet), 연회 직원 및 기타 지도자들은 에큐메니칼교회들이 설립될 때 협력해야 하며, 교단 교회와의 중요한 관계와 연대를 위한 지속적인 통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동시에 그러한 통로는 그 교회의 다른 교단 관계자들과도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 454. 연회 협동회원

1. 특별 연회에 속한 교회는 서면으로 해당 교회가 지리적으로 위치한 연회의 협동회원 교회로 가입을 요청할 수 있다.

2. 감리사회와 연회의 승인을 받은 교회는, 협동 교회 지위를 특별 연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협동회원 교회의 목회자 및 평신도 대표는 제휴된 연회에 발언권으로만 참여할 수 있다.

4. 협동 회원 교회는 제휴된 연회에 연대사역헌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5. 지리적으로 어떤 연회에 속해 있는 교회는, 동일한 조건에서 특별 연회의 협동회원 교회가 될 수 있다.

섹션 XIII - 교회의 충실성

¶ 455. **교회의 충실성** 개체 교회와 글로벌 감리 교회 전체의 통합을 위해 중심이 되는 이 *교리와 장정*에 명시된 교단의 교리와 규율은 모두가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수용하고 실천해야 한다. 또한, 지역 교회는 449 항에 명시된 대로 연대사역헌금을 제공하기로 서약한다. 따라서 양심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교회는 ¶ 1003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신앙이나 관행에 더 부합하는 다른 기독교 교단에 가입하거나 글로벌 감리 교회에서 탈퇴할 것을 권장한다. 교회가 본 *교리와 장정*에 부합하지 않는 교리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거나 관행에 참여하거나 ¶ 449에 명시된 연대사역헌금을 전액 송금하지 않는 경우, 연회 연대 협의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은 다음 조항이 충족되는 한 독립적으로 그러한 변화를 실행할 권한을 갖는다:

1. 교회의 현 담임 목사가 글로벌감리교회의 교리와 관행에 반하는 교리나 관행을 장려하는 경우, 감독은 그 담임 목사를 해임하고 글로벌감리교회의 교리와 관행을 장려하고 옹호할 목사를 파송해야 한다. 그런 다음 감독은 새 담임목사가 회중을 순응시킬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야 한다.

2. 1 단계가 결실을 맺지 못하거나 담임목사가 문제 해결에 기여하지 않을 경우, 감독과 지방감리사(PE)는 교회임원회(또는 이에 준하는 협의회) 또는 더 많은 교인들과 만나 글로벌감리교회 교리나 관행에 대한 이견이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그러한 이견의

해결과 개체교회의 적합성 회복을 모색해야 한다. 감독은 그러한 사안에 대해 글로벌감리교회의 교리와 관행을 슬기롭게 옹호하고 가르쳐야 한다.

3. 개체 교회가 매년 계산된 대로 연대사역헌금을 전액 송금하지 않는 경우, 지방감리사(PE)는 교회 임원회(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의회)와 만나 송금을 독려해야 한다.

4. 불일치에 대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개체교회가 감리사와의 회의 후에도 연대사역헌금을 전액 송금하지 않을 경우, 연회 연대 협의회 또는 이에 준하는 연회의 3분의 2 투표와 감독의 동의, 개체교회가 위치한 연회의 감리사들의 찬성 투표에 의해 개체교회는 글로벌감리교회로부터 비자발적으로 탈퇴 될 수 있다.

5. 교회는 비자발적 탈퇴에 대한 서면 통지를 적시에 받아야 하며, 60 일 이내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설명이나 기타 세부 정보를 제공하여 연대 상소위원회에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이 계류 중인 동안 비자발적 탈퇴는 유지된다. 연대상소위원회의 결정은 최종 결정이다. 상소가 발생하지 않거나 상소를 통해 비자발적 탈퇴가 확정되는 경우 탈퇴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섹션 XIV. 경과 규정

¶ 456. **글로벌감리교회와 협력하는 개체교회.** 1. 이전에 연합감리교회와 제휴했던 개체교회는 정식으로 승인된 교회 회의에서 출석하고 투표한 교인들의 찬성을 통해 글로벌감리교회와 제휴할 수 있다. 교회 임원회는 연회 연대협의회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관에 그 결정을 통보해야 한다. 찬성 투표는 이 *교리와 장정*의 교리 기준과 사회적 증언(¶¶ 101-108, 301-302)을 지지하고 본 교단과 연대하고 책임감을 갖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어야 한다.

2. 글로벌감리교회와 연대하고 책임감을 갖고자 하는 다른 기독교 교회들은 본 *교리와 장정*의 교리 기준과 사회적 증언(¶¶ 101-108 및 301-302)을 지지하기 위해 교회 회의의 과반수 찬성으로 연합을 요청할 수 있다. 연회 연대협의회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관은 요청이 승인되기 전에 개체교회가 사용한 절차의 적법성과 교회의 실행 가능성을 확인하는 책임이 있다.

3. 교회는 이 *교리와 장정*에 따라 연회와 지방회에서 활동해야 한다. 가입 발효일로부터 개체교회는 ¶ 449 에 규정된 대로 글로벌감리교회에 연대사역헌금을 전달해야 한다.

4. 개체교회와 그 목회자가 모두 글로벌감리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둘 다 목회자 파송 또는 평신도 파송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경우, 해당 교회가 속한 연회를 감독하는 감독은 이 전환기에 안정과 연속성을 위해 현재의 목회자 파송을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5. 456.1-3 에 따른 개체교회의 효력 발생일은 해당 지역 교회가 속한 연회 연대협의회 또는 이에 준하는 연회가 정한 날로 한다.

제 5 부 - 부름 받은 자의 사역

¶ 501. 교회에서 사역. 1. 교회의 사역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사랑의 길에서 제자로서 그를 따르라고 명령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파생되었다. 이 사역으로의 소명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인 하나님의 백성 전체, 즉 평신도(라오스)에게 주어진 소명이다. (벧전 2:9) 세례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에로의 부르심을 선포하신다.

2. 장로 목사에게만 주어지는 감독과 감리사 직분을 제외한 모든 평신도와 목회자는 다양한 직분을 수행할 수 있다. 직분은 그리스도의 몸을 일반적으로 세우기 위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하는 일을 말한다. 직분에는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사, 교사, 관리자, 기적의 사역자, 치유자, 도우미 등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엡 4:11-13 및 고전 12:28). 성령은 사역에 대한 부르심과 그에 따른 교회의 분별과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통해 그리고 그 안에서 일하신다.

¶ 502. 공인 평신도 사역자. 1. 공인 평신도 사역자는 평신도로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 웨슬리안 교리와 교단 정체에 대한 특별 훈련을 받고 교회의 인준을 받은 개체교회 소속의 고백 교인이다. 이 범주에는 이전에 공인 평신도 봉사자, 공인 평신도 설교자, 공인 평신도 사역자, 집사, 가정 선교사, 평신도 선교사로 임명된 모든 사람들이 포함된다. 공인된 평신도 사역자는 인도, 가르침, 선포/설교, 전도, 예배, 돌봄 사역 등 교회 사역의 모든 영역에서 일할 수 있다. 평신도인 공인 평신도 사역자는 감독이나 감리사의 승인이나 파송을 받지 않지만, 평신도 사역자가 자신의 개체교회 밖에서 사역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자격. 공인 평신도 사역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a. 최소 2년 이상 개체 글로벌감리교회(또는 그 전신)의 고백 교인.
- b. 목회 및 고등교육위원회에서 승인한 교회의 교리, 역사, 정체, 기본 성경 지식에 대한 평신도 사역 과정의 만족스러운 이수.
- c. 목회 및 고등교육위원회에서 승인한 사역 분야(예: 설교, 예배 인도, 돌봄 사역 등)에 대한 평신도 사역의 고급 과정의 하나 이상 만족스러운 이수. 연회 안수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다른 환경에서의 교과 과정이나 훈련이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d. 국가적 신원 조회.

e. 담임목사의 서면 추천과 목회 협력 위원회 및 구역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승인한다.

f. 연회 안수위원회의 인터뷰 및 승인. 인증을 인정하는 공적 헌신 봉사가 권장된다.

3. 인증 갱신. 평신도 사역 인증은 연회 안수위원회에서 다음 기준에 따라 3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a. 구역회와 연회 안수위원회에 제출하는 연례 보고서로, 한 해 동안 어떤 사역을 수행했는지 요약하고 만족스러운 성과에 대한 증거를 제시.

b. 매년 구역회의 과반수 찬성에 의한 승인.

- c. 담임목사의 갱신 추천서.
- d. 3년마다 추가 국가적 신원 조회 완료.
- e. 지난 3년 동안 목회위원회가 승인한 평신도 사역 고급 과정을 한 개 이상 추가로 이수.

4. 봉사 조건

a. 공인된 평신도 사역자는 자원봉사자로 봉사하지만, 자신의 개체 교회가 아닌 곳에서 강단 공급 또는 기타 전문 사역에서의 사례비와 경비는 적절하다. 교회 또는 기타 사역의 평신도 직원으로 봉사하는 공인 평신도 사역자는 자신의 업무에 대해 공평하게 보상을 받아야 한다.

b. 평신도 사역자 자격은 연회를 옮기는 경우 다른 연회로 이전할 수 있다. 해당 새 연회의 후속 갱신은 ¶ 502.3 에 따른다.

c. 이전 교단에서 현역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이전 교단에서 교과과정을 통해 ¶ 502.2b-c 의 요건을 충족하고, 본 교리와 장정의 교리 기준과 사회적 증언에 동의하며, 그 규율을 준수하는 데 동의할 경우 자동으로 글로벌감리교회의 공인 평신도 사역자로 인정받게 된다. 이후 갱신은 ¶ 502.3 에 따른다. 502.2b-c 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인증을 받지 못하지만 인증을 취득 위해 노력할 수 있으며 이미 이수한 과정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

¶ 503. 목회직 목회자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특별히 봉사하도록 부름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양한 형태로 표현될 수 있으며 개인의 삶에서 어느 나이에나 찾아올 수 있다. 성경은 젊은이들(삼상 3 장)과 나이든 사람들(창 12 장과 출 3 장), 남성과 여성들,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갑작스럽고 극적이었던 사람들과 오랜 세월이 걸쳐 자연스럽게 전개된 점진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모두를 하나님의 사역에 소환되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 초대 교회는 특별히 설교와 가르침을 맡은 사람들(벧전 5:1-4) 외에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곱 제자를 따로 세워 그들 중 과부들에게 음식을 나눠주었다(행 6:1-6). 스테반, 뵈베,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봉사했다. 집사 목사든 장로 목사든 모든 목회자는 신앙의 신비를 굳게 붙들고 정직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딤후 1 장, 3:1-13).

감리교의 역사적 관행에 따라, 목회자로 봉사하는 사람들 글로벌감리교회 동료들에 의해 선출되고 전체 교회를 대신하여 감독에 의해 안수받는다. 선출은 연회의 목회자들이 목회 후보자의 자격, 능력 및 준비 상태를 주의 깊게 검토한 후, 교회를 섬기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의 언약 친교의 구성원으로 개개인들을 통합시키는 행위이다. 선거권에는 ¶ 520 의 자격을 충족하는 임직 중이거나 선임 목회자인 경우 연회의 사역에 투표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수반된다. 521.2a 단락의 규정에 따라 장로 목사 또는 집사 목사 안수를 승인받은 과도기적 본처 목사들은 이 단락에 따라 목회자가 되며 투표권과 연회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521.2b 단락에 따라 과도기적 본처 목사로 인허를 받은 사람들도 이 단락에 따라 목회자가 되며, 해당 단락에서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표권과 연회의 사역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안수는 교회가 전체 교회의 유익을 위해 특정 사역직에 선출된 사람들을 구별하는 행위이다. 안수는 연회에서 하나님의 백성 중 감독과 다른 사람들이 안수함으로써 부여된다. 목회직에는 두 가지가 있다.

1. **집사목사직.**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말씀, 섬김, 공훈, 정의의 사역인 집사목사의 사역으로 부름을 받는다. 남자 집사, 여자 집사, 디아코네이트(diaconate)라는 단어는 모두 일반적인 그리스어 어근인 *디아코노스(diaconos)* 또는 "종"과 *디아코니아(diaconia)* 또는 "봉사"에서 유래했다 이 사역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종의 모습으로 교회와 세상에서 살도록 부름받은 교회를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인도한다. 집사목사들은 말과 행동으로 말씀을 증거해야 하며, 하나님의 공훈과 정의를 세우기 위해 세상에서 공동체의 봉사를 구현하고 이끌어야 한다. 외의 사역들 중, 개체교회 안팎에서 집사목사는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결혼을 주례하고, 죽은 자를 묻고, 병자와 궁핍한 자를 돌보고, 세상의 필요를 교회에 설명할 수 있다. 집사목사는 또한 413 단락에 따라 성례를 집행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집사목사는 개체교회의 목사로 섬기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개체교회 안팎의 다양한 직분으로 봉사할 수 있다. 집사목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증거하고 봉사할 책임을 유지한다. 집사목사로서의 안수는 한 사람이 나중에 장로목사로 안수를 받은 안 받지 일평생 동안을 위한 것이다; 원한다면 사람들은 영구 집사목사로 남을 수 있다.

2. **장로목사직.** 집사목사로 안수받은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교회생활에서 장로목사로서 역사적인 직무인 말씀, 성례전, 치리 사역을 행하도록 부름을 받는다. (장로목사로 안수되기 전에 집사목사로 안수받지 않은 사람들은 글로벌감리교회에서 봉사를 시작할 때 집사목사의 직분을 받게 된다. 연회는 특별예배를 통해 이 인가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것을 권장한다.) 장로목사의 사역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충실하게 가르치고, 성례전을 집행하고, 교회가 충실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교회 생활을 치리할 권위와 책임을 지고 있다. 장로목사들은 세상에서 증거하고 봉사하는 신도(Laity, 만인 제사장 개념-역자 주)로서의 소명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설교, 봉사, 공훈, 정의에 대한 집사목사로서의 소명을 견지한다.

¶ 504. **안수 사역의 유형.** 초창기부터 감리교는 전 세계의 수많은 국경을 넘어 복음과 웨슬리적 증거를 전하는 "순회 설교자"가 참여하는 순회 사역을 채택한 점에서 독특했다. 순회의 성격은 수십년간 교회와 문화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변했지만, 가장 필요한 곳이면 어디에서나 기꺼이 봉사할 준비가 된 목회자의 파송 제도에 계속 반영되고 있다. 글로벌감리교회 내에는 두 가지 유형의 사역직분이 있다: 위치(주재) 사역과 감독 사역(또는 사도 사역).

1. **위치 사역.** 특정 장소에서 봉사하도록 파송된 목회자, 예를 들어 개체교회의 목사 또는 사회 봉사 기관의 책임자 같은 사역이 글로벌감리교회 위치사역의 일부이다. 그들은 그 부름을 확인하고 그들이 봉사하는 연회를 관할하는 감독에 의해 파송되어야 하며, 감독은 또한 그들의 일을 감독해야 한다. 위치(주재) 사역의 목회자는 전임, 시간제 또는 이중 직업 자격으로 또는 자원봉사자로 봉사할 수 있다.

2. **감독 사역(사도 사역).** 다른 사람들의 일을 감독하도록 부름 받고 파송된 장로목사들은 글로벌감리교회의 감독 사역 또는 사도 사역의 일부이다. 감독 직분에 선출된 장로목사들은 교회의 감독으로 사역하며 신앙을 수호하고 연회를 구성하는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감독과 규율을 책임진다. 그 다음에 감독은 다른 장로목사들을 지방감리사(PE)로 부르고 파송하며, 지방감리사(PE)들은 자신의 지방 내에서 목회자로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지침과 지시를 내리고, 새로운 교회를 조직하고, 평신도, 집사목사, 장로목사들이 사역하는 것을 돕고, 치리하고, 성례전적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 505. 안수 목사의 기본 자격 목사로 안수를 받을 사람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믿고 구세주이자 주님이신 그리스도께 헌신해야 한다.
2. 신체적 건강, 정신적, 정서적 성숙, 모든 관계에서의 품격,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그리스도인 결혼 생활에서의 정절, 독신으로서의 순결, 사회적 책임,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사랑에 도움이 되는 개인적인 습관을 보여줌으로써 책임감 있는 자기 통제를 포함한 웨슬리안 총칙에 부합하는 영적 훈련과 거룩한 삶의 패턴을 육성하고 배양해야 한다.
3.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사역에 헌신하라는 부름을 받아야 한다.
4. 기독교 신앙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5. 안수 받은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은사에 대한 증거와 교회 선교에 대한 미래의 유용성에 대한 약속을 제시한다.
6.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성경, 신학, 교회사, 정제 분야에 유능하며, 사역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기술을 갖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데 앞장서야 한다.
7. 교회에 책임을 지고, 교회의 교리 기준과 규율, 권위를 받아들이고, 감독 사역에 임명된 사람들의 감독을 받아들이고, 안수받은 사역자들과 언약을 맺고 살아야 한다.

506. 안수 사역에 입문 1. 안수 사역에 대한 부름을 받은 사람은 개체교회 목사 또는 지방감리사(PE)와 만나 후보 자격에 대해 문의해야 한다. 현지 글로벌감리교회(또는 그 전신)에서 최소 1년 이상 회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중등학교 졸업장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소지해야 한다. 목회 협력 위원회의 3분의 2 비밀 투표 또는 이에 준하는 투표로 추천된 사람은 구역회에 상정되어 후보 승인 여부에 대해 단순 다수결로 투표한다.

2. **후보자 분별.** 개체교회 승인 후, 후보자는 연회 안수위원회의 감독 하에 사역 현장에서 감독을 받는 인턴십 또는 고용을 포함 최소 6개월 동안 분별을 위한 시간을 보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후보자는

- a. 가이드북 작성, 멘토링, 다른 지원자들과의 소그룹 참여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분별력을 키우는 데 참여;
- b. 심리 평가, 신원 및 신용 조회; 그리고
- c. 최소 6개월의 분별 기간이 끝나면, 후보자는 안수 사역에로의 부르심을 자세히 설명하는 공식적인 진술서를 작성하여 연회 안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3. 연회안수위원회 또는 그 하위 그룹은 후보자를 면접하고, 연회 안수위원회는 과반수 찬성으로 후보자 인준 여부를 투표합니다.

4. 인준을 받은 후보자는 집사 목사로 안수될 때까지 연회 안수위원회의 감독하에 영적 훈련 기간을 거쳐야 한다.

507. 안수를 위한 교육 요건. 1. **교육 목표.** 지식과 경건을 겸비하라는 존 웨슬리의 권고에 따라 글로벌감리교회에서 집사목사 또는 장로목사로 안수 받으려는 후보자는 준비 과정의 일부로 기본 교육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글로벌의 교회로서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세계 각 지역마다 다를 수 있지만(¶ 507.2), 모두는 모든 곳에서 우리의 목회자들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들기를 힘쓰"(딤후 2:15)위해 공부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2. **안수를 받는 길.** 교육 프로그램과 기회는 지역과 생활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글로벌감리교회 안에서 안수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가능한 최고 수준의 학습과 준비를 추구해야 한다. 장로 목사의 평생 사역을 준비하기 위한 북미 지역의 전통적인 학위는 일반적으로 목회학 석사(M.Div.)이지만, 성서학 석사(M.A.), 사역학 석사(M.Min.), 신학 석사(M.Th.) 또는 미국과 유럽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 성서학을 포함한 목회학 학사(B.A.) 등의 학위를 통해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환경, 연령 또는 생활 환경으로 인해 이러한 정식 학위 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어렵거나 실행하기 불가능한 개인은 안수위원회에서 승인한 교육 프로그램에서 비학위 목회학 수료증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소 아래에 설명된 핵심 수업을 이수해야 한다.

목회자 교육을 위해 승인된 학교 또는 프로그램 목록은 목회 및 고등교육위원회에서 관리한다. 2026년 1월 1일부터 안수 후보자들은 승인된 기관 또는 프로그램 목록에서 안수를 위한 교육 요건을 이수하기 위해 선택해야 한다. 2026년 1월 1일 이전에 학업을 마쳤거나 등록한 학생은 승인된 학교에서 학업을 마칠 필요가 없다.

글로벌감리교회는 안수를 받기 위해 해당 수준의 필수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위에 나열된 학위 또는 자격증 프로그램 중 하나 또는 결합된 과정을 인정할 것이다.

3. **집사 목사의 교육 요건.** 집사목사 안수 예정자는 총 10 과목(약 30 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이 10 가지 과정은 다음과 같다:

- 구약성서 개론
- 신약성서 개론
- 조직신학
- 웨슬리안 신학과 교리
- 글로벌감리교회의 감리교 역사와 정체
- 설교의 기초
- 목회 상담
- 전도와 선교
- 성례와 예배에 대한 웨슬리의 이해
- 귀납적 성경 연구 또는 해석학

4. **장로목사 교육 요건.** 이전에 글로벌감리교회에서 집사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은 다음과 같은 8 개의 필수 과정을 포함하여 최소 10 개의 추가 과정을 이수한 후 글로벌감리교회에서 장로목사 안수를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 종교개혁을 통한 기독교의 역사
- 기독교의 역사, 종교개혁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 변증학
- 웨슬리안 제자훈련과 영성 훈련
- 기독교 리더십/갈등 해결
- 추가 구약학 과목 1 개
- 추가 신약학 과목 1 개
- 성령 사역

선택 과목은 다음 영역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 선교 및 교회 갱신
- 다문화 사역과 전도
- 설교 고급과정
- 히브리어 또는 헬라어 연구
- 목회 상담
- 교회 재정과 행정
- 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환경에서의 임상목회교육(CPE)
- 종교 철학
- 이스라엘 현장 연구
- 신학 선택 과목
- 예배 신학
- 어린이 또는 청소년 사역
- 정의를 위한 복음의 비전
- 미디어 및 현대적 응용
- 지도 인턴십 또는 독립 연구

5. **글로벌의 교육위원회.** 목회 및 고등교육위원회의 일부로 글로벌 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 전 세계 다양한 지역에서 웨슬리 신학교육을 장려하고 연결하여 글로벌감리교회의 선교적, 신학적 목표에 부합하는 목회자 양성을 위한 일관된 기준을 보장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다.

6. **목회자를 위한 평생교육.** 집사목사나 장로목사로 안수받은 후, 목회자는 가능한 적어도 매년 수업, 수련회, 세미나, 연구 휴가 등을 통해 평생 학습을 계속해야 한다. 평생교육 시간은 휴가나 개인 시간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7. **목회학 프로그램 수업 인증 및 비학위 증명서.** 안수 및 고등교육위원회는 특정 교육기관의 강좌가 이 단락에 나열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각 연회 안수위원회는 개인이 수강한 과목이 이러한 영역에 충분히 부합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안수(목회) 및 고등교육위원회는 목회자 훈련을 위한 역량과 교과 과정을 추천하고, 연회 안수위원회와 함께 승인된 비학위 목회학 수료증 프로그램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고 감독해야 한다.

8. *요구사항의 변화*. 글로벌감리교회 내에서 교육 요건이 변경되는 경우, 교육 과정 중인 후보자는 교육을 시작할 당시 유효한 *교리와 장정* (*과도기적 교리와 장정포함*)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후보자가 교육 이수를 위한 적절한 진전을 보인다면 교육 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9. *과정 검토*. 목회 및 고등교육위원회는 자문위원회를 위한 인준위원회 및 목회위원회 대표들과 협의하여 안수에 필요한 과목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고 2026 년 총회에 권고안을 제출해야 한다.

508. 역사적인 질문. 집사목사 안수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른 질문과 더불어, 연회 안수위원회 또는 이에 상응하는 위원회의 면접 동안 "순회 설교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물었던 다음과 같은 역사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에 근거하여 평가를 받게 된다:

"(1) 그들은 하나님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가? 그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여 있는가? 그들은 하나님만 바라고 있나? 모든 대화가 거룩한가?

(2) 그 일을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인 은사가 있는가? 그들은 명확하고 건전한 이해, 하나님의 일에 대한 올바른 판단, 믿음에 의한 구원에 대한 공의로운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의롭고, 쉽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가?

(3) 열매가 있는가? 그들은 진정으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회심했으며, 신자들이 그들의 봉사를 통해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진 적이 있는가?

이러한 표시가 있는 한, 우리는 그들이 봉사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는다. 이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충분한 증거로 받아들인다."

장로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후보자는 요한 웨슬리 시대부터 감독들이 역사적으로 물었던 다음 질문에 대한 서면 답변을 안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당신은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2) 당신은 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3) 당신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기를 기대하십니까?

(4) 당신은 사랑 안에서 온전함을 추구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5) 당신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기로 결심했습니까?

(6) 당신은 우리 교단의 총칙을 알고 있습니까?

(7) 당신은 우리 교단의 총칙을 지키시겠습니까?

(8) 당신은 글로벌감리교회의 교리를 공부한 적이 있습니까?

(9) 당신은 충분히 검토한 결과, 우리의 교리가 성경과 일치한다고 믿습니까?

(10) 당신은 이를 설교하고 유지하시겠습니까?

(11) 당신은 우리의 교회 권징과 정체를 공부했습니까?

(12) 당신은 우리 교회 정부와 정체를 승인합니까?

(13) 당신은 이를 지지하고 유지하시겠습니까?

- (14) 당신은 공휴일의 사역을 실천하시겠습니까?
- (15) 당신은 모든 곳에서 어린이들을 부지런히 가르치겠습니까?
- (16) 당신은 집집마다 방문하시겠습니까?
- (17) 당신은 계율과 모범을 통해 금식이나 금욕을 권장하겠습니까?
- (18)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모든 시간을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까?
- (19) 당신은 사역에 있어서 부끄러울 정도로 빛을 지고 있습니까?
- (20) 당신은 다음 지침을 준수하시겠습니까?

(a)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결코 실업자가 되지 마십시오. 절대로 사소한 일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말고, 한 장소에서 꼭 필요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b) 시간을 엄수합니다. 정한 시간에 모든 것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c) 그리고 우리의 규칙을 고치지 말고 지키되 진노를 위해서가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 지키십시오.

509. 집사목사 안수. 글로벌감리교회 내에서 자격을 갖춘 후보자는 먼저 집사목사로 안수받아야 하며, 집사목사 안수 후에는 장로목사로 안수받을 수 있다.

1. 안수 질문. ¶507.3 의 교육 요건을 이수한 집사목사 안수 후보자는 연회 안수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의 면접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면접에 앞서 지원자는 다음 질문에 서면으로 답변해야 한다:

- (a)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했습니까?
- (b) 당신은 악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 (c) 당신은 은혜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 (d) 당신은 성도들의 삶과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 (e)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 (f) 당신은 부활이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십니까?
- (g) 당신은 성경의 본질과 권위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 (h) 당신은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 (i) 당신은 목회사역에 어떤 은사와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까?
- (j) 성직 안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 (k) 성례전의 역할과 의미는 무엇입니까?
- (l) 당신은 우리의 교회 장정과 정체 형태를 연구했으며 이를 지지하고

지키겠습니까?

(m) 교회의 증거를 위해, 당신은 그리스도인 삶의 가장 높은 이상을 위해 헌신하고, 개인적인 습관을 절제하며, 모든 관계에서 정직하고, 결혼한 경우 배우자와의 언약에 충실하며, 독신인 경우 개인적인 행동에서 순결함을 실천할 의향이 있습니까?

연회 안수위원회는 후보자가 글로벌감리교회의 교리, 윤리 원칙 및 규율에 대한 충분한 기초와 헌신을 입증하는지 평가해야 한다.

2. 연회 안수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집사 목사 안수 후보자를 면접한다. 연회 안수위원회의 면접과 개별 추천을 거쳐 연회 목회위원회의 3분의 2 투표와 감독의 인준을 받은 안수 후보자는 연회 정회원이 되고 감독의 안수를 통해 집사 목사로

안수받는다. 목회자 실무 회의는 다수결로 후보자를 개별적으로 또는 그룹의 일부로 처리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3. 집사목사는 장로목사 안수 및 연회 관계를 제외한 모든 사안에 대해 완전한 발언권과 투표권을 가진 연회 소속 목회자이다. 파송으로 사역하지 않는 집사목사는 비활동 집사 목사로 분류되며, ¶ 520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연회에서 투표권이 없다.

4. 집사목사는 감독에 의해 개체교회(목사 포함) 또는 다른 사역 환경에서 사역 팀의 일원으로 봉사하도록 파송되거나 감독의 승인과 파송을 받아 독자적인 직분을 확보할 수 있다.

5. 집사목사로서 장로 목사안수 소명을 고려 중이거나 감독 또는 감리사로부터 장로목사 직분에 대한 은사와 은혜가 인정되는 이는 개체교회에서 목사 직분에 파송될 수 있다. 그러한 파송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면, 그러한 파송을 수락한 집사는 집사목사로서의 모든 교육 요건을 마친 후 장로 목사 안수 입후보를 선언하고 장로 목사 안수를 위한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6. 국가 또는 지역 법률에 의해 해당되는 경우, 글로벌감리교회의 연대 구조 밖에서 사역하는 비활동 집사목사는 소속 연회 목회위원회와 감리사회가 결정한 보험 패키지(한도 포함)에 가입해야 한다. 이러한 보험에는 전문적 책임 및 위법 행위가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각 비활동 집사목사는 매년 소속 연회가 추가 피보험자로 등재된 보험 증명서를 감리사회와 안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510. 장로목사 안수 1. 장로목사로 안수 받기를 원하는 집사목사는 연회 안수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 해당 안수 입후보를 선언해야 한다. 그들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면 장로목사로 안수받을 자격을 갖는다:

a. 집사목사로서 최소 2년 이상 봉사한 기간 동안 신실하고 성숙하며 효과적임을 증명;

b. 507.4 ¶에 명시된 장로목사 안수를 위한 교육 요건을 이수.

c. 장로목사 안수를 위해 연회 안수위원회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관의 3분의 2 이상의 투표로 개별적으로 면접과 추천을 받음. 글로벌감리교회의 추천 목록에 없는 교육기관에 다니는 후보자를 평가할 때, 연회 안수위원회는 후보자의 과정과 준비가 글로벌감리교회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평가한다. 연회 안수위원회는 후보자가 글로벌감리교회의 교리, 윤리 원칙 및 규율에 대한 충분한 기초와 헌신을 입증하는지 평가해야 한다; 그리고

d. 연회 목사회회에서 연회 장로목사의 3분의 2 찬성으로 승인되고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목회자회의는 다수결로 후보자 개인 또는 그룹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장로목사는 연회의 정회원 목회자로서 모든 사안에 대해 발언권과 투표권이 있는 회원이다. 파송을 받았는데도 사역하지 않는 장로 목사는 비활동으로 분류되며 ¶ 520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연회에서 투표권을 갖지 못한다. 장로목사는 감독에 의해 감리사로, 담임 목사로서 지역 사역에, 개체교회 직원, 목사로, 전도사로 또는 기타 사역 환경에 파송될 수 있다. 장로목사는 감독 직책에 선출될 자격이 있다.

3. 국가 또는 지역 법률에 의해 해당되는 경우, 글로벌감리교회의 연대 구조 밖의 사역 환경에서 사역하는 현역 장로목사들은 소속 연회 안수위원회와 감리사회가 결정한

보험 패키지(한도 포함)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보험에는 전문적 책임 및 위법 행위가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각 비활동 장로목사는 매년 자신이 속한 연회에 추가 보험 가입자로 등재된 보험 증명서를 감리사회와 안수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511. 목회자 훈련 기금. 글로벌감리교회 연대 협의회는 목회자 교육을 위한 기금을 유지해야 한다. 인증을 받으면 후보자는 교육 요건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지원을 받는 목회자는 안수 후 5년 동안 사역해야 하며, 글로벌감리교회 내에서 사역하는 각 연도마다 대출 금액의 20%가 면제된다.

¶ **512. 전도사 1.** 연회 목회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감독은 ¶ 506.3에 따른 안수 후보자인 개인을 글로벌감리교회 내에서 전도사로 봉사하도록 파송할 수 있다. 후보자에게 멘토링을 제공할 장로목사를 배정하는 것은 연회 목회위원회의 책임이다.

2. "모든 신자의 만인 제사장직"이라는 성경적 원리를 인정하고, 모든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영적 필요를 위한 은혜의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전도사가 글로벌감리교회의 성례전의 신학과 실행에 관한 연회 목회위원회의 훈련을 이수한 후, 감리사 또는 감리사가 파송한 다른 장로목사의 지도 아래 세례와 성찬의 성례전을 집례할 수 있다. 감리사는 적절한 경우 전도사 후보생 멘토를 이 역할에 배정할 수 있다. 안수위원회는 감리교 전통 내에서 성례전 신학에서 수강한 모든 과목을 교육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3. 전도사는 해당 직책에 파송된 후 총 5년 이내에 집사목사 안수를 받아야 한다. 전도사의 교육 요건을 완료하기 위한 연장은 매년 안수 위원회에서 허가할 수 있다. 연장을 신청하는 전도사는 요청 사유와 교육 요건을 완료하기 위한 계획을 자세히 설명한 서면 계획서를 안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4. 전도사는 연회의 목회자로서 모든 사안에 대해 투표권은 없지만 발언권을 가진 회원이다.

513. 기관 목사직 및 기타 인준. 1. 안수(목회) 및 고등 교육위원회는 승인부 국장과 교단 인가 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교단 승인 위원회를 임명해야 한다. 승인부는 다음과 같은 사역 목표와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위원단에 보고해야 한다:

- (1) 지원서를 평가하고 교단의 인가가 필요한 전문 사역에 사람을 추천하고,
- (2) 채플린(기관목사)/기관 사역 환경에서 봉사하도록 파송된 사람들을 통해 전문적이고 목회적인 지원과 엄중한 책임을 제공하며,
- (3) 이러한 파송을 받아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 감독, 연회 및 개체교회에 설명해 주고 옹호하며,
- (4) 승인된 사역에 파송된 사람들을 위한 지속적인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 (5) 다른 종교 단체, 채플린(기관목사) 조직, 대학, 신학교 및 연회와 연락하여 제도적 및 세속적 환경에서 경계목회 사역에 대한 비전과 기회를 공유한다.

2. 연대 협의회는 재량에 따라 위에 나열된 목표의 지속적인 완료를 감독할 승인사역책임자를 선출할 수 있다. 총무는 안수 및 고등교육국 위원단과 협력하여 필요한 모금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시행하며 물류 지원을 해야 한다. 총무는 궁극적으로 0 연대

협의회에 책임을 지며 책임의 효과적인 수행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교단인가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 514. **전도자의 사역.**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현재 및 다가올 그리스도 왕국에 관한 복음을 말과 행동과 표징으로 설득력 있게 전하는 것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유일하게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주 예수를, 회개하고 믿도록 초대하는 것이다. 효과적인 전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부르며 거듭남을 경험하도록 인도한다(막 1:15, 눅 24:19-32, 행 2:22-47, 롬 10:9, 요 3:3-8).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라는 명령을 받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기쁨 부음과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전도자로 부르시고 교회에 주신다(엡 4:11~13). 이러한 평신도 및 목회자들은 사람들을 구원의 믿음으로 인도하고 그리스도의 지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복음으로 무장시켜 복음 전파를 강화하는 데 효과적이다. 모든 신자는 개체 교회와 연결되고, 성화되어 제자를 만들 수 있는 제자로 세워져야 한다. (마태복음 4:19, 에베소서 4:11-13, 사도행전 8:4-40, 사도행전 21:8, 마태복음 16:13-19, 마태복음 28:18-20)

1. **평신도 및 목회자 전도자 인증.** 글로벌 감리 교회의 전도자 자격은 개체 교회 차원에서 승인되고, 목회자 전도자에 대한 추가적인 책임과 모니터링은 연회 안수 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진다. 인증 기준은 다음과 같다:

a. 전도자로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스도께로의 회심, 그리고 이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글로벌감리교회는 평신도 전도자와 목회자 전도자를 모두 인정하고 축하한다.

b. 각 후보자는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믿음으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을 수 있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보여 주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

c. 각 후보자는 글로벌 감리교회의 **교리와 장정**을 수용하고 확인해야 하며, 전도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식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전에 1년간 글로벌 감리교회의 교인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d. 각 후보자는 교회 임원회 투표를 통해 소속 개체 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회 전도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목회자 전도자는 소속 연회 안수위원회의 승인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e. 전도자는 개체 교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전도 사역에 대한 팀 접근 방식을 통해 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제자로 양육되어 제자를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f. 평신도 및 목회자 전도자는 모든 계속 교육을 포함한 연례 사역 보고서를 소속 구역회와 연회 전도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목회자 전도자는 매년 연회 안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2. **집사목사와 장로목사의 전도자 파송.** 집사목사 또는 장로목사로서의 기준을 충족하는 전도자는 ¶610.10의 요건에 따라 전도자로 파송될 수 있다. 전도자로 개체 교회 사역 외의 직책에 파송되는 사람은 매년 연회 목사회의에서 확정된다.

¶ 515. **선교사의 사역.** 교회 역사를 통틀어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가 파송한 사람들은 다양한 문화권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먼 곳과 복음화되지 않은 민족 가운데서 제자를 삼으며, 신흥 기독교 공동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장하고 신앙을

나누며 자비의 선행을 행할 수 있도록 준비시켰다(마태복음 28:18-20, 로마서 15:20, 사도행전 1:8, 로마서 10:13-15, 에베소서 4:11-14, 에베소서 2:8-10). 그리스도의 대사인 이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부름받은 직업 선교사이다(고린도후서 5:11-15).

1. **평신도 및 목회자 선교사의 자격과 파송.** 글로벌 감리 교회 선교사 파송은 연회 안수 위원회의 승인과 감독을 받는다.

a. 글로벌 감리교 선교사로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타문화권을 향한 자신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여야 주어야 한다. 글로벌 감리 교회는 평신도 선교사와 목회자 선교사 모두를 인정하고 축하한다.

b. 각 후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자신의 회심에 대해 간증할 수 있어야 한다.

c. 각 후보자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믿음으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을 수 있는 은사를 주셨으며, 다른 제자를 재생할 수 있는 제자를 만들겠다는 헌신을 보여줌으로써 열매를 맺어야 한다.

d. 각 후보자는 글로벌 감리교회의 **교리와 장정**을 수용하고 확인해야 하며, 영적 훈련의 실천과 **총칙에 부합하는 성결의 모범에 대한 헌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e. 각 후보자는 글로벌 감리 교회 선교사로서 공식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전에 최소 1년 동안 글로벌 감리 교회의 정회원이어야 한다.

f. 각 후보자는 (1) 타문화 선교(**관점** 또는 연회 사역 위원회가 승인한 이와 유사한 훈련), (2) 구약과 신약, (3) 전도, (4) 제자 양육을 위한 준비(**발견 성경 공부 방법론**, 제자 양육 운동 소개 등) 훈련을 받아야 한다.

g. 각 후보자는 교회 임원회 투표를 통해 소속 개체 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회 선교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목회자 선교사는 소속 연회 안수 위원회의 승인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h. 각 후보자는 사역 현장에서 개인과 가족의 안녕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인 목회자/교인 돌봄과 지원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i. 선교사는 글로벌 감리교회 연대 협의회 또는 그 지명자가 결정한 대로 승인된 글로벌 감리교회 사역 또는 승인된 글로벌 감리교회 선교 파트너와 함께 (그리고 그 감독 하에) 사역해야 한다.

2. **집사목사와 장로목사의 선교사 파송.** 집사목사 또는 장로목사로서의 기준을 충족하는 선교사는 ¶ 610.10의 요건에 따라 선교사로 파송될 수 있다. 개체 교회 사역 이외의 직책에 선교사로 파송되는 개인은 매년 연회 목사회회에서 확정한다.

516. 목회자 자격 증명 이전. 1. 다른 기독교 교단에서 글로벌 감리교회로 전입을 신청하는 목회자(¶ 521에 명시된 목회자 제외)는 다음 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1) 추천서가 포함된 공식 이력서;

(2) 공식적인 심사 절차를 거친 교단의 안수 증명. 개체 교회, 네트워크 또는 협회에 의한 안수는 이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

(3) 고등학교 이후의 모든 교육에 대한 공식 성적 증명서, 그리고

(4) 가능한 경우, 목회자 본인의 서면 요청에 따라 전 소속 교단에서 보관하고 있는 모든 인사 파일 사본을 안수 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2. 지원자는 또한 다음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1) 신원 및 신용 조회, 심리 검사를 받는다.

(2) 지방감리사(PE)와 면담을 갖는다.

(3) 연회 안수 위원회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관과 면담을 갖는다. 글로벌감리교회의 추천 목록에 없는 교육기관에 다니는 후보자를 평가할 때, 연회 안수위원회는 후보자의 과정과 준비가 글로벌감리교회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평가한다. 연회 안수 위원회는 후보자가 글로벌 감리 교회의 교리, 윤리 원칙 및 장정에 대한 충분한 기초와 헌신을 입증하는지 평가해야 한다.

3.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면, 연회 안수 위원회의 3분의 2 투표, 허입을 신청하는 연회의 목회자 실무 회의 3분의 2 투표, 그리고 허입을 받아들이는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전입이 승인된다.

¶ 517. 다른 교단으로부터 전입한 목회자 파송 1. 안수 위원회의 추천과 연회 목회자 실무회의의 승인에 따라 감독은 신분이 양호한 다른 기독교 교단 소속의 목회자를 교단 소속을 유지한 채 임직 또는 초교과적 사역을 하도록 파송할 수 있다. 그들은 파송 받음으로 **유효한 집사목사 또는 유효한 장로목사이다**. 글로벌감리교회에서 파송을 받으면서 다른 교단 소속을 유지하는 목회자는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a. 안수 위원회가 준비한 신청서에 다음을 포함하여 작성하라:

i) 기독교 신앙과 사역의 소명에 대해 간증한다.

ii) 필요한 심리 검사, 범죄 경력 및 신용 조회, 성추행 또는 아동 학대 신고에 대해 공개하고 허가한다.

iii) 후보자가 중범죄 또는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성추행 또는 아동학대로 서면 고발된 적이 없음을 증명하는 공증된 진술서 또는 중범죄 또는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성추행 또는 아동학대로 서면 고발된 사실을 자세히 설명하는 공증된 진술서.

b. 글로벌 감리 교회 교리를 가르치고 지지하며 유지하는 동의서.

c. 안수 위원회와의 인터뷰를 통해 **교리와 장정**을 읽었으며 글로벌 감리 교회 장정과 정체를 지지하고 유지하겠다는 증거를 제시한다.

d. 다른 기독교 교단에서 안수받은 목회자로서 적합한 자격 증명을 제시한다,

e. 글로벌 감리교회의 집사목사에게 요구되는 것과 동등한 교육을 이수했다는 증거를 제시한다. 다른 교단이나 교회에서 안수를 받았지만 글로벌감리교회가 요구하는 교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목회자는 임시로 파송될 수 있으며, 임직 시작 후 3년 이내에 집사목사로서의 모든 교육 요건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요건 완료에 대한 진행 상황은 매년 표시되어야 한다.

2. 유효한 집사목사 또는 유효한 장로목사로 확인된 목회자는 연회에서 투표권을 부여받을 수 있으나, 다음의 사안에서는 제외된다.

a) 헌법 개정;

b) 총회 또는 연회 대의원 선출; 그리고

c) 안수 성격과 목회자의 연회 관계에 관한 모든 문제.

유효한 집사목사와 유효한 장로목사는 연회의 모든 이사회, 위원단 또는 위원회(사역 이사회 및 재단 이사회 제외)에서 봉사할 수 있다. 유효한 집사목사와 유효한 장로는 총회나 연회의 대의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3. 연회 회기 사이에, 연회의 다음 정기 목회자 회기에서 승인될 때까지 안수 위원회는 그러한 사람의 파송을 승인할 수 있다. 감독은 안수 위원회에서 승인 받은 사람을 임시로 파송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글로벌 감리교회의 교리, 권징 및 정체를 지지하고 유지하려는 그 사람의 이해, 수용 및 의지에 대해 사전 심사와 지속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518. 휴직 연회 안에서 목회자의 신분 변경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1. **자발적 휴직 절차.** 목회자는 의료적 필요, 가족 상황 또는 기타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최대 1년의 자발적 일시 휴직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파송의 과정에 있는 신분이 양호한 목회자에게도 마찬가지로 과도기적 휴직이 부여될 수 있다. 이러한 연회 지위 변경은 연회 목회위원회의 3분의 2의 추천을 받아 연회 목회자 과반수 찬성으로 승인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연회 회기 사이에 자발적 휴직은 감독의 추천과 감리사들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 안수(목회)위원회의 3분의 2 투표로 허가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자발적 휴직의 갱신은 매년 목사회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최대 5년의 기간 동안 이루어질 수 있다. 그 후에는 목회자는 목사회회의 과반수의 승인을 얻어 명예직 지위(¶ 518.7) 또는 선임지위(¶ 520)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어느 자격이든 해당 직책의 파송 자격이 중단되며 매년 자격을 갱신할 필요가 없다.

2. **자발적 휴직 조건** 자발적 휴직 중인 목회자는 연회 기금에 대한 청구권은 없지만, 본인의 기부금을 통해 연회 건강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수 있다. 이들은 연회 위원단 0, 위원회 또는 이사회에서 봉사할 수 있으며 총회에 목회자 대의원을 선출하는 투표권을 가진다. 6개월 이상 자발적 휴직 중인 사람은 활동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며, 목회자 대의원 선출을 제외하고는 연회에서 투표권을 갖지 못한다.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연회의 회원으로서 발언권을 가진다. 이들은 자원봉사자로서 시간제 무급 사역에 계속 참여할 수 있다. 자발적 휴직 중인 연회원은 자신의 행동과 사역 수행에 대해 연회에 계속 협조해야 한다.

3. **안식년 휴직.** 6년 연속 전임으로 근무한 목회자는 학업, 여행 또는 갱신 프로그램을 위한 안식년 휴직을 받을 수 있다. 3개월 이하의 안식년 휴직은 감리사의 승인을 받아 목회 협력 위원회에서 허가할 수 있다. 최대 1년의 장기 안식년 휴직은 연회 안수(목회)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개월 이하의 안식년 기간 동안 목회자에 대한 보상은 개체교회가 계속 감당한다. 더 긴 안식년은 관련 개인의 책임이지만, 교회와 다른 사람들의 지원이 권장된다.

4. **비자발적 휴직 절차** 비자발적 휴직은 감독, 감리사 3분의 2, 연회 목회위원회의 3분의 2 찬성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징계 또는 기타 조건(예: 치료, 교정 교육 등)이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비자발적 휴직 처분을 내리려면 연회 목사회회의에 참석한 목회자 3분의 2의 투표가 필요하다. 비자발적 휴직 절차에서는 공정한 행정 청문회 과정을 따라야 한다(¶ 905-906). 감독과 감리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비자발적 휴직 종료가 발의되면, 연회 목회위원회는 휴직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분

부여와 관련된 상황을 검토해야 한다. 목회위원회에서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자발적 휴직을 계속할 수 있다. 비자발적 휴직은 처음 허가된 날로부터 최대 5년 동안 계속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안수(목회)위원회는 행정처분을 추적해야 한다(¶ 518.7). 비자발적 휴직을 종료하려면 안수위원회의 3분의 2 투표와 목사회회에서 목회자 3분의 2 투표가 필요하다.

5. **비자발적 휴직 조건.** 비자발적 휴직 중인 목회자는 연회 기금에 대한 청구권이 없으며 연회는 휴직 기간 동안 급여, 연금 또는 기타 혜택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지만, 목회자는 본인의 부담으로 연회 건강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자격이 있을 수 있다. 비자발적 휴직 중인 목회자는 지방회 또는 연회의 위원단, 위원회 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이들은 연회에서 발언권이나 투표권이 없는 비활동 상태에 있어야 하며, 총회 대의원이 될 수 없고 목회자 대의원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비자발적 휴직 중인 연회원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연회에 계속 복종해야 하며 휴직 기간 동안 공식적인 사역 행위에 참여할 수 없다.

6. **출산 및 육아 휴직** 모든 목회자(목회자 부부의 경우 두 배우자 모두 포함)는 입양 또는 양육을 목적으로 자녀를 출산하거나 가정에 입양한 경우 최대 3개월 또는 교회가 위치한 관할 지역의 법률에서 정한 기간 중 더 긴 기간 동안 출산 또는 육아 휴직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휴직은 감리사와 협의하여 목회 협력 위원회가 허가한다. 휴직 기간 동안 목회자의 연회 신분은 변경되지 않으며, 건강 및 복지 플랜은 그대로 유지된다. 병가, 휴가 또는 기타 휴가를 포함할 수 있는 보상은 급여를 지급하는 단위에서 교회가 결정한 기간 동안 또는 봉사한 교회가 위치한 관할권의 법률에 따라 둘 중 더 큰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7. **명예로운 사직 혹은 행정적 해임** 명예로운 사직(동의 하에) 또는 행정 해임(동의 없이, JPP 2.2c 및 3)에 배치된 사람은 더 이상 연회 회원이 아니다. 그들은 연회에서 특별히 발언권을 부여하지 않는 한 연회에서 발언권이나 투표권을 갖지 못한다. 회원 자격은 본인이 선택한 개체교회에서 담당 목회자의 서면 동의와 행정적 해임의 경우 목회 협력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들의 모든 목회적 봉사는 교인 자격이 있는 교회/단체로 제한되며, 담임 목회자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한다.

519. 협동 목회자 회원. 1. 453에 규정된 대로 글로벌감리교회와 언약 관계를 맺고 있는 에큐메니컬 교회에서 시무하는 타 교단 소속 목회자는 그 언약 교회가 속한 연회의 협동 목회자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2. 소속 연회와 다른 연회에서 시무하는 목회자는 원래 소속 연회의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면서 시무하도록 파송된 연회의 협동 목회자 회원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3. 특별 연회에 소속된 목회자 회원은 파송된 지역 연회의 협동 회원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4. 목회자 회원, 특히 다인종 또는 다문화 파송 목회자는 특별 연회에서 협동 목회자 회원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5. 협동 목회자는 자신이 협동 목회자로 속한 연회의 목회자 회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나 다른 회의에는 발언권만 가지고 참여할 수 있다.

¶ 520. **선임(은퇴, 원로) 신분.** 성경의 모범에 따라 목회자나 평신도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서 은퇴할 수 없다. 그러나 파송직으로 시무하는 목회자는 연회 내에서 목회위원회

과반수와 목회자 회의 과반수의 승인을 받아 선임직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자격에 대한 필수 연령은 없다. 선임 신분은 목회자가 감독으로부터 사역 파송을 수락할 의무에서 면제되지만, 선임 신분 목회자는 자격을 갖춘 모든 사역 환경에 대한 감독의 임명을 자발적으로 수락할 수 있다. 명예감독을 포함한 원로 목회자는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연회에서 발언권과 투표권을 모두 행사할 수 있는 현역 지위를 유지한다:

a) 글로벌감리교회에 가입한 날로부터 7년 이내 또는 마지막 파송 종료일 중 더 늦은 날에 연회 회기 최소 90일 전에 연회 서기에게 투표권자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한 경우, 또는

b) 감독으로부터 최소 4분의 1일 이상의 파송을 받은 자(통지 필요 없음). 앞 문장에 따라 자격이 없는 선임목회자는 연회에서 발언권은 보유하지만 투표권은 갖지 않는다. 선임지위에 있는 사람은 현역이든 비활동이든 상관없이 총회 대의원으로 선출되어 지방회나 연회의 위원회(commissions), 위원회(committees) 또는 이사회에서 봉사할 수 있다.

¶ 521. 경과 규정.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글로벌감리교회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는 2026년 12월 31일에 만료된다.

1. 연합감리교회의 현재 또는 전 안수 받은 목회자는 연회 목회위원회에 신청하여 글로벌감리교회의 목회자로 받아들여지고 안수 받은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신청서에는 신청자의 안수증 사본이 첨부되어야 하며, 글로벌 감리 교회 교리와 장 정에 명시된 교리와 사회적 증언에 대한 서면 확인과 장정을 준수하겠다는 동의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신청자는 신원 조회에 동의해야 한다. 연회 안수 위원회는 신청서를 검토하고 접수된 각 신청서에 대해 투표한다. 각 신청서에 대한 찬성 투표가 이루어지면 신청자는 연회 목사회회에 추천되어 투표를 받게 된다. 목회자 회의가 긍정적으로 투표하면 신청자는 목회자 회원 자격이 인정되고 글로벌감리교회 내에서 안수 예정자 지위를 부여받는다. 안수 위원회는 연회 회기 사이에 목회자를 승인할 수 있다.

2. 연합감리교회의 현직 또는 전직 협동 회원 및 인허 받은 본처 목사들.

a. 연합감리교회의 현재 또는 전 준회원 또는 인허 받은 본처목사인 사람은 글로벌 감리교회에 목회자 회원 자격을 신청하고 집사목사 또는 장로목사로 안수받을 수 있다. 각 신청서는 연회 안수위원회 또는 그 소위원회에서 평가한다. 신청서에는 연합 감리교회에서 봉사한 증명서 또는 면허증 사본, ¶ 507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이수한 과정의 성적증명서, 글로벌 감리교회 교리와 장정에 명시된 교리와 사회적 증언에 대한 서면 확인서 및 규율을 준수하겠다는 동의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장에 규정된 집사목사 또는 장로 안수 자격을 갖춘 사람은 연회 안수위원회의 추천과 연회의 승인을 받아 연회의 지정된 예배에서 안수받는다. 협동 회원 또는 인허 받은 본처 목사가 장로목사 안수를 위한 교육 요건을 충족하고 연합 감리교회에서 2년 이상 시무한 경우, ¶ 510.1a의 최소 집사목사 시무 기간 2년은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교역자회의 승인을 받아 집사 및 장로목사로 안수 받을 수 있다. 안수위원회와 연회 목회자 실무회의의 승인을 받으면 한 개인은 같은 연회 회기에서 장로목사와 집사목사로 안수 받을 수 있다.

b. 연합감리교회의 현재 또는 이전에 인증을 받은 본처목사들이 글로벌감리교회에서 집사목사 또는 장로목사로 안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1년 임기의 본처 목사로서 인증을 부여 받을 수 있다. 과도기적 본처 목사의 신분은 연회

총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시작되며, 매년 연회 안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대 3년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이 조항에 따라 부여된 인증에 따라 사역하는 목사는 인증이 있는 동안 글로벌감리교회의 목회자가 되며, 파송시 성례 권한을 가지며, 집사/장로목사 안수와 집사/장로목사회의 관계를 제외한 모든 문제에 대해 완전한 발언권과 투표권을 가져야 한다. 그러한 사람은 자신이 파송된 연회의 안수 위원회와, 총감리사 또는 감독이 파송한 지도 장로목사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

안수 위원회는 연회 회기 사이에 과도기적 분처 목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승인할 수 있다.

3. 목회자는 파송된 연회 소속으로 배치되거나 연대 안의 다른 연회로 전출될 수 있다. 목회자는 해당 연회의 감독으로부터 파송을 받아야 한다.

4. 연합 감리교회 또는 다른 웨슬리안 전통에서 입후보 과정에 있는 사람 중 글로벌 감리교회에 소속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안수위원회가 연회 목회자회의에 추천하거나, 연회 기간 사이에는 안수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연회에 가입할 수 있다. 후보자는 ¶ 506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연합 감리교회 또는 다른 웨슬리안 전통의 교회에서 최소 1년 이상 회원 자격을 유지해야 ¶ 506의 회원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후보자는 이전 지방회 또는 연회가 보유한 모든 후보자 파일 사본을 후보자 자격을 부여하는 기관에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다른 교단에서 이러한 문서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연회 안수 위원회 또는 그 산하 기구는 가능한 모든 문서를 통해 후보자의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후보자들은 연합 감리교회 또는 다른 웨슬리안 전통에 속한 과정의 지점에서 계속 진행해야 하며 이미 이수한 단계나 요건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 후보자는 이 장에 열거된 요건에 따라 후보자 과정을 계속 진행하되, 후보자가 후보자 시작 시점에 유효한 *과도기적 교리와장정* 또는 *교리와 장정*에 명시된 절차의 적용을 받도록 선택할 수 있다.

5. 감독제도 또는 장로치리 제도를 따르는 교단에서 인정되고 안수 받은 목회자는, 그 안수가 인정되어 글로벌 감리 교회에 가입할 수 있다. 개체 교회나 회중 교회에서 안수를 받은 회중 체제에서 온 목회자는 전입과정의 일환으로 글로벌 감리 교회 내에서 안수를 신청해야 한다(¶ 516).

6. 연회 안수 위원회는 재량에 따라 연회 회원 및 안수 후보자의 자격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청원에 따라 이 단락의 요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제 6 부 감리직

¶ 601. **감리직의 성격** 사도시대부터 특정한 사람들이 구별되어 사도적 신앙을 수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교회의 사명을 이끄는 임무를 맡아왔다. 이 사도적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공유하지만, *에피스코포스*(감독자라는 뜻) 또는 감독이라는 역사적인 직분에서 가장 분명하게 표현된다. 초대 감리교 감독인 토마스 코크와 프란시스 애즈베리는 글로벌 감리교회의 모든 감독이 공유할 복음주의와 선교 정신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글로벌 감리 교회는 초대교회의 감독제도를 그 원형으로 삼고, 감리교 감독들의 역사적 계보에서 비롯된 감독직에 의해 인도되고, 세움 받으며, 감독받는다. 우리는 감독과 장로 목사가 동일한 신약 성직의 표현이라는 요한 웨슬리의 확신을 공유한다. 따라서 글로벌 감리교회의 감독은 별도의 직분이 아닌 전문 사역을 대표하며, 안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봉헌된다. 감독의 역할은 우리 교단의 *교리와 장정*이 허용하는 기간동안 유지되는 신성한 책임이다. 평생직분이 아니다. 감독직은 교회가 우리의 선교지인 외부를 향해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 감독들은 교권적 직분의 멍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진정성 있고 겸손하며 복음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야 한다. 글로벌 감리 교회의 감독들은 함께 모여 영적, 현세적 문제에서 우리 교단을 이끄는 총감리직을 구성한다.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소명은 감독직을 넘어 총감리사들, 지방감리사들, 장로목사들에게까지 확장되며, 이들은 각각 고유하면서도 공동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

섹션 I. 감독직

¶ 602. **역할 및 자격.** 감독은 장로목사 신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선출되며, 교회의 사명을 지원하는 비전 있는 종의 리더십, 전반적인 감독 및 지휘 사역을 위해 성별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감독들은 교회의 신앙, 직분, 예문, 교리 및 장정을 수호할 책임이 있다. 그러한 지도자들이 갖출 제자도의 기초는 개인적인 고결성, 영적 훈련, 성령의 기쁨 부으심과 능력으로 특징지어지는 삶에 있다. 감독은 진실한 신앙과 정직한 도덕성을 지닌 사람이어야 한다. 그들은 격려의 은사, 활기차고 새로운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총회가 채택한 교회의 비전에 대한 헌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감독 후보자는 또한 전도, 제자도, 선교에서 효과적으로 교회를 이끈 강력한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웨슬리의 관점에서 역사적인 기독교 신앙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고 전달할 수 있는 능력과 헌신으로 우리 교단의 교리와 정체를 유지하기 위해 흔들림없이 헌신해야 한다. (요한복음 21:15-17, 사도행전 20:28, 베드로전서 5:2-3, 디모데전서 3:1-7)

¶ 603. **일반 책임.** 교회의 총감독으로서 감독에게는 다음과 같은 책임이 부여된다:

1.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고백하는 글로벌 감리교회의 영적, 현세적 업무를 이끌고 감독하며, 특히 교회가 세상에서 증거하고 봉사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2. 성경과 전통에 표현되어 있고 웨슬리의 관점에서 이해되는 사도적 신앙을 단체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지키고, 전수하고, 가르치고, 선포한다.

3. 교회를 "성도들에게 단번에 맡기신"(유다서 3 장) 신앙에 기초하여 감독의 역사적 직분의 하나인 "가르침"을 되찾고 행사하며, 현 시대의 도전과 기회에 우리의 신학을 적용할 수 있도록 평신도 지도자와 목사 지도자를 훈련시킨다.

4. **교리와 장정**에 규정된 대로 교회의 직분, 교리, 규율을 수호하고, 전달하고, 옹호하고, 집행한다.

5. 지정된 대로 총회와 연회를 주재한다. 감독은 총감리사나 명예 감독에게 연회 주재를 위임할 수 있다.

6. ¶ 607에 따라 연회 연대협의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구, 총감리사 목회협력 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구, 감리사회와 협의한 후, 연회 연대협의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구의 동의를 받아 총감리사를 연회에 파송한다.

7. 파송 결정과 감독에 대한 책임을 총감리사와 감리사회에 위임한다.

8. 각 연회의 목회자 파송은 총감리사 및 연회 감리사회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9. 감독을 봉헌하고, 장로 목사와 집사 목사를 안수하고, 선교사를 파송한 후, 해당 개인의 이름을 각각 직분에 맞게 기록하고, 각 직분에 맞는 자격 증명서를 제공한다. 이러한 직책을 위한 예배는 교단 전체의 행위이므로 본문과 지침은 총회가 승인한 형식으로 사용해야 한다.

10. 성경적 헌금 원칙을 가르치는 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임과 동시에, 아낌없는 기독교인 헌금을 장려하고, 지원하고, 모범을 보인다.

11. 사역과 선교에서 기독교적 일치성을 추구하고, 다른 기독교 공동체와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리더십을 제공한다.

12. 교회 전체의 복음 증거를 장려하고 지원한다.

13. 글로벌 감리교회의 선교 전략을 실행하고 다양한 연대의 각 부분 간의 관계 영역을 육성하기 위해 전반적인 연대 지역을 여행한다.

¶ 604. 감독 선출. 다음 조항은 글로벌 감리 교회의 감독 선출에 관한 지침이다:

1. 계획된 정기 총회 개최 12개월 전에, 정식으로 선출된 연회 대표단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해야 한다:

a. 소속 연회에서 최대 한 명의 목회자를 감독으로 지명하고, 소속 연회 밖에서 최대한 명의 목회자를 감독으로 지명할 수 있다. 이 추천에 현재 활동 중인 감독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각 지명자에 대해 글로벌 감독 위원회의 규정에 맞게 평가 및 배경 정보를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후보자 추천서와 증빙 서류는 글로벌 감독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b. 지역 감독 위원회에 평신도 한 명과 목회자 한 명을 선출한다. 그렇게 선출된 회원은 감독으로 피선거권이 없다.

2. 글로벌 감독 위원회는 늦어도 정기 총회 개최 90일 전까지 모든 감독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여 발표해야 한다. 재선거에 입후보할 자격이 있고 입후보할 의사가 있는 감독들의 명단도 공개된다.

3. 총회 개최 후 90일 이내에 지역 감독 위원회에서 봉사하도록 선출된 모든 사람으로 구성된 본회의가 소집되어 글로벌 감독 위원회가 추천한 감독의 수에 따라 감독 지역을 정하되, 6~8개 연회로 구성된 지역을 기준으로 한다. 글로벌 감독 위원회 의장이 회장이 된다. 감독 지역은 지리적으로 인접할 필요는 없으며 국제적으로 구성될 수도

있다. 현직 감독과 글로벌 감독 위원회 위원은 발언권은 있지만 투표권은 없다. 감독 지역에 대한 계획은 감독권에 관한 지역위원회 전체 모임의 단순 과반수 찬성으로 승인된다. 감독 지역 조정 계획은 총회에 앞서 총회가 모일 때마다 재검토되어야 한다.

4. 각 지역 감독 위원회는 소집하여 자체 지도부를 선출하고 원하는 대로 감독 후보자들에 대한 면접을 실시해야 한다. 각 지역 감독 위원회는 감독 지역과 글로벌 감리교회가 필요로 하는 지도력에 가장 부합하는 최대 5명의 후보자 명단을 작성해야 한다. 이 순위 명단에는 현역 감독들이 포함될 수 있으며, 최소한 총회 30일 전에 글로벌 감독 위원회가 총회 대의원들과 공유해야 한다. 이 과정을 돕기 위해 지역 감독 위원회는 글로벌 감독 위원회가 공개한 관련 기밀 문서에 접근할 수 있다. 동일한 후보가 두 개 이상의 지역 감독 위원회에서 가장 선호하는 후보인 경우, 글로벌 감독 위원회는 투표 절차에 앞서 총회 대의원들에게 지침을 제공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수 있다.

5. 감독은 총회의 전체 총대들에 의해 각 감독구에서 선출된다. 대의원은 동일한 투표용지에 두 개 이상의 감독구에 대해 동일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없다. 감독구에서 감독을 선출하려면 최소 60%의 지지가 필요하다. 한 후보가 동일한 투표용지에서 두 개 이상의 감독구에 대해 가장 많이 선택된 경우, 글로벌 감독위원회는 다음 투표 전에 대의원들에게 지침을 발표할 수 있다.

6. 감독직에 선출된 사람은 역사적인 방식에 따라 총회에서 시무하게 된다.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위하여*, 2024, 씨드베드출판사 참조. 256~261 페이지)

7. 감독의 실제 임기는 총회에서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감독이 봉헌된 총회가 폐회된 후 60일 후에 시작된다.

8. 감독은 최대 두 번의 6년 임기를 수행할 수 있으나, 스콧 J. 존스 감독과 마크 J. 웹 감독은 2026년 총회에서 입후보할 수 있다. 창립 총회 소집에서 감독으로 선출된 사람은 존스 감독과 웹 감독을 제외하고는 2026년 총회에서 출석하여 투표한 대의원의 4분의 3(3/4)의 지지를 받지 않는 한 2026년 총회에서 감독권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새로 선출된 감독의 1/2 이상은 6년 임기의 감독으로 재선될 수 없다. 웹 감독과 존스 감독은 새로운 반쪽(1/2) 숫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웹 감독과 존스 감독을 제외한 2024년에 선출되는 감독의 절반 이상이 투표용지에 포함되는 데 필요한 3/4 기준에 도달하는 상황에서,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후보자는 1/2 기준에 도달할 때까지 가장 많이 득표한 후보로 결정된다.

섹션 II. 글로벌 감독 위원회

¶ 605. **글로벌 감독위원회.** 총회에서 선출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글로벌 감독위원회가 있다.

1. 연대 협회의는 글로벌 감독 위원회에서 봉사할 인물들의 추천을 받아 지역, 인종, 성별을 고려하여 다양한 평신도 6명과 목회자 6명의 후보 명단을 작성하여 총회 30일 전에 공개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총회 대의원들은 회의장에서 추가적으로 후보를 공천할 수 있다. 모든 후보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평신도 위원 6명과 목회자 위원 6명을 선출하는 투표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모든 대의원은 평신도와 목회자 후보 모두에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선출을 위해서는 출석하여 유효한 투표를 한 대의원 중 최소 60%의 지지와 1표의 찬성이 필요하다. 누구도 6년 임기를 두 번 이상 연속해서 수행할 수

없다. 선거가 끝난 후, 연대협의회는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글로벌 감독위원회에 목회자 위원 2명과 평신도 위원 2명을 추가할 수 있다.

2. 글로벌 감독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임원을 결정하고 선출한다. 연대 운영 책임자는 그러한 임원을 선출하는 회의의 의장이 된다.

3. 글로벌 감독위원회 위원이 교단의 감독으로 지명되는 경우, 해당 위원의 글로벌 감독위원회에서의 시무는 감독으로 지명되는 즉시 종료된다. 글로벌 감독위원회의 나머지 위원들은 그 사람의 남은 임기 동안 봉사할 목회자를 선출한다.

4. 선출된 사람은 선출된 총회 회기 종료 후 60일 후에 임기가 시작되지만, 선출된 사람은 선출된 후 임기 시작 사이에 개최되는 글로벌 감독위원회 회의에 발언권(투표권 없음)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다. 2024년에 선출된 사람은 선출과 동시에 사역을 시작한다.

5. 글로벌 감독위원회는 다음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최소한 반기마다 모임을 갖는다:

- a. 글로벌감리교회의 건강하고 효과적인 감독직 육성.
- b. 교단과 감독의 업무, 필요, 기대, 도전과제 소통.
- c. 지역 감리사 위원회의 의견을 포함한 절차를 통해 매년 각 현직 감독 평가.
- d. ¶ 604에 설명된 대로 새 감독에 대한 공천 절차 안내.
- e. 감독의 안식년, 사직 및 기타 휴직 승인.
- f. 감독에 대한 불만 사항 접수 및 조사. 위원회는 글로벌감리교회의 *사법 관행 및 절차*에 따라 감독을 정직시키고, 해결을 위한 대응을 준비하며, 필요한 경우 감독에 대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g. 생활비의 지역별 차이, 감독 지역의 목회자 평균 급여, 환율 등을 고려하여 사례 금액을 책정. 감독에게 적절한 보수, 건강 보험, 연금 부담금, 출장 및 사무실 비용을 제공할 책임은 총회가 부담한다. 글로벌 감독위원회는 일반 예산의 한계를 준수해야 한다.
- h. 연대 운영 책임자와 협력하여 각 총회에 가져갈 감독들의 공동 경비 제안서 개발.

섹션 III. 감독회의

¶ 606. 감독회의 임시 감독을 포함한 감독들은 선출과 봉헌을 통해 감독회의의 구성원이 되며, 특별한 언약으로 함께 묶여 있다. 감독회의는 감독 리더십의 공동체적 표현으로서 교회에, 그리고 교회에서 세상에 목회적으로 발언한다. 감독회의는 모든 현역 감독으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갖는다:

1. 상호 신뢰, 관심, 책임감을 바탕으로 구성원들의 성화와 복지를 이끌어내는 신앙 공동체 제공.
2. 글로벌 감독위원회와 협력하고 협의하면서 사랑으로 서로 돌봄.
3. 교회의 성장, 활력, 확장을 위한 계획 세움.
4. 교회 선교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대로 감독회의 조직.
5. 오류를 바로잡고, 신학적이고 도덕적인 지침을 제공하며, 신앙을 심화시킬 수 있는 교육 문서 발행.
6. *교리와 장정*에 정의된 대로 한시적 리더십 행사.
7. 파송 과정에서 효과적인 상담 보장.

8. 글로벌감리교회의 *사법 관행 및 절차*에 설명된 대로 교회 재판을 주재할 훈련되고 자격을 갖춘 사람 지정.
9. 연대 협의회에서 선출할 연대 운영 책임자 지명.
10. 글로벌감리교회의 에큐메니칼 사역을 이끌고 교회가 더 큰 연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목양.

섹션 IV. 총감리사

¶ 607. 연회 감리직. 연회 총감리사는 각 연회를 영적, 현세적으로 지도하기 위해 연회 연대협의회 또는 이에 준하는 위원회, 연회 감리사회 또는 이에 준하는 위원회, 연회 연대협의회 또는 이에 준하는 위원회의 감리사회(cabinet) 또는 이에 준하는 감리사회의 동의를 얻어 감독이 파송하는 장로 목사를 말한다. 두개 이상의 관련된 연회들이 투표를 통해, 한 명의 총감리사가 이끌어 가도록 합의할 수 있다. 총감리사의 최초 임기는 6년이며, 매년 연임이 가능하여 총 12년까지 역임할 수 있다.

1. 총감리사에게는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다:
 - a. 연회 지도자들과 협력하여 글로벌감리교회의 비전과 사명에 부합하는 연회의 비전을 설정하고 명확하고 분명한 선교 전략을 수립한다.
 - b. 연회의 목회자, 평신도, 교회가 연회의 비전과 선교 전략을 수용하고 실행하도록 격려하고, 영감을 주고, 동기를 부여한다.
 - c. 평신도와 목회자 모두에게 영적 리더십을 제공하여 개체교회를 강화하고 성장시킨다.
 - d. 연회의 재정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총괄적으로 감독한다.
 - e. 행정 및 사법 절차에서 목회자와 평신도를 위한 공정한 절차를 보장한다.
 - f. 지방감리사 그리고 감독과 상의하여 지방회(또는 이에 준하는 회의)를 조직한다.
 - g. 감독이 지방감리사들을 임명할 수 있도록 추천한다.
 - h. 연회 감리사회를 소집하고 감독한다.
 - i. 지방감리사들과 상의하여 *교리와 장정*이 지시하는 대로 연회에서 파송을 확정하고 감독의 승인을 받는다(¶ 610).
 - j. 선교 전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순회, 구역, 교회 또는 선교 교회를 나누거나 통합한 다음 적절한 파송을 권고한다.
 - k. 한 연회의 목회자가 다른 연회로 이동할 경우, 받아들이는 연회 총감리사의 요청에 따라 전입할 수 있으며, 해당 목사가 전입에 동의하는 경우, 전입하는 연회와 보내는 두 연회의 총무와 연회 안수 위원회에 목사 이동에 관한 서면 통지를 적시에 보내야 한다.
 1. 필요에 따라 각 목회자에 대한 적절한 인사 및 감독 기록을 보관하고 유지해야 한다. 각 목회자에 대해 하나의 파일만 유지되며, 이 파일에는 인사 및 감독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목회자는 자신의 파일 전체를 열람 할 수 있으며 파일에 포함된 모든 정보에 대한 대응을 추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m. 정해진 연회 규정에 따라 연회 지도자 팀(또는 이에 상응하는 팀)의 의장을 맡는다.

n. 총감리사는 안수 위원회 의장 및 지방 감리사들과 협의한 후 안수 위원회에서 봉사할 목회자와 평신도를 공천한다.

o. 글로벌 감리교회의 *사법 관행 및 절차*에 따라 조사 위원회(¶ 710.6)와 행정 심사 위원회(¶ 710.7)를 추천한다.

p. 지정된 감독이 없는 경우 감독을 대리한다.

q. *교리와 장정*이 지시하는 기타 의무를 수행한다.

2. 연회와 총감리사 간의 건강한 관계를 조성하기 위해 총감리사 위원회 또는 이에 상응하는 위원회를 선출해야 한다. 각 총감리사는 감독이 승인한 절차에 따라 매년 평가를 받아야 한다.

섹션 V. 지방 감리사직

¶ 608. **선출 및 배치** 정회원 장로목사는 총감리사의 추천을 받아 감독에 의해 지방 감리사(PE)로서 한 지방회(또는 이에 준하는 지방회)를 이끌도록 파송될 수 있다. 지방감리사는 매년 효율성 평가를 거쳐 임명된다. 지방감리사는 통산 12년을 초과하여 시무할 수 없으며, 연회 연대 협회의(또는 이에 준하는 회의)에서 매년 연장하고 총감리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감리사(PE)를 선출할 때 감독과 총감리사는 글로벌 감리교회의 포용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406).

¶ 609. **지방감리사(PE)의 책임.** 감리사는 감독 및 총감리사의 연장선으로 자신이 임명된 지방의 지역사회에서 목회자와 교회의 사역을 감독한다. 지방감리사(PE)는 목회 공백이 발생하거나 목회자가 임명되지 않은 모든 목회 책임의 대리 관리자이다.

지방감리사(PE)에게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책임이 있다:

1. 교회와 목회자의 사역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와 관련하여 교회와 목회자를 지원하고 돌보며 조언을 제공한다.

2. 감독과 함께 웨슬리적 관점에서 성경과 전통에 표현된 사도적 신앙을 지키고, 전수하고, 선포하며, *교리와 장정*에 명시된 대로 교회의 교리와 규율을 전달하고 옹호한다.

3. 선교적 책임감을 제공하는 지방의 주요 선교 자원이 되어 지방 내 교회 및 지역 공동체와 협력하여 그들의 상황을 평가하고 이해하며 지역 교회의 사역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리더십을 개발한다.

4. 연회 안수위원회가 정한 바에 따라 목회자를 파송하고 자격을 갖추고 훈련받은 평신도 사역자를 배치하는 과정에서 감독, 총감리사, 감리사회와 협력한다.

5. 목회 후보자 모집을 위한 효과적인 시스템을 개발한다.

6. 평신도 지도자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지방회 내에서 충실하고 효과적인 사역 시스템을 개발한다.

7. 지방의 목회자와 평신도들 사이에 언약 그룹, 반 모임, 밴드 모임을 장려한다.

8. 상담과 감독을 위해 목회자와 정기적으로 연락을 유지하고, 각 파송 목회자 또는 지명된 평신도의 계속 교육, 영적 훈련, 현재 사역 활동, 향후 사역 목표 등이 포함된 서면 또는 전자 평가를 받는다.

9. 총감리사의 지시에 따라 감리사는 연장 사역 중인 목회자를 포함하여 구역에 파송된 모든 사람의 적절한 기록이 적절하게 유지되도록 촉진해야 한다.

10. 감리사는 총감리사의 지시에 따라 지방회의 재산, 기부금 및 기타 유형 자산을 다루는 적절한 기록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11. 감독, 총감리사, 감리사회와 협의하여 목회자 파송의 재조정, 더 큰 교구, 협동 교구, 복수 직원 구성, 새로운 교회개척, 에큐메니칼 공동 사역 등 지방회에서 가능한 최선의 목회자 전략적 배치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한다.

12. 총감리사 및/또는 감독이 지방회 또는 연회 내 개체교회의 건강과 효과를 지원하기 위해 결정한 기타 지도력 책임을 맡는다.

섹션 VI. 파송

¶ 610. 파송에 대한 고려 사항 및 기준 1. 개체교회가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사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강화하고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감독은 목회자를 파송하고 이러한 파송은 매년 연회에 보고해야 한다.

2. 파송은 교회와 기관의 필요와, 특성, 그리고 기회, 파송자의 은사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를 고려하고 개방적인 파송에 대한 우리의 약속에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개방형 순회 제도란 인종, 부족 또는 민족 출신, 성별, 장애, 결혼 여부 또는 연령에 관계없이 파송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3. 교회에 자원을 지원하고 개방적인 순회목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회 간 약속을 장려해야 한다. 양호한 신분의 목회자는 어느 연회에서나 자유롭게 임명을 신청할 수 있다. 감독, 총감리사, 감리사회(Cabinet)는 교회 전체의 공급과 수요에 관한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4. 파송결정은 구역의 고유한 필요, 커뮤니티 상황, 특정 목회자의 은사 등을 반영한다. 각 사례별로 기준을 개발한 후 목회자 및 교회와 공유한다. 이러한 기준에는 회중, 목회자 및 선교지 환경의 프로필이 포함될 수 있다.

5. 글로벌의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인종, 다문화 파송이 필수적이다. 다인종 및 다문화 임명은 목회자의 대다수가 목회자의 인종/민족 및 문화적 배경과 다른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교회에 목회자를 파송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파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연회는 적절한 훈련과 지원을 통해 목회자와 교회가 다인종 및 다문화 파송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한다.

a. 각 연회 감리직 위원회는 감독, 총감리사, 지방감리사(PE)들과 협력하여 공개 순회에 대한 약속을 준수하고 다양한 목회자들을 파송 과정에서 공평하고 공정하게 고려할 책임이 있다.

b. 매년 각 연회의 감독 및/또는 총감리사는 연회 감리직위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파송될 수 있도록 고려하기 위해 취한 구체적인 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한 보고서에는 다인종 및 다문화 파송과 다인종 및 다문화 파송이 어느 정도 고려되었는지 열거되어야 한다.

c. 연회 감리직 위원회는 매년 연회가 공개 순회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는 과정을 글로벌 감독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글로벌 감독 위원회는 매년 각 연회의 공개 순회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연회 감리직 위원회에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6. 목회자에 대한 파송 보장권은 없다. 모든 효과적인 목회자를 배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임명을 받지 않은 집사목사와 장로목사는 비활동으로 간주한다(¶ 509.3, 510.2).

7. 파송을 결정하는 과정은 철저하게 협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협의는 총감리사 및/또는 지방감리사(PE)가 담임목사와 목회 협력 위원회와 상의하여 (a) 교회의 필요, 특성, 선교의 기회, (b) 목회자와 배우자 및 가족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 전문적 경험, 기대, (c) 선교적 환경을 이해하는 과정이다. 협의는 지속적인 과정인 동시에 임명이 변경되는 기간 동안 더욱 집중적으로 관여한다. 가능하면 교회는 2~3 명의 목회자 후보자를 선정하여 목회자 면접을 실시할 수 있다. 교회와 목회자는 교회가 방문 설교자에 의해서 섬김을 받을 경우, 가용 인력과 가능한 파송 같은 요인으로 시간을 더 가질 수 있다고 판명되면 제안된 파송을 악의없이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대부분의 교회는 목회자 파송을 위해 감리사회에 의존하지만, 교회는 지방감리사와 총감리사의 승인을 받아 자체적으로 목회자 탐색 과정을 진행할 수 있으며, 안수위원회, 지방감리사, 총감리사의 승인이 없이는 최종 면접일이 정해지지 않는다. 지방감리사 또는 감리사회 지명자는 개체 교회와의 최종 면접에 반드시 참석하여 파송 과정에서 지원과 지도를 제공해야 한다. 감독회는 그 구성원인 감독들이 각각의 주어진 영역에서 협의 절차를 이행하는 데 책임을 져야 한다.

8. 감독, 총감리사, 감리사회는 보다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 장기간(연간이 아닌) 개체 교회 파송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9. **임시 목회자.** 지상 명령과 성령의 능력(마 28:18-20, 행 1:8)에 충실하고, 교회가 목회자 파송의 과도기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임시 목회자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교회는 연속성이 끊기는 시간을 경험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훈련된 평신도 사역자나 임시 목회자가 치유를 돕고 목회 지도력을 제공할 수 있다. 감독, 총감리사, 감리사회는 그러한 교회에 성령 충만한 평신도 또는 임시 목회자를 보낼 수 있다.

10. **연장 사역 파송.** 감독은 총감리사와 감리사회의 추천을 받아 안수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집사목사와 장로목사를 개체 교회 밖에서 연장 사역을 하도록 파송할 수 있다. 파송은 교회의 사명에 따라 세상의 필요를 채워주는 안수 사역의 본질을 반영해야 한다(¶ 401). 협의 절차는 개체 교회 이외에 파송되는 사람들에게도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그런 사람은 현역 목회자로 있어야 한다.

11. **학교로 파송.** 감독은 총감리사와 감리사회의 추천을 받아 집사목사와 장로목사에게 공인된 학교, 대학 또는 신학교에 다니거나, 공인된 임상 목회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파송할 수 있다. 이러한 파송은 개체 교회 밖의 연장 사역을 위한 파송과는 별개의 범주이다. 그런 사람은 현역 목회자로 있어야 한다.

섹션 VII. 추가 조항

¶ 611. **감독의 이적.** 1. 자치 감리교회의 감독은 목회자 전입을 통해 글로벌감리교회에 가입할 수 있다. 이적 신청서에는 본 교리와 장정에 명시된 교리와 사회적 증언에 대한 명시적인 서면 확인과 장정의 규율을 준수하겠다는 동의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전입하는 감독은 교리와 장정을 준수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 이러한 이적은 글로벌 감독위원회와 감독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총회 회기 사이에 감독이 부임하면

감독회의와 글로벌 감독위원회는 교회에 감독의 파송을 통보해야 한다. 모든 전임 감독은 다음 총회에서 선거에 입후보해야 하며, 전입에 의해 감독으로 취임한 후 다음 총회에서 선출되면 6년 임기의 감독직을 수행할 자격이 주어진다.

2. 글로벌 감리 교회에 가입하는 은퇴 감독은 원로감독이 되며, 글로벌 감독 위원회와 연대 협의회가 허락하는 경우 명예 감독의 칭호를 가질 수 있다. 명예감독은 자신이 선택한 연회의 목회자가 되어, 선임 목회자에게 허용된 모든 직책으로 봉사할 수 있다(¶ 520).

¶ 612. 감독직의 공석. 감독직의 공석은 사망, 선임 (은퇴) 신분으로의 전환, 사임, 정직, 휴직 또는 병가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위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의해 감독의 직무가 중단될 경우, 글로벌 감독위원회는 감독회의와 협의하여 해당 감독 지역에 대한 업데이트된 사역 계획을 승인해야 한다. 명예감독은 본인의 동의 하에 글로벌 감독위원회에 의해 일시적으로 사역에 참여할 수 있다.

¶ 613. 명예 감독의 지위. 1. 감독은 글로벌 감독위원회 과반수의 승인을 받아 선임 지위(¶ 520)를 선택할 수 있다. 이전에 감독을 역임했지만 현재 감독으로 활동하지 않는 장로목사는 '명예 감독'이라는 직함을 사용할 수 있지만, 글로벌 감독위원회가 필요에 따라 임시로 직책을 맡도록 지명하지 않는 한 감독의 책임이나 감독회의의 회원 자격은 유지되지 않는다.

2. 명예감독은 현역 감독의 요청에 따라 현역 감독을 도울 수 있지만 경비를 제외한 업무에 대한 보수를 받을 수 없다.

3. 명예감독은 자신이 선택한 연회의 목회자가 되어, 선임 목회자에게 허용된 모든 직책으로 봉사할 수 있다(¶ 520).

¶ 614. 휴직. 1. 휴직. 감독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글로벌 감독위원회에서 6개월 이내의 휴직을 허가받을 수 있다. 휴직이 허락된 기간 동안 감독은 모든 감독직 책임에서 해제되며, 감독직 책임에 대한 임시 계획이 감독회의와 협의하여 글로벌 감독위원회에서 승인되고 발표되어야 한다.

2. 병가 건강 악화로 인해 일시적으로 완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감독은 글로벌 감독 위원회에서 6개월 이내의 휴직을 허가받을 수 있다. 휴직이 허락된 기간 동안 감독은 모든 감독 책임에서 면제되며, 감독 책임에 대한 임시 계획은 글로벌 감독 위원회가 감독회의와 협의하여 승인하고 발표한다.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건강 악화로 인해 여전히 완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가 1개월 단위로 휴직을 연장하여 6개월 더 연장하거나 감독이 장애를 신청할 수 있다.

¶ 615. 감독에 대한 고소. 1. 글로벌 감리교회의 감독 지도자들은 다른 모든 안수자들과 안수에 대한 신성한 신뢰를 공유한다. 감독이 이 신뢰를 위반하거나 적절한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에는 감독직 연임은 재검토의 대상이 된다. 이 검토는 하나님의 정의, 화해, 치유의 역사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가운데 이 신성한 신뢰에 대한 위반을 정의롭게 해결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2. 교리와 장정에 열거된 효력, 권한 또는 하나 이상의 위반에 관한 모든 고소는 **글로벌 감독 위원회**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고소장은 위법 행위, 불만족스러운 목회 사역수행 또는 나열된 위반 사항 중 하나 이상을 서면으로 주장하는 진술서이다.

3. 고소는 제 9 부 사법행정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감독의 비자발적 신분 변경은 조사위원회의 4분의 3 투표로 추천하고 총감독위원회의 3분의 2 투표로 승인해야 하지만(*글로벌감리교회 재판실무 및 절차 규칙, 3*), 예외적으로 재판에 따른 벌칙은 이러한 추천과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상소가 있을 경우 즉시 시행된다.

제 7 부: 회의

¶ 701. **의회 조직.** 1744년 요한 웨슬리가 그의 형제 찰스와 몇몇 다른 목회자들을 처음 만나 "우리 자신과 우리의 말을 들은 영혼들을 어떻게 구원으로 이끌 것인가"를 숙고했을 때부터, 감리교회의 중요한 개념인 연대주의란 말은 역사적으로 계속 감리교 연회 구조 안에 존재해 왔다. 첫 번째 회의의 의제는 단순한 것이었다: "1.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2.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3. 즉 우리의 교리, 규율, 실천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그리고 모임과 이어진 후속 모임의 의제는 일반적으로 질의응답 형식으로 표현되었다. 구역회, 지방회, 연회, 지역총회, 총회 등 여러 차원으로 조직된 의회 조직은 감리교의 영적 중심에 있으며, 이는 단순한 모임이나 회의 결정 사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회의에 함께 모이는 행위와 이런 행위를 하는 그 사람들을 의미한다. 의회 조직은 집합적 분별력과 공동적 의사결정을 우리 교회 정체의 관리 원칙으로 규정한다 (잠언 15:22, 사도행전 15:1-35).

섹션 I. 총회

¶ 702. **교리와 장정.** 1. *번역.* 본 *교리와 장정*을 포함한 총회의 모든 활동은 총회의 비용으로 글로벌 감리교회의 모든 지역의 공식 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이 자료는 디지털 형태로도 제공되어야 한다.

2. *적응성.* *교리와 장정*의 모든 조항은 교회의 모든 지리적, 국가적, 문화적 부분에 전반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모든 조항의 적용 가능성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 해당 조항 자체에 명시되어야 한다.

¶ 703. **권한** 총회는 특히 연대적인 모든 문제에 대해 포괄적인 입법 권한을 가지며, 여기에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 글로벌감리교회의 헌법과 그 헌법 개정안을 채택한다.
2. 글로벌감리교회의 모든 사역, 기관, 목회자, 평신도, 직분자들이 교회의 사명을 최우선으로 지키도록 한다. 이를 통해 총회는 예수님의 제자는 개체 교회의 수준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총회는 지역 교회 차원에서 가능한 많은 자원을 유지하여 글로벌 감리 교회의 사명이 성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글로벌감리교회 내에서 집사목사, 장로목사, 공급 목사 및 기타 지도자로 봉사하는 사람들의 자격, 의무 및 책임을 정의한다.
4. 인종, 피부색, 민족 또는 부족의 정체성, 성별, 장애 여부에 관계없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하는 교회 회원의 자격, 의무 및 책임을 정한다.
5. 감독직의 자격, 의무 및 책임을 정의하고 감독직의 선출, 연임 및 중단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다. 모든 감독은 본 *교리와 장정 제9 편(사법 행정)의 규정에 따라 전체 교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6. 글로벌 감리 교회 내의 모든 수준의 연회와 기타 연대 조직의 권한을 결정하고, 각 단체가 그들의 사명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를 채택하도록 적절히 제공한다.
7. 연회의 경계를 결정한다.

8. 개체교회를 통한 글로벌감리교회의 선교를 강화하고 증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반 이사회, 프로그램 기관 또는 위원회를 설립하고 감독하며, 사역 파트너십을 형성한다.

9. 총회와 총회 회의 사이에 위임된 모든 사항을 다룰 수 있는 연대협의회를 총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정의하고 설립하되, 총회가 때때로 제정하는 제한 사항에 따르며, 총회 회의 사이에 위원회가 취한 모든 조치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총회가 정한 우선순위와 방향에 따라 매년 교회 예산의 수립을 글로벌감리교회 연대 협의회에 위임하는 것을 포함하여, 교회 사역에 필요한 기금을 모금하고 분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결정한다.

11. 연회 또는 연회에 속하지 않은 교단의 다른 부서가 보유한 교회 수와 정규직에 상응하는 목회자 임명 및 파송, 연대 협의회가 정한 마감일에 글로벌감리교회의 총 교회 수와 정규직에 상응하는 목회자 임명 및 파송, 기타 총회가 결정하는 요소에 따라 총회에 대한 대표 비율을 정한다.

12. 글로벌감리교회의 음악 자료와 예배 의식을 승인하고 수정하며, 그러한 자료를 디지털로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전 세계의 특정 상황에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변형을 제공한다.

13. 통일된 절차와 과정을 의무화하고 글로벌감리교회 내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사법 시스템을 마련한다.

14. 교회 조직과 정체에 관한 청원 및 징계 외의 사안을 다루는 결의안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15. "우리의 사회적 증언"(제 3 부)의 성명서를 채택하거나 개정하되, 그러한 채택 또는 개정은 총회의 4분의 3의 투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16. 전체 교회를 효과적으로 대변하기 위해 사회적 관심사를 다루는 결의안도 마찬가지로 총회의 4분의 3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우리의 사회적 증언" 또는 교단법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결의는 다음 총회가 소집될 때까지만 유효하며, 이 때 개정 또는 재승인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17. 병원, 학교 또는 기타 기관과 같은 교회와 관련된 기관의 감독 및/또는 관리한다.

18. 글로벌감리교회의 선교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기타 법률을 제정한다.

¶ 704. 총회 임원. 1. 감독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각 총회는 글로벌감리교회 연대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총무를 선출하며, 총무는 다음 총회가 폐회할 때까지 시무한다. 총무는 총회에 제출된 제안서의 출판과 번역, 그리고 매일의 회의록 발간을 포함한 총회의 조치를 감독한다. 총회의 총무는 총회의 영구 기록의 정정 사본에 대한 책임을 진다.

¶ 705. 조직. 1. 규칙. 총회는 로버트 회의법과 창립 총회에서 채택된 보충 규칙에 따라 운영된다.

2. 정족수. 총회가 개최할 때에는 총회 대의원 총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의사 처리를 위한 정족수를 이루되, 정족수에 미달해도 정족수 확보를 위해 각 날마다 휴회

또는 정회를 할 수 있으며, 최종 회의에서는 의사록 승인, 명부 기록 명령, 정회를 할 수 있다.

3. **가상 세션.** 대의원들이 물리적으로 모일 수 없는 국제적 또는 지역적 상황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감독회의의 승인을 받아 글로벌 감리교회 연대회의는 3분의 2의 찬성으로 전자 또는 기타 디지털 수단을 통한 회의 진행을 승인할 수 있다(¶ 208).

¶ 706. **총회에 청원한다.** 글로벌 감리교회의 모든 단체, 목회자 또는 평신도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총회에 청원할 수 있다:

1. 청원서는 총회 총무 또는 지정된 청원 비서에게 보내야 한다. 활자 또는 인쇄 또는 전자 형식, 또는 기타 총회 총무가 승인하는 방법으로 작성되며, 총회의 총무가 정한 형식을 따라야 한다.

2. *교리와 장정*이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 각 청원은 하나의 사안만을 다루어야 하며, *교리와 장정*이 영향을 받는 경우 각 청원은 *교리와 장정*의 한 단락만을 다루어야 하지만, 두 개 이상의 단락이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한 단락의 변경이 다른 단락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청원은 서로 일치하도록 해당 단락의 개정도 함께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교리와 장정*의 한 단락 이상을 다루는 청원은 무효이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청원(복합 청원)은 여러 개로 분리되어서는 안된다.

3. 각 청원서는 제출하는 사람이 서명하고 주소, 지역 교회, 조직 또는 연회 등 적절한 신분증을 첨부해야 한다. 개인이 제출한 청원서에는 최소 10명의 다른 교수 또는 목회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디지털 방식으로 제출된 각 청원서는 제출자의 신원과 위와 같은 신분증을 첨부해야 하며, 제출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유효한 전자 메일 반송 주소 또는 반송 팩스 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전자 서명은 일반적인 비즈니스 관행에 따라 허용된다.

4. 청원은 총회 개회 120일 전까지 총회의 총무 또는 그 지명자에게 접수되어야 한다.

5. 적절하게 제출된 청원은 총회 전에 교회의 모든 주요 언어로 배포되어 총회 개회 최소 60일 전에 대의원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청원 내용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경우, 청원서는 첫 번째 저자의 이름과 추가 접수된 부수를 명시하여 한 번만 출판된다. 출판 후, 사전 출판물의 모든 번역본은 교단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파일로 제공된다. 마감일 이후에 접수된 청원 및/또는 결의안은 총회의 배포 승인을 받아 모든 대의원에게 인쇄 및/또는 배포할 수 있다.

6. 총회의 총무는 총회 회기 동안 *교리와 장정*에 대한 총회의 조치와 그에 따른 영향을 포함한 모든 청원에 대해 전자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이 접근 권한은 *교리와 장정* 새 판이 출판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시행은 글로벌 감리 교회 연대 협의회가 정한 지침에 따라야 한다.

¶ 707. **법률 발효일.** 총회의 모든 입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정된 총회 회기 다음해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섹션 II. 연회

¶ 708. 조직. 1. 구성. 연회는 목회자와 평신도를 연결하여 지역 전체에서 공동의 사역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된다. 지리적으로 다른 연회나 지방회의 경계와 겹치지 않는 특별 연회나 지방회는 교회들의 요청에 따라 총회의 결의로 구성할 수 있다. 연회의 의결권은 ¶ 520의 자격을 충족하는 장로목사, 집사목사, 파송 중인 과도기적 본처 목사들(교리와 장정의 다른 곳에서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과 ¶ 520의 자격을 충족하는 선임 목회자, 그리고 각 담당 또는 지방회나 연회에서 선출한 동수 이상의 평신도로 구성되어야 한다. 각 구역회에는 파송된 목회자 수만큼의 평신도 회원 자격이 주어진다. 연회는 연회 지도자 직에서 봉사하는 연회 평신도 회원을 추가할 수 있다. 연회는 목회자 수와 똑같은 숫자를 맞추기 위해 평신도 회원을 추가로 선출하는 방법을 결정한다. 동등한 평신도 선거에서는 평신도만 투표할 수 있다. 이러한 회원은 구역회, 지역 총회 또는 연회에서 선출할 수 있지만, 임명직이 아니라 선출직이어야 한다.

2. 평신도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회의에 참석한 대체 평신도 위원이 그 자리에 앉아야 한다. 평신도 위원 또는 대리인 중 어느 쪽이든, 평신도 위원은 연회의 활동에 대해 개체 교회에 보고할 책임이 있다.

3. 연회 법률 고문이 연회의 투표권 없는 회원일 경우, 연회에 참석하여야 하며 투표권은 없으나 발언권은 부여 받는다.

4. 연회는 그 연회가 위치한 국가, 주 및 기타 정치 단체의 법률에 따라 법인화할 수 있다.

5. 감독은 연회를 계획하고 조직하는 위원회 또는 그룹과 협력하여 연회 개최 시기와 장소를 지정한다.

6. 대의원들이 물리적으로 모일 수 없는 현지 상황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감독은 감리사회의 3분의 2 찬성으로 전자 또는 기타 디지털 수단을 통해 회의 진행을 승인할 수 있다.

7. 특별연회는 감독과 협의하여 연회가 결정하거나 감리사 4분의 3의 동의를 얻어 감독이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연회를 개최할 수 있다. 연회의 특별 회기는 연회가 3분의 2의 투표로 다른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소집에 명시된 권한만 갖는다.

8. 지명된 감독이 연회를 주재하거나, 주재할 수 없는 경우 다른 감독이 주재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감독 부재 시 감독은 총감리사 또는 명예 감독에게 감독권을 위임할 수 있다(¶ 603.5). 이렇게 위임되었다 하더라도, 총감리사에게 목회자 안수 권한은 부여하지 않는다.

9. 연회는 서기 및 연회가 결정하는 기타 임원을 선출한다.

¶ 709. 권한과 의무. 연회는 목회자와 평신도를 연결하여 지역 전체에서 공동의 사역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된다. 연회는 교화, 교제, 영감을 위해 함께 모이는 것 외에도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다:

1. 교회의 사명을 완수하고 교회의 증거를 강화할 수 있는 지역 내 사역 프로그램을 만든다.

2. 해당 지역에서 교회의 사역과 선교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금을 모금하고 배분하는 프로그램을 결정한다.

3. 기존 교회의 후원을 승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새로운 교회 개척을 장려하고 촉진하며, 그러한 새로운 교회의 설립을 허가한다(¶¶ 439.17, 450).

4. 감독, 감리사회, 연회 지도부의 추천을 받아 지방회 수를 정한다.

5. 선교를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이사회, 위원회 및 기관을 구성하고 각 기구의 구성을 명시하고 그 구성원을 선출한다.

6. 총회에서 결정한 공식에 따라 총회에 목회자 및 평신도 대의원을 선출한다. 목회자 대의원은 글로벌감리교회 또는 그 전신 교회에서 선출 전 최소 2년 이상 봉사한 글로벌감리교회의 정회원이어야 한다. 521.2a의 규정에 따라, 장로 목사 또는 집사 목사 안수를 승인받은 과도기적 본처 목사들은 정회원이 되며, 글로벌 감리 교회 또는 그 전신 교회에서 선출되기 전 최소 2년 이상 봉사한 정회원 자격을 갖춘 경우 목회자 대의원이 될 수 있다. 평신도 대의원은 글로벌 감리 교회 또는 그 전신 교회의 고백 교인으로 2년 이상 활동한 사람이어야 한다. 목회자 대의원과 평신도 대의원 모두 단순 과반수 투표로 선출하며, 목회자 대의원은 목회자 투표로, 평신도 대의원은 평신도 투표로 선출한다.

7. 글로벌감리교회 헌법이 채택되면 총회에서 승인한 대로 모든 헌법 개정안에 대해 투표하고 연회에 배포하여 비준을 받는다.

8. 연회 안수 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목회자 안수를 승인하고(¶¶ 509.2-3, 510.1), 안수 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목회자 신분 변경을 승인하는 것이 안수받은 목회자 실행부회의 임무이다(¶¶ 516-520).

9. 목회자 사택 및 기타 사역자 주택에 대한 최소 기준을 수립한다(¶¶ 207.8, 443.4e, 445.8m).

10. 한 연회에서 다른 연회로 또는 다른 연회로부터의 교회 이전은 단순 다수결로 승인한다(¶ 451).

11. 폐쇄된 교회 기록(¶ 429.7)과 모든 지방 교회의 연례 통계 보고서(¶ 430, 439.10)를 포함한 연회의 기록을 유지한다.

12. 교리와 장정의 요구사항과 상충되지 않는 한 자체 운영 규칙을 채택한다.

¶ 710. 연회 이사회 및 위원회. 연회는 다음과 같은 이사회와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1. 연대 협의회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구- 연대 협의회는 연회 이사회와 위원회 간의 의사소통과 사역 조정을 목적으로 연 1회 이상 대면 회의(전자 또는 다른 형태의 회의가 필요한 긴급한 상황이 없는 한)를 한다.

a. 연대협의회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연회가 연회의 상임 규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선출한 동수의 목회자와 평신도 회원;

2) 감독 또는 총감리사;

3) 지방감리사 1명이 감리사회를 대표한다;

4) 연회 총무;

5) 연회 평신도 대표, 있는 경우;

6) 연회에서 선출한 기타 연회 임원들;

7) 다양성을 증진하거나 특정 은사, 기술 또는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연회에서 선출한 당연직 회원(있는 경우, 지명 및 지도력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8) 총감리사가 결정하여 적절한 연회 직원은 투표권은 없으나 발언권을 가진 협의회 위원으로 봉사할 수 있다.

b.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제자훈련과 선교의 성장을 위해 전략 계획을 포함한 사전 전략 수립에 참여하고, 연회에서 수립한 우선순위를 실행하기 위해 이사회와 위원회에 실행을 권고한다.

2) 연회 예산의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공개된 근거를 가지고 연회 회기 간에 예산을 조정할 수 있다.

3) 총감리사의 자문을 받아 연회 운영 책임자 또는 이와 유사한 직책을 채용하고 매년 그 업무를 평가한다.

4) 예산 제한에 따라 모든 이사회와 위원회의 직원 수준을 승인한다.

5) *교리와 장정* 및 연회가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연회, 연회 이사회 및 위원회, 기타 단체에 적용되는 정책과 절차를 연회 승인에 따라 채택한다.

6) 제안된 예산을 포함하여 이사회와 위원회에서 연회에 제출하는 제안을 조정하여 교회의 사명과 전략에 부합하고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7) 개별 이사회 또는 위원회의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를 다루는 태스크포스를 시작하고, 인력을 배치하고, 매개변수를 설정한다.

8) *교리와 장정*과 상충되지 않는 연회에서 부여한 기타 책임이나 권한.

2. *안수 위원회*. 안수 위원회는 글로벌 감리 교회의 선교 증진을 위한 목회자 모집 및 자격 부여를 감독할 책임이 있다. (¶¶ 506-510, 514-517, 519, 521) 위원회는 또한 연회 관계에서 모든 목회자 변경을 감독할 책임이 있다. (¶¶ 518, 520)

a. 위원은 총감리사가 추천하고 연회에서 선출한다. 이사회에는 장로목사, 집사목사, 평신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사회의 평신도 구성은 3분의 1 이상을 넘을 수 없다. 연회는 위원회의 위원 수를 정한다. 회원의 임기는 6년이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교리와 장정*의 다른 조항에 상관없이 안수 위원회의 집사목사와 평신도는 모든 목회자 후보자의 안수 및 연회 관계에 대해 투표할 수 있다.

b. 안수 위원회 위원이 어떤 이유로든 봉사할 수 없는 경우, 총감리사는 감리사회와 협의하여 미사용된 잔여 임기 동안 봉사할 임시 위원을 파송한다. 연회는 다음 회의에서 임시 임명을 확정한다.

c. 안수 위원회는 의장, 부의장, 서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임원을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선거는 단순 다수결로 이루어지며 임기는 연회의에서 결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d. 안수 위원회는 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소위원회와 팀을 설치할 수 있다.

3. *감독 위원회*. 감독 위원회는 총감리사가 영적, 현세적 업무를 감독하는 데 있어 총감리사를 지원할 책임이 있으며, 특히 총감리사가 거주 책임을 지는 지역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해야 한다.

a. 위원은 연회 공천 및 지도력 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연회에서 선출한다. 위원회에는 성직자와 평신도가 동수로 포함되어야 한다. 연회는 위원회의 위원 수를 정하되, 한 번에 최대 12명 이상, 최소 6명 이하로 구성한다. 회원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연회 직원이나 총감리사의 가족은 이 위원회에서 봉사할 수 없다. 총감리사는 이 위원회에서 발언권은 있으나 투표권은 없다.

b. 위원회의 위원이 어떤 이유로든 봉사할 수 없는 경우, 공천 및 지도력 위원회는 감리사회와 협의하여 미사용된 잔여 임기 동안 봉사할 임시 위원을 파송한다. 연회는 다음 회의에서 임시 임명을 확정한다.

c. 감독 위원회는 회원 중에서 의장, 부의장, 서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임원을 선출한다. 선거는 단순 다수결로 이루어지며 임기는 연회의에서 결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d. 위원회는 총감리사가 알고 있는 경우에만 회의를 열 수 있다. 총감리사는 자발적으로 불출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e. 위원회는 총감리사와 연회 구성원들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연회 내 상황에 대해 총감리사에게 조언할 수 있다.

f. 607 단락에 명시된 역할과 책임, 의무를 엄두에 두고, 위원회는 총감리사에 대한 연례 평가에 참여해야 한다.

4. **재무 및 행정 위원회.** 재정 및 행정위원회는 연회를 위한 재정 및 행정 정책, 예산, 절차 및 관리 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이고 조정된 계획을 개발, 유지 및 관리할 책임이 있다.

a. 위원은 연회 공천 및 지도력 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연회에서 선출한다. 위원회에는 성직자와 평신도가 동수로 포함되어야 한다. 연회에서 위원회 위원 수를 정한다. 회원의 임기는 6년이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총감리사, 총감리사가 선정한 지방감리사(PE) 1명, 연회 재무는 위원회에서 발언권은 있으나 투표권은 갖지 않는다.

b. 위원회의 위원이 어떤 이유로든 봉사할 수 없는 경우, 공천 및 지도력 위원회는 미사용된 잔여 임기 동안 봉사할 임시 위원을 파송한다. 연회는 다음 회의에서 임시 임명을 확정한다.

c. 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및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임원을 선출한다. 선거는 단순 다수결로 이루어지며 임기는 연회의에서 결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5. **공천 및 지도력 위원회.** 공천 및 리더십 위원회는 연회 위원회와 이사회에서 봉사할 목회자와 평신도를 공천할 책임이 있습니다.

a. 위원은 총감리사가 추천하고 연회에서 선출한다. 위원회에는 성직자와 평신도가 동수로 포함되어야 한다. 연회에서 위원회 위원 수를 정한다. 회원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연회에서 선출된 목회자와 평신도 외에 총감리사와 PE 감리사 1명도 발언권과 투표권을 가지고 위원회에 재직한다.

b. 위원회의 위원이 어떤 이유로든 봉사할 수 없는 경우, 총감리사는 미사용 임기의 남은 기간을 수행할 임시 위원을 임명한다. 연회는 다음 회의에서 임시 임명을 확정한다.

c. 총리사가 위원회의 의장을 맡는다. 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부의장, 간사 및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임원을 선출한다. 선거는 단순 다수결로 이루어지며 임기는 연회의에서 결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6. **조사위원회.** 조사위원회는 본 교리와 장정의 사법 행정 제 9부, 특히 ¶910.2에 명시된 대로 목회자에 대한 사법적 고소 사항을 검토할 책임이 있다.

a. 조사 위원은 안수 받은 목회자 4명, 평신도 3명 등 7명으로 구성하며, 교체 위원은 안수 받은 목회자 4명, 평신도 3명 등 7명으로 구성한다. 조사 위원 또는 대체위원은 중 누구도 목회위원회 또는 감리사회의 구성원 또는 그 직계 가족이 될 수 없다. 조사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b. 총리사는 목회위원회와 협의하여 위원회 위원을 지명한다. 후보자는 연회의 인종, 민족, 성별 다양성을 반영해야 한다. 연회에서 위원회를 선출하며, 필요에 따라 임기 중 추가 위원 또는 교체 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위원회 위원은 (자격에) 양호한 상태여야 하며 좋은 성품을 지녀야 한다.

c. 조사위원회는 의장과 서기를 선출하고 선출 후 연회에서 조직한다.

d. 조사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위원회에 상정된 사건의 소송 당사자인 경우, 해당 위원은 해당 사건을 심의하는 동안 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상실하며, 다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e. 위원회의 위원으로 목회자 4 명과 평신도 3 명(또는 그 대리인)이 참석하여 정족수를 구성한다.

f. 연회가 아직 조사위원회를 선출하지 않은 경우, 총감리사 또는 임시 감독회장이 감리사회와 협의하여 위원회 위원을 임명한다.

7. 행정심사위원회. 행정심사위원회(¶ 906.2)는 입증된 행정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징계 절차가 사법 관행 및 절차 5.2 및 공정한 절차(¶ 905)에 따라 적절히 준수되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

a. 모든 연회에는 안수 받은 목회자 3 명과 감리사회나 목회위원회 위원 또는 그 직계 가족이 아닌 대체 위원 2 명으로 구성된 행정 심사 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조사 위원의 임기는 3 년이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b. 위원회의 위원은 총감리사가 추천하고 연회 목회자회의에서 선출한다. 위원회 위원은 (자격에) 양호한 상태여야 하며 좋은 성품을 지녀야 한다.

c. 행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서기를 선출하고 선출 후 연회에서 조직한다.

d. 행정심사위원회 위원이 해당 위원회에 상정된 사안의 소송 당사자인 경우, 해당 위원은 해당 사안을 심의하는 동안 위원회 위원 자격을 상실하며, 다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e. 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한 3 명의 목회자(또는 그 대리인)가 정족수를 구성한다.

f. 연회가 아직 행정심사위원회를 선출하지 않은 경우, 총감리사는 감리사회와 협의하여 위원회 위원을 임명한다.

8. 연회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추가 이사회 및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711. 연회 연대사역헌금 및 총회 대의원 배정을 위한 정보 보고. 1. 연회는 연회의 사역을 지원하기 위해 개체교회에 대한 사역헌금 비율을 정한다. 개체교회에 최대한의 자원이 남을 수 있도록 연회 재정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연회 안팎의 사역에 대한 지원은 이러한 사역헌금 비율에 포함되지 않고 개인과 개체 교회의 선교 헌금으로 모금되어야 한다. 연회는 사역헌금 비율을 설정할 때 글로벌감리교회 연대협의회가 제공하는 지침을 고려해야 한다. 총회사역헌금 비율은 연회의 조정 없이 총회가 정한다.

2. 총회에 대의원을 배정하기 위해 글로벌감리교회 연대협의회는 연회가 연회 내 교회 명단과 연회 내 전임에 준하는 목회자 파송 및 배정 인원을 제출해야 하는 기한을 정한다. 총회 대의원은 마감일 당시 글로벌감리교회의 총 교회 수와 전임에 준하는 목회자

과송 및 배정 수 대비 연회의 교회 수와 전임에 준하는 목회자 과송 및 배정 수에 따라 할당된다.

제 8 부 - 연대적 조직

¶ 801. 연대적 생활 각 회중의 공통된 사명을 반영하여 제자 삼는 일과 성서적 거룩함을 전파하는 일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총회, 지역 및 연회 차원에서 연대적 구조를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조직은 새로운 조직을 만들기보다는 가능한 경우 기존 사역, 교회, 연회 및 기타 단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 교회의 사역을 지원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이들은 교회와 전 세계의 상황과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표준을 설정하고 모범 사례를 공유할 수 있다. 적절하게 운영될 때 이 연대성은 안전하고 신뢰할만한 자금조달 채널을 제공하는 한편, 최소한의 구조와 직원으로 검소하게 운영함으로써 개체교회에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여,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구현한다 (마 20.28).

섹션 I. 연대위원회

¶ 802. 연대위원회. 지역 회중과 연회를 대표하여 일하는 교회의 연대위원회는 우리의 공통된 사역의 필요에 도움이 되는 효율적이고, 재정적으로 책임감 있고, 협력적인 방식으로 필수적인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이 위원단들은 교인, 목회자, 개체교회, 선교 또는 연회를 지원하거나 교회와 그 구성 기관을 대신하여 권한을 행사하는 등 교단을 섬기기 위해 존재한다. 항상 연대위원회들은 교회의 선교와 사역을 섬기고 촉진하기 위해 존재하며, 교회는 결국 주님을 섬기기 위해 존재한다.

1. 교단의 모든 연대위원회는 여기에 달리 규정되거나 적절한 민법에 의해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대협의회와 궁극적으로 총회에 부합해야 한다.

2. 총회는 여기에 제한되거나 적절한 민법에 의해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대위원단을 창설, 규제, 재구성 또는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모든 연대위원회들은 총회의 매 정기 회기 전에 연대협의회와의 평가를 받는다. 평가에는 지역 교회에 대한 자원 지원의 효과와 재정적 영향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 평가는 소집된 회기 전에 총회에 공유되어야 한다. 이 위원단의 지속 여부는 매 총회 회기마다 투표로 결정된다.

3. 글로벌감리교회 내에 다음과 같은 연대위원단들이 설치되어 있다: 전도, 교회 증식, 선교적 동원 및 재난 대응 위원단; 제자훈련, 교리 및 정의 사역 위원단; 목회 및 고등교육 위원단; 재정, 관리, 연금 및 수당 위원단; 총회 위원단, 에큐메니칼 관계 위원단; 연회 위원단.

4. 연회는 총회가 정한 요건에 따라 자체 위원회를 설립, 규제, 재구성 또는 폐지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권한을 가지며, 이는 총회가 정한 요건에 따라 이루어진다. 연회는 보다 큰 경제성, 효율성, 책임감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공동의 합의에 따라 연회 간 위원단을 공유할 수 있다.

5. 연대위원단의 프로그램과 우선순위는 *교리와 장정* 및 준거법의 규정에 따라 총회 또는 연대협의회가 정하며, 필요에 따라 총회가 변경할 수 있다. 각 연대위원단은 *교리와 장정*의 요건과 가용 기금의 한도에 따라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스스로 구성할 수 있다.

6. 연대위원단과 그 하부 단위는 모든 회원의 완전하고 평등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경우 전자적으로 모일 수 있다.

7. 모든 교단 직원은 연대협의회에 의해 고용되며, 연대운영 책임자가 필요에 따라 다양한 위원단을 지원하고 자원을 제공하도록 배정된다. 모든 직원 직책은 연대협의회가 정한 예산 한도에 따라 연대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803. 연대위원단의 위원직. *교리와 장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연대위원단의 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1. 2024년 창립 총회에서 채택된 '함께하는 우리 삶의 조직 계획 및 언약'에 명시된 방식으로 각 연대위원단에 지명된 사람은 2년 동안 또는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재직하게 된다. 2026년 총회 이전에 선출된 사람은 2026년 총회에서 후보 자격이 있으며, 그들의 2년 임기는 ¶ 803.2에 명시된 임기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2. 2026년 총회부터는 연회에서 추천한 인물이 후보자 선정 풀의 역할을 하게 된다. 위원의 임기는 6년이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어 총 12년 동안 재임할 수 있다. 2026년 총회부터 선출 절차는 다음과 같다:

a. 각 연회는 평신도 대의원과 목회자 대의원 모두의 과반수 찬성으로 최대 16명(감독 제외, 목회자 또는 평신도)을 연대위원회 후보로 지명하되, 최소 절반이 평신도이어야 한다. 각 후보자는 은사, 훈련, 및 교육에 따라 하나 혹은 두 개의 연대위원단에 지명된다. 다양한 인종, 민족, 부족, 성별, 경제적, 연령의 특성을 가진 사람들을 포함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b. 후보 자격을 갖춘 사람은 후보 지명 당시 2년 동안 글로벌감리교회(또는 그 전신) 내의 개체교회 또는 연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c. 총회의 행정 공천위원회는 연회로부터 받은 후보자 명단에서 총회가 선출할 교회의 연대 위원단에서 봉사할 다양한 개인들의 명단을 제안하며,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연회의 추천을 받은 개인은 회의석상에서 추천할 수 있다. 각 연대위원단의 명단에는 *교리와 장정*에 명시된 위원 수와 위원회가 연대위원 의장으로 지명하는 인물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총회는 각 연대위원단 위원 3분의 2의 단순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각 연대위원단의 나머지 3분의 1은 해당 연대위원단의 추천을 받아 연대협의회에서 선출한다.

위원단 활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관련연대 위원단에 신청할 수 있다. 연대협의회에서 선출하는 위원들은 연대위원회의 사역에 필요한 포용성, 경험 또는 특별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출된다.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연대위원단에서 재임하는 감독과 의장을 제외하고, 각 연대위원단의 회원은 평신도가 1/2 이상이어야 한다.

4. 감독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두 개 이상의 연대위원단(협의회 제외)에서 동시에 재임할 수 없다. 위원장을 포함한 연대위원단의 위원은 보수 없이 봉사한다. 연대위원단 위원에 대한 여비와 회의 경비는 각 연대위원단에서 예산으로 지급한다.

¶ 804. 연대위원단의 리더십. 1. **위원단 의장**- 각 연대위원단의 회의 의장은 연대위원단의 의장이 된다. 의장은 평신도 또는 목회자가 될 수 있으며, ¶ 803.2b의 회원 요건을 따라야 한다. 2024년 창립 총회 이후, 연대위원단은 각 연대위원단에 선출된 사람 중에서 각 연대위원단의 의장을 선출한다. 2026년 총회 이전에 선출된 각 의장의 임기는 2년 또는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이며, 2026년 총회 이후 재선 출마 자격이 주어진다. 2026년 총회부터 각 연대위원단의 의장은 ¶803.2c에 규정된 대로 선출한다. 2026년 총회 이후 선출된 각 의장의 임기는 6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6년 동안 재임할 수 있다. 연대위원단 위원으로 활동한 시간은 위원장의 총 임기 제한에 포함된다. 의장직의 공석은 해당 연대위원단의 추천을 받아 연대위원단에서 채운다.

2. **임원**- 연대위원단은 서기를 선출하며, 원활한 활동을 위해 다른 임원을 선출할 수 있다.

3. **감독의 역할**- 감독직에 있는 동안에는 에큐메니칼 관계위원회를 제외한 어떤 사람도 연대위원단의 의장을 맡을 수 없다.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각 연대위원단에는 감독회의에서 선출된 감독 한 명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감독회의와 소통과 조정을 돕고 위원단에 영적 리더십을 제공하기 위해 발언권과 투표권을 가지고 재임한다.

¶ 805. 운영. 여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연대위원단은 자체 업무와 사업을 구성할 권한을 가진다.

1. **직원**- 각 연대위원단은 그 사명을 추구하기 위해 필요한 직원을 요청할 수 있다. 모든 직원 직책은 연대협의회가 정한 예산 한도에 따라 연대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대 운영 책임자를 제외한 모든 직원은 연대 운영 책임자가 고용, 배치 및 평가하며(¶ 815), 자유 계약 직원으로 근무한다.

a. 직원 채용을 위해 지정된 특별 보조금 또는 현금은 해당 자금의 가용성에 따라 연대협의회의 승인을 받아 일시적으로 추가 직원을 채용하고 유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직원은 연대 운영 책임자가 보조금 또는 지정 현금의 목적을 존중하여 고용하고 감독해야 한다.

2. 연대위원단은 사명을 수행하거나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을 목적으로 교단 내 조직, 선교단체 및 교단 기관, 다른 교회 기관 또는 교단 외 조직 및 사역과 계약할 수 있으나, 선교 및/또는 신학적 입장이 연대위원단 또는 글로벌감리교회와 일치하지 않는 조직과는 계약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위원단의 예산을 초과하는 재정적 영향을 미치는 계약은 연대협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각 연대위원단은 회의 불참 또는 직무 수행 불성실, 부도덕, 배임, 교리 부적합, 범죄 행위 등 무능력 또는 비효율적인 관행을 보이는 위원에 대해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연대위원단은 직원에 대한 해고 또는 기타 징계를 권고할 수 있다.

4. **차별 금지.** 글로벌감리교회는 직원의 채용, 유지, 보상, 승진 및 퇴직을 포함하여 연대 위원단과 태스크포스에서 공개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개인이 자신에게 부여된 직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경우 성별,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장애, 현재 또는 잠재적 임신, HIV 를 포함한 만성 말기 질환에 따른 차별이 없어야 한다. 교회에 의해 고용된 개인은 우리의 증인의 한 부분으로서 교회의 교리와 도덕적 표준을 준수하고 삶과 사역에서 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806. 책임 및 사명 영역. 교단의 각 연대위원단의 책임 영역은 아래에 명시되어 있다. 어떤 위원단도 연대협의회나 총회의 명시적인 승인 없이 다른 영역의 책임을 맡을 수 없다. 총회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위원단도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을 통해 정부 기관과 관계를 맺기 위한 로비 기관의 역할을 할 수 없으며, 총회가 채택한 성명을 반영하지 않는 한 연대위원단은 글로벌감리교회를 대변한다고 공언해서는 안 된다. 위원단은 연대위원단의 책임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기존 부처 또는 조직과 협력하는 것이 좋다. 연대위원단은 해당 연대위원단에 부여된 자원 내에서 유연하게 조직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각 연대위원단의 위원들과 지원 직원들은 개체교회가 충실하고 열매 맺는 사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모범 사례와 자원을 공유하기 위해 조정하고 협력해야 하며, 글로벌감리교회의 선교 및 전략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가능한 경우 다른 연대위원단과 협력해야 한다.

¶ 807. 연대협의회 1. 연대협의회는 글로벌감리교회의 최고 선교 및 행정 기구로서 총회 사이에 총회 차원의 리더십을 제공한다. 여기에 명시된 권한에 더하여, 연대협의회는 **교리와 장정** 또는 총회가 명시적으로 위임한 모든 사안에 대해 각 위임에 명시된 대로 완전한 입법 권한을 가진다. 연대협의회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활동은 총회에 보고되어야 하며, 각 총회가 폐회한 후에도 그 활동이 계속 유효하려면 다음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연대협의회는 24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다음 총회가 폐회할 때까지 또는 이 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재임한다. 2026 년 총회 이전에 협의회에 선출된 사람의 임기는 2 년 또는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선출될 때까지이다. 2026 년 총회부터 연대협의회에 선출된 감독을 제외하고, 개인은 6 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기로 협의회에 선출되며 총 12 년을 초과하여 협의회에 봉사할 수 없다. 2026 년 총회 이전의 연대협의회에서의 재임은 이 임기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대협의회는 모든 회원은 발언권과 투표권을 가지고 재임한다.

a. ¶¶ 808-811 에 명시된 각 연대위원단은 감독이 아닌 목회자한 명과 평신도 한 명을 선출하여 연대협의회에서 위원단을 대표하도록 한다. 위원은 총회 후 첫 번째 위원단 회의에서 각 위원회에서 선출하며, 후임자가 선출되거나 위원단의 위원 자격이 종료되는 시점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임기를 수행한다. 위원단에 결원이 생길 경우 위원단은 후임 위원을 선출한다.

b. 감독회의는 연대감독회의의 위원으로 봉사할 두 명의 감독을 선출한다. 2026년 총회 이전에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재임한다. 2026년부터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6년 또는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이다. 결원 발생 시 감독회의에서 후임자를 선출한다.

c. 총회는 2024년 창립 총회 소집에서 채택한 '함께 하는 우리 삶의 조직과 언약' 계획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교리와 장정*(P 803)에 명시된 대로 2026년 총회부터 목회자 4명과 평신도 4명을 선출한다. 2026년 총회 이전에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2년 또는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이다. 2026년부터 선출된 위원들의 임기는 6년 또는 다음 총회에서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이다. 결원이 발생할 경우 연대협의회는 후임자를 선출한다.

d. 연대협의회는 지역, 인종, 민족, 연령, 성별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목회자 2명과 평신도 2명을 추가로 지명하고 선출한다. 2026년 총회 이전에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2년 또는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이다. 2026년부터 선출된 위원들의 임기는 6년 또는 다음 총회에서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이다. 이 범주에 속하는 사람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연대협의회는 후임자를 선출한다.

e. 감독을 제외한 목회자와 평신도의 수는 항상 연대협의회에서 동수로 유지되어야 한다.

f. 연대협의회는 회원 중에서 자체 임원을 선출하되, 감독은 연대협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을 맡을 수 없다.

g. 연대 운영 책임자는 연대협의회의 직원으로서 발언권은 있으나 투표권은 없이 직무를 수행한다. 연대 운영 책임자는 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대협의회의 조직 회의를 주재한다. 모든 총회의 실행이사는 연대협의회의 회의에 발언권을 가지고 참여하되 투표권은 없다. 다른 교단 직원은 연대협의회의 초청에 따라 협의회의 회의에 참여하되, 발언권은 있으나 투표권은 없다.

3. 연대협의회는 위원회 간의 의사소통과 사역 조정을 위해 매년 최소 2회 대면 회의(전자 또는 다른 형태의 회의가 필요한 긴급한 상황이 없는 한)와 그 외의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모인다.

4. 연대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a. 글로벌감리교회의 비전을 구현하고 총회의 결의와 감독회의와의 협력에 따라 선교, 사역 및 자원을 청지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b. 전도, 제자훈련, 선교의 성장을 위한 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총회가 정한 우선순위를 실행하는 등 적극적 글로벌 전략 수립에 참여하기 위해.

c. *교리와 장정* 및 총회가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교단, 위원회 및 기타 기관에 적용되는 정책과 절차를 채택하기 위해.

d. 총회가 정한 우선순위와 방향에 따라 매년 총회의 예산을 수립하되, 각 연도 예산은 직전 2년간 총회의 연대 사역헌금 평균의 90%를 초과할 수 없으나, 2025년 예산은 2024년 총회의 연대 사역헌금 총액의 90%를 초과할 수 없다. 연대회의는 교단 예산을 수립할 때 다음과 같은 재정적 가치에 따라 지도한다:

i.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산을 책임감 있게 관리해야 한다는 책임감.

ii. 글로벌감리교회의 연대 전반에 걸쳐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투명성.

- iii. 교회의 선교를 최적화하기 위한 전략적 기반으로 개체교회 중심.
 - iv. 연회와 개체교회의 사역 요구에 적응할 수 있도록 민첩하고 간결한 연대 단체 구조.
 - v. 사역을 제한하지 않고 번성할 수 있도록 제한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 e. 연회, 연대위원단, 감독회의 간의 정보 보급과 소통을 보장하기 위해.
 - f. 총회의 행동이 실행되고 글로벌감리교회의 비전과 사명이 진전되도록 연대위원단과 총회 직원들의 업무를 조정하기 위해.
 - g. 총회가 정한 글로벌감리교회의 사명과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연대위원단과 총회의 사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 회기 소집 전에 총회에 공유하기 위해.
 - h. 총리사들과 협력하여 연회에 도움이 되고 규모의 경제에 따른 비용 절감을 가져올 수 있는 총회가 수행할 서비스를 채택하고 시행하기 위해.
 - i. 재정, 행정, 연금 및 혜택 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글로벌감리교회의 연금 및 혜택 프로그램의 변경을 평가하고 승인.
 - j. 연대운영 책임자를 고용하고 매년 그의 업무를 평가(¶ 815).
 - k. 교단 차원에서 모든 직원 직책을 승인하고 권한을 부여.
 - l. 총회 사이에 발생하는 연대위원단 위원 중 결원을 채우기 위해 해당 연대위원단의 추천을 받아 충원.
 - m. 연대위원단에서 총회에 제출하는 제안을 조정하고, 교단의 사명과 전략과의 일치, 그리고 서로의 일치성을 보장.
 - n. 개별 연대위원단의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를 다루는 태스크포스를 시작하고, 인력을 구성하고, 매개변수를 설정.
 - o. 글로벌감리교회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할 수 있는 변경 및 시행 입법을 총회에 권고.
5. 연대협의회는 사단법인이 되어야 한다.

¶ 808. 전도, 교회 증식, 선교 동원, 재난 대응 위원단. 1. 이 위원단은 처음에 14 명의 위원과 위원장 및 해당 위원단에 배정된 감독으로 구성된다. 이후 위원단은 위원장과 위원회에 배정된 감독을 더한 최대 21 명 이내의 위원 수를 제안하고 연대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위원단은 개체교회, 연회, 총회가 다음 사역 영역에서 전략 계획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한다:

a. 전도. 전도를 위한 자원을 개발하고 모든 개인과 교회가 전도에 참여하도록 격려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도록 인도하고 교단 전체의 영적 갱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개인과 교회 모두를 훈련하고 준비시킨다. 위원단은 또한 (1) 전도자의 사역과 직분, 그리고 교회에서 승인된 전도자로 봉사하도록 부름 받은 사람들의 인증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고, (2) 전도 사역에 파송된 사람들이 투명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사역하고 전문적이고 목회적인 지원을 받도록 보장하는 구조와 정책을 권고하고, (3) 감독, 연회, 지역 교회에 그러한 임명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 해석하고 옹호하며, (4) 전도자로 임명된 사람들을 위한 양질의 평생 교육 기회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5) 다른 기독교 신앙 단체, 전도 단체, 대학, 신학교 및 연회와 연락하여 전도자를 위한 비전과 기회를 공유하도록 한다.

b. **교회 증식.** 다양한 문화적 맥락에서 교회 개척과 증식을 위한 자원을 파악하여 제공하고, 감독, 연회 지도자, 개체교회와 상의하여 교회 개척과 증식을 위한 계획과 전략을 세우고, 교회 개척자를 발굴, 모집, 훈련하며, 교회 개척과 증식을 장려한다.

c. **선교 동원.** 선교사역을 위한 개체교회의 성경적 이해와 열정을 심화시키고, 적극적인 선교 참여를 촉진하여 전 세계적으로 언어적, 국가적, 지리적 경계를 넘어 제자를 증가시키고, 개체교회가 효과적인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선교적으로 건강한 파트너십을 개발하기 위한 자원과 훈련을 제공하며, 검증되고 승인된 글로벌감리교 선교 사역 및 전략적 파트너와 개체교회, 지방회, 연회 간의 연결과 파트너십을 촉진하고; 선교사 사역과 직분에 대한 위촉 기준을 개발하여 연회가 글로벌감리교회 선교사를 모집, 훈련, 파송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며; 감독, 연회 지도자, 교회 및 선교 파트너들과 협의하여 전략적 선교 동원을 개발하고 조정하며; 영적, 육적 필요를 모두 해결하는 총체적인 선교 전략과 복음 중심의 지역사회 개발을 육성한다.

d. **재난 대응.** 연회 내 재난 대응, 구호 및 복구 사역의 개발을 조정하고, 재난의 영향을 받은 지역사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회와 자원봉사자들을 훈련하고, 자격을 부여하고, 자원을 제공하고, 장비를 갖추며, 연회의 지원과 확장된 글로벌감리교회 연대의 도움으로 개체교회와 자원봉사자들이 지역 사회를 위한 대응 활동을 주도할 수 있도록 대응 서비스 배치에 협력한다.

e. **전도, 교회 증식, 선교 동원 및 재난 대응과 관련하여 연대협의회가 부여한 기타 책임을 수행한다.**

¶ 809. 제자훈련, 교리, 공의로운 사역 위원단. 1. 이 위원단은 처음에 14 명의 위원과 위원장 및 해당 위원회에 배정된 감독으로 구성된다. 이후 위원단은 위원장과 위원회에 배정된 감독을 더한 최대 21 명 이내의 위원 수를 제안하고 연대협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 위원단은 개체교회, 연회, 총회가 이러한 사역 영역의 전략 계획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

a. **제자훈련.** 속회, 밴드, 기타 소그룹과 같은 제자훈련 프로그램, 지도자 훈련, 그리고 인종, 부족, 성별, 언어의 형평성을 전반적으로 강조하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 개체교회와 교단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예배 예식과 예배 순서를 확인하고 개발함으로써 교회의 모든 수준에서 개인들의 지속적인 영적 성장을 격려하고 자원을 제공한다.

b. **교리.** 가르치고 설교하는 사역과 신앙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일치하는 전례 자료의 사용을 통해 우리 교리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교리문서의 개정을 연구하고 제안하며, 다른 기독교 교단과의 에큐메니칼 참여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c. **정의 사역.** 성희롱과 성추행을 다루기 위한 정책, 절차, 훈련 개발, 여성, 다양한 인종, 민족, 부족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 장애인이 교회의 회원과 지도력에 완전하고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과 함께 그리고 그들을 대신하여 옹호하고 차별 금지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준수하도록 하는 것을(¶ 805.4) 포함하여 모든 개인의 신성한 가치와 평등에 대한 우리의 사회적 증언과 약속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개인과 교회 모두 "공의를 행하도록," 연회와 개체교회에 다인종 및 다문화 파송을 지원하고, 성경과 역사 및 보편적 교회의 윤리적 가르침에 뿌리를 둔 교회의 사회적 증언에 개체교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자원을 지원한다.

d. 제자훈련, 교리, 정의 사역과 관련하여 연대협의회가 부여한 기타 책임을 수행한다.

¶ 810. **안수(목회) 및 고등교육위원회**. 1. 이 위원단은 처음에 14 명의 위원과 위원장 및 해당 위원단에 배정된 감독으로 구성된다. 그 후 위원단은 위원장과 위원단에 배정된 감독을 더한 최대 21 명 이내의 위원 수를 제안하고 연대감독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 위원단은 개체교회, 연회, 총회가 이러한 사역 영역의 전략 계획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

a. **목회 자격**. 총회가 다양한 형태의 사역을 위해 정한 기준과 자격을 시행하고, 평신도 사역자, 집사목사, 장로목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인증하며, 사역 훈련 과정을 위한 커리큘럼 개발, 연회 목회위원회에 자원을 제공하고, 후보자에 대한 적절한 심리 및 배경 평가, 추천 교육 기관으로 신학교 승인 등을 수행한다.

b. **고등교육**. 교회와 관련된 고등 교육 기관 내에서 기독교적 관점을 장려함으로써 "지식과 활력있는 경건"을 통합하고, 그러한 기관들의 네트워크를 제공하며, 전 세계, 특히 소외된 지역에서 웨슬리 신학적 관점을 가진 기독교 대학과 신학교의 설립, 성장, 활성화를 돕는다.

c. **목회 승인**. 채플린(기관목사)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비교구 사역에 대한 기준과 자격을 수립하고 구체화하며, 기준과 자격을 충족하는 훈련 프로그램을 평가 및 승인하고, 다양한 형태의 비교구 사역을 위한 사람을 심사하고 자격을 부여하며, 비교구 사역에 종사하는 사람을 지원한다.

d. 목회 및 고등교육에 관한 연대협의회가 부여하는 기타 책임을 수행한다.

3. **승인위원회**. 목회 및 고등교육위원회는 글로벌감리교회 안수 후보자를 위한 고등교육 기관의 승인을 위원회에 추천할 승인위원회를 추천한다. 승인은 학위 및 비학위/자격증 프로그램 모두에 적용되며 총회의 매 정기 회기마다 갱신된다. 승인된 학교는 매 7년에 한번씩 검토를 거쳐야 한다. 목회 및 고등교육위원회 위원단의 권고에 따라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학교는 승인을 신청하거나 목회위원회의 승인을 추천받을 수 있다.

a. 승인위원회는 감독 1 인과 장로목사, 집사목사, 평신도로 구성된 20 인 이내로 구성하며, 글로벌감리교회 회원이어야 한다. 이 위원회에는 다양한 국제적 상황과 다양한 학술 기관의 사람들이 참여해야 한다.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신학 고등 교육 기관의 직원이나 이사진은 승인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없다.

b. 승인위원회의 업무는 (a) 평가 절차를 개발하고 개선, (b) 북미신학교협의회 (ATS) 및/또는 북미성서고등교육협회 (ABHE) 또는 해당될 때마다 다른 곳에서 승인된 동등한 인가 기관의 승인을 보장, (c) 학교가 효과적인 사역을 할 수 있고 우리의 교리 기준에 부합하는 신앙을 고백하는 GMC 목회 후보자를 배출하도록 보장, (d) 평가 후 학교의 우려되는 부분을 해결, (e) 목회 및 고등교육위원단에 승인,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승인 또는 상장 취소 권고가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

c. 승인위원회는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감독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회는 GMC 에서 안수 후보자 교육에 대한 승인을 받고자 하는 학교에 대한 요청이나 추천을 고려한다. 승인된 학교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우려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위원회는 언제든지 목회 및 고등교육위원회에 권고할 수 있다.

d. 각 승인된 신학교육 기관의 CEO(총장 또는 학장)는 승인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한다. CEO는 자신을 대신할 대리인을 임명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는 2년에 한 번씩 모임을 갖고 도전과 기회, 그리고 우려사항을 서로 논의하고 승인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논의한다.

¶ 811. 재정, 행정, 연금 및 혜택 위원단

1. 이 위원단은 처음에 14명의 위원과 위원장 및 해당 위원단에 배정된 감독으로 구성된다. 그 후 위원단은 위원장과 위원단에 배정된 감독을 더한 최대 21명 이내의 위원 수를 제안하고 연대감독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 위원단은 개체교회, 연회, 총회가 이러한 사역 영역의 전략 계획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

a. **재정.** 감독회의, 위원회 및 프로그램을 포함한 총회의 재정과 신탁 생활을 감독하여 그 무결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고, 모든 단체의 세부 지출과 수입을 공개적으로 보고하며, 감독회의와 각 위원회의 재정에 대해 매년 독립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총회가 받은 모든 수입을 징수하여 분배하며, 매년 총회를 위한 예산을 연대협의회에 추천한다.

b. **법률 고문.** 교단의 법률 업무를 관리하고 연회와 개체교회의 요청에 따라 법률 자문을 제공하며, 교단의 모든 재산의 소유권과 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c. **기록 보관소 및 역사.** 글로벌감리교회의 역사 기록 보관소를 유지하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사무엘상 7:12)는 사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그 역사 연구를 장려한다.

d. **통계.** 교회 회원, 사역, 교회 생활에 대한 회원들의 참여에 관한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통계를 수집하고 공개하며 해석을 돕는다.

e. **연금 및 혜택.** 교회의 목회자와 평신도 직원을 위한 연금 및 혜택(예: 보험, 장애 등) 프로그램을 감독하고 연회가 교회의 사역을 수행하는 사람들(현역 및 은퇴)에게 적절한 연금 기금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f. 재정, 행정, 연금 및 혜택과 관련하여 연대협의회가 부여한 기타 책임을 수행한다.

¶ 812. **총회위원단.** 1. 이 위원단은 위원장과 위원단에 배정된 감독을 포함하여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그 후 위원단은 위원장과 위원단에 배정된 감독을 포함한 최대 27명의 위원 수를 제안하고 연대협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2. 위원단은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다:

a. 최대 18년 전에 총회 장소와 날짜를 연대협의회에 추천하고, 선출된 모든 대의원에게 총회 개최 날짜와 시간, 예상 폐회 시간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공식 통지서를 발송한다.

b. 총회 개최일 일정을 계획하고 총회 개최일 전에 날짜와 시간이 결정된 모든 특별 행사와 당일의 순서를 대의원들에게 미리 알려 대의원들이 총회 프로그램에 대한 개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 c. 총회 장소와 대의원, 직원, 자원봉사자를 위한 호텔 계약을 연대협의회에 추천한다.
- d. 번역과 통역을 포함한 모든 필요한 서비스를 포함한 총회 예산을 연대협의회에 추천한다.
- e. 입법위원회의 수와 해당 위원회에 입법 자료를 배정하는 절차를 연대협의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 f. 함께 하는 삶을 위한 조직과 규약의 개정안을 총회에 추천한다.
- g. 총회를 위한 행정 위원회의 수를 정하고, 해당 행정위원회에서 봉사할 전 총회의 대의원을 지명하여 연대협의회에서 선출한다.
- h. 총회의 준비 및 운영과 관련하여 연대협의회가 부여하는 기타 책임을 수행한다.

¶ 813. 에큐메니칼 관계위원회 1. 글로벌감리교회는 세계 기독교 공동체가 교파적 장벽을 초월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요한복음 17 장에서 모든 제자가 "다 하나가 되어"라는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더 긴밀한 교제를 추구하도록 강권한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유 1:3)에 헌신하는 개체교회와 전 세계 기독교 공동체는 예배, 전도, 제자 삼기, 자비의 사역에 있어 글로벌감리교회에서 기꺼이 동참하는 동역자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각 총회는 위원단의 의장인 감독을 제외한 모든 에큐메니칼 관계위원회 위원을 선출한다. 위원단의 의장은 감독회의에서 임명하는 글로벌감리교회의 감독이 맡는다. 에큐메니칼 관계위원회는 의장인 감독 외에 4 명의 목회자와 4 명의 평신도로 구성된다. 2026 년 총회 이전에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2 년 또는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이며, 2026 년 총회에서 재선출될 수 있다. 2026 년 총회부터는 6 년 임기로 선출되며, 당선될 경우 두 번째 6 년 임기를 수행할 수 있다. 의장과 위원들은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임기를 수행한다.

3. 에큐메니칼 관계위원회는 그 활동에서 글로벌감리교회의 교리, 도덕 원칙, 정치정체(정체)를 지키기 위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4. 에큐메니칼 관계위원회는 글로벌감리교회가 다른 기독교 단체의 협의회, 네트워크 또는 연합체, 다른 기독교 교단 또는 교회 연합체와의 언약, 다른 기독교 교단 또는 단체와의 유기적 연합 가능성에 관한 권고안을 감독회의와 연대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5. 글로벌감리교회는 신학, 역사, 정체의 공통 유산을 공유하는 다른 웨슬리안 및 감리교 그룹과의 연합을 증진하는 데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교회와 연회를 협력적 사역과 상호 격려로 연결하는 '연대적' 운동이라는 우리의 유산에 뿌리를 두고 있는 글로벌감리교회에게 요한 웨슬리의 영적 계승자들 간의 연합은 깊은 희망이자 소망이다. 다른 웨슬리안 그룹과의 긴밀한 관계는 세계 선교와 전도의 기회를 늘리고, 사역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풍부하게 하며, 자원과 전문성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위원단은 다음 사항을 조사한다.

- a. 글로벌감리교 협의회 회원.
- b. 아시아감리교협의회, 유럽감리교협의회, 글로벌의 웨슬리안 연합, 범감리교위원회와 같은 다른 웨슬리안/감리교 단체 가입의 타당성.

웨슬리안/감리교 조직에서 회원을 추천하는 경우, 추천서는 감독회의와 총회 간 연대협의회에 승인을 위해 제출되어야 하며, 각 총회는 출석하고 유효한 투표를 한 회원의 단순 과반수로 찬성 투표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다음 총회에 비준을 위해 상정되어야 하며, 출석하여 유효한 투표를 한 대의원의 단순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되어야 한다.

6. 글로벌감리교회는 다른 기독교 교단 또는 교회 연합체와의 언약 관계를 환영한다. 이러한 언약 관계를 맺는 목적은 상호 기독교적 증거와 효과를 높이고, 서로의 존재가 거의 또는 전혀 없는 지역이나 국가에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언약 관계에는 세례 및 안수 사역에 대한 상호 인정, 성찬식 교제, 치리회에서의 공동 대표, 공동 사역 및 자원에 대한 계획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언약 교회로서의 공식적인 관계를 위한 대화는 에큐메니칼 관계위원단에서 개최할 수 있으며, 그러한 권고안은 감독회의와 연대협의회에 승인을 위해 제출되며, 각 회의는 출석 회원의 과반수 찬성과 유효한 투표를 통해 긍정적으로 의결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다음 총회에 비준을 위해 상정되어야 하며, 출석하여 유효한 투표를 한 대의원의 단순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되어야 한다.

7. 에큐메니칼 관계위원단 또는 지정된 대표자는 다른 기독교 교단 또는 교회 연합체와의 연합과 관련된 대화에서 글로벌감리교회를 대표한다. 이러한 연합 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바람직한 미래에 대한 비전 선언문, (2) 교리 및 신학적 일치에 대한 선언문, (3) 연합 계획에 직접 영향을 받는 모든 연회와의 협의 증거를 포함한 사역 통합 계획. 글로벌감리교회의 *교리와 장정*을 변경할 필요가 없는 계획은 총회의 회기 사이에 감독회의와 연대협의회(상대방이 웨슬리안 신학인 경우)에서 각각 출석하여 유효한 투표를 한 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비준하거나 총회에서 출석하여 유효한 투표를 한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비준되어야 한다. 연합은 그러한 비준과 동시에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다른 단체는 본 계약에 규정된 대로 연합 계획의 비준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도록 자체 지배구조를 해산하기로 의결해야 한다. *교리와 장정*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계획이나 웨슬리 신학이 아닌 단체와 관련된 계획은 총회에서 출석하여 유효한 투표를 한 대의원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비준할 수 있다.

¶ 814. 연회위원단. 1. 연회위원단은 연회의 창설, 조직 또는 변경에 관해 감독회의, 연대협의회 및 총회에 권고한다. 이 업무에서 연회위원단은 다음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 a. 전 세계 글로벌감리교회 총회의 성장을 확립.
- b. 선교적 기회에 근거하여 글로벌감리교회 연회가 필요한 전 세계 지역을 의도적으로 식별.
- c. 지리적 고려 사항, 지역에 현실적인 교회 수, 재정적 안정성의 증거, 적절한 규모의 연회 유지 등 연회 출범에 필요한 기준을 정립.
- d. 이전에 연회를 설립하는 데 사용된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구축.
- e. 이미 존재하는 연회로부터 새로운 연회의 증식을 위한 표지를 식별하고 이를 지원.

2. 총회는 감독을 제외한 6명의 목회자와 6명의 평신도로 구성되는 연회위원단의 모든 위원을 선출한다. 감독회의는 또한 위원단의 위원으로 활동할 두 명의 감독을 선출한다. 위원단의 의장은 ¶¶ 803.2c 및 804.1에 규정된 대로 선출되며 감독 중 한 명이 될 수 없다.

3. 연회위원단은 새로운 연회의 설립과 기존 연회의 재편성을 권고한다.

4. 연회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의 개인이나 단체가 글로벌감리교회의 목회자 또는 교회 회원 자격을 신청할 경우, 연회위원회는 그러한 신청서를 평가하여 처리 여부를 결정하고 처리할 경우 해당 신청자에게 감독, 멘토링 및 책임을 어떻게 제공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5. 연회위원단은 에큐메니칼 관계위원회와 협력하여 글로벌감리교회와 연합하는 단체들이 글로벌감리교회의 연회 구조에 어떻게 통합될 것인지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해야 한다.

6. 연합감리교회와 이전에 연합했던 연회나 그러한 연회의 목회자 및 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연회위원단은 그러한 요청에 어떻게 응답하고 그러한 그룹이 글로벌감리교회의 일부로서 어떻게 조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한다.

7. 연회위원단의 권고안은 총회 회기 사이에 승인을 위해 감독회의와 연대협의회에 상정되며, 각 기관은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과 유효한 투표로 승인한다. 이러한 권장 사항은 승인된 대로 이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다음 총회에서 출석하여 유효한 투표를 한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비준받기 위해 상정되어야 한다.

¶ 815. 연대 운영 책임자. 연대 운영 책임자는 모든 교단 이사회, 위원단, 협의회가 총회의 선교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함께 일하면서 총회의 모든 위원단과 협의회가 총회의 선교적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책임감 있게 기능할 수 있도록 책임을 져야 한다.

1. 선택

- a. 연대 운영 책임자는 목회자 또는 평신도일 수 있다.
- b. 필요한 경우, 연대협의회는 연대 운영 책임자의 직무 설명서를 개정할 책임이 있다.
- c. 협의회는 자격을 갖춘 많은 후보자들을 발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한 널리 이 직책을 공고할 책임이 있다.
- d. 지원자 풀에서 이 협의회는 최소 3 명에서 최대 6 명의 후보를 선정하고, 선정된 후보의 지원서를 감독회의에 전달하여 심의를 요청한다.
감독회의가 제출한 후보자 중에서 감독회의는 면접을 실시할 후보자를 결정한다.
- f. 감독회의는 자체적으로 선택한 절차(예: 합의, 단순 다수결, 3분의 2)에 따라 후보를 선출한다.
- g. 감독회의는 감독회의가 선택한 후보를 통보한다.
협의회 의장은 선정된 후보자에게 통지하고 6년 계약서를 수여한다.
- i. 협의회는 연대 운영 책임자의 온보딩(신규인사 교육과정)을 담당한다.

2. 용어. 연대 운영 책임자의 임기는 6년이며, 감독회의와 연대협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6년 임기를 한 번 더 수행할 수 있다.

3. **성과 평가.** 연대협의회 의장은 매년 연대 운영 책임자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에 근거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협의회는 평가를 수행할 소위원회를 임명할 수 있으며, 평가를 완료하기 위해 외부 인사 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연대 운영 책임자와 협의회에 전달된다. 연대 운영 책임자는 보고서에 추가할 자체 평가를 포함할 권리가 있다.
4. **직위 공석.** 연대 운영 책임자의 사임, 심각한 질병, 승인된 휴직, 사망 또는 해임의 경우, 협의회는:
 - a. 즉시 감독회의에 공석 사실을 알린다.
 - b. 임시 연대 운영 책임자로 임할 자격을 갖춘 개인을 임명한다.
 - c. 직위가 영구적으로 비워지는 경우, ¶ 815.1의 조항이 적용되지만, 새로운 연대 운영 책임자에게는 이전 책임자의 임기 잔여 기간에 대한 계약이 제시된다.
 - d. 감독회의와 연대협의회 승인을 받으면 전임자의 임기 잔여 연수를 마친 후 6년 임기를 모두 채울 수 있다. 그리고 감독회의의 3분의 2 투표와 연대협의회 60 퍼센트 플러스 1 투표로 두 번째 6년 임기로 선출한다.
5. **직위 해임.** 연대 운영 책임자는 글로벌감리교회의 '자유 계약직' 직원이다. 따라서 임원은 글로벌감리교회가 설립된 주의 관련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떤 이유로든 경고 없이 연대협의회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기독교 원칙과 윤리 기준에 따라, 연대협의회는 연대 운영 책임자의 해임을 추진하기 전에 성과에 결함이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해 노력한다. 협의회는 비방 금지 조항이 포함된 금전적 요소가 포함된 퇴직 합의안을 제안할 수 있다.
6. **책임과 의무.**
 - a. 총회의 선교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하는 연대협의회, 연대위원단 및 태스크 포스의 책임감 있는 기능을 책임지는 최고 운영 책임자로 재임한다.
 - b. 연대 운영 책임자는 연대협의회 의장 및 총무와 협력한다:
 - 대면 회의 장소를 포함한 모든 협의회 일정을 정한다;
 - 회의에 필요한 모든 항목(즉, 의제, 회의록, 보고서, 협의회 조치가 필요한 제안서 등)을 회의 최소 1주일 전에 준비하여 협의회 위원들에게 전달한다.
 - 감독회의의 연례 업무보고서를 연회에 제출하고, 매년 감독회의에 출석하여 보고서의 개요를 설명하며, 총회의 비전과 교회에 대한 명령을 이행하는 데 있어 그들의 질문에 답하고 지도 요청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 c. *교리와 장정*에 명시된 모든 총회 임원급 직책을 협의회가 정한 제약과 절차에 따라 채용할 책임이 있다.
- d. *교리와 장정*에 명시된 모든 실행이사급 직책에 대한 감독자 역할을 한다.
- e. 협의회와 협의하여 실행이사급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한다.
- f. 모든 교단 행정 직원의 채용, 배치 및 유지를 감독한다.
- g. 협의회와 협의하여 실행이사급 직책에 대한 감독자 역할을 한다.
- h. 총회가 승인한 연대 예산과 모든 재정 기록의 유지를 감독한다.
모든 교단 의회, 이사회 및 위원단의 연례 감사를 감독한다.
- j. 재정, 행정, 연금 및 혜택 위원단 및 재정 총무와 협의하여 심의, 수정 및 승인을 위한 총교회 예산을 준비한다.
- k. 교단 서비스 및 시설에 대한 계약 협상 및/또는 감독한다.
- l. 협의회와 교단의 모든 실행이사는 2년마다 교단의 위원단과 이사회의 선교적 효과성을 검토하고 평가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에 대한 코스 수정을 제안한다.
- m. 협의회와 협의하여 *교리와 장정* 및 시행법 개정을 총회에 건의합니다.
협의회와 협의하여 교회의 선교를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과 연구를 감독한다.

제 9 부 - 사법 행정

¶ 901. **교회의 책임.** 신실함으로 부르는 복음에 기초하여 이 *교리와 장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글로벌감리교회에서의 안수와 연회 회원 자격은 신성한 위임이다. 따라서 개별 목회자는 현직이든, 명예직이든 행정직이든 고위직이든 상관없이 교단 내에서 목회자 직분을 유지하는 한 자신의 품행과 행동에 대해 전체 교회에 책임을 져야한다. 마찬가지로 신약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은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며 서로를 신실함과 성결로 이끄라는 거룩한 부르심을 상기시켜 준다. 따라서 이 언약의 규범을 위반한 혐의로 피소된 개인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 화해, 치유의 역사가 실현되기를 바라며 그러한 고소절차의 정당한 해결을 목표로 하는 심사의 대상이 된다.

¶ 902. **사법 관행 및 절차** 총회는 고소, 감독, 행정 및 사법 절차를 관장하는 *사법관행 및 절차(JPP)*를 승인한다. 그러한 *JPP*는 교회법의 효력을 갖지만 *교리와 장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교리와 장정*과 *JPP*가 충돌하는 경우, *교리와 장정*이 우선한다.

섹션 I. 고소

¶ 903. **고소.** 책임 규명 절차는 공식적인 고소가 제기될 때 시작된다. 고소는 ¶908.1-2(사법 고소)에 정의된 위법 행위 또는 목회직의 불만족스러운 성과(행정 고소, ¶¶906-907)를 주장하는 서명된 서면 진술이 있어야 한다. 고소가 감독에 관한 것이라면, 고소는 글로벌 감독위원회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담임 목사에 대한 고소 사항의 경우, 고소는 해당 목사의 목회협력위원회 위원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사람, 감리사, 그리고 총감리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고소가 개체교회 교인에 대한 것일 경우, 고소는 그 해당 교회의 감리사, 해당 교회의 교회임원회 의장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해당 교회의 담임 목사, 그리고 총감리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고소가 접수되면 총감리사 또는 그 지명인은 고소 사항을 처리하는 모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고소를 접수하면 정식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수령인은 고소를 제기한 사람("고소인")과 고소를 당한 사람("피고소인") 모두에게 서면으로 고소 절차를 설명해야 한다. 고소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적법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수령인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에게 적시에 사법처리 과정의 새로운 단계에 대해 서면으로 계속 설명해야 한다. 본래의 제한시간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동의에 따라 30 일 동안 한 번만 연장될 수 있다.

¶ 904. **정당한 해결** 고소된 사안은 감리대응 단계에서 정당한 (합의) 해결에 의해 종결될 수 있다. 정당한 해결은 사람과 지역사회에 대한 피해를 복구하고, 실질적인 책임을 지며, 가능한 한 일을 바로잡고, 모든 당사자에게 치유를 가져오는 데 초점을 맞춘다. 고소와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동의에 따라 훈련되고 공정한 제 3의 조정자 또는 중재자의 지원을 통해 모든 당사자가 만족할 만한 정당한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다. 공정성, 정의, 회복에 대한 이해의 관점에서 문화적, 인종적, 민족적, 성별 차이가 그 과정 전반에 걸쳐 주의깊게 고려되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감리대응 차원의 고소 해결에는 혐의에 대한 서면 진술, 고소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목록, 사실 확인, 상황 설명, 행동 계획 또는 후속 책임을 포함하여 혐의를 해결하기 위한 합의된 징계가 포함될 수 있다. *교리와 장정*의 조항에 대한 불순종 혐의와 관련된 모든 정당한 해결에는 위반 혐의를 포함하여 적용

가능한 모든 징계 요건을 준수하겠다는 피고소인의 약속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해결방안은 일방적으로 강요되어서는 안 되며, 최소한 고소인, 피소인 및 고소장을 접수할 권한이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 고소의 모든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서명해야 한다(¶ 903). 그러한 해결은 피고소인의 인사 파일에 보관된다. 모든 당사자가 합의한 정당한 해결은 관련 고소 사안에 대한 최종적인 처분이 된다.

¶ 905. 공정한 절차의 원칙. 글로벌감리교회의 구성원과 조직 내에 존재하는 거룩한 언약의 일부로서 다음 절차는 개인과 교회 행정 및 사법 절차의 권리를 보호한다. 아래 단락에 명시된 원칙은 행정적 또는 사법적 고소가 있을 때마다 지켜져야 한다. 모든 문제를 적시에 처리하고 고소를 처리하는 위원회는 인종, 민족 및 성별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 **진술권.** 고소 사항을 접수받을 권한이 있는 사람 또는 그의 지정인, 고소인 및 피고소인은 진행의 모든 단계에서 최종 조치를 취하기 전에 진술권을 가지게 된다.

2. **통지권.** 피고소인과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답변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상세 정보와 함께 심리를 통지받을 권리가 있다. 통지는 심리 최소 20일 전에 제공되어야 한다.

3. **출석 및 동반권.** 피고소인과 고소인은 모든 심리에 출석할 권리와 발언권이 있는 조력자(변호인)와 심리에 동행할 권리가 있다. 조력자는 글로벌감리교회 교인이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교회는 피고소인 또는 고소인의 변호사 선임에 대한 비용 또는 수수료를 보상하거나 상환하지 않는다.

4. **기록 열람.** 피고소인은 심리 최소 10일 전에 고소 사항에 대한 서면 문서를 포함하여 진행 결과를 결정하는 데 의존할 모든 기록을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5. **일방적 의사교환.** ¶905.6을 제외하고 어떤 경우에도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가 없는 경우 계류 중인 문제를 심리하는 기구의 구성원과 또는 서로 간에 실질적인 문제를 논의할 수 없다. 심리 의장에게 절차에 대한 질문을 제기할 수 있으며 답변은 모든 당사자와 공유되어야 한다.

6. **변론의 불이행.** 피고소인이 감리 면담에 참석하지 않거나, 우편물을 거부하거나, 고소사항을 처리하는 사람 또는 그 지정인과의 개인적 의사소통을 거부하거나, 감리를 위한 요청 또는 공식적인 위원회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 그러한 조치 또는 무조치는 교회 절차를 피하거나 지연하기 위한 구실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사법적 절차는 해당 개인의 참여 없이 계속될 수 있다.

7. **치유.** 책임 규명 절차의 일환으로, 감독과 감리사회(Cabinet)는 계류(보류) 중인 문제를 심리, 재판 또는 상소 기구의 심리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중, 연회, 또는 문제에 관련된 사역의 환경에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경우 치유를 위한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 치유를 위한 자원에는 고소 사항과 과정에 대한 커뮤니케이션과 그 과정을 통해 사실을 손상시키지 않는 한 가능한 많은 정보의 공개가 포함되어야 한다.

8. **일사부재리.** 누구나 일사부재리(같은 사안으로 반복해서 고소/제소당하지 않는) 원칙에 적용된다. 즉, 새로운 설득력 있는 정보나 사실을 제외하고, 행정 또는 사법 기관의 정당한 해결 또는 최종 조치를 통해 유사한 고소가 이미 판결된 경우 동일한 사실에 근거한 동일한 범죄 혐의에 대한 고소는 접수되지 않는다. 이 단락에서 "새로운 설득력 있는 정보 또는 사실"은 원래의 사법 또는 행정 절차에 도입되지 않은 심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 높은, 정보 또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것은 동일한 범죄의 새로운 사례에 대해 새로운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9. **기소 면책**. 교회 (사법) 절차의 무결성을 보존하고 항상 완전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글로벌 감독위원회 의장, 감독, 총리사, 감리사회, 목회위원회, 증인, 지원인, 변호인, 행정 심사 위원회, 집행회의에서 투표하는 목회자 및 교회 절차에 참여하는 다른 모든 사람은 그들이 고의와 악의를 가지고 기소 가능한 위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한 특정 절차에서 자신의 역할과 관련하여 제기된 고소로부터 면책권을 가진다. 특정 사법 절차에서 해당 인물의 역할과 관련하여 그에 대해 진행되는 어떠한 소송에서도 고소인/원고는 해당 인물의 행동이 고의로 악의적으로 저지른 기소 가능한 위법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입증할 책임을 진다. 이 조항에 명시된 면책은 민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까지 민사 소송 절차에 적용되어야 한다.

10. **교단 변호사**. 위반 혐의 발생일 또는 그 이후에 글로벌 감독위원회, 감리사회, 연회 직원, 목회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이었던 사람은 교단 변호인으로 임명되거나 사건의 피소인 또는 고소를 제기한 사람의 변호인으로 봉사할 수 없다. 교단을 대변하는 변호사가 되겠다고 동의하는 사람은 교단법과 **교리와 장정**의 요구 사항을 지지하겠다는 자신의 신중한 의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교단 변호사는 고소를 제기한 사람의 주장을 압박함에 있어 교단의 이익을 대변한다.

¶ **906. 목회자에 관한 행정 고소**. 행정 고소는 무능력, 비효율성, 또는 목회 의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거나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한 목회적 직무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수행 혐의를 포함한다. 직업적 또는 개인적 비행 혐의는 행정 고소를 통해 처리하지 않고 ¶ 908.1-2의 규정을 통해 처리한다. 행정 고소는 피소인의 사역 범위 내에 있는 평신도, 피소인의 사역에 익숙한 다른 목회자, 감리사, 연회 감리사 또는 **총감리사**에 의해 제기될 수 있다. 고소 사항에는 최소한 대략적인 날짜와 시간(적절한 경우)을 포함한 불만족스러운 수행의 구체적인 예가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정 고소 처리에는 **JPP 2**와 **3**이 적용되며, 행정 감리 대응이 포함되며, 필요한 경우 조사 대응, 행정 검토 및 상소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

2. 각 연회에는 3명의 안수 받은 목회자와 감리사회, 목회위원회 또는 위의 직계 가족이 아닌 2명의 대체 위원으로 구성된 행정 심사 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위원회 위원은 (자격에) 양호한 상태여야 하며 좋은 성품을 지녀야 한다. 위원회는 감독이 지명하고 연회 목회자 회의에서 선출한다. 이 위원회의 유일한 목적은 입증된 행정 고소를 해결하기 위한 징계 절차가 **JPP 2**와 **3**의 요건과 공정한 과정(¶ 905)에 따라 적절히 준수되도록 하는 것이다.

3. **비용**. 목회자를 위한 행정 절차를 위한 모든 비용은 피고소인과 후원인의 여비와 기타 비용을 제외하고 연회가 부담한다.

¶ **907. 감독에 관한 행정 고소**. 행정 고소는 무능력, 비효율성, 또는 목회 의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거나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한 목회적 직무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수행 혐의를 포함한다. 직업적 또는 개인적 비행 혐의는 행정 고소를 통해 처리하지 않고 ¶ 908.1-2의 규정을 통해 처리한다. 행정 고소는 평신도, 목회자, 감독이 시무하는 연회 감리사, 총감리사 위원회 또는 다른 감독이 제기할 수 있다. 고소 사항에는 최소한 대략적인

날짜와 시간(적절한 경우)을 포함한 불만족스러운 수행의 구체적인 예가 포함되어야 한다. 감리 절차는 글로벌 감독위원회 의장 또는 그 대리인이 관리한다. 감독과 관련된 고소 사항에 대한 행정 절차의 모든 비용은 총회에서 부담한다. 감독에 대한 행정 고소 절차는 JPP 3 을 따라 관리된다.

¶ 908. **사법 고소** 사법 고소는 아래의 열거된 고소당할 수 있는 위법행위를 포함한다. 이러한 고소는 평신도나 목회자, 감리사, 총리사 또는 감독이 제기할 수 있다. 고소는 최소한 대략적인 날짜와 시간(적절한 경우)을 포함하여 위법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소당할 수 있는 위법 행위**- 감독이나 연회의 목회자, 고위 목회자 및 명예 또는 행정적 위치에 있는 목회자는 다음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위법행위로 기소될 때(아래에 나열된 시효에 따라) 재판 받을 수 있다:

- a. 아동 또는 노인 학대, 절도 또는 폭행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범죄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또는 인정;
- b. 재정 불법 행위 또는 중대한 재정 부실관리;
- c. 인종, 성별 또는 성적 차별이나 성희롱;
- d. 글로벌감리교회가 재정 한 것과 일치하지 않는 교리나 관행을 홍보하거나 이에 참여하거나 의식이나 예배를 집행하는 행위;
- e. 글로벌감리교회의 질서와 권징에 대한 불순종;
- f. 다른 목회자의 사역을 저해하는 관계 및/또는 행동;
- g.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사랑스럽고 일부일처적인 결혼 관계 외의 성적 활동에 참여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성적 학대나 위법 행위, 음란물 사용이나 소지 또는 불륜이 포함하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 **개체교회의 고백교인**은 다음과 같은 위법 행위로(아래 나열된 시효에 따라) 기소될 수 있다:

- a. 아동 또는 노인 학대, 절도 또는 폭행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범죄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또는 인정;
- b. 재정 불법 행위 또는 중대한 재정 부실관리;
- c. 인종, 성별 또는 성적 차별이나 성희롱;
- d. 글로벌감리교회가 제정한 것과 일치하지 않는 교리나 관행을 조장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것;
- e. 글로벌감리교회의 질서와 권징에 대한 불순종;
- f. 목회자의 사역을 저해하는 관계 및/또는 행동;

3. **공소시효**- 최초 고소장 제출 직전 6년 이내에 발생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법적 고소나 기소도 고려되지 않는다. 전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성적 학대나 아동 학대 혐의 또는 성적 학대나 아동 학대 혐의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없다. 휴직 기간은 (공소시효) 6년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위법을 행한 시기**- 어떤 사람도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되는 시점에 기소 가능한 위법 행위가 아닌 다른 위법 행위로 기소되지 않는다. 제기된 모든 고소는 성적 또는 아동 학대의 경우 또는 성적 또는 아동 학대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범죄가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시점에 유효한 **교리와 장정의 언어**로 제기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는 고소가 제기된 시점에 유효한 *교리와 장정*의 언어로 해야 한다. 모든 고소는 *교리와 장정*에 고소 가능한 위법 행위로 나열된 행동과 관련되어야 한다.

5. *피고소인이 감독인 경우*, 글로벌 감독위원회 의장은 모든 현직 감독과 총리사에게 고소 사항과 진행 상황을 알려야 한다.

¶ 909. 사법 감리 대응. 1. 사법 감리 대응의 목적은 가능한 한 사실을 확립하고, 상황과 설명을 고려하고, 조치를 취할 가치가 있는 문제가 있는지 결정하고,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회복하고 위반으로 부터 피해를 시정하는 고소의 해결에 도달하는 것이다. 사법 고소 처리에는 *JPP 4*가 적용된다. 피고소인이 감독인 경우, 감리 절차는 글로벌 감독위원회 의장 또는 그 지명자가 한다(¶ 911.1). 감리 대응은 고소 기각 또는 해결, 조사위원회로의 회부 (*JPP 4.4*) 등 세 가지 가능한 결과 중 하나를 도출한다.

2. *정직. 교회나 목회 환경 또는 피고소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피고소인이 감독인 경우 글로벌 감독위원회 과반수의 찬성표를 얻은 의장 또는 피고소인이 성직자인 경우 감리회 과반수의 찬성표를 얻은 감독은 사법 고소에 대한 감리 및 조사 과정에서 피고소인을 모든 사역 책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피고소인은 목회 직무가 정지된 동안 주택, 급여 및 혜택의 지속을 포함한 모든 권리와 특권을 보유하지만, 목회 직무에서 정직 기간 동안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파송된 임시 감독이나 목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사법 고소가 재판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피고소인의 정직은 그 시점에서 해제되어야 한다.

섹션 II. 조사 대응

¶ 910. 조사위원회 구성 1. *피고소인이 감독인 경우*—글로벌 감독위원회는 *사법 관행 및 절차 규칙 5*에 규정된 대로 글로벌 조사위원회를 파송해야 한다.

2. *피소인이 목회자인 경우*- 각 연회는 ¶ 710.6에 따라 연회 소속 목회자에 대한 사법 고소를 심의할 조사위원회를 선출한다.

3. *피고소인이 평신도인 경우*-모든 경우, 담임목사 또는 감리사는 고소 해결을 위한 목회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JPP 4*). 이러한 목회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고 고백 교인이 ¶ 908.2에 있는 위법 행위로 인해 서면으로 고소되는 경우, 감리사(PE)와 지방회 평신도 지도자(있는 경우)는 이 고소 건만을 위해 봉사하도록 4명의 고백 교인과 3명의 정회원 장로목사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임명한다. 목회자와 고백 교인은 모두 피고소인이나 고소인의 교회를 제외한 다른 교회에서 와야 한다. 위원회 위원은 (자격에) 양호한 상태여야 하며 좋은 성품을 지녀야 한다. 위원회는 인종, 민족 및 성별의 다양성을 반영해야 한다. 5명의 위원이 정족수를 구성합니다.

¶ 911. 제출된 고소장을 교회측 변호인에게 송부. 1. *피고소인이 감독인 경우*:

a. 글로벌 감독위원회 의장 또는 그 지명자는 *JPP 4.2*에 따라 감리 대응을 처리한다. 정당한 해결에 동의하지 않고 고소가 기각되지 않는 경우, 의장 또는 그 지명자는 모든 현직 감독과 *총리사에게* 고소의 존재와 성격을 통지하고 *JPP 6.1*에 따라 변호인을 선임해야 한다.

b. 조사위원회 위원 6명 이상이 권고하면, 글로벌 감독위원회는 재판 절차가 끝날 때까지 피고소인을 정직시킬 수 있지만 주택, 급여 및 혜택은 계속 받을 수 있다.

2. **피고소인이 목회자인 경우:**

a. 정당한 해결에 동의하지 않고 고소가 기각되지 않으면 감독은 목회협위원회에 고소의 존재와 성격을 통보해야 한다. 감독은 30 일 이내에 위반 혐의가 발생한 연회 내에서 JPP 6.2 에 따라 교단 변호인으로 활동할 장로목사를 파송해야 한다.

b. 5 명 이상의 조사위원회 위원이 권고하는 경우, 감독은 재판과정이 끝날 때까지 피고소인이 주택, 급여 및 혜택을 계속받지만 파송된 사역과 직무에 관련된 모든 의무와 책임을 정지시킬 수 있다. 피고소인은 목회 직무가 정지된 동안 연회 회원으로서 모든 권리와 특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직무가 정지된 동안 직무를 수행하도록 파송된 임시 목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3. **피고소인이 평신도인 경우:**

a. 정당한 해결에 동의하지 않고 고소가 기각되지 않을 경우, 감리사는 30 일 이내에 JPP 6.3 에 따라 글로벌감리교회 목회자 또는 평신도를 교단의 변호인으로 임명해야 한다.

b. 5 명 이상의 조사위원회 위원이 그렇게 권고하면, 교회의 목사나 감리사(PE)는 재판 과정이 끝날 때까지 피고소인의 교회에서의 직분 수행을 정지, 정직시킬 수 있다.

¶ **912. 조사위원회 절차** 1. **서론**- 조사위원회의 역할은 사법 고소에 제기된 혐의를 조사하고 고소장과 진술서를 재판에 회부할 합당한 근거가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다. 합리적인 근거란 알려진 사실에 근거하여 혐의가 있는 위법 행위가 저질러졌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를 말한다. 만약 그렇다면 고소장과 진술서를 준비, 서명 및 증명해야 한다. 위원회의 임무는 혐의를 뒷받침할 합리적인 근거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뿐이다. 유죄 또는 무죄를 판단하는 것은 위원회의 의무가 아니다.

2. 조사 절차는 JPP 7 의 규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섹션 III. 재판

¶ **913. 일반 (재판) 조직 및 재판 이전 과정** **재판에 대한 기본 원칙**- 교회 재판은 최후의 수단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잘못을 시정하고 사안에 따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합당한 노력을 기울인 후에만 재판을 시작할 수 있다. 여기에 규정된 어떠한 재판도 ¶ 905.9 에서와 같이 면책이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소인이나 교단의 법적 민사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재판은 **교리와 장정**에 따라 적절한 조사를 거쳐 적절하게 구성된 법원에 의해 일관된 기독교적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재판은 JPP 8-13 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 **914. 재판부 소집** 1. 감독에 대한 재판은 JPP 9 및 11 의 조항에 따라 글로벌 감독위원회 회장이 재판부를 소집한다.

2. 목회자 재판은 JPP 9 및 12 의 규정에 따라 피고소인의 감독이 **재판부**를 소집해야 한다.

3. 평신도에 대한 재판은 JPP 9 및 13 의 규정에 따라 피고소인의 감리사가 **법원**을 소집해야 한다.

¶ **915. 재판부의 권한.** 1. **지도, 자격상실, 투표 및 판결**- 재판부는 피고소인을 재판할 전권을 갖는다. 재판부는 혐의가 최종적으로 처리될 때까지 계속되는 기관이다. 재판부의

정규 또는 대체 회원이 증거가 접수되거나 변호인이 재판부에 구두 변론을 하는 회합의 일부에 불참하는 경우, 그 이후로 불참한 사람은 재판부의 구성원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재판부가 판결을 진행할 수 있다.

2. 투표 - 혐의가 유지되려면 재판부 구성원 9명 이상의 투표가 필요하며, 재판부 수가 13명 미만인 한 유죄 판결에도 9명의 투표가 필요하다. (이 경우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유죄 판결에 대한 투표 수가 9표 미만이면 무죄로 간주한다. 기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교단이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각각 사안의 진술과 혐의를 증명해야 한다. 증거가 명확하고 설득력이 있기 위해, 재판부에 제공된 증거는 진술서가 사실이 아닐 가능성 보다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질적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재판과정에서 재판부는 재판장에게 각 혐의에 대한 결정과 각 혐의에 따른 각 개인의 진술서를 제시해야 한다. 그 결과는 최종적이지만, 상소위원회에 상소할 수 있다.

3. 징계 - 재판 결과가 유죄일 경우 - 추가 증언을 들을 수 있으며 징계에 대해 변호인의 주장이 제시될 수 있다. 재판부는 징계를 결정하되 최소한 7인의 투표가 필요하다. (재심 법정的人数이 13명 미만인 경우, 다수결 투표가 필요하다.) 재판부는 피고소인을 고백교인에서 제명할 수 있고, 연회원 신분을 정지시키고, 연회원 신임장, 안수직, 또는 성직을 박탈하거나 지정된 기간 동안 피고소인의 직무 기능 수행을 정지(해당되는 경우 유급 또는 무급) 시키거나 더 적은 징계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정해진 기간 동안 처벌로 인해 정직된 감독이나 또는 목회자가 같은 기간 동안 주택, 급여 및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재판부가 정한 처벌은 재판부가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상소 절차의 결과에 의해서 재판부에서 정한 (판결의 내용) 징계가 변경되거나 감경되는 경우, 피고소인이 감독인 경우에는 교단에서, 목회자인 경우에는 연회에서 적절히 회복 및/또는 보상을 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피고소인은 그의 변호사 고용과 관련된 비용 또는 수수료에 대한 보상 또는 변제를 받을 자격이 없다.

섹션 IV. 상소

¶ 916. 상소 절차 - 개요. 1. 모든 상소에서 상소인은 재판부의 평결 및 형벌 선고 또는 연대상소협의회 이외의 서면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상소 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동시에 상소인은 해당 통지를 받은 임원(JPP 14.2)과 상대측 변호인에게 상소 이유에 대한 서면 진술서를 제공한다. 상소 기구의 심리는 해당 진술서에 명시된 근거로 제한된다.

2. 상소기구가 조사위원회 또는 재판부의 조사 결과를 전부 또는 일부를 뒤집거나 사건을 새로운 심리 또는 재판에 환송하거나 재판부가 부과한 징계를 변경하는 경우, 책임자에게 조치 근거에 대한 진술서가 전해져야 하고 피고소인, 고소인, 교단 변호인에게도 사본이 전달되어야 한다.

3. 조사 및 재판에 피고인이 직접 또는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상소를 할 수 없다. 상소인이 재판부의 판결을 따르기를 거부하거나, 또는 교단에서 탈퇴함으로써; 또는 상소를 기소하기 위해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에 대한 최종 결정 이전에 직접 또는 변호인이 출두하지 않음으로; 상소인 또는 상소인이 재판을 받은 교단 재판부와 관련된 당사자를 상대로 민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위법 행위로

상소할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해당 기관이 별도로 결정하지 않는 한 상소는 적절한 상소기관에서 심리되어야 한다.

4. 상소권은 태만 또는 기타 사유로 (목회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어떤 상소기구에 의해서도 회복될 수 없다.

5. 상소신청권은 그러한 권리를 가진 사람의 사망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상속인이나 법정 대리인은 상소인이 생존해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6. 증거를 포함한 재판의 기록과 문서만이 상소 심리과정에서 사용된다.

7. 상소 기구는 다음 두 가지 질문만 결정한다:

a. 혐의가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었는가?

b. 판결 및/또는 징계를 무효화할만한 교단법 적용과정에 오류가 있었는가?

이러한 질문은 재판기록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상소기구는 어떠한 경우에도 증인을 심리하지 않고 교단과 피고소인의 변호인의 변론을 접수 및/또는 심리한다. 상소 기구에 자문을 제공할 목적으로 상소가 제기된 연회의 의장이 아닌 사람이 법률 고문으로 참석할 수 있다.

8. 상소위원회가 받아들인 상소의 모든 사건에서 있어서, 혐의, 조사 결과 및 증거가 모두 열람되고 변론이 종결되면, 사건 당사자는 모두 물러나고, 상소위원회는 그 사건을 심의하고 결정해야 한다. 상소기구는 조사위원회 또는 재판부의 조사 결과를 전부 또는 일부를 뒤집거나 판결 및/또는 징계를 결정하기 위한 새로운 재판절차 진행을 위해 사건을 환송할 수 있다. 상소기구는 심리 또는 재판에서 부과된 것보다 높지 않은 징계가 부과될 수 있는지 결정할 수 있다. 재판부의 판결 전체 또는 일부를 파기하거나 새로운 재판을 위해 사건을 환송하거나 징계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 해당 판결은 그대로 유지되며, 연대상소협의회에 상소할 수 있다. 상소위원회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명백한 오류를 이유로 판결을 반복하거나 새로운 심리 또는 재판을 위해 사건을 환송할 수 없다. 상소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다수결로 이루어져야 한다.

9. 모든 경우에 증거제출권은 재판부에서 그 사건의 쟁점에 대해 한 번 심리하면 소진되나, 교단법에 대한 질문에는 단계적으로 연대상소위원회에 상소할 때 사용될 수 있다(¶ 922.8).

10. 교단은 재판부에서 얻은 자료로 상소할 권리가 없다. 교단은 교단법 또는 행정의 중대한 오류에 근거하여 조사위원회 또는 재판부의 조사 결과에 합리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상소위원회에, 그 다음에는 연대상소협의회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이 단락에서 "교회법 또는 행정의 중대한 오류"는 *교리와 장정*이 요구하는 교단법 또는 사법 절차에 대한 오해, 곡해, 오적용 또는 위반(알았든 모르든)으로, (상소 기구의 판단에 따라) 재판부 또는 조사위원회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고소장을 입증하지 않기로 한 조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자체로 교단법이나 행정상의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것으로 판단될 수 없다. 상소위원회가 이 부분에 따라 교단법 적용이나 행정상의 중대한 오류를 발견한 경우, 판결 및/또는 징계에 관한 새로운 심리 또는 재판을 위해 사건을 환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사위원회 의장이나 재판부의 책임자와 피고소인, 고소인 및 교단 변호인에게 그 조치의 근거를 명시한 진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조치는 일사부재리(같은 사안으로 반복해서 재판받지 않는)로 간주되지 않는다.

11. 사법절차에 관한 질문은 상소기구의 의장 또는 서기에게 제기할 수 있으며 답변은 모든 당사자와 공유되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없는 상태에서 한 당사자는 사건이 계류 중인 동안 상소기구의 위원과 실질적인 문제를 논의해서는 안 된다(¶ 905.5, 905.6).

12. 감독 또는 목회자의 상소는 *JPP* 14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13. 평신도 교인의 상소는 *JPP* 15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 917. 교단법 적용에 대한 상소. 1. 교단법 적용에 대한 상소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a. 구역 또는 지방 연회를 주재하는 감리사의 결정에서 연회를 주재하는 감독에게, 그리고 연회 상소위원회로;

b. 연회를 주재하는 감독의 결정은 연대상소협의회로;

c. 총회를 주재하는 감독의 결정은 연대상소협의회로.

2. 어떤 연회의 회기 중 서면으로 법률 문제가 제기된 경우, 제출된 질문에 대한 정확한 진술과 이에 대한 의장의 판결이 회의록과 연회록에 기록되도록 하는 것은 서기의 의무입니다. 그런 다음 서기는 질문과 판결의 사본을 작성 및 인증하고 상소를 접수한 사람이나 기관에 동일한 내용을 전달해야 합니다.

¶ 918. 행정 결정에 대한 상소(¶ 906 참조). 1. 행정절차상의 이의신청 순서는 다음과 같다:

a. 목회위원회 조사위원회의 결정은 연회 행정심사위원회로;

b. 연회 행정심사위원회에서 연회 목회위원회 전체 회의로; 그리고

c. 연회 안수(목회)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목회자회의로.

d. 행정 절차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는 감독의 결정과 연대상소협의회 검토를 위해 연회 목회자회의에서 제기되어야 한다.

2. 이러한 모든 상소의 경우 상소인은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상소 통지를 제출하고 동시에 그러한 통지를 받은 임원에게 상소 사유에 대한 서면 진술서를 제공해야 하며, 상소기구에서의 심리는 해당 진술서에 명시된 사유로 제한한다.

3. 상소기구는 행정 심리의 소집권자와 상소인에게 조치의 근거에 대한 서면 진술서를 보내야 하며, 이 진술서는 상소인의 인사 파일에도 포함되어야 한다.

4. 피고소인이 행정심리 중에 직접 또는 변호인을 통해 출석하지 않거나 거부한 경우에는 상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상소인이 위법 행위, 교회 탈퇴, 직접 출석하지 않거나 변호인을 통해 상소를 제기하지 않음으로, 상소에 대한 최종 결정 이전에 교회 행정 절차에 관련된 당사자를 상대로 민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상소할 권리를 상실한 것으로 해당 기관이 인정하지 않는 한 적절한 상소 기관이 상소를 심리해야 한다.

5. 상소권은 (직무)태만 또는 기타 사유로 한번 상실된 경우 어떤 후속 상소기구에 의해 회복될 수 없다.

6. 상소신청권은 그러한 권리를 가진 사람의 사망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상속인이나 법정 대리인은 상소인이 생존해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7. 모든 증거를 포함한 행정 절차의 기록 및 문서만이 상소심 심리에서 사용된다.

8. 상소기구는 한 가지 질문만 결정합니다: 행정 기구의 권고 및/또는 조치를 무효화할 만큼 교단법이나 절차상에 오류가 있었는가? 행정 절차의 기록과 모든 당사자의 공식 대표의 주장이 이 문제를 결정한다. 상소기구는 어떠한 경우에도 증인을 심리하지

않는다. 상소기구에 조언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법률 고문(변호사)을 참석시킬 수 있다.

9. 상소 기구가 (교단법 적용에) 오류가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개인 또는 기관에 오류를 즉시 시정하거나 오류가 무해하다고 판단하거나 기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그러나 상소위원회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명백한 오류를 이유로 판결을 번복하거나 새로운 심리를 위해 사건을 환송할 수 없다. 상소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다수결로 이루어져야 한다.

10. 모든 경우에 증거 제시권은 해당 사건이 적절한 행정 심리 기관에서 한 번만 심리되면 소진되지만, 행정 심리 기관의 결정에 대해서는 ¶918.1 에 명시된 대로 상소할 수 있다. 교단법에 관한 질문은 목회자회의에서 제기할 수 있으며, 연대상소위원회에 상소할 수 있다(¶918.1d).

섹션 V. 기타 조항

¶919. 기타 조항. 1. 회원 자격이 있는 연회의 범주를 벗어나 거주하는 모든 목회자는 ¶¶901-919 의 절차와 위반 혐의가 발생한 연회의 해당 책임자가 행사하는 JPP 의 적용을 받지만, 두 연회의 감리 감독과 절차에 해당되는 목회자가 자신이 소속된 연회의 해당 책임자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공정성에 더 도움이 된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 한, 또는 해당 목회자가 선임지위를 선출한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의 책임자가 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2. 감독 또는 목회자가 ¶¶906-908 에 따른 고소의 피고소인으로서 그 과정의 어느 시점에서든 글로벌감리교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 감독 또는 목회자는 자신의 자격을 포기하고 연회 회원에서 이름을 삭제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은 "고소에 따라 철회" 또는 "기소에 따라 철회" 중 적절한 것으로 기록된다. 자격을 회복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고소를 해결해야 하며, 고소 처리 절차는 고소 건이 종료된 지점에서 다시 시작된다. "고소 또는 기소에 따라 철회"된 시간은 공소시효에 포함되지 않는다(¶908.3).

3. 글로벌감리교회의 고백교인이 범죄 혐의로 고발되어 그 과정 중 언제라도 글로벌감리교회에서 탈퇴하기를 원할 때, 구역회는 그 교인이 고백교인 명부에서 그의 이름을 삭제하도록 허용할 수 있고 이 경우 기록은 "고소로 의한 출교"로 한다. 조사위원회에서 공식적인 기소로 회부된 경우에도 당사자의 교단 탈퇴가 허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록은 "기소로 의한 출교"로 기록된다. 그 사람이 고백교인으로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또는 글로벌감리교회의 다른 지역 회중의 고백교인이 되려면) 먼저 고소를 해결해야 하며 고소 처리는 그 사안이 교단을 탈퇴함으로 고소 건이 중단된 시점에서 시작한다.

4. 절차적 목적을 위해, 사법 절차는 고소 사항이 교단 변호인에게 전달된 날짜에 유효한 교리와 장정 및 JPP 절차에 의해 관리된다.

섹션 VI. 연대 상소협의회.

¶920. 멤버십. 1. 연대상소협의회는 글로벌감리교회의 최고 사법기관이다. 협의회는 7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창립 총회에서 초기 협의회를 선출할 때, 4 명의 위원은

목회자로 그리고 3 명의 위원은 평신도로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6 년으로 한다. 위원은 최대 2 회 연속하여 6 년의 임기를 수행할 수 있다. 목회자와 평신도의 위원수는 6 년마다 교대하여 목회자는 해당 임기 동안 4 명, 평신도는 다음 6 년 임기 동안 4 명으로 한다. 위원은 글로벌감리교회의 정회원 목회자나 평신도로서 고백교인이어야 한다. 감독은 연대상소협의회에 선출될 자격이 없다.

2. **대체자.** 목회자와 평신도는 향후 6 년 임기 동안 연회대상소협의회에서 재임할 수 있는 수와 동일한 수의 교체 위원으로 선출되어야 합니다. 협의회 위원 유고시에는 선출된 순서에 따라 대체 위원이 협의회 회기 동안 해당 역할에 임해야 한다. 협의회 위원이 임기 잔여 기간을 채울 수 없는 경우, 영향을 받는 범주에서 다음으로 선출된 대체위원이 임기 잔여 기간을 채우며, 해당 임기는 최대 임기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임기 만료.** 연대상소협의회 위원과 그 대체위원의 임기는 그들의 후임자가 선출되는 교단총회 폐회와 함께 만료된다.

4. **부적격.** 연대상소협의회 위원은 총회 대의원이 될 수 없으며, 총회 또는 연회 이사회나 위원회에서 재임할 자격이 없다.

5. **추천.** 총회에 앞서 행정공천위원회는 교회의 지리적, 인종적, 성별 다양성을 대표하는 총 21 명을 해당 평신도 및 목회자 부문에서 다수결로 지명한다. 교단총회 첫날에 목회자 또는 평신도의 공천을 회의석상에서 할 수 있다. 이름, 연회 회원 자격 및 100 자를 초과하지 않는 이력서를 교단총회 선거 시간 최소 48 시간 전에 총회 대의원이 검토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한다. 선거는 논의나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와 다수결로 이루어진다.

¶ **921. 조직 및 절차.** 1. 연대상소협의회 **실무 및 절차 규칙과 임원**- 연대상소협의회는 **교리와 장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체적인 실무 및 절차 규칙을 마련해야 하며, 여기에는 협의회 회장, 부회장 및 총무의 선출이 포함되며, 협의회 회원들이 선출해야 한다.

2. **회의 시간 및 장소**- 연대상소협의회는 총회의 회의 시간과 장소에서 모이며, 그 기구가 폐회할 때까지, 매년 적어도 한 차례 이상, 그리고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다른 때와 수시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장소에서 계속된다. 협의회 물리적 소집을 방해하는 국제적 또는 지역적 상황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협의회는 3분의 2의 찬성으로 전자 또는 기타 디지털 수단을 통해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3. **정족수**- 정식으로 착석한 7 명의 회원 또는 대체자가 정족수를 구성한다. 평신도 1 명과 목회자 1 명이 질병이나 다른 이유로 사퇴한 경우 대체위원이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교단총회의 어떤 결정이 위헌이라고 선언하려면 최소 5 명의 협의회 의원 또는 정당하게 회의에 참석한 대체위원의 찬성 투표가 필요하다. 다른 모든 사안에 있어서 연대상소협의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4. **사건 알람표**- 연대상소협의회 간사는 각 회의에서 결정될 사안의 목록을 서류 제출 마감일 최소 삼십(30)일 전에 발표해야 한다. 서류 중인 각 사안에 대한 설명은 요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이 서류 중인 사안의 주제를 충분히 알 수 있게 준비되어야 한다.

5. **공개 접근**- 연대상소협의회가 사안별로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연대상소협의회에 제출된 모든 자료는 공개 기록에 해당하며 글로벌감리 교회의

목회자와 회원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협의회의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그러나 협의회는 모든 사안에 대한 구두 변론을 위해 대중에게 공개되는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

¶ 922. **관할권.** 1. 연대상소협의회는 교단총회 대의원의 5분의 1의 출석과 투표 또는 감독회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교단총회의 어떤 행위가 이 *교리와 장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묻게 되면 그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2. 연대상소협의회는 교단총회 대의원의 5분의 1의 출석과 투표 또는 감독회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안된 입법이 본 *교리와 장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묻는 선언적 결정이 요청될 때 그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3. 연대상소협의회는 해당 연회에 출석하여 투표한 대의원 5분의 1의 이의 제기에 따라 연회의 어떤 행위가 본 *교리와 장정*에 부합하는지를 결정한다.

4. 연대상소협의회는 총회가 창설하거나 승인한 기구 또는 연회가 창설하거나 승인한 기구가 취한 모든 조치의 합법성을 그 조치가 취해진 총회 또는 연회의 대의원 5분의 1의 출석과 투표 또는 창설 또는 승인한 기구의 위원 3분의 1의 출석과 투표 또는 감독회의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5. 연대상소협의회는 총회 또는 연회가 창설하거나 권한을 부여한 기관이나 단체가 취한 조치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연회 출석 대의원 5분의 1의 청원과 연회의 의결에 따라 이송명령을 결정할 수 있다.

6. 연대상소협의회는 *교리와 장정* 또는 그 일부의 의미, 적용 또는 효과 또는 연회의 행위나 입법안의 적법성, 의미, 적용 또는 효과에 관한 선언적 결정을 내리기 위해 이송명령을 결정할 수 있다. 이송명령에 대한 청원은

(a) 총회에 출석하여 투표한 대의원 5분의 1의 찬성으로,

(b) 감독회의에 출석하여 투표한 감독 과반수의 찬성으로,

(c) 총회 또는 연회가 창설하거나 권한을 부여한 모든 기관 또는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해당 기관의 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또는

(d) 연회에 출석하여 투표하는 대의원 5분의 1의 찬성으로 제출될 수 있다.

7. 연대상소협의회는 연회나 총회에서 감독회의가 내린 법의 결정을 확인, 수정 또는 파기한다. 그러한 감독의 법률 결정은 연대상소협의회의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결정이 내려진 연회를 제외하고는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8. 연대상소협의회는 어느 연회의 상소위원회의 결정이 *교리와 장정*, 연대상소협의회 이전 결정 또는 교단법 문제에 대한 다른 연회의 상소위원회의 결정과 상반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그 결정을 검토하기 위해 이송명령을 내릴 수 있다.

¶ 923. **이송명령.** 이송명령은 연대상소협의회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며 협의회 위원 3명의 찬성 투표가 있어야 부여된다.

¶ 924. **결정.** 연대상소협의회의 모든 결정은 최종적이다. 결정은 각 사안의 이해 당사자에게 즉시 전달되어야 하며 공개 검토를 위해 전자적으로 게시되어야 한다.

¶ 925. 이전 판정의 유효성. 감리교회 및 연합감리교회 사법위원회와 같은 전신 감리교 기구의 결정은 연대상소협회의 변론에서 인용될 수 있지만, 연대상소협회가 결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전 판정의 유효성을 갖는다.

제 10 부 - 재산

¶ 1001. **재산의 신학.**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시며(시 50:9-10); 우리는 일정 기간 동안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 글로벌감리교회와 그 단체(개체교회 포함)의 명의로 등기되거나 소유권이 있는 재산(동산, 부동산, 유형, 무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사명을 수행하고 성경적 거룩함을 이 땅에 전파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401).

¶ 1002. **자산 관리 책임** 개체교회, 연회, 연대 위원회 또는 글로벌감리교회의 다른 단체가 보유한 재산에 대한 신탁 조항은 없다. 각 개체교회, 연회 또는 연대위원회는 법인 해산 시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법인 기록에 명시해야 한다.

¶ 1003. **탈퇴 절차.** 글로벌감리교회의 한 교회는 최소 90 일간의 분별과 기도 기간을 거친 후 교회 총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교단에서 탈퇴할 수 있다.

¶ 1004. **"글로벌감리교회" 명칭 등록.** "글로벌감리교회"라는 단어는 글로벌감리교회가 직접 수행하는 업무의 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개체교회, 연회, 법인 또는 기타 사업부를 제외하고는 상호 또는 상표로 사용하거나 사업 회사 또는 조직의 명칭의 일부로 사용할 수 없다. 글로벌감리교회 연대협의회는 "글로벌감리교회"와 교단 로고의 감독 및 등록을 담당한다.

¶ 1005. **법률 준수.** 1. **지방법률 준수.** 본 교리와 장정의 모든 조항은 부동산 및 동산에 관한 재산, 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것, 합병에 관한 것 등 모든 조항은 현지 법률에 부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며, 현지 법률과 충돌하는 경우 현지 법률이 우선한다; 단, 이 요건이 적법한 법 절차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박탈하거나 주 법령에 의한 업무 규제가 종교의 자유와 정교 분리에 대한 헌법적 보장을 위반하거나 교회의 연대 구조를 유지할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글로벌감리교회가 동의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지방법은 교회 재산이 위치한 지리적 범위 내의 국가, 주 또는 기타 유사한 정치 단위의 법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2. **법인 설립 요건.** 글로벌감리교회 법인 또는 형성되는 법인 또는 글로벌감리교회와 제휴하고 있는 모든 법인은 정관(또는 헌장)과 세칙에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a. 법인 권한이 이 교리와 장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인정;
- b. 법인의 권한이 본 교리와 장정과 면세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법인이 활동하는 국가의 세법에 부합하는 언어(해당되는 경우)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 그리고
- c. 법인이 유기, 중단 또는 법인으로서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경우 법인 자산의 수령인을 지정한다.

¶ 1006. **이사와 위원은 동의어.** 본 교리와 장정에서 사용된 "수탁자"와 "재단 이사회"라는 용어는 법인에 적용되는 "이사"와 "이사회"와 동의어로 해석될 수 있다. 개체교회가 대체 구조를 선택하는 경우, 위원회(이사회) 역할을 할 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 1007. 지방법률을 준수하는 소유증서 및 양도증서. 글로벌감리교회 내 단체의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양도 및 증서는 해당 재산이 위치한 각 주, 지방 및 국가의 법률을 준수하고 본 *교리와 장정*에 부합하도록 작성 및 집행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소유증서는 실행 즉시 등록 또는 기록되어야 한다.

1008. 민사 소송 제기 및 방어 글로벌감리교회의 특성상,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이나 산하 교회 단체 또는 개체 단위, 또는 그 어떤 임원도 글로벌감리교회의 이름으로 또는 글로벌감리교회를 대신하여 어떠한 소송이나 절차에 착수하거나 참여할 수 없다:

1. *글로벌감리교회 연대협의회*. 글로벌감리교회의 연대협의회 또는 글로벌감리교회의 이름으로 법적 절차를 송달받은 개인이나 교회 단위는 글로벌감리교회의 비사법적 성격을 법원에 제시하고, 법원의 관할권 부재, 해당 개인이나 단위가 법적 절차를 받을 능력 부족, 및 교단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관련 헌법적 문제들을 제기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할 수 있다.

2. *교단의 이익 보호*. 글로벌감리교회의 이익을 위해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타인이 만든 신탁을 집행할 권한이 있는 교단 단위는 교단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1009. 재정적 의무의 제한. 개체교회, 지방회, 연회, 연대위원회 또는 기타 어떤 개체 단위도 사전의 구체적인 서면 동의 없이 글로벌 감리교회 또는 그 어떤 조직 단위에도 재정적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1010. 감사 및 교회 임원의 지불보증보험 가입. 글로벌감리교회 단위(개체교회 제외)에 속한 신탁 기금, 증권 또는 모든 종류의 금전을 보유한 모든 사람은 글로벌감리교회 연대협의회 또는 그 지정 대리인이 지시하는 대로 신뢰할 수 있는 회사에 의해 충분한 금액으로 보증되어야 한다. 이러한 단위의 회계는 인가된 공인회계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의해 최소한 연 1 회 감사를 받아야 한다. 본 *교리와 장정*이 감사를 받아야 하는 재무제표가 포함된 글로벌감리교회 단위의 보고서는 감사가 이루어지고 재무제표가 정확하다는 것이 증명될 때까지 승인되지 않는다. 보고서의 다른 부분은 그러한 감사를 받을 때까지 승인될 수 있다.

¶ 1011. 글로벌감리교회 재단. 연회 또는 연회들은 해당 연회를 위해 글로벌감리교회 재단을 설립할 수 있다. 그러한 재단을 설립하는 목적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1. 글로벌감리교회 내의 개체교회, 연회 및 기타 기관을 대신하여 계획된 기부 프로그램을 홍보;
2. 영구 기금의 홍보 및 관리와 관련하여 개체교회에 조언과 지침을 제공;
3. 개체교회의 건축과 개보수를 위한 자금 예치, 자금 투자, 자금 대출; 그리고
4. 연회가 요청하는 기타 책임.

모든 재단은 연회가 승인한 법인의 문서에 의해 결정된 독립적 이사회를 가져야 한다. 재단의 운영이사회는 재단이 운영될 모든 정책과 절차를 수립한다. 선교적 목적과 연대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수혜 조직을 신중하게 분리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1012. **이사회의 권한.** 글로벌감리교회 내의 각 개체 단위는 지방 법률이 금지하지 않는 한 법인화되어야 한다. 각 법인 단위에는 이 *교리와 장정*에 명시된 대로 이사회가 있어야 한다. 글로벌감리교회 내 각 단위의 이사회(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구)는 그 재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1. **기부금과 유증.** 상기 법인은 수혜자의 이익을 위해 모든 종류의 기부금, 유증, 또는 모든 종류의 부동산 또는 동산, 유형 자산 또는 무형 자산의 기탁금을 수령하고, 수집하며, 이를 신탁하여 보유하고, 이러한 것은 박애적, 자선적 또는 종교적 목적을 위해 위의 이사회에 기부, 유증, 기탁 또는 양도될 수 있으며, 법인은 이를 기부자, 신탁자, 설립자 또는 유언자의 지시에 따라 관리하고, 그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법인의 지시에 따라 교회, 사회, 기관 또는 기부자, 신탁자, 설립자 또는 유언자가 의도한 기관이나 단체의 이익에 맞게 운영한다. 이러한 기부금, 유산 또는 증여금의 용도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기부금은 법인의 지시에 따라 사용되어야 한다.

2. **신탁 재산 보유.** 이사회의 지시가 있을 경우, 법인은 선교, 사역 및 프로그램 수행에 사용하기 위해 이전에 취득한 모든 부동산 또는 동산을 글로벌감리교회의 각 단위를 위해 그리고 그 단위를 대신하여 신탁 받아 보유할 수 있다. 그러한 재산이 투자 가능한 자산의 형태인 경우 이사회는 해당 자산이 위치한 관할 지역의 법률에 따라 책임 있는 투자 회사에 투자를 위해 자산을 맡기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본 *교리와 장정의 사회적 증인(제3 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투자하기 위해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 **자산 양도 권한.** 본 *교리와 장정*에 의해 달리 제한되지 않는 한, 이사회는 신탁으로 보유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을 투자, 재투자, 매매, 임대, 양도 및 양도할 권한을 가지며, 항상 유산, 유증 또는 기부의 조건에 따라야 한다.

a. 개체교회 이사회(또는 이에 준하는 기구)는 재산을 양도하기 전에 반드시 구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에는 단순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또한, 파송된 담임목사는 양도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해야 한다.

b. 복합구역의 경우 재산을 양도하는 개별 교회의 이사회(또는 이에 준하는 기구)는 개별 구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에는 단순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또한, 파송된 담임목사는 양도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해야 한다.

c. 지방회나 연회의 임원회(또는 이에 준하는 기구)가 재산을 양도하기 전에 반드시 지방회나 연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지방회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감리사가 양도에 동의해야 한다. 연회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총리사가 양도하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

4. **이사회 결정을 실행할 권한.** 법인이 소유한 재산 또는 자산에 관한 제안된 조치를 승인하는 결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계약, 증서, 임대차, 매매 증서, 저당권 또는 기타 필요한 서면 문서는 임원회 임원 중 2인이 이사회를 대신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법인의 지시를 수행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으며, 그렇게 집행된 모든 서면 문서는 글로벌감리교회 단위의 조치에 대해 구속력과 효력을 갖는다.

5. **자산 보호.** 이사회는 증여, 유증 또는 기타 방법으로 발생하거나 글로벌감리교회 개별 단위 또는 그 회원의 이익을 위해 신탁 또는 설립된 재산 및 재산권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해 법인의 이익과 권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고 개입할 수 있다.

6. **증여 수락 정책.** 그러한 증여, 유증 또는 기부를 받은 담임목사의 이사회에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이사회는 증여를 보존, 보호 및 관리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이사회가 납득할 만한 사유로 인해 그러한 증여, 기탁금 또는 유산을 받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7. **보험.** 이사회는 매년 자신이 관할하는 글로벌감리교회 단위의 보험 보장 범위의 존재와 적절성을 비교해야 한다. 이 검토의 목적은 교회, 그 재산 및 직원들을 위협으로부터 적절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8. **이사회 활동의 공개.** 이사회는 매년 법인이 수행한 일과 법인이 신탁한 모든 기금, 금전, 유가증권 및 재산의 한 해 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충실히 보고해야 한다. 이사회가 신탁한 기금의 수혜자는 해당 펀드의 상태와 해당 기금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에 대해 적어도 매년 보고서를 받을 권리가 있다.

9. **지역 교회 조항.** 다음 조항은 글로벌감리교회에 속한 개체교회의 이사회(또는 이에 준하는 기구)에 관한 것이다:

a. **개체교회 사용법(¶ 446.5a).** 구역회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또는 이에 준하는 조직)는 개체교회가 소유한 모든 부동산과 개체교회, 또는 개체교회와 연결된 모든 모임, 이사회, 속회, 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이 직접 취득한 모든 재산과 장비를 감독, 감독 및 관리하되, 이사회는 해당 재산이 **교리와 장정**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되거나 **교리와 장정의 다른 곳에서 부여한 개체교회 조직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이사회는 목회자가 개체교회의 재산을 예배 또는 기타 글로벌감리교회의 법, 관습 및 관례에 의해 인정되는 적절한 모임이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되며, 목회자의 동의 없이, 또는 목회자가 부재할 경우 감리사의 동의 없이 다른 종교 또는 기타 모임을 위해 상기 재산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이사회와 개체교회의 담임목사는 글로벌감리교회의 좌석이 항상 자유롭게 열려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b. **외부 단체의 사용(¶ 446.5b).** 외부 단체가 개체교회의 시설이나 재산을 사용하는 것은 담임목사의 동의 하에 해당 단체의 목적과 프로그램이 교회와 글로벌감리교회의 사명과 가치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한 후 임원회에서 허락할 수 있다.

c. **목사관(¶ 446.5c).** 교회가 목회자에게 주거용으로 제공한 사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사회 의장 또는 그 지명자는 목회협력위원회 위원과 함께 사택이 매년 목사관이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목사관은 회중의 재산이자 목회자 가족의 집으로 상호 존중되어야 한다.

d. **접근 가능한 건물(¶ 446.5e).** 이사회는 매년 건물, 부지 및 시설에 대한 접근성 감사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를 방해하는 물리적, 건축적 또는 의사소통상의 장벽을 발견하고 파악하며, 그러한 모든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e. **연례 보고서(¶ 446.6).** 이사회는 매년 구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며, 여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i. 교회가 소유한 각 부동산의 법적 설명과 합리적인 가치 평가;
- ii. 개체교회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각 증서에서 양수인의 분명한 이름;

- iii. 개체 교회가 소유한 모든 개인 재산의 목록과 합리적인 가치 평가;
- iv. 소득을 창출하는 재산에서 받은 소득 금액과 이와 관련된 지출의 세부 목록;
- v. 부동산의 건축, 재건축, 리모델링 및 개선을 위해 한 해 동안 받은 금액과 항목별 지출 명세서;
- vi. 미결제 자본 부채 및 계약 방식;
- vii. 공동 보험 또는 기타 제한 조건에 의해 제한되는지 여부와 적절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각 부동산 구획에 대해 가입된 보험에 대한 자세한 설명;
- viii. 개체 교회의 모든 법적 서류의 관리인 이름과 보관 장소;
- ix. 개체교회가 수혜자인 모든 신탁에 대한 상세한 목록과 자금이 어디에 어떻게 투자되는지 명시;
- x.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예배당 구역을 포함한 모든 교회 부동산에 대한 평가, 해당되는 경우 교회 부동산이 접근 가능하도록 개발하는 계획 및 일정.

f. **재산의 구매, 판매, 임대, 건축, 저당-** ¶1012.3의 권한에도 불구하고, 개체교회가 부동산을 매입, 매각, 임대 또는 저당하거나 건물을 건축 또는 개축하기 전에, 그러한 행위를 승인하는 결의는 그 목적을 위해 소집된 정기 또는 임시 회의에서 그 회원들이 법인의 회원 자격으로 활동하는 구역회에서 출석과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되어야 한다. 단, 그러한 회의와 제안된 조치에 대한 10일 이상의 통지가 강단과 지역 교회의 후보, 소식지 또는 전자 공지 또는 지역 법이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기타 수단을 통해 통지되어야 하며, 또한 그러한 조치에 대한 서면 동의가 담임 목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제안된 조치를 승인하는 결의안은 (교회법인) 이사회가 해당 조치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계약, 증서, 매매 증서, 모기지 또는 기타 서면 문서를 여기에 명시된 대로 실행하도록 지시하고 권한을 부여한다. 정기 또는 임시 회의에서 이사회는 그런 조치를 취하거나 지역 법률에서 필요로 하거나 요구하는 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 승인된 조치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필수 계약, 증서, 임대차 계약서, 매매 증서, 모기지 또는 기타 서면 문서는 법인의 임원 중 2명이 법인의 이름으로 작성, 서명해야 이렇게 작성되는 문서는 (교회)법인의 결정으로 구속력과 효력을 갖는다.

g. **저당권 또는 매각 수익금의 제한-** 교인 60%의 승인과 감리사의 충분한 인식과 협의 없이는 개체교회의 경상 예산이나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교회 건물이나 사택이 있는 부동산을 저당하거나 매각할 수 없다.

h. **지역 교회 영구 기금 위원회-** 구역회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는 영구 기금 또는 개체교회 재단을 설립할 수 있다. 이사회는 영구기금의 방향을 안내하는 법적 문서를 작성하고 구역회는 그 지도자를 지정하거나 선출한다.

1013. 개체 글로벌감리교회의 합병. 두 개 이상의 지역 교회가 사역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합병하여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있다:

1. 합병은 제안된 합병의 조건이 명시된 결의안을 통해 합병하는 각 교회의 구역회에 제안되어야 한다.

2. 합병하는 각 교회의 구역회에 제안된 합병 계획은 각 구역회에서 합병 대상 교회의 단순 과반수 이상의 투표로 승인되어야 한다.
3. 합병하는 각 교회의 담임 목사와 감리사가 합병에 동의해야 한다.

글로벌감리교회의 간략한 역사

글로벌 감리 교회

이 *교리와 장정*의 첫 문단(¶101)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듯이, 감리교는 18세기 영국 교회 내에서 개혁 운동으로 시작되었다. 감리교회는 1784년 미국 감리회 감독 교회가 설립되면서 독립적인 교회 단체로서 첫 모습을 드러냈다. 새로운 교단은 프란시스 애즈베리 감독과 토마스 코크 감독의 지도력 아래, 그리고 "성경적 거룩함을 온 땅에" 전파한다는 비전에 헌신한 순회 설교자로 알려진 2,500명의 평신도 설교자들의 지치지 않는 수고를 통해 젊은 나라에서 빠르게 성장해 나갔다. 평균 수명이 33세에 불과했던 순회 사역의 열악한 생활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의 기수"들은 성장하는 개척지와 그 너머로 감리교의 메시지를 충실히 전했다.

독일어권 미국인들 사이에서 활동한 제이콥 올브라이트, 마틴 보엠, 필립 오터바인, 아프리카계 미국인들 사이에서 활동한 리처드 알렌 등 웨슬리 정신을 공유한 다른 사람들도 감리교회의 급속한 확산에 기여했다. 그 결과 19세기 중반에는 교회에 소속된 미국인 중 3분의 1이 감리교인이었다. 그러나 노예제도, 감독과 교회 정부의 역할, 성화운동의 발전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감리교는 이후 수십 년 동안 수많은 분열을 겪다가 1939년 세 개의 큰 그룹이 다시 합쳐져 감리교회를 형성하게 되었다. 대략 30년 후, 이 단체가 웨슬리안 계열의 독일어권 출신인 복음주의연합 형제교회와 합병하여 1968년 연합감리교회가 창설되었다.

그러나 그 재결합을 기념하는 모든 낙관주의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새 교단에는 다양한 철학적 사상과 신앙의 실천적 표현을 위한 "빅 텐트"를 만들려는 신학적 관용 또는 다원주의의 아이디어가 내재되어 있었다.

안타깝게도 합병 후 교회 생활의 실제적 측면이 드러나면서 강점으로 여겨졌던 부분도 내재적인 약점을 드러냈다. 신학적으로 명확한 지침이 없으면 개인 간, 그리고 더 넓은 교단 내 각 부문 간 의견과 관행이 극적으로 달라져 진정한 일치룰 이루기가 어려웠다.

다양한 신학적 사상과 성서 해석에 대한 견해 외에도 낙태, 인간의 성, 안락사, 전쟁 및 기타 사회적 이슈에 관한 질문이 수많은 총회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었고, 감리교회를 내부로부터 개혁하고 부흥시키려는 여러 그룹의 노력으로 이어졌다. 아프리카 교회의 증거 덕분에 연합감리교회는 다른 많은 주류 교단들보다 기독교 신앙에 대한 역사적인 복음주의적 이해에 더 가까이 머물렀다. 하지만 총회가 거듭될수록 신앙에 대한 공통의 증거를 유지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졌다.

갈등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한 2019년 총회의 특별 회기에서는 인간의 성에 관한 교단의 기존 전통적 기준을 재확인했다. 이 총회는 또한 전통적인 기준에 동의할 수 없는 교회가

교단에서 탈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그러나 연합감리교회의 상당수는 양심의 이유로 교회의 공식적인 전통적 입장을 무시하기로 선택했다.

이 모든 것을 정리하기 위해 존경받는 외부 중재자가 이끄는 감독, 전통주의자, 진보주의자 등 16 명으로 구성된 즉흥적인 그룹이 2020 년 1 월에 "분리를 통한 화해와 은혜를 위한 의정서"를 작성했다. 이 의정서는 지리적, 신학적으로 교단의 모든 영역에서 놀라울 정도로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 이 의정서는 연합감리교회의 조직적이고 우호적인 분리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통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과 자산을 가지고 교회를 떠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이 의정서는 2020 년 총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았다. 안타깝게도 코로나 19 전염병으로 인해 2020 년 총회가 취소되었다. 보수주의자들은 계속 기다렸지만 2021 년과 2022 년에 감독들과 총실위가 이를 다시 취소하자 많은 이들이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다. 교회의 전통적인 입장을 바꾸고자 했던 의정서 참여자 중 일부는 처음 약속했던 지지에서 벗어났고, 의견 불일치는 다시 한번 심화되기 시작했다.

키스 보예트가 이끄는 웨슬리언연합협회는 2016 년부터 분리가 불가피할 경우를 대비해 우리의 원래 이해에 더 가까운 감리교회의 새로운 표현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주요 목회자 및 평신도 지도자들과 상의한 끝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리고 일종의 산파 역할을 하게 되었다. 2022 년 5 월 1 일, 새로운 독립 웨슬리안 교단으로서 글로벌감리교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불가리아 연회를 시작으로 전 세계 전통주의 교회들이 2019 년에 통과된 교단 탈퇴 옵션을 사용하여 교단을 탈퇴하기 시작했다. 2023 년 말 연합감리교회의 탈퇴 기간이 마감되기 전에 4 분의 1 이상의 교회가 이전 교단을 떠났다. 많은 이들이 새로운 조직에 합류했고, 다른 이들은 독립적으로 남거나 다른 연대를 형성했다. 글로벌감리교회는 2024 년 9 월 코스타리카에서 창립 총회를 개최했다. 이 글을 쓰는 현재 글로벌감리교회에는 전 세계 15 개국에 5,000 개 이상의 교회가 있다. 감리교회의 초기 표현과 마찬가지로, 이 새로운 진정한 글로벌의 표현에서 "감리교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것에 흥분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계신 성령의 역사에 대한 증거로 다시 한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감리교 전통의 감독들

| | | | |
|------|----------------------------------|------|---------------------------------|
| 1784 | Thomas Coke (MEC) | 1859 | William W. Orwig (EA) |
| 1784 | Francis Asbury (MEC) | 1861 | Jacob Markwood (CUBC) |
| 1800 | Richard Whatcoat (MEC) | 1861 | Daniel Shuck (CUBC) |
| 1800 | Phillip William Otterbein (CUBC) | 1863 | John Jacob Esher (EA) |
| 1800 | Martin Boehm (CUBC) | 1864 | Davis Wasgatt Clark (MEC) |
| 1807 | Jacob Albright (EA) | 1864 | Edward Thomson (MEC) |
| 1808 | William M'Kendree (MEC) | 1864 | Calvin Kingsley (MEC) |
| 1813 | Christian Newcomber (CUBC) | 1865 | Jonathan Weaver (CUBC) |
| 1816 | Enoch George (MEC) | 1866 | William May Wightman (MECS) |
| 1816 | Robert Richford Roberts (MEC) | 1866 | Enoch Mather Marvin (MECS) |
| 1817 | Andrew Zeller (CUBC) | 1866 | David Seth Doggett (MECS) |
| 1821 | Joseph Hoffman (CUBC) | 1866 | Holland Nimmons McTyeire (MECS) |
| 1824 | Joshua Soule (MEC, MECS) | 1866 | John Wright Roberts (MEC) |
| 1824 | Elijah Hedding (MEC) | 1869 | John Dickson (CUBC) |
| 1825 | Henry Kumler, Sr. (CUBC) | 1870 | John Christian Keener (MECS) |
| 1832 | John Emory (MEC) | 1871 | Reuben Yeakel (EA) |
| 1833 | Samuel Heistand (CUBC) | 1872 | Thomas Bowman (MEC) |
| 1833 | William Brown (CUBC) | 1872 | William Logan Harris (MEC) |
| 1836 | Beverly Waugh (MEC) | 1872 | Randolph Sinks Foster (MEC) |
| 1836 | Thomas Asbury Morris (MEC) | 1872 | Isaac William Wiley (MEC) |
| 1837 | Jacob Erb (CUBC) | 1872 | Stephen Mason Merrill (MEC) |
| 1839 | John Seybert (EA) | 1872 | Edward Gayer Andrews (MEC) |
| 1841 | Henry Kumler, Jr. (CUBC) | 1872 | Gilbert Haven (MEC) |
| 1841 | John Coons (CUBC) | 1872 | Jesse Truesdell Peck (MEC) |
| 1843 | Joseph Long (EA) | 1875 | Rudolph Dubs (EA) |
| 1844 | Leonidas Lent Hamline (MEC) | 1875 | Thomas Bowman (EA) |
| 1844 | Edmund Storer Janes (MEC) | 1877 | Milton Wright (CUBC) |
| 1845 | John Russel (CUBC) | 1877 | Nicholas Castle (CUBC) |
| 1845 | Jacob John Glossbrenner (CUBC) | 1880 | Henry White Warren (MEC) |
| 1845 | William Hanby (CUBC) | 1880 | Cyrus David Foss (MEC) |
| 1846 | William Capers (MECS) | 1880 | John Fletcher Hurst (MEC) |
| 1846 | Robert Paine (MECS) | 1880 | Erastus Otis Haven (MEC) |
| 1849 | David Edwards (CUBC) | 1881 | Ezekiel Boring Kephart (CUBC) |
| 1850 | Henry Bidleman Bascom (MECS) | 1882 | Alpheus Waters Wilson (MECS) |
| 1852 | Levi Scott (MEC) | 1882 | Linus Parker (MECS) |
| 1852 | Matthew Simpson (MEC) | 1882 | John Cowper Granberry (MECS) |
| 1852 | Osman Cleander Baker (MEC) | 1882 | Robert Kennon Hargrave (MECS) |
| 1852 | Edward Raymond Ames (MEC) | 1884 | William Xavier Ninde (MEC) |
| 1853 | Lewis Davis (CUBC) | 1884 | John Morgan Walden (MEC) |
| 1854 | George Foster Pierce (MECS) | 1884 | Willard Francis Mallalieu (MEC) |
| 1854 | John Early (MECS) | 1884 | Charles Henry Fowler (MEC) |
| 1854 | Hubbard Hinde Kavanaugh (MECS) | 1884 | William Taylor (MEC) |
| 1858 | Francis Burns (MEC) | | |

| | | | |
|------|---------------------------------|------|----------------------------------|
| 1885 | Daniel Kumler Flickinger (CUBC) | 1905 | William Melvin Bell (CUBC) |
| 1886 | William Wallace Duncan (MECS) | 1905 | Thomas Coke Carter (CUBC) |
| 1886 | Charles Betts Galloway (MECS) | 1906 | John James Tigert III (MECS) |
| 1886 | Eugene Russell Hendrix (MECS) | 1906 | Seth Ward (MECS) |
| 1886 | Joseph Stanton Key (MECS) | 1906 | James Atkins (MECS) |
| 1888 | John Heyl Vincent (MEC) | 1907 | Samuel P. Spreng (EA) |
| 1888 | James Newbury FitzGerald (MEC) | 1908 | William Franklin Anderson (MEC) |
| 1888 | Isaac Wilson Joyce (MEC) | 1908 | John Louis Nuelsen (MEC) |
| 1888 | John Philip Newman (MEC) | 1908 | William Alfred Quayle (MEC) |
| 1888 | Daniel Ayres Goodsell (MEC) | 1908 | Charles William Smith (MEC) |
| 1888 | James Mills Thoburn (MEC) | 1908 | Wilson Seeley Lewis (MEC) |
| 1889 | James W. Hott (CUBC) | 1908 | Edwin Holt Hughes (MEC) |
| 1890 | Atticus Greene Haygood (MECS) | 1908 | Robert McIntyre (MEC) |
| 1890 | Oscar Penn Fitzgerald (MECS) | 1908 | Frank Milton Bristol (MEC) |
| 1891 | Wesley Matthias Stanford (UEC) | 1910 | Collins Denny (MECS) |
| 1891 | Christian S. Haman (UEC) | 1910 | John Carlisle Kilgo (MECS) |
| 1891 | Sylvanus C. Breyfogel (EA) | 1910 | William Belton Murrah (MECS) |
| 1893 | William Horn (EA) | 1910 | Walter Russell Lambuth (MECS) |
| 1893 | Job S. Mills (CUBC) | 1910 | Richard Green Waterhouse (MECS) |
| 1894 | Rudolph Dubs (UEC) | 1910 | Edwin Dubose Mouzon (MECS) |
| 1896 | Charles Cardwell McCabe (MEC) | 1910 | James Henry McCoy (MECS) |
| 1896 | Joseph Crane Hartzell (MEC) | 1910 | William Hargrave Fouke (UEC) |
| 1896 | Earl Cranston (MEC) | 1910 | Uriah Frantz Swengel (UEC) |
| 1898 | Warren Akin Candler (MECS) | 1912 | Home Clyde Stuntz (MEC) |
| 1898 | Henry Clay Morrison (MECS) | 1912 | William Orville Shepard (MEC) |
| 1900 | David Hastings Moore (MEC) | 1912 | Theodore S. Henderson (MEC) |
| 1900 | John William Hamilton (MEC) | 1912 | Naphtali Luccock (MEC) |
| 1900 | Edwin Wallace Parker (MEC) | 1912 | Francis John McConnell (MEC) |
| 1900 | Frances Wesley Warne (MEC) | 1912 | Frederick DeLand Leete (MEC) |
| 1902 | George Martin Matthews (CUBC) | 1912 | Richard Joseph Cooke (MECS) |
| 1902 | Alexander Coke Smith (MECS) | 1912 | Wilbur Patterson Thirkield (MEC) |
| 1902 | Elijah Embree Hoss (MECS) | 1912 | John Wesley Robinson (MEC) |
| 1902 | Henry Burns Hartzler (UEC) | 1912 | William Perry Eveland (MEC) |
| 1902 | William Franklin Heil (UEC) | 1913 | Henry Harness Fout (CUBC) |
| 1904 | Joseph Flintoft Berry (MEC) | 1913 | Cyrus Jeffries Kephart (CUBC) |
| 1904 | Henry Spellmeyer (MEC) | 1913 | Alfred Taylor Howard (CUBC) |
| 1904 | William Frasier McDowell (MEC) | 1915 | Gottlieb Heinmiller (EA) |
| 1904 | James Whitford Bashford (MEC) | 1915 | Lawrence Hoover Seager (EA) |
| 1904 | William Burt (MEC) | 1916 | Herbert Welch (MEC) |
| 1904 | Luther Barton Wilson (MEC) | 1916 | Thomas Nicholson (MEC) |
| 1904 | Thomas Benjamin Neely (MEC) | 1916 | Adna Wright Leonard (MEC) |
| 1904 | Isaiah Benjamin Scott (MEC) | 1916 | Matthew Simpson Hughes (MEC) |
| 1904 | William Fitzjames Oldham (MEC) | 1916 | Charles Bayard Mitchell (MEC) |
| 1904 | John Edward Robinson (MEC) | 1916 | Franklin Elmer E. Hamilton (MEC) |
| 1904 | Merriman Colbert Harris (MEC) | 1916 | Alexander Priestly Camphor (MEC) |
| 1905 | William Marion Weekley (CUBC) | 1916 | Eben Samuel Johnson (MEC) |

| | | | |
|------|---|------|------------------------------------|
| 1917 | William H. Washinger (CUBC) | 1930 | Arthur James Moore (MECS) |
| 1918 | John Monroe Moore (MECS) | 1930 | Paul Bentley Kern (MECS) |
| 1918 | William Fletcher McMurry (MECS) | 1930 | Angie Frank Smith (MECS) |
| 1918 | Urban Valentine Williams Darlington (MECS) | 1930 | George Edward Epp (EC) |
| 1918 | Horace Mellard DuBose (MECS) | 1930 | Joshwant Rao Chitamber (MEC) |
| 1918 | William Newman Ainsworth (MECS) | 1932 | Juan Ermete Gattinoni (MEC) |
| 1918 | James Cannon, Jr (MECS) | 1932 | Junius Ralph Magee (MEC) |
| 1918 | Matthew T. Maze (UEC) | 1932 | Ralph Spaulding Cushman (MEC) |
| 1920 | Lauress John Birney (MEC) | 1932 | Elmer Wesley Praetorius (EC) |
| 1920 | Frederick Bohn Fisher (MEC) | 1934 | Charles Henry Stauffacher (EC) |
| 1920 | Charles Edward Locke (MEC) | 1935 | Jarrell Waskom Pickett (MEC) |
| 1920 | Ernest Lynn Waldorf (MEC) | 1936 | Roberto Valenzuela Elphick (MEC) |
| 1920 | Edgar Blake (MEC) | 1936 | Wilbur Emery Hammaker (MEC) |
| 1920 | Ernest Gladstone Richardson (MEC) | 1936 | Charles Wesley Flint (MEC) |
| 1920 | Charles Wesley Burns (MEC) | 1936 | Garfield Bromley Oxnam (MEC) |
| 1920 | Harry Lester Smith (MEC) | 1936 | Alexander Preston Shaw (MEC) |
| 1920 | George Harvey Bickley (MEC) | 1936 | John McKendree Springer (MEC) |
| 1920 | Frederick Thomas Keeny (MEC) | 1936 | F.H. Otto Melle (MEC) |
| 1920 | Charles Larew Mead (MEC) | 1937 | Ralph Ansel Ward (MEC) |
| 1920 | Anton Bast (MEC) | 1938 | Victor Otterbein Weidler (CUBC) |
| 1920 | Robert Elijah Jones (MEC) | 1938 | Ivan Lee Holt (MECS) |
| 1920 | Matthew Wesley Clair (MEC) | 1938 | William Walter Peele (MECS) |
| 1921 | Arthur Raymond Clippinger (CUBC) | 1938 | Claire Purcell (MECS) |
| 1922 | William Ben Beauchamp (MECS) | 1938 | Charles Claude Selecman (MECS) |
| 1922 | James Edward Dickey (MECS) | 1938 | John Lloyd Decell (MECS) |
| 1922 | Samuel Ross Hay (MECS) | 1938 | William Clyde Martin (MECS) |
| 1922 | Hoyt McWhorter Dobbs (MECS) | 1938 | William Turner Watkins (MECS) |
| 1922 | Hiram Abiff Boaz (MECS) | 1939 | James Henry Straughn (MPC, MC) |
| 1922 | John Francis Dunlap (EC) | 1939 | John Calvin Broomfield (MPC, MC) |
| 1924 | George Amos Miller (MEC) | 1940 | William Alfred Carroll Hughes (MC) |
| 1924 | Titus Lowe (MEC) | 1940 | Lorenzo Houston King (MC) |
| 1924 | George Richmond Grose (MEC) | 1940 | Bruce Richard Baxter (MC) |
| 1924 | Brenton Thoburn Badley (MEC) | 1940 | Shot Kumar Mondol (MC) |
| 1924 | Wallace Elias Brown (MEC) | 1941 | Clement Daniel Rockey (MC) |
| 1925 | Arthur Biggs Statton (CUBC) | 1941 | Enrique Carlos Balloch (MC) |
| 1926 | John S. Stamm (EC) | 1941 | Z.T. Kaung (MC) |
| 1926 | Samuel J. Umbreit (EC) | 1941 | Wen Yuan Chen (MC) |
| 1928 | Raymond J. Wade (MEC) | 1941 | George Carleton Lacy (MC) |
| 1928 | James Chamberrlain Baker (MEC) | 1941 | Fred L. Dennis (CUBC) |
| 1928 | Edwin Ferdinand Lee (MEC) | 1944 | Dionisio Deista Alejandro (MC) |
| 1929 | Grant D. Batdorf (CUBC) | 1944 | Fred Pierce Corson (MC) |
| 1929 | Ira David Warner (CUBC) | 1944 | Walter Earl Ledden (MC) |
| 1930 | John W. Gowdy (MEC) | 1944 | Lewis Oliver Hartman (MC) |
| 1930 | Chi Ping Wang (MEC) | 1944 | Newell Snow Booth (MC) |
| | | 1944 | Willis Jefferson King (MC) |
| | | 1944 | Robert Nathaniel Brooks (MC) |

- 1944 Edward Wendall Kelly (MC)
1944 William Angie Smith (MC)
1944 Paul Elliot Martin (MC)
1944 Costen Jordan Harrell (MC)
1944 Paul Neff Garber (MC)
1944 Charles Wesley Brashares (MC)
1944 Schuyler Edward Garth (MC)
1944 Arthur Frederick Wesley (MC)
1945 John Abdus Subhan (MC)
1945 John Balmer Showers (CUBC)
1946 August Theodor Arvidson (MC)
1946 Johann Wilhelm Ernst Sommer (MC)
1948 John Wesley Edward Bowen (MC)
1948 Lloyd Christ Wicke (MC)
1948 John Wesley Lord (MC)
1948 Dana Dawson (MC)
1948 Marvin Augustus Franklin (MC)
1948 Roy Hunter Short (MC)
1948 Richard Campbell Raines (MC)
1948 Marshall Russell Reed (MC)
1948 Harry Clifford Northcott (MC)
1948 Hazen Graff Werner (MC)
1948 Glenn Randall Phillips (MC)
1948 Donald Harvey Tippet (MC)
1948 Jose Labarrete Valencia (MC)
1949 Sante Uberto Barbieri (MC)
1950 Raymond Leroy Archer (MC)
1950 David Thomas Gregory (EUB)
1952 Frederick Buckley Newell (MC)
1952 Edgar Amos Love (MC)
1952 Matthew Walker Clair (MC)
1952 John Warren Branscomb (MC)
1952 Henry Bascom Watts (MC)
1952 D. Stanley Coors (MC)
1952 Edwin Edgar Voigt (MC)
1952 Francis Gerald Ensley (MC)
1952 Alsie Raymond Grant (MC)
1952 Julio Manuel Sabanes (MC)
1953 Friedrich Wunderlich (MC)
1953 Odd Arthur Hagen (MC)
1954 Ferdinand Sigg (MC)
1954 Rueben Herbert Mueller (EUB)
1954 Harold Rickel Heining (EUB)
1954 Lyle Lynden Baughman (EUB)
1954 Prince Albert Taylor, Jr. (MC)
1956 Eugene Maxwell Frank (MC)
1956 Nolan Bailey Harmon (MC)
1956 Bachman Gladstone Hodge (MC)
1956 Hobart Baumann Amstutz (MC)
1956 Ralph Edward Dodge (MC)
1956 Mangal Singh (MC, MCI)
1956 Gabriel Sundaram (MC, MCI)
1957 Paul E.V. Shannon (EUB)
1957 John Gordon Howard (EUB)
1958 Hermann Walter Kaebnick (EUB)
1958 W. Maynard Sparks (EUB)
1958 Paul Murray Herrick (EUB)
1960 Bowman Foster Stockwell (MC)
1960 Fred Garrigus Holloway (MC)
1960 William Vernon Middleton (MC)
1969 William Ralph Ward, Jr. (MC)
1960 Oliver Eugene Slater (MC)
1960 William Kenneth Pope (MC)
1960 Paul Vernon Galloway (MC)
1960 Aubrey Grey Walton (MC)
1960 Kenneth Wilford Copeland (MC)
1960 Everett Walter Palmer (MC)
1960 Ralph Taylor Alton (MC)
1960 Edwin Ronald Garrison (MC)
1960 Torney Otto Nail, Jr. (MC)
1960 Charles Franklin Golden (MC)
1960 Noah Watson Moore, Jr. (MC)
1960 Marquis LaFayette Harris (MC)
1960 James Walton Henley (MC)
1960 Walter Clark Gum (MC)
1960 Paul Hardin, Jr. (MC)
1960 John Owen Smith (MC)
1960 Paul William Milhouse (EUB)
1962 Pedro Ricardo Zottele (MC)
1964 James Samuel Thomas (MC)
1964 William McFerrin Stowe (MC)
1964 Walter Kenneth Goodson (MC)
1964 Dwight Ellsworth Loder (MC)
1964 Robert Marvin Stuart (MC)
1964 Edward Julian Pendergrass, Jr. (MC)
1964 Thomas Marion Pryor (MC)
1964 Homer Ellis Finger, Jr. (MC)
1964 Earl Gladstone Hunt, Jr. (MC)
1964 Francis Enmer Kearns (MC)
1964 Lance Webb (MC)
1964 Escrivao Anglaze Zunguze (MC)

1964 Robert Fielden Lundy (MC)
 1964 Harry Peter Andreassen (MC)
 1964 John Wesley Shungu (MC)
 1965 Alfred Jacob Shaw (MC)
 1965 Prabhakar Christopher Benjamin
 Balaram (MC)
 1965 Stephen Trowen Nagbe (MC)
 1966 Franz Werner Schäfer (EMC)
 1967 Benjamin I. Guasing (MC)
 1967 Lineunt Scott Allen (MC)
 1968 Paul Arthur Washburn (EUB)

연합감리교회 감독

1968 Carl Ernst Sommer
 1968 David Frederick Wertz
 1968 Alsie Henry Carleton
 1968 Roy Calvin Nichols
 1968 Arthur James Armstrong
 1968 William Ragsdale Cannon
 1968 Abel Tendekayi Muzorewa
 1968 Cornelio M. Ferrer
 1968 Paul Locke A. Granadosin
 1968 Joseph R. Lance
 1968 Ram Dutt Joshi
 1969 Eric Algernon Mitchell
 1969 Federico Jose Pagura
 1970 Armin E. Härtel
 1970 Ole Edvard Borgen
 1972 Finis Alonzo Crutchfield, Jr.
 1972 Joseph Hughes Yeakel
 1972 Robert E. Goodrich, Jr.
 1972 Carl Julian Sanders
 1972 Ernest T. Dixon, Jr.
 1972 Don Wendell Holter
 1972 Wayne K. Clymer
 1972 Joel Duncan McDavid
 1972 Edward Gonzalez Carroll
 1972 Jesse Robert DeWitt
 1972 James Mase Ault
 1972 John B. Warman
 1972 Mack B. Stokes
 1972 Jack Marvin Tuell
 1972 Melvin E. Wheatley, Jr.
 1972 Edward Lewis Tullis
 1972 Frank Lewis Robertson

1972 Wilbur Wong Yan Choy
 1972 Robert McGrady Blackburn
 1972 Emilio J.M. de Carvalho
 1972 Fama Onema
 1972 Mamidi Elia Peter
 1973 Bennie de Quency Warner
 1976 J. Kenneth Shamblin
 1976 Alonzo Mark Bryan
 1976 Kenneth William Hicks
 1976 James Chess Lovern
 1976 Leroy Charles Hodapp
 1976 Edsel Albert Ammons
 1976 C. Dale White
 1976 Ngoy Kimba Wakadilo
 1976 Almeida Penicela
 1976 LaVerne D. Mercado
 1977 Herman Ludwig Sticher
 1979 Shantu Kumar A. Parmar
 1980 John Alfred Ndoricimpa
 1980 William Talbot Handy, Jr.
 1980 John Wesley Hardt
 1980 Benjamin Ray Oliphint
 1980 Louis Wesley Schowengerdt
 1980 Melvin George Talbert
 1980 Paul Andrews Duffey
 1980 Edwin Charles Boulton
 1980 John William Russell
 1980 Fitz Herbert Skeete
 1980 George Willis Bashore
 1980 Roy Clyde Clark
 1980 William Boyd Grove
 1980 Emerson Stephen Colaw
 1980 Marjorie Swank Matthews
 1980 Carlton Printess Minnick, Jr.
 1980 Calvin Dale McConnell
 1980 Kainda Katembo
 1980 Emerito P. Nacpil
 1980 Arthur Flumo Kulah
 1984 Felton Edwin May
 1984 Ernest A. Fitzgerald
 1984 R. Kern Eutsler
 1984 J. Woodrow Hearn
 1984 Walter L. Underwood
 1984 Richard B. Wilke
 1984 J. Lloyd Knox
 1984 Neil L. Irons

| | | | |
|------|------------------------------|------|------------------------------------|
| 1984 | Roy Isao Sano | 1992 | Sharon Zimmerman Rader |
| 1984 | Lewis Bevel Jones III | 1992 | S. Clifton Ives |
| 1984 | Forest C. Stith | 1992 | Mary Ann Swenson |
| 1984 | Ernest W. Newman | 1992 | Done Peter Dabale |
| 1984 | Woodie W. White | 1994 | Benjamin Gutierrez |
| 1984 | Robert Crawley Morgan | 1996 | G. Lindsey David |
| 1984 | David J. Lawson | 1996 | Joseph E. Pennel, Jr. |
| 1984 | Elias Gabriel Galvan | 1996 | Charlene Payne Kammerer |
| 1984 | Rueben Philip Job | 1996 | Alfred Johnson |
| 1984 | Leontine T. Kelly | 1996 | Cornelius L. Henderson |
| 1984 | Judith Craig | 1996 | Susan Wolfe Hassinger |
| 1986 | Rüdiger Rainer Minor | 1996 | J. Lawrence McCleskey |
| 1986 | Jose Castro Gamboa, Jr. | 1996 | Ernest S. Lyght |
| 1988 | Thomas Barber Stockton | 1996 | Janice Riggle Huie |
| 1988 | Harold Hasbrouck Hughes, Jr. | 1996 | Marion M. Edwards |
| 1988 | Richard Carl Looney | 1996 | C. Joseph Sprague |
| 1988 | Robert Hitchcock Spain | 1996 | Peter D. Weaver |
| 1988 | Susan Murch Morrison | 1996 | Jonathan D. Keaton |
| 1988 | R. Sheldon Duecker | 1996 | Roy W. Chamberlain, Jr. |
| 1988 | Joseph Benjamin Bethea | 1996 | John L. Hopkins |
| 1988 | William B. Oden | 1996 | Michael J. Coyner |
| 1988 | Bruce P. Blake | 1996 | Edward W. Paup |
| 1988 | Charles Wilbourne Hancock | 1996 | Ntambo Nkulu Ntanda |
| 1988 | Clay Foster Lee, Jr. | 1998 | Edward W. Williamson (EMC, GMC) |
| 1988 | Sharon A. Brown Christopher | 2000 | Larry M. Goodpaster |
| 1988 | Dan E. Solomon | 2000 | Rhymes H. Moncure, Jr. |
| 1988 | William B. Lewis | 2000 | Beverly J. Shamana |
| 1988 | William W. Dew, Jr. | 2000 | Violet L. Fisher |
| 1988 | Moises Domingos Fernandes | 2000 | Gregory Vaughn Palmer |
| 1988 | Joao Somane Machado | 2000 | William W. Hutchinson |
| 1989 | Walter Klaiber | 2000 | B. Michael Watson |
| 1989 | Heinrich Bolleter | 2000 | D. Max Whitfield |
| 1989 | Hans Växby | 2000 | Benjamin Roy Chamness |
| 1992 | Alfred Lloyd Norris | 2000 | Linda Lee |
| 1992 | Joe Allen Wilson | 2000 | James R. King |
| 1992 | Robert Eugene Fannin | 2000 | Bruce R. Ough |
| 1992 | Amelia Ann B. Sherer | 2000 | Warner H. Brown, Jr. |
| 1992 | Albert Frederick Mutti | 2000 | José Quipungo |
| 1992 | Raymond Harold Owen | 2000 | Gaspar Joao Domingos |
| 1992 | Joel Neftali Martinez | 2000 | Leo A. Soriano |
| 1992 | Donald Arthur Ott | 2000 | Benjamin A. Justo |
| 1992 | Kenneth Lee Carder | 2000 | John G. Innis |
| 1992 | Hae Jong Kim | 2001 | Øystein Olsen |
| 1992 | William Wesley Morris | 2001 | Timothy W. Whitaker |
| 1992 | Marshall LeRoy Meadors, Jr. | 2001 | Solito K. Toquero |
| 1992 | Charles Wesley Jordan | | |

2004 Marcus Matthews
 2004 Sudarshana Devadhar
 2004 Jeremiah J. Park
 2004 Hope Morgan Ward
 2004 William H. Willimon
 2004 James E. Swanson, Sr.
 2004 Hee-Soo Jung
 2004 Robert E. Hayes (UMC, GMC)
 2004 Alfred W. Gwinn, Jr.
 2004 John R. Schol
 2004 Richard J. Wills, Jr.
 2004 Robert C. Schnase
 2004 Deborah L. Kiesey
 2004 Jane Allen Middleton
 2004 Thomas J. Bickerton
 2004 Scott J. Jones (UMC, GMC)
 2004 Charles N. Crutchfield
 2004 Robert T. Hoshibata
 2004 Mary Virginia Taylor
 2004 Sally Dyck
 2004 Minerva G. Carcaño
 2004 Eben K. Nhiwatiwa
 2005 Hans Växby
 2005 David K. Yemba
 2005 Rosemarie J. Wenner
 2005 Benjamin Boni
 2005 Patrick Ph. Streiff
 2006 Daniel A. Wandabula
 2007 Kefas K. Mavula
 2008 Paul Lee Leeland
 2008 Wilbert Earl Bledsoe
 2008 Peggy A. Johnson
 2008 John Michael Lowry (UMC, GMC)
 2008 Julius Calvin Trimble
 2008 Grant J. Hagiya
 2008 James E. Dorff
 2008 Elaine J.W. Stanovsky
 2008 Joaquina Filipe Nhanala
 2008 Roldofo Alfonso Juan
 2008 Lito Cabacungan Tangonan
 2008 John Kpahun Yambasu
 2009 Christian Alsted
 2012 Kenneth H. Carter
 2012 Sandra Lynn Steiner Ball
 2012 William T. McAlilly
 2012 Deborah Wallace-Padgett

2012 Martin McLee
 2012 Young Jin Cho (UMC, GMC)
 2012 Cynthia Fierro Harvey
 2012 Mark J. Webb (UMC, GMC)
 2012 Gary E. Mueller
 2012 Michael McKee
 2012 Gabriel Yemba Unda
 2012 John Wesley Yohanna (UMC, GMC)
 2012 Eduard Khegay
 2012 Pedro M. Torio, Jr.
 2012 Ciriaco Q. Francisco
 2016 Sharma Lewis
 2016 David Graves
 2016 Leonard Fairley
 2016 Lawson Bryan
 2016 Sue Hauptert-Johnson
 2016 Cynthia Moore-KoiKoi
 2016 Tracy Smith Malone
 2016 Frank Beard
 2016 David Bard
 2016 LaTrelle Easterling
 2016 Ruben Saenz
 2016 Laurie Haller
 2016 James Nunn
 2016 Robert Farr
 2016 Karen Oliveto

글로벌감리교 감독들

2023 Mark James Webb (UMC, GMC)
 2023 Scott Jameson Jones (UMC, GMC)
 2023 Robert E. Hayes (UMC, GMC)*
 2023 Edward Williamson (EMC, GMC)*
 2023 Young Jin Cho (UMC, GMC)*
 2023 John Michael Lowry (UMC, GMC)*
 2024 John Wesley Yohanna (UMC. GMC)*
 2024 John Pena Auta
 2024 Carolyn Capers Moore
 2024 Leah Hidde-Gregory
 2024 Kimba Kyakutala Evariste
 2024 Jeffrey Edward Greenway
 2024 Kenneth Ray Levingston

** 명예 감독으로 추대*

교단 범례

EA - 복음주의 협회
EC - 복음주의 교회
EMC- 복음주의 감리교회
EUB - 복음주의연합형제교회
CUBC -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형제교회

GMC - 글로벌감리교회
MC - 감리교회
MCI- 인도 감리교회
MEC - 감리교 성공회
MECS - 남부 감리교 성공회
MPC - 감리교 개신교회
UB - 연합 형제회
UEC - 연합 복음주의교회
UMC - 연합감리교회

색인

가상 회의

- 연대 항소위원회. ¶921.2
- 연대 협의회. ¶807.3
- 연회 연대협의회 ¶710.1
- 연회. ¶708.6
- 총회 위원회. ¶802.6
- 총회. ¶208, ¶705.3

감독 ¶208.7, ¶209

- 기간. ¶604.7-8
- 감독의 이적. ¶611
- 명예 감독의 지위 ¶613
- 봉헌. ¶603.9, ¶604.6
- 감독에 대한 고소. ¶615
- 선거. ¶604
- 의 성격. ¶601
- 의 역할. ¶602
- 자격. ¶602
- 직위의 공석. ¶612
- 책임. ¶603
- 책임감. ¶703.5
- 총회에 의해 정의된. ¶703.5

감독 사역. ¶504.2

감독의 대응. ¶904

- 사법적. ¶909

감독회 ¶606

- 감독 공석. ¶612
- 연대 운영 책임자 채용. ¶815.1
- 책임. ¶606

감리직

- 의 성격. ¶601
- 감독 위원회. ¶710.3
- 연회. ¶607.2
- 회원. ¶710.3a

감사.

- 감독회. ¶811.2a
- 개체 교회. ¶447.7
- 요구됨. ¶1010

개체 교회 ¶408

- GMC와 협력. ¶456

- 공개 회의. ¶437.3

- 조직. ¶437

- 주요 작업. ¶436

개체 교회 사용. ¶1012.9

결혼. ¶302.7

계약

- 총회. ¶812.2c

고등교육.

- 위원회. ¶810.2b

고소 ¶903

- 고소의 철회. ¶919.2

- 장소. ¶919.1

공개 회의

- 개체 교회. ¶437.3

공소시효

- 불만사항. ¶908.3

공인 평신도 사역자 ¶502

- 구역 회의에서 승인된 ¶439.9

- 봉사 조건 ¶502.4

- 자격. ¶502.2-3

공정한 과정. ¶905

공천 및 지도력 개발 위원회

- 개체 교회. ¶444

공천 및 지도력 위원회. ¶710.5

- 회원. ¶710.5a

과학. ¶302.4

성희롱.

- 기소 가능한 범죄 ¶908.1c, ¶908.2c

교단 변호사. ¶905.10

- 조사 대응. ¶911

교리 문답. ¶417

교리.

- 위원단. ¶809

교리와 장정.

- 발효일. ¶707

- 번역. ¶702.1

- 적응성. ¶702.2

교리적 기준.

- 규범 문서. ¶105

- 규범적 웨슬리안 증거. ¶106
- 변경. ¶212.1
- 웨슬리안 기본 표준. ¶107
- 해석. ¶439.16
- 교인 총회. ¶438.9
- 교회 성장
 - 위원단. ¶808
- 교회 임원회 ¶443
 - 자격. ¶437.2
 - 회원. ¶443.5
- 교회 임원회 의장. ¶442.3
- 교회.
 - 개체 ¶408
 - 글로벌. ¶402
 - 비전. ¶401
 - 사명. ¶401
 - 언약. ¶403
 - 이전 ¶207.9
 - 정의 ¶407, ¶408
 - 회원 자격. ¶410
- 구성원.
 - 회원 명단. ¶425
- 목회적 책임
 - 정의 ¶409
- 구역회의 ¶206, ¶438
 - 권한 과 의무 ¶439
 - 회원. ¶438.2
 - 회의. ¶438.3-6
- 구원의 길. ¶102
- 글로벌 감독 위원회 ¶605
 - 감독 고소 ¶615
 - 감독 공석. ¶612
 - 감독 후보 제출 ¶604.2
 - 감독에 대한 행정 소송 ¶907
 - 감독의 수 제한. ¶604.3
 - 조사 대응. ¶911.1
 - 책임. ¶605.5
 - 회원. ¶605.1, 3
- 글로벌 감리 교회
 - 출범. ¶101.10
 - 이름 등록. ¶1004
 - 이름. ¶202
- 글로벌 교육 위원회. ¶507.5
- 글로벌 웨슬리안 연합.
 - 회원. ¶813.5b
- 기간 제한
 - 감독. ¶604.8
 - 개체 교회 임원. ¶439.6
- 기관목회.
 - 파송. ¶610.10
- 기록 보관소 및 역사.
 - 위원단. ¶811.2c
- 기록, 접근. ¶905.4
- 기부금.
 - 형성 중. ¶1012.9h
- 기소 가능한 범죄
 - 감독에 반대하여 ¶908.5
 - 목회자. ¶908.1
 - 평신도. ¶908.2
- 기소 면책.
 - 고소 절차. ¶905.9
- 기술. ¶302.4
- 낙태. ¶302.3
- 니케아 신조. ¶105.2
- 다른 교단들
 - 목회자 이동 ¶516
 - 목회자 파송 ¶517
 - 전 UMC 목회자. ¶521
- 다른 교파의 목회자.
 - 이전 UMC. ¶521
 - 파송 ¶517
- 다른 목회자의 사역을 훼손하는 행위
 - 기소 가능한 범죄, 목회자 ¶908.1f
 - 기소 가능한 범죄, 평신도 ¶908.2f
- 협동 교구 ¶452, ¶453
 - 구역회. ¶439.14-15
 - 목회 협력 위원회. ¶445.5,7
- 담보.
 - 요구됨. ¶1010
- 대의원
 - 총회. ¶207.4, ¶208
- 로버트 회의 규칙. ¶705.1
- 면허받은 본처목사
 - UMC 에서 이전. ¶521.2
- 명예로운 사직. ¶518.7

목사관 지출 면세 한도액. ¶445.8m
 목사관. ¶207.8, ¶446.5c, ¶1012.9c

- PPRC의 역할. ¶445.8m
- 연회에서 설정한 기준. ¶709.9

 목회 승인

- 체플린 사역 ¶810.2c

 목회 협력 위원회 ¶445

- 비공개 회의. ¶437.3
- 의무. ¶445.8
- 회원. ¶445.2-4

 목회 협력 위원회. ¶445
 목회자 이적

- 다른 교파에서. ¶516

 목회자 파송

- 기준. ¶610
- 다른 교파에서. ¶517
- 다인종 ¶610.5
- 변경. ¶445.8i
- 보장권 없음. ¶610.6
- 사회자의 역할. ¶609.4
- 연장 사역. ¶610.10
- 연회 경계를 넘어서 ¶610.3
- 학교. ¶610.11
- 협의 ¶610.7

 목회자 훈련 기금. ¶511
 목회자.

- 선임 지위. ¶520
- 신상 변경. ¶207.6
- 안수. ¶207.6
- 자격. ¶208.1

 목회자. ¶518.1-2
 문란 ¶302.8
 민사 소송.

- 소송. ¶1008

 박해. ¶302.13
 발효일

- 법률. ¶707

 번역

- 교리와 장정 ¶702.1
- 교회 총회를 위해 ¶438.9
- 구역회를 위해 ¶438.7

 벌칙

• 재판 유죄 판결. ¶915.3
 에큐메니칼 위원단

- 회원 자격. ¶813.5b

 법.

- 교회의 정의. ¶407
- 인사와 관련됨. ¶445.8l
- 준수 사항 ¶1005.1
- 준수 사항 ¶1007

 법률 관련 질문

- 연대 상소위원회. ¶922.7
- 상소. ¶917

 법인.

- 권한. ¶1012

 법인.

- 요구 사항. ¶1005.2

 병가.

- 감독. ¶614.2

 보상.

- 목회자, 구역 회의에서 규정한. ¶439.11

 보험.

- 위원회. ¶811.2e

 보험.

- 적절성. ¶2012.7

 복리후생

- 연대협의회의 승인. ¶807.4i
- 위원단. ¶811

 본처 전도사 ¶512

- 총회에 의해 정의된. ¶703.3
- 회원. ¶512.4

 부정.

- 기소 가능한 범죄 ¶908.1g

 불복종.

- 기소 가능한 범죄 ¶908.1e, ¶908.2e

 비서

- 구역회. ¶439.4
- 총회. ¶704.2, ¶706.1, ¶706.6

 비자발적 휴직 ¶518.4-5
 비전

- 교회. ¶401

 빈곤. ¶302.5
 사건 이송 명령서. ¶923
 사도 신경 ¶105.1

- 사법 관행 및 절차. ¶902
- 사법적 불만. ¶908
- 사법제도. ¶208.12
- 사역 및 고등 교육 위원단 ¶810
 - 교회 승인 위원회. ¶513.1
 - 수업 인증. ¶507.7
- 사역 자격증
 - 위원회. ¶810.2a
- 사역.
 - 교육 요건. ¶507
 - 안수 자격. ¶505
 - 요구사항의 변화. ¶507.8
 - 유형. ¶504
 - 의미. ¶501
 - 장로목사. ¶503.2
 - 질서 ¶503
 - 집사목사. ¶503.1
 - 후보자. ¶506
- 사회적 증언. ¶208.14, ¶301
 - 총회에서 채택됨. ¶703.15
 - 해석. ¶439.16
- 상소 ¶916
 - 교회의 상소 권리. ¶916.10
 - 법률 관련 질문. ¶917
 - 연회의 결정에 대한. ¶922.3
 - 총회 결정에 대한. ¶922.1
 - 회의 기관의 결정에 대한. ¶922.4
- 새로운 교회가 시작된다 ¶207.7, ¶450
 - 구역회의 역할. ¶439.17
- 선교
 - 교회. ¶208.10, ¶401
- 선교 동원
 - 위원회. ¶808
- 선교사들
 - 사명 부여. ¶515, ¶603.9
 - 의 파송 ¶515.2
 - 자격. ¶515.1
- 선임지위
 - 목회자. ¶520
- 설명서. ¶107.2
- 성경 ¶104, ¶203
 - 제 5 조 (AR). ¶ 106.1
- 성경.
 - 제 4 조 (CF). ¶106.2
- 성례전
 - 관리 권한. ¶413
 - 권한. ¶512.2
 - 의미. ¶412
 - 제 16 조 (AR). ¶106.1
 - 제 6 조(CF). ¶106.2
- 성별. ¶302.7, ¶302.8
- 성별. ¶302.8
- 성적 부당 행위
 - 기소 가능한 범죄 ¶908.1g
- 성적 학대
 - 기소 가능한 범죄 ¶908.1g
- 성찬
 - 실천. ¶421
 - 의미. ¶421
- 세계 감리교 협의회
 - 회원 자격. ¶813.5a
- 세례.
 - 방식. ¶415
 - 서약. ¶416
 - 유아. ¶414
 - 유효한. ¶423
 - 의미. ¶414
 - 제 17 조(AR). ¶ 106.1
 - 제 6 조(CF). ¶106.2
- 소그룹. ¶405
- 소송.
 - 글로벌 감리 교회 관련. ¶1008
- 순회.
 - 정의 ¶409.2
- 승인 사역 책임자 ¶513.2
- 승인 위원회. ¶810.3
 - 자문위원회. ¶810.3d
 - 회원. ¶810.3a
- 시설 사용.
 - 개체 교회. ¶446.5b
- 신앙 고백. ¶106.2
- 신탁 조항. ¶206.2, ¶1002
- 아시아 감리교회 협의회.
 - 회원 자격. ¶813.5b
- 안수 사역

- 교육 요건. P507
- 요구사항의 변화. P507.8
- 자격. P505
- 후보자. P506
- 안수 위원회. P710.2
 - 회원. P710.2a
- 안식년. P518.3
- 어린이. P302.9
- 언약 관계.
 - 교단 P813.6
- 언어.
 - 교회 총회를 위해 P438.9
 - 구역회를 위해 P438.7
 - 번역. P706.5
- 에큐메니컬 관계 위원단. P813
- 에큐메니컬 회중. P453
- 역사적 질문. P508
- 연금
 - 위원단. P811
- 연대 기금. P449
 - 계산. P449.4
 - 연회. P449.5b, 6, P711.1
 - 총회 P449.5a, 6
 - 해석. P439.12
- 연대 운영 책임자 P815
 - 감독회의에서 지명. P606.9
 - 연대 협의회에서 채용 P807.4k
 - 임기. P815.2
 - 책임과 의무. P815.6
- 연대 위원단 P802
 - 가상 회의. P802.6
 - 공석. P807.4l
 - 권한. P805.2, P806
 - 사역 및 고등 교육. P810
 - 선거. P803
 - 에큐메니컬 관계 위원단. P813
 - 연대 협의회에 대해 응답. P802.1
 - 연회. P802.4
 - 재정, 행정, 연금 및 복리. P811
 - 전도, 교회 성장, 선교 동원 및 재난 대응. P808
 - 제자도, 교리 및 정의로운 사역. P809
 - 지도력 P804
 - 직원. P802.7
 - 직원. P805.1
 - 차별 금지. P805.4
 - 총회 위원단 P814
 - 총회 위원단. P812
 - 총회에 의해 생성. P802.2
 - 평가. P807.4g
- 연대 상소위원회. P210
 - 결정. P924
 - 관할권. P922
 - 권한. P922
 - 다른 기관에서의 멤버십. P920.4
 - 법률 문서. P921.4
 - 임기. P920.3
 - 전례. P925
 - 정족수. P921.3
 - 조직 및 절차. P921
 - 상소심. P916.9
 - 회원. P920
 - 회의. P921.2
- 연대 협의회. P208.5, P807
 - GMC 이름 및 로고. P1004
 - 권한. P807.1
 - 법인. P807.5
 - 법적 소송에 관여. P1008.1
 - 승인 사역 책임자 P513.2
 - 연대 운영 책임자 채용. P815.1
 - 책임. P807.4
 - 총회 대의원 배정. P711.2
 - 총회에 의해 정의된. P703.9
 - 회원. P807.2
- 연회 평신도 대표. P442.2
- 연장 교육.
 - 목회자. P445.8g, P507.6
- 연회 P207
 - 가상 회의. P708.6
 - 경계. P208.4, P703.7
 - 구성. P708.1
 - 권한 과 의무 P208.3, P709

- 동수의 회원 ¶708.1
- 목회자 실무회의 ¶709.8
- 사회자. ¶603.5, ¶708.8
- 직원. ¶710.1b4
- 특별 회의 ¶708.7
- 회의. ¶708.5
- 연회 대표
 - 감독 추천 ¶604.1a
- 연회 변호인
 - 연회 회원. ¶708.3
- 연회 연대 협의회 ¶710.1
 - 권한 및 책임. ¶710.1b
 - 회원. ¶710.1a
- 예산.
 - 개체 교회. ¶447.3
 - 연대 협의회에 위임. ¶703.10
 - 연회. ¶710.1b2
 - 총회 ¶807.4d, ¶811.2a
 - 총회. ¶812.2d
- 운영 임원, 연회
 - 연대 협의회에서 채용된 ¶710.1b3
- 위원회.
 - 총회. ¶812.2g
- 위치 사역. ¶504.1
- 유럽 감리교회 협의회
 - 회원 자격. ¶813.5b
- 유증.
 - 개체 교회. ¶446.5d
 - 접수 ¶1012.1
- 은혜.
 - 선행 ¶102.3
 - 설득력 있는. ¶102.4
 - 성화. ¶102.6
 - 정당화. ¶102.5
- 의식
 - 승인. ¶208.11
 - 총회에 의해 승인됨. ¶703.12
- 이사회.
 - 권한. ¶1012
 - 연례 보고서. ¶1012.9e
 - 재단이사. ¶1006
- 이전
 - 개체 교회. ¶451
- 이전, 감독
 - 다른 교과에서. ¶611
- 이전, 교회
 - 연회에서 승인됨. ¶709.10
- 이전, 목회자
 - 다른 교과에서. ¶516
- 인신매매. ¶302.9
- 인종 차별. ¶302.1
- 일. ¶302.4
- 일방적 의사교환. ¶905.5
- 일부다처제. ¶302.8
- 일사부재리.
 - 고소사항. ¶905.8
- 임시 목회자. ¶610.9
- 임원들
 - 개체 교회의 선거. ¶440
 - 개체 교회의 제거. ¶441
 - 공석 채우기. ¶441
- 입법 위원회.
 - 총회. ¶812.2e
- 자금 조달. ¶208.9
 - 총회의 책임. ¶703.10
- 자발적 휴직
 - 감독. ¶614.1
- 자발적 휴직, 목회자. ¶518.1-2
- 자유. ¶302.13
- 장로목사 ¶503.2
 - 교육 요건. ¶507.4
 - 권리. ¶510.2
 - 보험. ¶510.3
 - 안수 과정. ¶510
 - 안수. ¶603.9
 - 역사적 질문. ¶508
 - 총회에 의해 정의된. ¶703.3
 - 회원. ¶510.2
- 재난 대응.
 - 위원단. ¶808
- 재단 이사
 - 이사들. ¶1006
- 재단 이사, 위원회
 - 개체 교회. ¶446
 - 공석. ¶446.2

- 권한. ¶446.5
- 연례 보고서. ¶446.6
- 임원들. ¶446.3
- 제거. ¶446.2
- 회원. ¶446.1-2

재단 이사회.

- 이사들. ¶1006

재단.

- 형성 중입니다. ¶1011

재무

- 개체 교회. ¶447.5

재무, 행정, 연금 및 복지 위원회. ¶811

재무위원회.

- 개체 교회. ¶447
- 회원. ¶447.1

재산

- 신탁 재산 보유. ¶1012.2
- 의 신학. ¶1001

재산. ¶302.5

재정 관리 부실

- 기소 가능한 범죄 ¶908.1b, ¶908.2b

재정 및 행정 위원회, 연회. ¶710.4

- 회원. ¶710.4a

재정 의무.

- 제한 사항. ¶1009

재판. ¶913

- 상소. ¶916
- 소송 전 절차. ¶913
- 장소. ¶919.1
- 재판 받을 권리. ¶212.2
- 재판 법원 소집. ¶914
- 재판 법원의 권한. ¶915
- 재판 법원의 투표. ¶915.2
- 처벌. ¶915.3

전도, 교회 성장, 선교 동원 및 재난 대응 위원단. ¶808

전도자.

- 인증. ¶514
- 파송 ¶514.2

접근성.

- 개체 교회. ¶446.5e, ¶1012.9d

정당한 해결. ¶904

정의 사역.

- 위원회. ¶809

정직

- 고소 절차. ¶909.2

제자훈련, 교리 및 정의로운 사역 위원회. ¶809

제자훈련.

- 성장. ¶420
- 정의. ¶405

제한 규칙. ¶212

조사 위원회. ¶710.6

- 절차. ¶912
- 정족수. ¶710.6e
- 회원. ¶710.6a-b
- 회원. ¶910

조직 계획

- 총회. ¶812.2f

종교 강령 ¶106.1

주님의 만찬.

- 제 6 조(CF). ¶106.2
- 제 18 조 (AR). ¶106.1

중재자.

- 고소 절차. ¶904

증서. ¶1007

지구, 보호. ¶302.6

지도자들

- 개체 교회의 선거. ¶440
- 개체 교회의 의무. ¶442
- 개체 교회의 제거. ¶441
- 공석 채우기. ¶441

지방 ¶207.3

- 연례 회의에 의해 설립됨. ¶709.4

지방감리사(PE)

- 의 파송 ¶608
- 책임. ¶609

지역 감독 위원회. ¶604.1b

- 감독 후보자 면접. ¶604.4

지정 현금

- ¶447.9, ¶447.11, ¶805.1a

직원

- 개체 교회. ¶445.8j-l

진술권. ¶905.1

집사목사. ¶503.1

- 교육 요건. ¶507.3
- 권리. ¶509.3
- 보험. ¶509.7
- 비활동. ¶509.3
- 승인 절차. ¶509
- 안수 질문. ¶509.1
- 안수. ¶603.9
- 역사적 질문. ¶508
- 총회에 의해 정의된. ¶703.3
- 파송 ¶509.4-5
- 회원. ¶509.3

차별 금지. ¶805.4

차별.

- 기소 가능한 범죄 ¶908.1c, ¶908.2c

채플린 ¶513

청원

- 총회. ¶703.14, ¶706

청원 비서. ¶706.1

총감리사 ¶607

- 파송 ¶603.6

총칙. ¶108

연회 위원회 ¶814

총회 위원단. ¶812

총회. ¶208

- 가상 회의 ¶705.3
- 감독 선출. ¶604
- 권한. ¶208, ¶703
- 규칙. ¶705.1
- 대의원 ¶207.4
- 대의원 배분 ¶711.2
- 대의원 선출 ¶709.6
- 대표. ¶703.11
- 비서. ¶704.2, ¶706.1, ¶706.6
- 의장. ¶704.1
- 정족수. ¶705.2
- 청원. ¶703.14, ¶706

출산 휴직. ¶518.6

출산휴가. ¶518.6

출석 및 동반권. ¶905.3

치유.

- 고소 절차. ¶905.7

칼케돈 정의. ¶105.3

크리스마스 컨퍼런스. ¶101.6

타인종 파송 ¶610.5

탈퇴, 회중. ¶455, ¶1003

통계

- 위원회. ¶811.2d

통계 보고서

- 연회에서 유지됨. ¶709.11

통지권. ¶905.2

파송 보장 ¶610.6

평가.

- 목사 및 직원. ¶445.8c-d

평신도 사역자. ¶502

- 목회협력 위원회 승인. ¶445.8h

- 서비스의 ¶502.4

- 자격. ¶502.2-3

평신도 지도자. ¶442.1

평신도.

- 사역. ¶404

평화. ¶302.11

포르노그래피. ¶302.8

- 기소 가능한 범죄 ¶908.1g

포함. ¶204

표준 설교. ¶107.1

학교, 임명. ¶610.11

합병.

- 개체 교회. ¶1013

상소 절차. ¶916

상소권 ¶918.5

- 재판. ¶916

행정 고소.

- 감독에 관한. ¶907
- 목회자에 관한. ¶906
- 항소. ¶918

행정 심사 위원회. ¶710.7, ¶906.2

- 정족수. ¶710.7e
- 회원. ¶710.7a-b

행정 위원회.

- 총회. ¶812.2g

행정 처분 ¶508.7

행정.

- 위원회. ¶811

헌금 계산위원들 ¶447.4

- 헌법 ¶201
- 헌법 개정. ¶207.5, ¶213
 - 연회에서 비준됨. ¶709.7
- 협동교구. ¶452
- 협동교회 회원 ¶454
- 협동목회자 회원 ¶519
- 협의
 - 파송. ¶610.7
- 확인.
 - 의미. ¶417
- 확정 판결.
 - 교리와 장정 관련. ¶922.6
 - 연회의의 입법안 적법성. ¶922.6
 - 제안된 입법 ¶922.2
- 회원
 - 감사 ¶430
 - 갱신. ¶422.5
 - 고백. ¶411.2, ¶418
 - 교회. ¶208.2
 - 구성원. ¶425
 - 기대. ¶420, ¶422.1
 - 기록. ¶429
 - 대학에 재학 중 ¶431
 - 복원. ¶435
 - 비활동. ¶422.3-4
 - 서약. ¶419
 - 세례받음, ¶411.1 를 참조하세요
 - 연례 보고서. ¶430
 - 연합. ¶424
 - 외부 개체 교회로부터 받음. ¶426, ¶427
 - 이동. ¶432
 - 적임. ¶410
 - 전송. ¶423
 - 전송. ¶433, ¶434
 - 정의 ¶411
 - 제거. ¶422.4
 - 중단된 교회로부터 받음. ¶428
 - 책임감. ¶422
 - 총회에 의해 정의된. ¶703.4
 - 통계. ¶411.3
 - 협동 ¶424
- 회원.
 - 조직. ¶701
- 회의.
 - 조직. ¶701
- 회중의 충실성. ¶455
- 후보.
 - 다른 교파에서. ¶521.4
 - 안수 사역을 위한. ¶506
- 후보자들.
 - 구역 회의 승인 ¶439.7
 - 목회협력 위원회 승인. ¶445.8h
- 휴가, 안식년. ¶518.3
- 휴직, 감독. ¶614
- 휴직, 목회자. ¶518
- 휴직, 병가.
 - 감독. ¶614.2
- 휴직, 비자발적. ¶518.4
- 휴직, 자발적.
 - 감독. ¶614.1
- 휴직, 출산 및 육아. ¶518.6